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발 간 사

국회에서 심의 · 확정한 우리나라의 2011년도 총지출 규모는 309.1조원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라살림 30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제 원자재시장 불안, 국내 물가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 · 외 경제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안정적 경제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이를 심의 · 확정하는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실로 막중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재정권한 행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대한민국 재정」을 매년 발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은 방대한 규모의 우리나라 재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먼저, 종래에는 우리나라 재정을 12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던 것을 국회의 예산안 심의 체계에 맞게 16개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이를 분석 ·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본책이 '확정예산 분석서' 라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과정과 주요 논의 사항, 조정 내역 등을 전년보다 더욱 상세히 정리하였고, 그 밖의 주요 재정현안을 전 부처에 망라하여 적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정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책은 총 2부 22장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2011년도 재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및 국회 심의내역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고, 제2부에서는 16개 상임위원회별로 49개 부 · 처 · 청의 2011년도 확정예산과 주요 재정현안을 분석 ·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과 관련된 필수 재정통계를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새롭게 꾸며진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이 국회 내 · 외부에서 적극 활용됨으로써 국가재정이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2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 김 춘 순

집 필 진

기획·총괄 김 춘 순(예산분석실장)

조 정
박 인 화(예산분석심의관)
박 선 춘(경제예산분석팀장) 서 세 욱(산업예산분석팀장)
문 종 열(사회예산분석팀장) 천 우 정(행정예산분석팀장)
정 문 종(법안비용추계1팀장) 임 재 봉(법안비용추계2팀장)

집 필
예산분석관 최철민 이강혁 정금희 김태완 정원철
전용수 서명관 김승현 변재연 한정수
이유미 강상규 김대철 김성은 김태은
오세일 전광희 예승우 김경수
김수옥 원종욱

지 원 노경훈(예산분석관) 인정은 구윤정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주요 재정현안을 심도 있게 분석한 '확정예산 분석서'로서, 방대한 규모의 국가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연락처: 02-788-3769 eba@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Brief Contents

제1부 2011년도 재정 개요

제1장 2011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특징 13
제2장 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 17
제3장 2011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 건전성 23
제4장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49
제5장 2011년도 예산의 국회심의 내역 및 특징 83

제2부 위원회별 재정 및 주요 현안

제6장 분야별 재원배분 개관 133
제7장 법제사법 141
제8장 정무 150
제9장 기획재정 168
제10장 외교통상통일 192
제11장 국방 205
제12장 행정안전 219
제13장 교육과학기술 251
제14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264
제15장 농림수산식품 281
제16장 지식경제 300
제17장 보건복지 319
제18장 환경노동 340
제19장 국토해양 364
제20장 여성가족 383
제21장 국회운영 395
제22장 정보 400

부록 : 재정통계

1 경제 및 재정 총량지표 407
2 상임위원회 소관별 재정통계 426

Contents

제1부 2011년도 재정 개요

제1장 2011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1절 2011년도 재정 개요 ····· 13
제2절 2011년도 재정운용의 방향 ····· 15

제2장 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

제1절 거시경제 전망 ····· 17
1.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 ····· 17
2. 2011년 한국경제 전망 ····· 19
제2절 국내 경제의 위험 요인 ····· 21

제3장 2011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 건전성

제1절 재정규모 ····· 23
제2절 재정수지 ····· 28
1. 재정수지의 의의 ····· 28
2. 재정수지 현황 ····· 29
제3절 국가채무 ····· 31
1. 국가채무의 의의 ····· 31
2. 국가채무 현황 ····· 38
제4절 의무지출 ····· 43
1. 의무지출의 의의 ····· 43
2. 상임위원회별 의무지출 사업 현황 ····· 46
3. 의무지출 규모 및 변화 추이 ····· 47

제4장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제1절 2011년도 예산 ····· 49
1. 예산 총칙 ····· 49
2. 세입예산 ····· 55
3. 세출예산 ····· 58
제2절 2011년도 기금 ····· 66
1. 기금 현황 ····· 66
2.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 69
3. 기금 수입 ····· 70
4. 기금 지출 ····· 73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등 ····· 75
제4절 국가보증채무 ····· 77
제5절 성인지 예산 ····· 78
1. 성인지 예산제도 개관 ····· 78
2. 2011년도 성인지 예산 현황 ····· 79

제5장 2011년도 예산의 국회심의 내역 및 특징

제1절 국회심의 개요 ····· 83
제2절 국회 심사 경과 ····· 85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8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88
제3절 본회의 심의 ····· 90
제4절 2011년도 예산안 국회 조정내역 ····· 92
1. 2011년도 세입예산의 주요 조정내역 ····· 92
2. 2011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조정내역 ····· 96
제5절 주요 증감 및 신규 사업 ····· 98
제6절 부대의견 ····· 102
제7절 2010년도 통과 재정수반 법률과 2011년도 예산 ····· 105
1. 2010년도 통과 재정수반 법률과 2011년도 예산 규모 ····· 106
2.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수반 법률 ····· 107
3. 재정수반 법률 내용과 관련 사업명 및 예산액 ····· 108
제8절 결산심사와 예산안 심사의 연계 ····· 125

제2부 위원회별 재정 및 주요 현안

제6장 분야별 재원배분 개관

제1절 2011년도 재원배분 ····· 133
1. 개 관 ····· 133
2.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 136

제2절 중기재정운용 방향 ····· 137
제3절 상임위원회별 재정규모 ····· 138

제7장 법제사법

제1절 재정 현황 ····· 141
1. 개 관 ····· 141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142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146
1. 심의 경과 ····· 146
2. 심의 특징 및 내역 ····· 146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 147
1. 법무부 ····· 147
2. 대법원 ····· 149

제8장 정무

제1절 재정 현황 ····· 150
1. 개 관 ····· 150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151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158
1. 심의 경과 ····· 158
2. 심의 특징 및 내역 ····· 158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 160
1. 국무총리실 ····· 160
2. 금융위원회 ····· 162
3. 국가보훈처 ····· 165
4. 공정거래위원회 ····· 166
5. 국민권익위원회 ····· 167

제9장 기획재정

제1절 재정 현황 ····· 168
1. 개 관 ····· 168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169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176
1. 심의 경과 ····· 176
2. 심의 특징 및 내역 ····· 176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 180
1. 기획재정부 ····· 180
2. 국세청 ····· 186
3. 관세청 ····· 188
4. 조달청 ····· 189
5. 통계청 ····· 191

제10장 외교통상통일

제1절 재정 현황 ····· 192
1. 개 관 ····· 192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193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197
1. 심의 경과 ····· 197
2. 심의 특징 및 내역 ····· 198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 200
1. 외교통상부 ····· 200
2. 통일부 ····· 203

제11장 국방

제1절 재정 현황 ····· 205
1. 개 관 ····· 205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206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211
1. 심의 경과 ····· 211
2. 심의 특징 및 내역 ····· 212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 213
1. 국방부 ····· 213
2. 방위사업청 ····· 215

Contents

제12장 행정안전

제1절 재정 현황 ····· 219
1. 개 관 ····· 219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220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227
1. 심의 경과 ····· 227
2. 심의 특징 및 내역 ····· 228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 23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31
2. 행정안전부 ····· 232
3. 경찰청 ····· 236
4. 소방방재청 ····· 239
5. 지방재정 지원 ····· 240

제13장 교육과학기술

제1절 재정 현황 ····· 251
1. 개 관 ····· 251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252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255
1. 심의 경과 ····· 255
2. 심의 특징 및 내역 ····· 256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 257

제14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제1절 재정 현황 ····· 264
1. 개 관 ····· 264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265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271
1. 심의 경과 ····· 271
2. 심의 특징 및 내역 ····· 272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 274
1. 문화체육관광부 ····· 274
2. 방송통신위원회 ····· 279

제15장 농림수산식품

제1절 재정 현황 ····· 281
1. 개 관 ····· 281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282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288
1. 심의 경과 ····· 288
2. 심의 특징 및 내역 ····· 289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 292
1. 농림수산식품부 ····· 292
2. 농촌진흥청 ····· 296
3. 산림청 ····· 297

제16장 지식경제

제1절 재정 현황 ····· 300
1. 개 관 ····· 300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301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307
1. 심의 경과 ····· 307
2. 심의 특징 및 내역 ····· 308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 310
1. 지식경제부 ····· 310
2. 중소기업청 ····· 316

제17장 보건복지

제1절 재정 현황 ····· 319
1. 개 관 ····· 319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320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326
1. 심의 경과 ····· 326
2. 심의 특징 및 내역 ····· 327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 329
1. 보건복지부 ····· 329

제18장 환경노동

제1절 재정 현황 ····· 340
1. 개 관 ····· 340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341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350
1. 심의 경과 ····· 350
2. 심의 특징 및 내역 ····· 350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 354
1. 환경부 ····· 354
2. 고용노동부 ····· 358

제19장 국토해양

제1절 재정 현황 ····· 364
1. 개 관 ····· 364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365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372
1. 심의 경과 ····· 372
2. 심의 특징 및 내역 ····· 372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 374
1. 국토해양부 ····· 374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381

제20장 여성가족

제1절 재정 현황 ····· 383
1. 개 관 ····· 383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384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387
1. 심의 경과 ····· 387
2. 심의 특징 및 내역 ····· 388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 390

제21장 국회운영

제1절 재정 현황 ····· 395
1. 개 관 ····· 395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 396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398
1. 심의 경과 ····· 398
2. 심의 특징 및 내역 ····· 399

재22장 정보

제1절 재정 현황 ····· 400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 400

부 록

1 경제 및 재정 총량지표

1. 주요 경제지표 ····· 407
2. 재정지표 ····· 408

2 상임위원회 소관별 재정통계

1. 외교통상통일 ····· 426
2. 국방 ····· 428
3. 행정안전 ····· 430
4. 교육과학기술 ····· 431
5. 농림수산식품 ····· 434
6. 지식경제 ····· 436
7. 보건복지 ····· 438
8. 환경노동 ····· 442
9. 국토해양 ····· 446
10. 여성가족 ····· 450
11. 공공기관 ····· 451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국회

제1부
2011년도 재정개요

제1장 2011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2장 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

제3장 2011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 건전성

제4장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제5장 2011년도 예산의 국회심의 내역 및 특징

nabo

2011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1장

제1절 2011년도 재정 개요

총지출[1)]은 309.1조원, 총수입은 314.4조원

2011년도 재정규모
총지출 309.1조원
총수입 314.4조원

국회는 2010년 12월 8일 총지출 309.1조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였다. 2011년도 총지출 309.1조원은 2010년도 대비 16.2조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안에 비해서는 0.5조원 감액된 규모이다. 국회는 도로·철도·항만 건설 예산을 0.6조원, 서북 5도 전력 강화에 0.3조원, 참전·무공 수당을 0.1조원 인상하는 등 총 2.1조원을 증액하고, 4대강 관련 0.3조원, 철도시설개량 0.2조원, 예비비 0.1조원을 감액하는 등 총 2.6조원을 감액하였다.

2011년도 총수입 314.4조원은 2010년도 대비 23.6조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안에 비해서는 0.2조원 감액된 규모이다. 국회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0.2조원, 바이오디젤 유류세 일몰 연장 0.1조원 등을 통해 총수입을 감액하였다.

표 1. 1 2011년도 재정규모

(단위 : 조원, %)

	2010 예산(a)	2011 정부안(b)	2011 국회 확정			
			규모(c)	정부안대비 증가액 (c-b)	2010 예산 대비 증가액(증가율) (c-a)	(c-a)/a
총수입	290.8	314.6	314.4	-0.2	23.6	8.1
(국세)	(170.4)	(187.8)	(187.6)	-0.2	17.2	10.1
총지출	292.8	309.6	309.1	-0.5	16.2	5.5
• 예산	205.3	215.9	216.3	0.4	11.0	5.4
• 기금	87.5	93.7	92.8	-0.9	5.3	6.1

주: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정부안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2011년도 국회 확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1)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금의 지출에서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및 국채와 차입금 상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것이다.

재정수지 △25.0조원, 국가채무 435.5조원

국회에서 확정된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국회심의를 통하여 정부안 대비 0.3조원 규모의 수지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2011년에도 25.0조원의 적자가 전망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2010년 대비 28.3조원이 증가하여 435.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심의 결과 일반회계 국채 순증규모 1.0조원 등 총 1.3조원을 감소시켰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 2 2011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 : 조원, %)

	2010 예산(a)	2011 정부안(b)	2011 국회 확정		
			규모 (c)	정부안대비 증가액 (c-b)	전년예산대비 증감 (c-a)
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30.1	-25.3	-25.0	0.3	5.1
(GDP 대비)	(-2.7)	(-2.0)	(-2.0)	-	(0.7p)
일반회계 국채(순증)	29.3	22.0	21.0	-1.0	-8.3
국가채무	407.2	436.8	435.5	-1.3	28.3
(GDP 대비)	(36.1)	(35.2)	(35.1)	(-0.1p)	(-1.0p)

주: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정부안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2011년도 국회 확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제2절 2011년도 재정운용의 방향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출억제 등을 통한 건전재정 실현'을 도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성장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국회는 정부안 대비 국가채무를 축소하고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등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균형발전 등의 국민요구를 반영하고 미래성장기반 확충 및 서해 5도 지원 등 시급한 정책과제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11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하였다.

재정건전성 강화

정부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2010년 36.1%로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2011년부터 점차 완만하게 개선되어 2014년에는 2009년 이전 수준과 비슷한 30%대 초반(31.8%)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재정 건전화 목표 및 전망은 2014년까지 「연평균 7.7%의 재정수입 증가율과 4.8%의 재정지출 증가율 간 2.9%p 수지차」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회 조정결과

- 관리대상수지0.3조원 개선
- 국가채무1.3조원감소

그러나 국회는 2011년 대내외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전망은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의무지출 확대, 복지예산 및 미래대비 투자 증가 등 제반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향후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가 2010년에 비해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4.8조원 축소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에도, 국회는 재정건전성을 더욱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정부안 대비 총지출이 0.5조원 감액 조정되는 등 관리대상수지가 0.3조원 개선되었다. 국회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1조원 감액(22→21조원)하는 등 국가채무를 정부안 대비 1.3조원 감소한 435.5조원으로 축소함으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0년 36.1%에서 1.0%p 하락한 35.1%가 되도록 개선하였다.

서민생활 안정 및 미래 성장기반 확충

정부는 2011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서민생활 안정 지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국회는 생애단계별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에 대하여 대상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심의하였다. 저소득 빈곤 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38억원 증액),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보건복지시설 기능보강(147억원 증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다문화 및 주거환경 개선(113억원 증액) 등에 지원을 확대하였다.

국회는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는 사업계획 부실, 법적근거 미비, 적시성 결여 사업 등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세출예산 3조 1,329억원, 기금 지출 3조 3,825억원을 감액[2)]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미래유망원천기술 개발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9.9% 증가한 3,858억원으로 확정하는 등 R&D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8.7% 증가한 14.9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도로 건설(2,601억원 증액) 등 SOC 투자를 확대(3,554억원 증액)하였다. 한편,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1,236억원 순증시켰다.

2) 2011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조정규모

(단위 : 억원)

	증액	감액	증감
세출예산	19,603	-31,329	-11,726
기금지출	13,302	-33,825	-20,523

주: 세출예산은 순계 기준, 기금 지출은 기금운용계획 기준임

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 제2장

제1절 거시경제 전망

1.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지속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경제의 침체는 각국의 경기부양대책과 세계 교역량 확대 등으로 2010년 중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IMF, OECD 등 주요기관들은 2011년에도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회복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정책 효과의 약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재정긴축 등에 따라 성장세가 전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재정위기, 선진국의 부동산·고용시장 부진,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 국가별·지역별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국가의 2011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2011년 1월 IMF는 미국 3.0%, 유로지역 1.5%, 일본 1.6%, 중국 9.6%로 전망하였다.

2011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 IMF 4.4%
· OECD 4.2%

표 2. 1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2010	2011	2012
세계경제	5.0(4.6)	4.4(4.2)	4.5(4.6)
선진국 경제	3.0(2.8)	2.5(2.3)	2.5(2.8)
미 국	2.8(2.7)	3.0(2.2)	2.7(3.1)
유로지역	1.8(1.7)	1.5(1.7)	1.7(2.0)
일 본	4.3(3.7)	1.6(1.7)	1.8(1.3)
개도국 및 신흥국	7.1(-)	6.5(-)	6.5(-)
중 국	10.3(10.5)	9.6(9.7)	9.5(9.7)

주: 1. IMF가 2011년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2. 괄호안은 OECD가 2010년 1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자료: IMF, OECD

각국의 재정건전화 추진 동향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각국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미국의 경우 2008년 6.7%에서 2009년 12.9%, EU의 경우 2008년 2.0%에서 2009년 6.3%로 증가하였다.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처하고자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재정긴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미국은 2011년 2월 향후 5년간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EU는 재정긴축 목표에 합의하고 재정위기 국가는 3년 이내에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축소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일본의 경우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2010년 수준의 절반으로 축소하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각국의 재정건전화는 단기적으로 세계경기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불안요인을 제거하여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부분의 긴축계획이 강제성이 부족하고 단기적(3~5개년 계획)이어서 장기 건전성 회복 여부는 불투명하다.

각국의 재정건전화 계획

국 가	재정건전화 계획
미 국	PAYGO 원칙 부활('10.2), 5년간 재량지출 동결 방침의 예산안 발표('11.2)
EU	'12~'14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3%, 국가채무 60%를 달성하는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준수 강화에 합의('10.6)
- 독일	'14년까지 GDP 3.4% 규모의 재정적자 축소('11년 예산안, '10.7)
- 영국	'15년까지 GDP 5.5% 규모의 지출감축, 예산청 신설, 재정책임법 제정('10.2)
- 그리스	'14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감축하는 프로그램 의결('10.5)
- 포르투칼	'14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감축하는 재정긴축안 의결('10.12)
- 아일랜드	'14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미만으로 감축하는 예산안 발표('10.11)
일 본	'15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를 '10년 수준의 절반으로 축소, '20년까지 흑자전환 계획 발표

자료 : 기획재정부의 「2011년 경제전망」(2010. 12)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2011년 한국경제 전망

2011년 경제전망

한국은행은 2011년 1월 발표한 「2010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에서 우리나라의 2010년 경제성장률을 2002년 7.2% 이후 최고 수준인 6.1%로 전망하였다. 이는 2009년 성장률이 0.2%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수출호조 및 제조업 생산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국내외 주요기관은 수출증가세의 둔화와 공공부문의 경기부양효과의 약화 등에 따라 201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OECD 경기선행지수 또한 여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 국내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하였으며, 정부는 2011년 국내 경제성장률 5.0%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2011 국내경제성장률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3.9%
· 정부 5.0%

표 2. 2 국내외 주요기관의 2011년 경제전망 비교

(단위 : %, 억달러)

구 분	국회예산정책처 2010.11	정부 2010.12	한국은행 2010.12	IMF 2010.10	OECD 2010.11
경제성장률	3.9	5.0	4.5	4.5	4.3
· 민간소비	3.2	4.2~4.6	4.1		4.6
· 설비투자	6.3	7.0	6.5		
· 건설투자	-0.5	2.0	1.3		
경상수지	139	180	215		2.3
실업률	3.5	3.5	3.5		3.4
소비자물가	2.8	3.0	3.5		3.2

주 : 1. 경상수지는 2010년 12월 8일부터 변경된 국제수지통계작성기준인 IMF의 국제수지통계매뉴얼(BPM6)이 아닌 구 기준을 적용한 것임
2. OECD의 경상수지 전망치는 GDP 대비 비중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NABO 2010~2014년 경제 및 재정전망」, 2010. 11
기획재정부, 「2011년 경제전망」, 2010. 12
한국은행, 「2011년 경제전망」, 2010. 12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 10
OECD, 「Economic Outlook No.88」, 2010. 11

그림 2. 1 주요 국가의 OECD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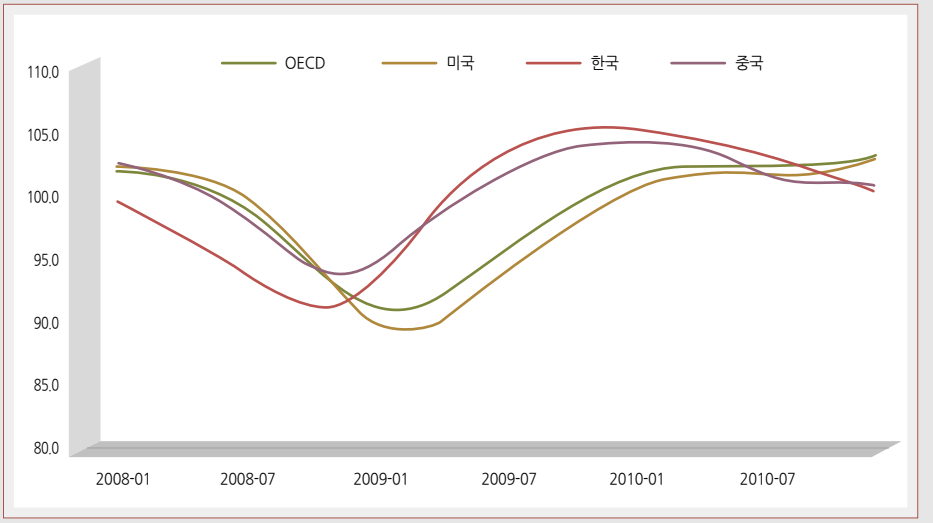

자료 : OECD

대외부문

점진적인 통화환수정책과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 선진국 주택경기의 약보합국면 지속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량 및 세계경기의 회복세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원화강세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가격경쟁력도 악화될 것이라는 점과 중국 등 일부 개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 상품(저기술 중간재 및 부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도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주요 요인이다.

대내부문

내수성장률이 수출증가율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도 수출과 내수(업종별, 기업규모별 등)간 경기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등의 고용여건은 거의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세는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제조업종 특히 전기전자 및 자동차업종 등 일부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내수경기가 주택 및 주가 등 자산가격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경기의 위축과 가계 및 중소기업의 부채조정 등은 내수회복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2.2 참조).

그림 2. 2 주택 가격과 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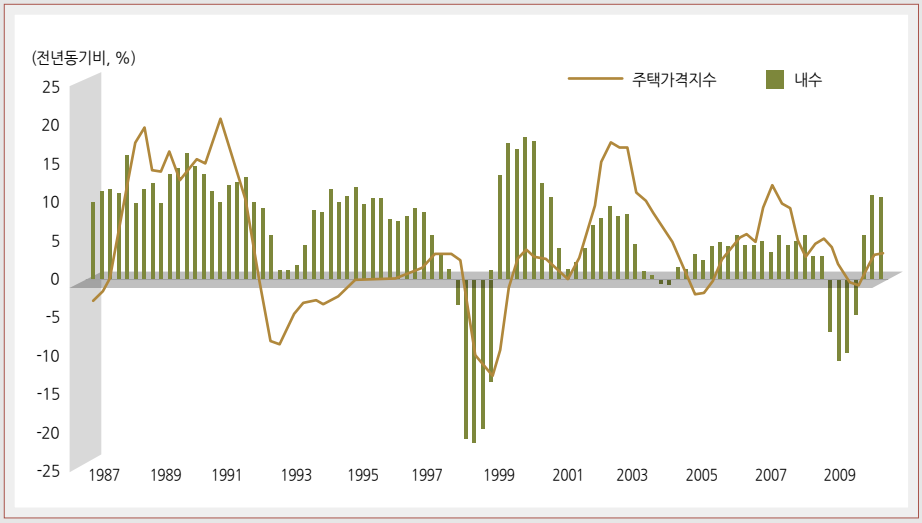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국민은행

제2절 국내 경제의 위험 요인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경기·국제금융시장·유가 및 원자재 가격·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여건 및 대내여건의 불확실성은 올해 우리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2011년 국내경제의 하방위험(downside risk) 주요 요인은 첫째,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더블 딥(일시 회복 후 경기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지는 현상) 가능성이다. 세계경제는 위기 국면을 벗어났으나 점차 공공부문의 경기부양 효과가 약화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의 빠른 경기하강, 유럽의 재정위기 재현, 중국의 긴축강화 조치 등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둘째, G-20 등을 통해 거시경제정책의 국제공조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국가별로 경기회복속도가 상이함에 따라 경제정책이 차별화되면서 국가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국내경제 위험요인

- 선진국의 더블 딥 가능성
- 국가간 정책갈등 및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 국내 가계부채 증가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국내적 요인으로 부동산 장기침체와 금융비용부담 가중(과잉부채가구)에 따른 가계의 부실화 위험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2009년 말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2.7%로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주요 13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으며, 2000년 대비 상승폭은 56.8%p로 13개국 평균 상승폭(36.7%p)의 1.5배에 이르고, 스웨덴(59.7%p), 호주(59.4%p)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다. 향후 시중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저소득 및 저자산 가계를 중심으로 상환능력이 약화되면서 부실화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

그림 2. 3 주요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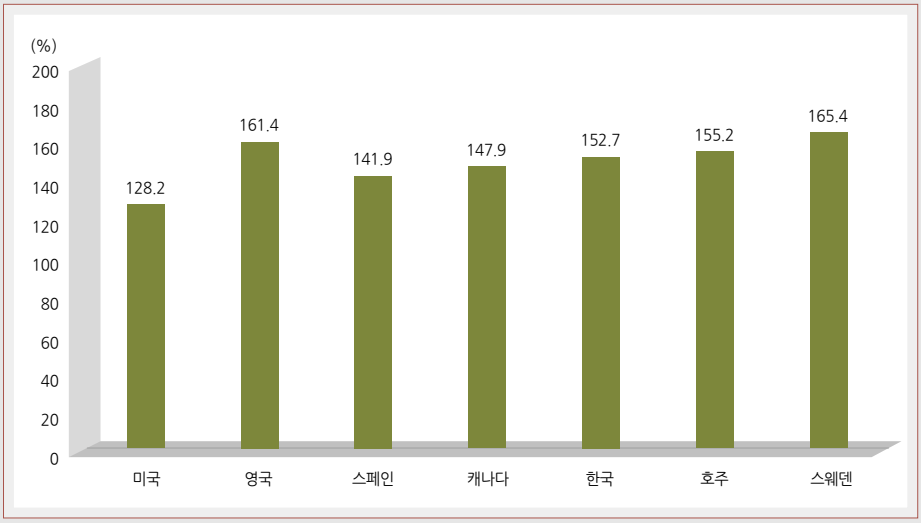

주 : 2009년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2010. 9

2011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 건전성 제3장

제1절 재정규모

2011년 총수입은 314.4조원, 총지출은 309.1조원

2011년도 재정규모
총지출 309.1조원
총수입 314.4조원

2011년도 총수입은 2010년 290.8조원 대비 23.6조원(8.1%) 증가한 314.4조원이다. 국세수입은 187.6조원으로 2010년 170.4조원 대비 17.2조원(10.1%) 증가하여 총수입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1년도 총지출 규모는 2010년 292.8조원 대비 16.2조원(5.5%) 증가한 309.1조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2005년 200조원을 넘어선 이후 6년 만에 300조원을 돌파하였다. 총지출을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예산은 216.3조원, 기금은 92.8조원으로 2010년 대비 각각 5.4%, 6.1% 증액되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총수입과 총지출이 각각 314.6조원, 309.6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수입이 0.2조원, 총지출이 0.5조원 각각 감액되었다.

표 3. 1 2011년도 재정규모(총수입 · 총지출 기준)

(단위 : 조원, %)

	2010예산	2011예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총수입	290.8	314.4	23.6	8.1
(국 세)	(170.4)	(187.6)	(17.2)	(10.1)
총지출	292.8	309.1	16.2	5.5
- 예 산	205.3	216.3	11.0	5.4
- 기 금	87.5	92.8	5.3	6.1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연도별 중앙정부 총수입과 총지출

정부는 2005년부터 총수입·총지출 기준의 중앙정부 재정규모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총수입의 경우 2005년 222.4조원에서 2011년 314.4조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총지출은 2005년 209.6조원에서 2011년 309.1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하고 있어 총수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중앙정부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 추이

(단위 : 조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222.4	235.3	250.6	274.2	279.8	290.8	314.4	5.9
총지출	209.6	224.1	237.1	262.8	301.8	292.8	309.1	6.7

주: 최종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의 「나라살림 예산개요」(각 연도)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1년도 통합재정 수입은 284.8조원, 지출 및 순융자는 279.5조원

2011년도 통합재정 규모
수입 284.8조원
지출 및 순융자 279.5조원

2011년도 통합재정 수입은 2010년도 예산 대비 8.6% 증가한 284.8조원이고 지출 및 순융자는 279.5조원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수입에 비하여 지출 및 순융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경제 여건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입보다 지출 및 순융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2 통합재정 규모

(단위 : 조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입 (전년대비 증감률)	250.7 (2.9)	255.2 (1.8)	262.3 (2.8)	284.8 (8.6)
지출 및 순융자 (전년대비 증감률)	238.8 (13.8)	272.9 (14.3)	264.3 (-3.2)	279.5 (5.8)
· 지출	233.3	254.8	258.4	274.9
· 순융자	5.5	18.0	5.9	4.6

주 : 2008 · 2009년은 결산 기준이며, 2010 · 2011년은 예산 기준임
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지출 규모의 변화 추이

우리나라 통합재정기준 '지출 및 순융자'의 GDP 대비 비율은 1980~1990년대 중반까지 10%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1998년에 23.0%를 기록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 2002년을 제외하고는 GDP 대비 20%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상승하여 2009년에는 GDP 대비 25.7%까지 지출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다시 감소 추세로 접어들어 2011년에는 예산 및 정부 전망 GDP 기준으로 GDP 대비 22.5% 수준의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재정지출 규모 (통합재정 기준)

· GDP 대비 22.5%

그림 3. 1 최근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규모(통합재정 기준)

(GDP 대비, %)

주 : 1. 2010 · 2011년은 예산 기준이며 나머지 연도는 결산기준임
2. 2010년 및 2011년 GDP는 2010년말 기획재정부 추산치임
자료 : 기획재정부의 「200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2010.12)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재정지출 규모의 국제비교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 재정지출(General government total outlays) 규모는 평균적으로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이며 유로 지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는 50% 내외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도 OECD 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40% 내외를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는 2011년 기준 GDP의 28.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2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의 국제비교(OECD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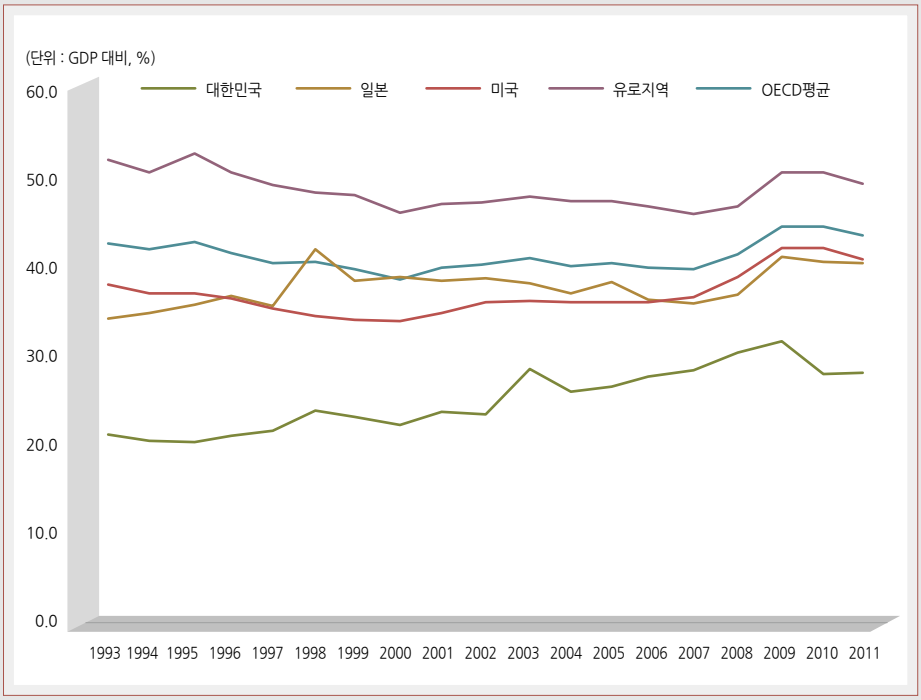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No. 88, 2010.11

그러나 재정지출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재정지출 수준이 높은 유로지역과 미국, 일본 등은 GDP 대비 지출 규모의 변동성이 작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교적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OECD 통계(Economic Outlook No. 88)에 수록되어 있는 1993년부터 2011년까지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지출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유로지역은 -0.32%, 미국은 0.42%, 일본은 0.92%, OECD 평균은 0.09%의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동 기간에 연평균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성숙단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재정건전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 차원의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총지출 규모와 통합재정 규모의 통계작성 방법의 비교

총지출 규모

총지출 규모는 예산 및 기금을 합한 정부부문 지출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한 재정활동 규모를 말하는데, 융자지출을 모두 지출로 계상함으로써 통합재정 규모보다 항상 크다.

통합재정 규모

통합재정 규모는 예산 및 기금의 정부부문 지출 총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한 재정활동 규모를 말하는데, 통합재정 규모는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만을 계상한다.

공통점

총지출 규모와 통합재정 규모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과, 내부거래·보전거래를 상계한 지출의 순계규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

두 개념사이에는 융자거래와 기업특별회계의 집계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융자거래에 관해서 총지출에서는 융자지출 총계를 지출로 계상하는 반면, 통합재정에서는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뺀 순융자를 계상한다. 그리고 기업특별회계의 집계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총지출 규모는 영업지출 총계규모를 계상하는 반면, 통합재정은 영업수입과 영업지출의 크기를 비교하여 순계금액을 통합재정수입 또는 통합재정지출로 계상한다. 즉, 영업수입이 영업지출보다 크면 영업수지를 통합재정수입으로, 영업수입이 영업지출보다 작으면 통합재정지출로 계상한다.

- 총지출 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 통합재정 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회수)

〈통합재정에서 기업특별회계 계상방식〉

- 영업수입〉영업지출 : 영업수지를 통합재정수입으로 계상
- 영업수입〈영업지출 : 영업수지를 통합재정지출로 계상

제2절 재정수지

1. 재정수지의 의의

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당해연도 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더 커서 재정수지 적자가 되면 차입이나 국채발행, 자산매각 등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게 되므로 국가채무의 증가 또는 국가자산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더 커서 재정수지 흑자가 되면 국채상환이나 예치금 등에 사용하게 되므로 국가채무가 감소하거나 국가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

재정수지라 하면 통상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며,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국가재정법」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통합재정수지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고, 결산에 통합재정수지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험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로서,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성기금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통합재정수지의 흑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보험료 수입은 누적됨으로써 큰 폭의 흑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성기금의 장기적인 재정불안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금의 흑자를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하는 관리대상수지 역시 유용한 재정지표라고 할 수 있다.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 순융자)
-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험성기금의 흑자분

2. 재정수지 현황

2011년 통합재정수지는 5.3조원 흑자(관리대상수지는 △25.0조원 적자)

2011년 통합재정수지는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2010년 예산 기준 2조원 적자에서 5.3조원(GDP 대비 0.4%)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험성기금 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010년 예산 기준 △30.1조원 적자[1](GDP 대비 △2.7%)에서 2011년에는 △25.0조원(GDP 대비 △2.0%) 적자로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25.3조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0.3조원 개선되었다. 한편, 2011년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인 △2.0%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11년 전망치 △2.3%보다 0.3%p 개선된 것이다.

2011년도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5.3조원
- 관리대상수지△25.0조원

표 3. 3 2011년도 재정수지

(단위 : 조원, %)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년 예산(B)	증감 (B-A)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17.7 (-1.7)	-2.0 (-0.2)	5.3 (0.4)	+7.3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43.2 (-4.1)	-30.1 (-2.7)	-25.0 (-2.0)	+5.1

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수지 변화 추이와 국제비교

[그림 3.3]은 최근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추이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1980년대 전반까지 경제개발지원 등의 영향으로 적자기조가 지속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재정긴축, 3저호황 등으로 전반적인 균형기조에 진입하였다. 이후 1998년 외환위기 직후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지출억제 노력과 재정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2000년대 초반에는 흑자를 회복하여 2002년에는 5.1조원(GDP대비 0.7%)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일시적으로 3.6조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던 2007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

1) 최근(2011.2.14)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기획재정부 잠정 추산 결과에 따르면 2010년의 실제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예산대비 국세(7조원) 등 재정수입 증가와 지출 감소에 따라 당초 30.1조원보다 감소한 15~20조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 수지가 악화되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었던 2008년과 2009년에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여 그 규모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43.2조원(2009년)에 이르렀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경제 회복세에 의한 재정수입 증가 등에 따라 수지가 2009년에 비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러한 전망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 보다 큰 상황이다.

그림 3. 3 최근 재정수지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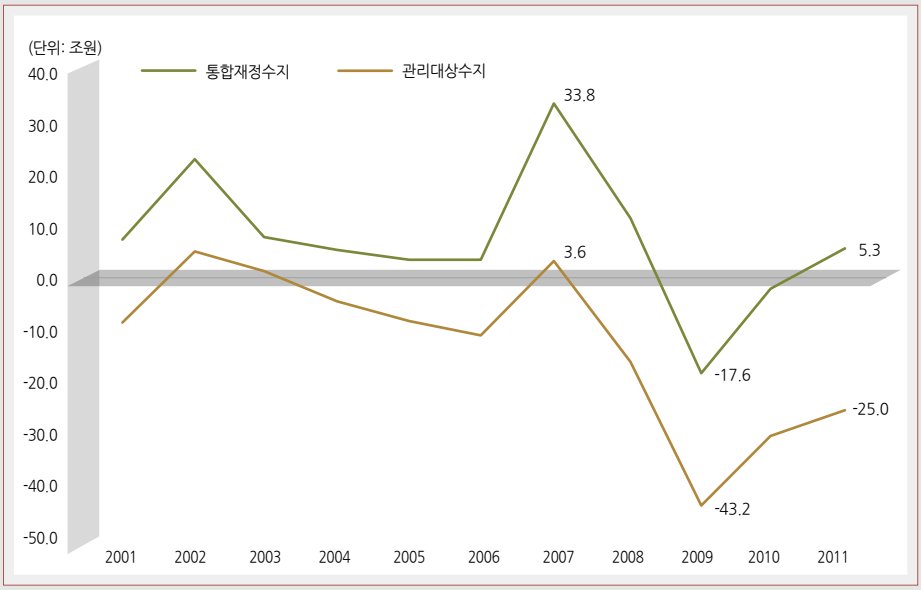

주 : 2009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10 · 2011년은 예산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한편, 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일반정부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s)는 △6.1% 수준으로 2009년 △7.9%보다는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여전히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1 ~ △4%)으로는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3. 4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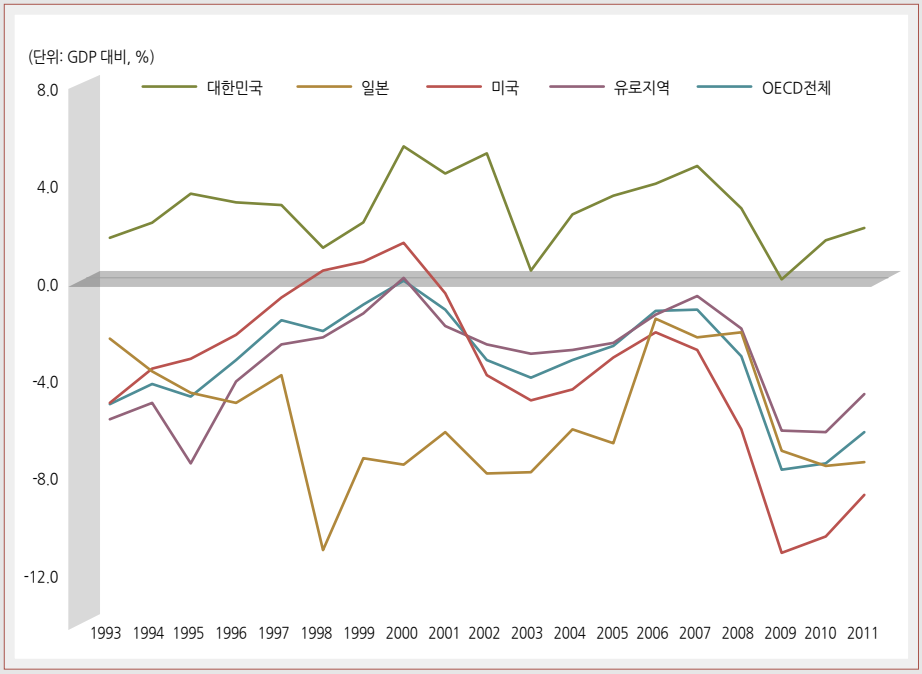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No. 88, 2010.11

제3절 국가채무

1. 국가채무의 의의

가. 국가채무와 재정건전화

일반적으로 국가채무는 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재정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는 국가채무에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발행채권',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국가보증채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은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과 '채권 또는 차입금 가운데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은 제86조에서 정부에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동법 제91조제1항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실적·계획 및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 증감 전망 등을 포함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가 동 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에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채무의 종류

국가채무의 종류
- 국채
- 차입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지방정부순채무 등

국가채무의 종류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채

국채는 국가 재정수지 상의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는 「국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다른 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발행한다. 2009회계연도 결산 기준 359.6조원의 국가채무 총액 중 93.9%인 337.5조원이 국채일 정도로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10월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세 종류로서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제1종, 제2종),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2]으로 구분된다. 제3종 국민주택채권과 출자재정증권은 제도상 발행은 가능하나 2000년 이후 발행되지 않고 잔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2)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2003년 11월부터 국고채로 통합발행 되고 있다.

차입금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의미한다. 차입대상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민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국내차입금과 IBRD, ADB 등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국외차입금으로 구분된다. 2009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 중 차입금은 5.4조원 규모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내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2009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 중 국고채무부담행위는 3.2조원 규모이다.

지방정부 순채무

지방정부 순채무는 지방정부의 지방채 및 지방교육채 잔액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잔액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국제비교 등을 위해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1997년 이후 지방정부의 순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2009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 중 지방정부 순채무는 13.5조원 규모이다.

다. 국가채무에 대한 국제기준

(1) OECD 기준

OECD 국가의 일반정부 부채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흔히 사용되는 통계이다. OECD 통계는 UN의 국민계정체계(SNA 1993: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에 기초하고 있다.

OECD 기준에 의할 경우 일반정부의 총금융부채(General government financial gross liabilities)란 UN의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추정한[3] 일반정부의 금융부채 순부담의 누적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반정부란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제도를 포괄한 개념이며, 비영리 공공기관[4]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상 재정통계를 OECD에 제공하고 있다.

(2) IMF 기준

IMF는 IMF의 재정통계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184개 회원국의 재정통계자료를 취합하여 「정부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GFS 편람)」 발간하고 있다.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에 의하면 국가채무란 일반정부가 정부이외(민간 또는 해외)에 진 직접적 채무의 총계로서, 내부거래, 금융당국의 부채,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잠재적 채무는 국가채무에서 제외[5]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IMF 기준(1986년)에 의할 경우 일반정부는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단위(Units)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지방정부로 구성된다. 따라서 일반정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public enterprises)채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금융당국의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동 기준에 의할 경우 국가채무는 이자지급 또는 원리금상환이라는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IMF 기준에 의할 경우 보증채무는 이행청구를 받기 전까지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암묵적 채무(준비금 부족액) 또한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보증채무와 사회보장제도의 암묵적 부채는 정부가 그 규모를 인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기사항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3) 국제기준과 정부재정통계 기준의 차이

IMF 기준과의 차이

우리나라는 통합재정 통계 등 정부재정통계 작성시 기본적으로 IMF의 1986년 정부재정

---

3) UN기준은 국민소득계정 내에서 정부부문의 실물경제 활동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실적치가 아닌 산식에 의한 추정치를 통계로 제공하고 있다.

4) 가계나 기업에 봉사하면서 정부에 의해 주로 자금이 조달되고 통제받는 기관으로 각종 공단(예: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과 국책연구소(예: KDI) 등이 이에 포함된다.

5) Debt. The outstanding stock of recognized, direct liabilities of the government to the rest of the economy and the world generated by government operations in the past and scheduled to be extinguished by government operations in the future or to continue as perpetual debt. This excluded intragovernmental or intergovernmental debt of sub-sector of sector of government being measured, currency issues and other monetary authorities debt, dormant or repudiated debt not being serviced, and any floating debt of unpaid obligation.

통계편람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채무 포괄범위는 IMF 지침에 의한 정부부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통계는 정부의 모든 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회계 및 기금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6)]

IMF의 국제적 기준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통계 작성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 뿐만 아니라 통합재정 통계 포괄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통계 간 정합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활동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기준과의 차이

[표 3.4]는 OECD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와 정부 기준에 따른 GDP 대비 국가채무의 차이를 보여준다. OECD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총금융부채가 대체적으로 정부 기준에 따른 국가채무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는 2003~2010년 평균 약 2.2%p 수준이다.

표 3. 4 OECD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와 정부 기준에 따른 국가채무 비교

(단위 : GDP 대비, %, %p)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정부 기준 국가채무 (A)	21.6	24.6	28.7	31.1	30.7	30.1	33.8	34.7
OECD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B)	19.3	22.6	24.6	27.7	27.9	29.6	32.6	33.2
차 이 (A-B)	2.3	2.0	4.1	3.4	2.8	0.5	1.2	1.5

주 : 2010년 국가채무의 경우 2010년말 기획재정부 전망치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OECD Economic Outlook No. 88(2010.1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작성

6)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 범위에 따르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 · 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재정통계 작성기준(IMF 1986 GFS)과 OECD 통계 작성기준(UN의 1993 SNA)의 차이에 있다.

우선 회계기준에 있어 IMF 1986 GFS 기준은 현금주의, UN 1993 SNA 기준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포괄범위에 있어서도 UN의 1993 SNA 기준에 의할 경우 기업특별회계와 금융성기금 등 여러 공공기금이 일반정부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은 대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건강보험과 비영리공공기관(공단·국책연구원)은 OECD 통계기준에는 일반정부 범위에 포함되나 IMF 1986 GFS 기준에서는 제외된다. 이러한 통계작성기준 및 정부부문 포괄범위의 차이가 국가채무 규모 차이를 초래한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5 재정통계 작성기준 비교

		정부 재정통계 작성기준		OECD 기준 (한국은행 작성)
		국가채무	재정수지	
적용기준		IMF 1986 GFS		UN 1993 SNA
회계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정부 포괄범위 기준		기능 기준 (민간관리 기금 제외)	기능 기준 (금융성 기금 제외)	제도단위 및 시장성 기준을 적용
포괄범위 (2010기준)	특별회계 (18개)	18개 모두 포함		13개 (조달·우정사업 등 기업특별회계 제외)
	기금 (64개)	40개 정부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24개 민간기금 제외	52개 *신보·기보 등 12개 금융성 기금 제외	45개 *금융성·기업성 기금 19개 제외 -외평·국민주택·공무원연금·사학연금·보증기금 등
	지방정부	일반회계·특별회계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	×		○(134개)

자료 : 민관합동작업반, 「재정통계 개편안」, 2011.1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 추진 현황

정부는 2011년 2월 현재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한국은행, 조세연구원, KDI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재정통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지속되어 온 국가채무 및 정부부문의 포괄 범위 등에 관한 논란 해소 및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에 따른 재정통계 정비 필요성 등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현금주의 방

식의 기존 IMF 1986 GFS 기준을 발생주의 방식의 IMF 2001 GFS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 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7]을 가지고 있다.

첫째, 회계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되었다.

둘째, 정부부문(일반정부)의 포괄범위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제도단위인지 여부 및 시장성 기준[8]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사회보장기구, 구조조정기구,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구, R&D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연금 등은 일반정부로 분류하고 있다. 동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행 18개 특별회계 중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제외한 15개 특별회계가 일반정부로 분류되며, 기금의 경우 4개 기금(사학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일반정부에서 제외[9]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282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33개, 기타 공공기관 83개 등 총 137개를 제외한 145개 기관이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경우도 중앙정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셋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10]와 국민연금 보유 국채 등 내부거래는 일반정부 부채로 계상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공적연금의 충당부채 정보와 연금 보유 국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적연금 충당부채를 포함시키지 않는 사유로는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개편안의 기준이 된 IMF 2001 GFS에는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직역연금을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경우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정부 부채에서 제외되지만 현재는 국가채무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향후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편안에서도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기업 부채,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에 따른 우발성 채무, 보증채무 등에 대하여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중·장기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7) 자료: 민관합동작업반, 「재정통계 개편안」, 2011.1

8) 민관합동작업반은 판매액을 생산원가로 나눈 원가보상률이 최근 3년간 50%보다 낮으면 일반정부로, 높으면 공기업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9) 민간관리기금 중 9개가 원가보상률 50%를 초과하였으나 구조조정기구(구조조정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금(근로자복지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등을 제외한 4개 기금만을 일반정부에서 제외한다.

10) 충당부채란 미래에 발생할 지급 부족 사태에 대비해 연금 충당액을 축적하여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다.

표 3. 6 현행 국가채무 작성 기준과 개편안의 비교

		현행 국가채무 기준	개편안
적용기준		IMF 1986 GFS	IMF 2001 GFS, UN 1993 및 2008 SNA
회계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정부 포괄범위 기준		기능 기준 (민간관리 기금 제외)	제도단위 및 시장성 기준을 적용
포괄 범위 (2010 기준)	특별회계 (18개)	18개 모두 포함	15개 (준기업으로 판단된 우편사업·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 3개 제외)
	기금 (64개)	40개 정부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24개 민간기금 제외	60개 *원가보상률 50%초과 9개 기금 중 구조조정기구(3개) 및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금(2개)을 제외한 4개 기금을 제외
	지방정부	일반회계·특별회계	4,845개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 모두 포함
	공공기관	×	○(중앙정부산하 282개 중 145개, 지방정부산하는 미정)

자료 : 민관합동작업반, 「재정통계 개편안」, 2011.1

2. 국가채무 현황

2011년 국가채무는 435.5조원(GDP 대비 35.1%)

2011년도 국가채무
435.5조원
(GDP 대비 35.1%)

2011년도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2010년 예산 기준 407.2조원[11]보다 28.3조원 증가한 435.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0년 예산 기준 36.1%에서 2011년에는 35.1%로 1%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가채무 규모는 436.8조원(GDP 대비 35.2%)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3조원(GDP대비 0.1%p) 축소 조정하였다.

최근 국가채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에 전년 대비 50.6조원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평균

11) 2010년 예산 기준 국가채무 전망은 407.2조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0년 10월 발표한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차입한 국가장학기금 차입금이 국가채무에서 제외되는 등의 사유로 2010년 국가채무 전망치를 400.4조원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증가율[12]은 9.8%이다.

국가채무 규모를 그 성질에 따라 향후 조세 등 실질적인 국민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적자성 채무와 대응 재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채무인 금융성 채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1년 예산 기준으로 적자성 채무가 220조원으로 전체의 50.5%, 금융성 채무가 49.5%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유형별 국가채무

- 적자성 채무 220조원 (50.5%)
- 금융성 채무 215.5조원 (49.5%)

2011년도에 21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일반회계 적자국채의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이 국가채무 전체 증가율 9.8% 및 적자성 채무 증가율 14.6%를 크게 웃도는 27.4%에 이를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바, 최근 국가채무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도에 17.2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13]의 경우도 동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이 11.5%로, 최근 금융성 채무(동 기간 연평균 증가율 5.9%)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7 유형별 국가채무 추이

(단위 : 조원, %)

	2007	2008	2009	2010 예산	2010 전망	2011 예산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 (GDP 대비)	299.2 (30.7)	309.0 (30.2)	359.6 (33.8)	407.2 (36.1)	400.4 (34.7)	435.5 (35.1)	9.8
• 적자성 채무	127.4	132.6	168.7	196.2	200.0	220.0	14.6
일반회계 적자국채	55.6	63.0	97.0	126.8	125.7	146.7	27.4
공적자금 국채전환	52.7	49.2	49.5	48.0	47.0	47.0	-2.8
기타	19.1	20.4	22.2	21.4	27.3	26.3	8.3
• 금융성 채무	171.8	176.4	190.9	211.0	200.3	215.5	5.8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89.7	94.0	104.9	124.8	121.2	138.4	11.5
서민주거안정용 국채	43.6	45.2	48.5	50.3	49.0	48.2	2.5
기타	38.5	37.2	37.5	35.9	30.1	28.9	-6.9

주 : 2007년부터 2009년까지와 2010년 전망은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2010.10) 기준이며, 연평균증가율의 경우 2010년 전망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 대한민국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2010.1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12) 2007~2010년은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기준, 2011년은 확정예산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1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외국환평형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신규로 예수하는 금액이 16조원,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규 발행 1.15조원(10억달러) 등이 계획되어 있다.

그림 3. 5 국가채무 및 일반회계 적자국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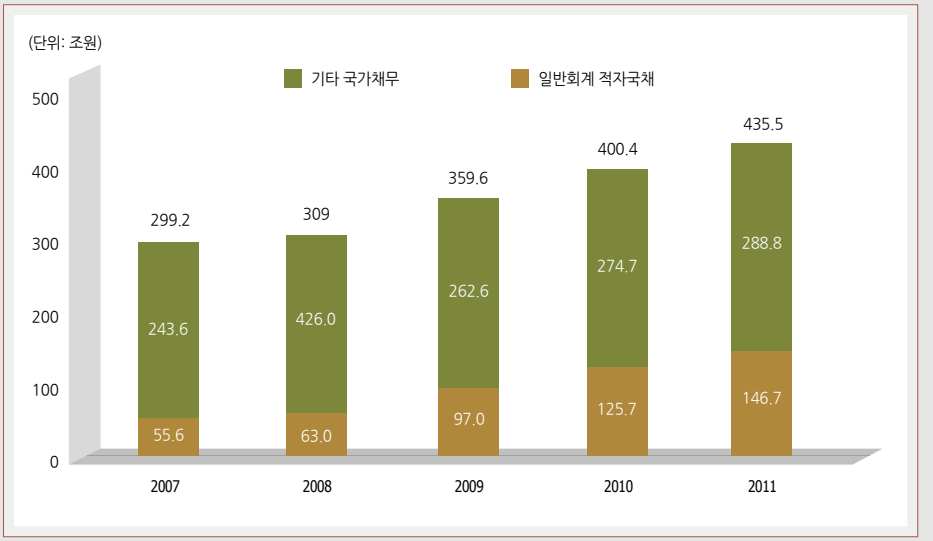

자료 : 대한민국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2010.1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국가채무 중기 전망 및 실현가능성

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른 국가채무 중기 전망을 살펴보면, 향후 국가채무 전체의 증가 속도 및 적자성 채무의 증가 속도가 이전에 비하여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의 감소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14년 31.8%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 예산 및 정부 전망에 따른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9.8%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동 기간 중 연평균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5.1%,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는 8.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역시 각각의 2007~2011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27.4%, 11.5%에 비하여 증가 속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3. 8 유형별 국가채무 중기 전망

(단위 : 조원, %)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2011~2014	2007~2011
국가채무 (GDP 대비)	435.5 (35.1)	468.1 (35.1)	485.7 (33.8)	492.2 (31.8)	4.2	9.8
• 적자성 채무	220.0	236.5	242.4	238.7	2.8	14.6
일반회계 적자국채	146.7	163.6	171.4	170.5	5.1	27.4
공적자금 국채전환	47.0	47.0	45.8	44.3	-2.0	-2.8
기타	26.3	25.9	25.2	23.9	-3.1	8.3
• 금융성 채무	215.5	231.6	243.3	253.5	5.6	5.8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138.4	154.5	167.5	177.8	8.7	11.5
서민주거안정용 국채	48.2	49.1	50.3	51.5	2.2	2.5
기타	28.9	28.0	25.5	24.2	-5.7	-6.9

주 : 2011년은 확정예산, 2012~2014년은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기준
자료 : 대한민국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2010.1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이러한 정부 전망은 경기 회복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에 힘입어 매년 전년 대비 5~10조원 내외의 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관리대상수지가 2014년에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중기 재정전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는 2010~2014년 중 실질성장률 5% 내외, 경상성장률 7.6%가 유지되고 국세수입은 연평균 9.1%, 총수입은 연평균 7.9% 증가하는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연평균 4.8% 증가하는데 그친다는 가정 하에 도출된 것이다.

표 3. 9 중기 재정 전망

(단위 : 조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2.0 (-0.2)	5.3 (0.4)	18.0 (1.3)	27.4 (1.9)	37.9 (2.5)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30.1 (-2.7)	-25.0 (-2.0)	-14.3 (-1.1)	-6.2 (-0.4)	2.7 (0.2)

주 : 2010 · 2011년은 확정예산, 2012~2014년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 대한민국 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0.1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표 3. 10 중기 총수입 · 총지출 전망

(단위 : 조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재정수입(총수입)	290.8	314.4	342.9	365.1	390.9	7.7
예산 수입	194.8	212.1	234.4	250.9	270.8	8.6
국세수입	170.5	187.6	204.2	221.1	241.7	9.1
세외수입	24.3	24.5	30.2	29.9	29.1	4.6
기금 수입	96.0	102.2	108.4	114.2	120.2	5.8
재정지출(총지출)	292.8	309.1	324.8	337.7	353.0	4.8
예산 지출	205.3	216.3	224.9	232.5	244.2	4.4
기금 지출	87.5	92.8	100.0	105.2	108.8	5.6

주 : 2010 · 2011년은 확정예산, 2012~2014년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 대한민국 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0.1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그러나 과거 실질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였던 2006~2007년의 경우도 경상성장률은 4.6~6.3% 수준이었다는 점, 남유럽 재정위기와 주요 선진국 경제의 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 등으로 향후 세계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14]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될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의 주안점을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재정수입 증가 보다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지출 효율화와 최근 재정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의무지출[15] 성격의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출산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증가율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연금 등 사회복지 관련지출 증가[16] 및 남북 경제협력·통일정책 관련 재정부담 등 국가채무 증가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중·장기 재정위험요소들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4) 자료: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0. 9
15)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도 예산 대비 2011년도 예산에 따른 총지출 증가액 16.3조원의 66.9%인 10.9조원이 의무지출 성격의 교부금(5.8조원), 공적연금(2조원), 차입금 이자상환(1.0조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조세연구원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현 제도하에서 주요 복지재정 지출규모가 GDP 대비 8.5%(2004년)에서 22.4%(2050년)로 13.9%p 증가할 전망이며,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기초로 2050년까지의 중앙정부 재정을 전망한 추계 결과(2009)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을 20.8%로 유지할 경우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가 증가하면서 2050년에는 국가채무규모가 GDP 대비 116%에 달할 전망이라고 발표하였다.(자료: 박형수 · 전병목,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9.10)

제4절 의무지출

1. 의무지출의 의의

(1) 의무지출의 법적 의미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은 매년 국회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 그 적용시기를 2012년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의무지출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서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17] 되어 있으나, 2011년 2월 말 현재까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의무지출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재정지출"과 "국가의 재정운용방향과 정책목표 등에 따라 지출 여부와 그 규모가 결정되는 재정지출"에 대한 국회 심사의 방법과 내용 등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무지출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 심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제출 예산안 중 의무지출 성격의 재정사업과 재량지출 성격의 재정사업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2009회계연도 결산분석」 및 「2011년도 예산안분석」 과정에서 진행하였다.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의무지출의 개념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해석 여부, 지출사업의 성격과 내용 등에 따라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며, 실제 분류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17)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

(2) 의무지출 사업 분류 기준의 예시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재정지출 사업을 두 개의 분야인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사업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은 재정지출 사업의 범위 및 지출대상에 대한 규정 등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정지출 사업에서 의무지출 사업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한다.

재정지출 사업의 범위: 중앙정부 총지출

의무지출 사업 분류 대상이 되는 범위는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사용하는 총지출로써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14개, 기업특별회계 5개, 기금 52개를 대상으로 한다.[18] 이에 따라 보전거래(국채·차입금·차관에 대한 원금상환), 내부거래(회계/기금 간 거래), 총지출 대상 제외 기금(외국환평형기금에서의 이자지출, 금융성기금에서의 대위변제 등)은 총지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무지출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출대상에 대한 규정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의무지출을 "지출의무가 법률에 명시"되고, "지출규모가 법령에 명시"된 사업으로 법령의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 지출대상과 관련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 분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의무지출 사업 분류기준의 예시

재정지출 사업 중 사업 추진 근거가 법률에서 "~ 하여야 한다", "~ 한다"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출대상이 법령에서 열거되고, 지출규모 산정을 위한 물량 및 단가 등이 시행령,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 훈령 및 고시 등에서 명시된 경우 이러한 사업을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한다. 위와 같은 기준 적용에 따라 사업을 누락시키는 경우,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에서는 1차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의무지출 사업을 분류하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

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외된 기금은 금융성기금(11개)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계정성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 등 12개 기금이다.

격, 수혜대상자 등 현실적 기준을 반영하여 일부 사업을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무지출 사업의 분류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11 의무지출 사업 분류기준의 예시

		유형	예시
의무지출		법률에서 강행규정으로 지출 의무를 규정하고, 법령에서 지출의 주체, 지출 대상 및 지출규모를 명시적으로 규정 ※ 지출 발생 요건이 우발적이어서 그 규모를 재정당국이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무지출로 간주 (예: 국가배상금지급, 형사보상, 범죄피해자구조금 등) ※ 행정소송 등 사법적 판결에 따른 반환금	• 지방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지출의무가 존재하며, 지출 규모에 관한 규정(대상, 물량, 단가 등) 중 일부는 법령에서, 일부는 예산결정과정에서 결정되나 규모 등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재량성이 개입되기 어려운 경우 의무지출로 간주 ※ 정부의 위원회 등이 지출규모(단가 등)를 결정하거나 소관부처의 장이 부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별 검토가 필요 ※ 시행규칙에서 위임받은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도 사업별 검토가 필요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요양급여 •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국채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출	• 국내/국외 차입금 이자상환 • 국고채·국민주택채권이자상환 등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은 국제 협약, 협정 등 조약에 의한 지출	• UN 정규분담금 • SOFA에 의한 분담금 • ILO 분담금 등
재량지출	경직성	인건비, 기본경비 등은 재량지출이나 지출의 경직성 등의 사유로 별도 구분	• 인건비 • 기본경비 등
	사업성	계약에 의한 지출, BTL·BTO 등과 같이 도로 및 건물 건설에 관한 민간과의 계약 준수를 위한 지출 등 (예: 헬기/함정/무기 등 고가의 물품 도입을 위하여 중·장기 계약을 통해 지출하는 경우)	• SOC 투자비
		국고채무행위 ※ 당해연도의 재원형편상 세출예산이나 계속비에 계상하지 못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므로,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 재외공관국유화사업(외통부), 경상운영비(국방부), 방위력개선비(방사청), 함정건조(해양경찰청) 등
		지자체 등과의 합의로 인해 채무를 대신 상환해 주거나 금액을 보조하기 위한 지출	
		법령에서 지출의무 및 지출대상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었으나, 물량 또는 단가 또는 금액이 예산결정 과정에서 정해지는 지출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지출 등)	•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등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이 아닌 기타 재정지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상임위원회별 의무지출 사업 현황

상임위원회별 2011년 의무지출 현황[19)]

2011년도 의무지출 규모

· 총지출기준137.8조원
· 정부 총지출의 44.6%

국회예산정책처의 분류기준안에 따라 재정지출 사업을 분류하면,[20)] 2011년도 재정지출 사업에서 의무지출 사업은 총 83개가 존재하며, 재정규모로는 총 137조 7,786억원으로써 총지출 대비 44.6%를 차지한다. 83개 사업 중 복합 사업인 이자상환(5개 사업), 책임운영

표 3. 12 상임위원회별 의무지출 예산 현황 : 2010년 및 2011년

(단위 : 억원, %)

소관 위원회	사업 수	2010년 예산(A)	2011년 예산(B)	비중	증감	전년대비 증가율
운영	-	-	-	-	-	-
법제사법	2	130	134	0.0	4	3.1%
정무	11	25,420	27,455	2.0	2,035	8.0%
기획재정	6	123,064	134,493	9.8	11,429	9.3%
외교통상통일	2	3,197	3,825	0.3	628	19.6%
국방	4	29,780	31,533	2.3	1,753	5.9%
행정안전	12	369,771	402,729	29.2	32,958	8.9%
교육과학	6	341,170	370,742	26.9	29,572	8.7%
문화체육관광방송	1	-	103	0.0	103	순증
농림수산식품	7	11,176	10,376	0.8	-800	-7.2%
지식경제	3	10,214	8,325	0.6	-1,889	-18.5%
보건복지	30	258,690	284,032	20.6	25,342	9.8%
환경노동	10	78,103	80,261	5.8	2,158	2.8%
국토해양	5	18,336	23,767	1.7	5,431	29.6%
정보	-	-	-	-	-	-
여성가족	1	11	11	0.0	0	0.0%
합 계	100	1,269,062	1,377,786	100.0	108,724	8.6%

주 : 의무지출 금액은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치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9) 대부분의 의무지출 사업을 식별하였으나, 사업설명 자료의 미비 등으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20) 대부분의 사업은 세부사업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단위사업에 포함된 모든 세부사업이 의무지출인 경우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유사성격의 세부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지칭하여 분류하였다.

기관 건강보험부담금(14개 사업)을 분리하는 경우 100개의 의무지출 사업이 존재한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이 30개로 가장 많으며, 운영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관 의무지출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1년 예산에서 위원회별 의무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28.2%, 교육과학위원회 26.0%, 보건복지위원회 19.9% 순이다. 행정안전위원회 및 교육과학위원회 의무지출에는 지방교부금(30조 2,161억원) 및 교육재정교부금(35조 3,061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사업이 해당 위원회의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5.0% 및 95.2%이다.

2011년 의무지출 예산안 조정내역

정부가 제출한 의무지출 예산안은 138.5조원이며 국회는 정부안 대비 7,591억원 감소한 137.8조원을 2011년 의무지출 예산으로 심의·확정하였다. 확정내역을 살펴보면, 국회는 일반회계에서 1,091억원 증액하였고 677억원 감액하였으며, 기금에서 8,005억원을 감액하였다. 참고로 기금 감액의 주요 원인은 국채발행 규모 축소에 따른 이자상환 예산안의 감액이다.

표 3. 13 의무지출 예산안 조정 내역

(단위 : 억원)

	2011년 정부안(A)	감액(B)	증액(C)	증감 (D=B+C)	2011년 예산 (E=A+D)
일반회계	866,619	-677	1,091	414	867,033
특별회계	10,275	0	0	0	10,275
소 계	876,893	-677	1,091	414	877,307
기금	508,483	-8,005	0	-8,005	500,478
합 계	1,385,377	-8,682	1,091	-7,591	1,377,78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 의무지출 규모 및 변화 추이

의무지출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의 확대, 지급단가의 점진적 인상 등의 사유로 의무지출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7년 결산부터 2011년 예산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2.1%p 크다.

표 3. 14 의무지출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조원, %)

	2007년 결산액	2008년 결산액	2009 결산액	2010 예산	2011 예산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A)	238.4	262.8	301.8	292.8	309.1	6.7
의무지출(B)	98.4	113	119.4	126.9	137.8	8.8
비중(B/A)	41.3	43.0	39.6	43.3	44.6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상임위원회별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원회 15.2%, 국토해양위 14.7%,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3.3%, 기획재정위원회 12.4%, 교육과학위원회 7.8%, 환경노동위원회 7.4% 등 이며, 해당 위원회 소관 의무지출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높은 증가율은 기초 노령연금(275.5%),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40.2%), 노령연금 급여지급(21.0%) 등과 같은 의무지출 사업의 높은 증가율에 기인한다. 국토해양위의 경우 국토해양위원회 의무지출의 94.2%를 차지하는 국민주택기금 이자상환의 높은 증가율(14.5%)에 기인한다. 참고로 보건복지위원회, 국토해양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2배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3. 15 상임위원회별 의무지출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억원, %)

소관 위원회	2007년 결산액	2008년 결산액	2009 결산액	2010 예산	2011 예산	연평균 증가율
운영	0	0	0	0	0	-
법제사법	812	191	760	130	134	-36.3
정무	21,463	23,111	23,897	25,420	27,455	6.3
기획재정	84,207	88,775	104,380	123,064	134,493	12.4
외교통상통일	2,319	2,112	2,580	3,197	3,825	13.3
국방	26,331	28,160	28,987	29,780	31,533	4.6
행정안전	321,264	368,293	367,089	369,771	402,729	5.8
교육과학	274,428	320,119	318,471	341,170	370,742	7.8
문화체육관광방송	0	0	0	0	103	-
농림수산식품	11,094	12,087	11,777	11,176	10,376	-1.7
지식경제	6,748	7,374	8,341	10,214	8,325	5.4
보건복지	161,005	198,378	232,956	258,690	284,032	15.2
환경노동	60,252	67,318	82,471	78,103	80,261	7.4
국토해양	13,733	13,704	12,443	18,336	23,767	14.7
정보	0	0	0	0	0	-
여성가족	14	13	12	11	11	-5.9
합 계	983,670	1,129,635	1,194,164	1,269,062	1,377,786	8.8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제4장

제1절 2011년도 예산

1. 예산 총칙

세입세출예산총액

2011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는 209조 9,303억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4조 1,628억원으로 0.2% 증가하였다. 특별회계 중 증가율이 높은 순서는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가 216.5% 증가한 8,227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가 44.7% 증가한 719억원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감소율이 높은 순서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가 44.5% 감소한 3,869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15.5% 감소한 7,164억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 일반회계 209.9조원
· 특별회계 54.2조원

표 4. 1 세입세출예산총액

(단위 : 억원, %)

	2010년	2011년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	2,012,835	2,099,303	86,468	4.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3,305	87,267	-6,038	-6.5
교통시설특별회계	146,999	144,899	-2,100	-1.4
등기특별회계	2,298	2,401	103	4.5
교도작업특별회계	420	430	10	2.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5,075	40,847	-4,228	-9.4
환경개선특별회계	39,651	42,715	3,064	7.7
우체국보험특별회계	6,152	6,528	376	6.1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967	3,869	-3,098	-44.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6,951	7,859	908	13.1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599	8,227	5,628	216.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469	13,664	2,195	19.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97	719	222	44.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8,615	98,526	-89	-0.1
양곡관리특별회계	13,368	13,890	522	3.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476	7,164	-1,312	-15.5
조달특별회계	3,437	3,822	385	11.2
우편사업특별회계	34,427	36,721	2,294	6.7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9,804	22,080	2,276	11.5
특별회계합계	540,509	541,628	1,118	0.2

자료 : 예산총칙, 각연도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 행위 한도액
1조원

「국가재정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2011년의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1조원이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재정증권 최고한도액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최고 한도액
27조원

2011년도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2011년 통합계정의 최고한도액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20조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조원 감액하여 15조원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통합계정에서

포괄하는 특별회계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별도로 재정증권 최고한도액을 부여받았던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조달특별회계가 2011년에는 통합계정에 포함되었으며, 2010년에는 제외되어 있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통합계정으로 포함되었다. 한편, 양곡관리특별회계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최고한도액은 전년과 변동없이 각각 2조원, 10조원이다.

표 4. 2 재정증권 최고한도액

(단위 : 억원, %)

	2010년	2011년	증감액	증감률
통합계정	200,000	150,000	-50,000	25.0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20,000	-	-
우편사업특별회계	1,000	-	-1,000	순감
조달특별회계(회전자금)	2,000	-	-2,000	순감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00	100,000	-	-

주 : 1. 2010년 통합계정은 우체국보험, 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12개 기타특별회계기준 적용
2. 2011년 통합계정은 우체국보험 · 우체국예금 ·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15개 특별회계 적용
자료 : 예산총칙, 각연도

차입금·국채발행한도액

2011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2011년 국민주택기금의 국채발행한도액은 2010년 대비 2,500억원(2.2%) 증가한 11조 5,000억원이다. 2011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채발행한도액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83조 9,000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 4,000억원을 삭감하여 2010년 대비 1조 8,000억원(2.2%) 증가한 82조 5,0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외국환평형기금의 국채발행한도액은 2010년 대비 10억달러(50.0%) 감소한 10억달러이다. 이 중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입금 · 국채발행 한도액
· 94조원
· 10억달러

표 4. 3 국채발행한도액

(단위 : 억원, %)

	2010년	2011년	증감액	증감률
교통시설특별회계	300	-	-300	순감
국민주택기금	112,500	115,000	2,500	2.2
공공자금관리기금	807,000	825,000	18,000	2.2
외국환평형기금	20억달러	10억달러	-10억달러	-50.0
국가장학기금	35,000	-	35,000	순감

주 : 1. 외국환평형기금의 국채발행한도액은 달러 기준
2. 국가장학기금은 2010년 중 폐지됨
자료 : 예산총칙, 각연도

이용(移用)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표 4. 4 가능 경비 또는 비목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8	재해대책비(전염병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급여

자료 : 예산총칙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통제 통신 사업 · 기동전력 사업 · 함정 사업 · 항공기 사업 · 화력탄약 사업 · 감시정찰 정보 전자전 사업 · 정밀타격/신특수무기 사업 · 국방연구개발 사업은 상호간 이용할 수 있다.

수입금 마련 지출 범위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표 4. 5 수입금 마련 지출 범위

회 계	수 입	지 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자료 : 예산총칙

목적예비비

2011년도 목적예비비는 1조 2,000억원으로 예비비 총액(2조 1,000억원)의 47.6%에 해당한다. 2010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염병 예방·대책비가 목적예비비 용도에 포함되었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목적예비비 용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레바논·아이티·소말리아 및 아랍에미리트(UAE) 해외 파병경비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하여 확정하였다.

표 4. 6 목적예비비 규모 및 용도 현황

(단위 : 억원)

	2010년	2011년
규모	10,000	12,000
용도	재해대책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재해대책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아프가니스탄 지원 및 관련 해외파병 경비	레바논·아이티·소말리아 및 아랍에미리트(UAE) 해외 파병경비
예외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않음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않음

자료 : 예산총칙, 각연도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21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2011년 우체국예금특별회계와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전년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

표 4. 7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

(단위 : 억원, %)

	2010년	2011년	증감액	증감률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전년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300	300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전년도 결산이익 잉여금 예상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	700	700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일반회계 전출금	397	-	-397	순감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257	-	-257	순감
우편사업특별회계의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331	364	33	10.0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333	3,294	-39	-1.2

자료 : 예산총칙, 각연도

액 중 일반회계 전출금은 각각 전년과 동일한 700억원, 300억원이며, 조달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없다. 2011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전출금은 2010년(331억원) 대비 33억원(10.0%) 증가한 364억원이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전출금은 2010년(3,333억원) 대비 39억원(1.2%) 감소한 3,294억원이다.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을 살펴보면 2011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전입금은 2010년(88억원) 대비 81억원(92.0%) 증가한 169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전입금은 2010년(2,168억원) 대비 734억원(33.9%) 증가한 2,902억원이다. 반면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전입금은 2010년(916억원) 대비 304억원(33.2%) 감소한 612억원으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은 2010년(2,041억원) 대비 582억원(28.5%) 감소한 1,459억원이다.

표 4. 8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

(단위 : 억원, %)

	2010년	2011년	증감액	증감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601	6,349	748	13.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041	1,459	-582	-28.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88	169	81	92.0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52	55	3	5.8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2,168	2,902	734	33.9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3,333	3,294	-39	-1.2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916	612	-304	-33.2

자료 : 예산총칙, 각연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 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010년(2,071억원) 대비 2,000만원 감소한 2011년 2,070억 8,000만원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

2. 세입예산

2011년도 세입예산

2011년도 세입예산총액은 2010년 예산 대비 8.8조원(3.4%) 증가한 총 264.1조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9.9조원으로 전년 대비 8.6조원(4.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4.2조원으로 전년 대비 0.2조원(0.4%) 증가하였다.

2010년도 세입예산

- 총액 264.1조원
- 일반회계 209.9조원
- 특별회계 54.2조원

표 4. 9 2011년도 세입예산

(단위 : 조원, %)

	2010 예산(A)	2011예산(B)	증 감(B-A)	증감률(B-A)/A
예산총계	255.3	264.1	8.8	3.4
- 일반회계	201.3	209.9	8.6	4.3
· 국세	163.5	180.8	17.3	10.6
· 세외수입	37.8	29.2	-8.6	-22.8
- 특별회계	54.0	54.2	0.2	0.4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세수입

2006년도 이후 국세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은 2006년 138.0조원에서 2007년 161.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7년에 국세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은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입실적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2008년에는 167.3조원으로 전년대비 3.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9년에는 161.9조원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하였다. 2010년 국세수입 예산은 170.5조원으로 2009년 결산 대비 5.3% 증가하였고, 2011년 국세수입 예산은 187.6조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10.1%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4. 10 국세수입 추이

(단위 : 억원, %)

세목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실적	실적	실적	실적	예산	증감률	예산	증감률
국세	1,380,443	1,614,591	1,673,057	1,619,065	1,704,575	5.3	1,876,361	10.1
-소득세	310,043	388,560	363,551	344,233	372,343	8.2	400,379	7.5
-법인세	293,622	354,173	391,545	352,514	368,671	4.6	413,001	12
-상속세	23,893	28,419	27,771	24,303	27,015	11.2	30,921	14.5
-재평가세	385	-	-		-			
-부가가치세	380,930	409,419	438,198	469,915	469,488	-0.1	529,373	12.8
-개별소비세	49,034	51,611	44,994	36,420	47,792	31.2	50,124	4.9
-증권거래세	25,257	34,688	27,875	35,339	36,917	4.5	39,207	6.2
-인지세	5,880	5,880	5,729	5,437	5,964	9.7	5,324	-10.7
-과년도수입	25,655	29,651	37,589	68,969	41,137	-40.4	45,303	10.1
-교통세	95,938	114,635	119,093	100,920	116,950	15.9	123,668	5.7
-관세	68,584	74,108	87,757	91,691	92,768	1.2	113,657	22.5
-방위세	8	-	-	2	-			
-교육세	34,245	38,612	41,796	37,542	45,417	21	46,018	1.3
-종합 부동산세	13,275	24,143	21,299	12,071	10,461	-13.3	10,681	2.1
-주세	24,092	22,680	28,311	27,638	28,621	3.6	26,465	-7.5
-농어촌 특별세	29,597	38,009	37,549	12,071	41,031	239.9	42,240	2.9

주 : 1. 2009년까지는 실적 기준, 2010년과 2011년은 예산기준임
2. 주세,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 세입임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세수입의 추이

국세에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함으로 인해 현재의 14개 세목으로 모습을 갖춘 2005년도의 국세수입은 127.5조원이었다. 3년 후인 2008년도의 국세수입은 167.3조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국제금융 위기로 인해 악화된 거시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2009년도 국세수입은 전년도 국세수입에 비해 3.2% 감소된 161.9조원을 기록하였다.

2010년 10월에 행정부는 2011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을 2010년 실적보다 약 2.5% 증가한 187.8조원 규모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1] 국회는 세법개정 효과 등을 감안하여 0.2조원 감소한 187.6조원으로 확정하였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세수입은 연평균 6.5%씩 증가하는 것이며, 같은 기간동안의 경상GDP의 연평균 증가율 6.3%보다 약 0.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 GDP에 대한 국세수입 비중은 2006년의 15.2%에서 2007년의 16.6%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10년과 2011년에 15.3%와 15.1%를 시현하면서 다시 15%대로 낮아지는 하향 추세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경상GDP와 국세수입의 추이

(단위 : 조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증가율
경상 GDP	908.7	975.0	1,023.9	1,063.1	1,155.5	1,243.4	6.5
국세수입	138.0	161.5	167.3	164.5	177.7	187.6	6.3
- GDP 대비	15.2	16.6	16.3	15.5	15.3	15.1	

주 : 1.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세수입은 실적치이며, 2011년은 확정예산임.
2. 2010년과 2011년도 경상GDP 수준은 2010년 12월에 행정부에서 전망한 실질 GDP 성장률(2010년 6.1%, 2011년 5.0%)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자료 : 1.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2010.12.
2. 「2011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2010. 12.

1) 2011년 국세수입 예산안 187.8조원은 2010년도 예산 170.5조원에 비해 약 10.2% 증가한 규모이다.

3. 세출예산

2011년도 세출예산

2011년도 세출예산
· 총 264.1조원
· 일반회계 209.9조원
· 특별회계 54.2조원

2011년도 세출예산총액은 2010년 예산 대비 8.8조원(3.4%) 증가한 총 264.1조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9.9조원으로 전년대비 8.6조원(4.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4.2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0.4%) 증가하였다.

표 4. 11 2011년도 세출예산

(단위 : 조원, %)

	2010 예산(A)	2011예산(B)	증 감(B-A)	증감률(B-A)/A
예산총계	255.3	264.1	8.8	3.4
- 일반회계	201.3	209.9	8.6	4.3
- 특별회계	54.0	54.2	0.2	0.4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세출예산 추이

2011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18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도 이후 회계별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 다소 감소하였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정비 등으로 인하여 2007년까지 감소하다가 200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표 4. 12 회계별 세출예산 추이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반회계	1,469,625	1,565,177	1,795,537	2,035,497	2,012,835	2,099,303
특별회계	572,520	444,342	486,322	529,750	540,509	541,626
재정융자*	103,824	-	-	-	-	-
국유재산관리*	13,926	-	-	-	-	-
농어촌구조개선	70,672	86,715	83,583	87,853	93,305	87,267
농어촌특별세관리*	27,786	-	-	-	-	-
교통시설	125,953	129,027	139,424	170,800	146,999	144,899
등기	2,668	2,727	2,563	2,238	2,298	2,401
교도작업	492	507	440	450	420	430
군인연금*	17,747	-	-	-	-	-
에너지및자원사업	30,072	38,944	56,178	38,018	45,075	40,847
환경개선	26,326	28,967	31,309	41,172	39,651	42,715
국립의료원*	675	-	-	-	-	-
우체국보험	5,611	5,941	5,795	5,701	6,152	6,528
자동차교통관리*	6,690	-	-	-	-	-
특허관리*	2,980	-	-	-	-	-
광역·지역발전	59,067	67,929	78,377	90,769	98,615	98,526
주한미군기지이전	6,264	5,049	2,629	2,130	6,967	3,86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453	801	3,267	5,771	6,951	7,859
국방·군사시설이전	-	2,951	3,275	2,218	2,599	8,227
혁신도시건설	-	-	1,113	2,956	11,469	13,66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	-	917	569	497	719
양곡관리	12,932	12,937	15,307	14,658	13,368	13,890
책임운영기관	6,168	10,572	8,923	9,038	8,476	7,164
통신사업*	50,062	-	-	-	-	-
조달	2,151	2,022	2,272	2,947	3,437	3,822
우편사업	-	30,384	31,854	33,343	34,427	36,721
우체국예금	-	18,872	19,095	19,119	19,804	22,080

주 : 1. 최종예산 기준
2. *표시된 특별회계는 2008년 기준으로 폐지된 특별회계임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10년부터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회계명 변경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그림 4. 1 회계별 세출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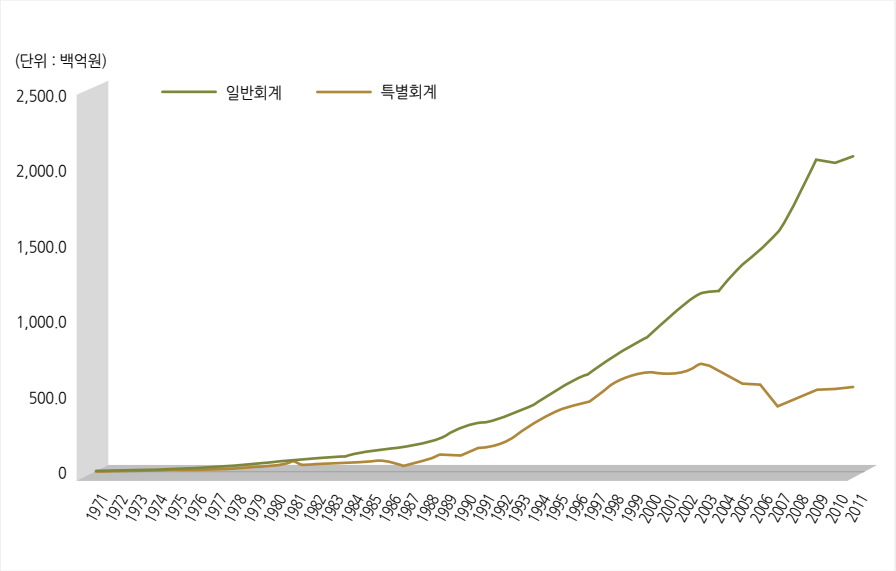

주 : 2009년까지는 결산 기준, 2010년과 2011년은 국회 확정 예산 기준

총액계상예산사업

총액계상예산(lump sum budgeting)사업이란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출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총액만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 실수요를 바탕으로 내역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총액계상예산사업의 총 규모는 「국가재정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1년도 총액계상예산사업은 국토해양부 등 총 4개 부처에 총 6개의 사업이 편성되었다. 2011년 예산 규모는 2010년 예산 대비 4.75% 감소한 2조 3,370억원으로, 예산 순계(235.6조원) 대비 1.0%에 해당한다.

총액계상예산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신축성·탄력성·자율성 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총액만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 상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자의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액계상예산사업의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급적 최소한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11년도 총액계상예산사업 예산

(단위 : 억원, %)

부처	사업명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국토해양부	도로보수	4,540	4,859	319	7.03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1,530	1,680	150	9.80
	항만시설유지보수	1,295	1,077	-218	-16.83
농림수산식품부	수리시설개보수	4,000	2,600	-1,400	-35.00
문화재청	문화재 보수정비	2,100	1,880	-220	-10.48
국방부	수리부속지원	11,071	11,274	203	1.83
	합 계	24,536	23,370	-1,166	-4.75

주 : 확정예산 기준
자료 : 예산총칙, 각 연도

예비비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계상해놓은 경비를 말한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필요할 때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도별 예비비 예산현황

(단위 : 억원)

	일반회계 예산규모 (A)	예비비 합계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금액 (B)	B/A (%)	소계
2005	1,352,156	16,452	9,352	0.69	7,100
2006	1,469,625	25,498	10,498	0.70	15,000
2007	1,565,177	23,000	11,000	0.70	12,000
2008	1,795,537	23,000	11,000	0.61	12,000
2009	2,035,497	39,885	11,000	0.54	28,885
2010	2,012,834	21,000	11,000	0.55	10,000
2011	2,099,303	24,000	12,000	0.57	12,000

주 : 1. 추경 포함한 금액
2. 2006년 일반예비비에는 용도지정 250억원(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 포함
자료 : 기획재정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된다. 일반예비비는 사용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목적예비비는 매년 예산총칙에서 용도를 제한하는 예비비를 말한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예비비 1조 2,000억원과 목적예비비 1조 2,000억원으로 총 2조 4,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반예비비 1,000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다.

2011년도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레바논·아이티·소말리아 및 아랍에미리트(UAE) 해외 파병경비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였다. 규모는 2010년도 목적예비비 1조원 대비 2,000억원 증가한 1조 2,000억원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

2011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 총 2.3조원
- 일반회계 1.8조원
- 특별회계 0.5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란 당해연도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채무를 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제외한 2011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 1조 7,680억원, 특별회계 5,000억원으로 2010년 대비 1,732억원 감소한 2조 2,680억원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성격상 당해연도의 재원형편상 세출예산이나 계속비에 계상하지 못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제도이므로 그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4. 13 2011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내역

(단위 : 억원, 백만 달러)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10예산	2011예산	증감
Ⅰ. 일반회계		($583) 19,411	($545) 17,680	(-$38) -1,732
1. 외교통상부	ㅇ 재외공관국유화사업	($31) 360	($49) 570	($18) 210
2. 국 방 부	ㅇ 경상운영비 (급식, 장비유지 등)	($552) 17,353	($495) 16,894	(-$57) -459
3. 방위사업청	ㅇ 방위력개선비	101	93	-8
4. 해양경찰청	소 계	1,597	122	-1,475
	ㅇ 대형함정 ㅇ 노후함정	294 1,303	122 -	-172 -1,303
Ⅱ. 특별회계		5,000	5,000	-
1.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해양부)	소 계	5,000	5,000	-
	ㅇ 일반국도 건설 ㅇ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4,000 1,000	4,000 1,000	- -
합 계		($583) 24,411	($545) 22,680	(-$38) -1,732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된 때에는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명시이월비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제도이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예산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이므로 가급적 규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 14 2011년도 명시이월비 내역

(단위 : 억원, 백만 달러)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사유 및 내역
		2010예산	2011예산	증감	
일반회계		($23) 743	($24) 897	($1) 154	
1. 국 방 부	소 계	($9) 284	($6) 484	(-$3) 200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및 수리부속품 도입지연, 설계지연에 의한 현물 군사건설 지연 등
	ㅇ 군수지원및협력	($9) 99	($6) 64	(-$3) -35	
	ㅇ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85	420	235	
2. 방위사업청	소 계	($14) 459	($18) 413	($4) -46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도입지연 및 신장비 개발지연 등
	ㅇ 기동전력	36	115	79	
	ㅇ 함정	207	20	-187	
	ㅇ 항공기	($6) 65	($8) 97	($2) 32	
	ㅇ 화력탄약	($1) 18	(-) -	(-$1) -18	
	ㅇ 감시정찰	($4) 45	(-) -	(-$4) -45	
	ㅇ 정밀타격/신특수무기	($3) 37	($10) 110	($7) 73	
	ㅇ 국방연구개발	51	71	20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명시이월·계속비·사고이월

명시이월비는 원칙적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2년 이상 5년간 집행할 수 있는 계속비와 차이가 있다. 또한 명시이월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계상하므로 사전결정이 필요한 반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당시에는 연도 내 지출이 가능하였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지출하지 못하여 출납폐쇄기간 이후에 결정되는 사고이월과 차이가 있다.

계속비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예산을 말한다.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속비 제도는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해주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대형건설 사업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사업 등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집중 투자 등 계속비 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면밀한 시행계획 수립, 경제·사회 환경 변화의 정확한 예측을 통해 사업 기간과 연부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공할 필요가 있다.

2011년도 계속비 예산의 총 사업비는 27조 7,916억원이며, 2011년도 연부액은 4조 6,915억원이다.

2011년도 계속비

- 총 사업비 27.8조원
- 2011년도 연부액 4.7조원

표 4. 15 2011년도 계속비 예산

(단위 : 억원)

연도	계속비 총액	계속비연부액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0 예산	269,888	2,225	5,200	10,693	14,346	57,293	52,810	55,334	38,166	25,914	7,907	-
2011 예산	277,916	2,225	5,200	10,693	14,346	57,293	52,810	46,915	39,359	23,430	16,784	8,860

자료 : 대한민국정부, 나라살림, 2011.2

한편 계속비 예산의 총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이 없었으나, 2011년 계속비 연부액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국토해양부의 지역간선국도 건설사업 등의 사업비 증액 소요를 반영하여 1,220억원 증가되었고, 2012년 이후 동액만큼 감액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표 4. 16 2011년도 계속비 예산의 국회 심의 결과

(단위 : 억원)

	총사업비	계속비연부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안(A)	277,916	142,567	45,695	39,929	23,630	17,034	9,060
예산(B)	277,916	142,567	46,915	39,359	23,430	16,784	8,860
차이(B-A)	-	-	1,220	-570	-200	-250	-200

자료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12

2011년 계속비 예산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대법원, 환경부 등 총 3개 부처에 28개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총 25개 사업이며, 대법원에 2개, 환경부 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17 2011년도 주요 계속비 예산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구분	계속비 총액	2009 이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역간선국도 2차건설	2010예산	24,795	15,080	4,000	5,715	-	-	-	-
	2011예산	24,616	15,080	4,000	3,607	1,929	-	-	-
지역간선국도 3차건설	2010예산	29,233	13,469	5,849	5,017	4,897	-	-	-
	2011예산	29,654	13,469	5,849	4,848	4,500	988	-	-
지역간선국도 4차건설	2010예산	23,985	6,855	4,035	5,000	5,000	3,095	-	-
	2011예산	23,899	6,855	4,035	4,053	4,000	4,956	-	-
지역간선국도 5차건설	2010예산	41,004	5,557	5,730	8,600	8,600	8,600	3,917	-
	2011예산	40,863	5,557	5,730	6,300	6,000	6,000	6,000	5,276
물류간선 1차건설	2010예산	28,510	4,807	5,134	5,930	5,930	6,709	-	-
	2011예산	31,562	4,807	5,134	5,355	5,200	5,500	5,565	-

자료 : 대한민국 정부, 나라살림, 2011. 2

제2절 2011년도 기금

1. 기금 현황

2011년도 기금 총 64개
- 사업성 기금 43개
- 사회보험성 기금 6개
- 계정성 기금 5개
- 금융성 기금 10개

2011년도 기금 수는 총 64개로, 사업성 기금 43개, 사회보험성 기금 6개, 계정성 기금 5개, 금융성 기금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별 기금 수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 소관의 기금이 9개이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기금이 8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기금이 6개 등이다.

표 4. 18 부처별 기금 현황

소관부처(기금수)	기금명	유형	관리운용주체
교육과학기술부(4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보험성	사립학교교직원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성	연금공단
	사학진흥기금	사업성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사업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보훈처(2개)	보훈기금	사업성	교육과학기술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사업성	국가보훈처
국방부(2개)	군인연금기금	보험성	국가보훈처
	군인복지기금	사업성	국방부
법무부(1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성	국방부
국토해양부(1개)	국민주택기금	사업성	법무부
금융위원회(9개)	공적자금상환기금	계정성	국토해양부
	구조조정기금	금융성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성	한국자산관리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금융성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성	농협중앙회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성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금융성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성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성	예금보험공사
기획재정부(5개)	공공자금관리기금	계정성	한국주택금융공사
	복권기금	계정성	기획재정부
	외국환평형기금	계정성	복권위원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금융성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성	신용보증기금
고용노동부(5개)	고용보험기금	보험성	기획재정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보험성	고용노동부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사업성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성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사업성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8개)	양곡증권정리기금	계정성	고용노동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성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사업성	농림수산식품부

소관부처(기금수)	기금명	유형	관리운용주체
농림수산식품부 (8개)	농지관리기금	사업성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발전기금	사업성	농림수산식품부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사업성	농림수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성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	사업성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6개)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성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언론진흥기금(구, 신문발전기금)	사업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영화발전기금	사업성	영화진흥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1개)	문화재보호기금	사업성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1개)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성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3개)	국민연금기금	보험성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성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사업성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2개)	여성발전기금	사업성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성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1개)	국제교류기금	사업성	한국국제교류재단
중소기업청(1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사업성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식경제부(5개)	무역보험기금	금융성	한국무역보험공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성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성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성	지식경제부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사업성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통일부(1개)	남북협력기금	사업성	통일부
행정안전부(1개)	공무원연금기금	보험성	공무원연금공단
환경부(5개)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금강수계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낙동강수계위원회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영산강·섬진강수계위원회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한강수계위원회
	석면피해구제기금	사업성	환경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기금의 운용 및 조성 규모

2011년도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2010년 대비 107.6조원(△22.6%) 감소한 369.3조원이다. 수입은 자체수입 117.3조원, 정부내부수입 61.6조원, 차입금 102조원, 여유자금 회수 88.5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출은 사업비로 85.7조원, 기금운영비로 2.4조원, 정부내부지출 등으로 152.1조원, 여유자금운용으로 129.2조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비로 사회보험성 기금에서 37.9조원, 금융성·계정성 기금에서 12.8조원, 사업성 기금에서 34.9조원 등을 지출할 계획이다. 2011년 금융성·계정성 기금의 사업비는 2010년 대비 11.2조원(△46.7%)이 감소한 12.8조원으로 계획되었는데, 이는 국가장학기금의 폐지(2010년 사업비 4.2조원)과 구조조정기금의 사업비 감소(2010년 10조원 → 2011년 5조원)에 주로 기인한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
369.3조원

표 4. 19 2011년도 기금 운용 규모 및 조성 규모

(단위 : 조원, %)

		2010년	2011년	증감액	증감률
운용규모		476.9	369.3	-107.6	-22.6
수입	자체수입	111.2	117.3	6.1	5.5
	정부내부수입	140.6	61.6	-79	-56.2
	차입금	116.4	102.0	-14.4	-12.4
	여유자금회수	108.7	88.5	-20.2	-18.6
지출	사업비	92.7	85.7	-7	-7.6
	사회보험성	35.6	37.9	2.3	6.5
	금융성·계정성	24.0	12.8	-11.2	-46.7
	사업성	33.1	34.9	1.8	5.4
	기금운영비	2.1	2.4	0.3	14.3
	정부내부지출등	236.6	152.1	-84.5	-35.7
	여유자금운용	145.5	129.2	-16.3	-11.2

주 : 당초 계획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기금 운용 규모 추이

2011년 기금의 운용규모는 369.3조원으로 1997년 82.3조원에 대비 348.7%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총계 209.9조원의 1.7배를 상회하고 있다. 사업비는 85.7조원으로 1997년 대비 118.1% 증가하였으며 여유자금 운용규모도 129.2조원으로 1997년 대비 569.4% 증가하였다.

기금 운용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1997	2001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기금운용규모	82.3	216.8	311	331.9	358.2	308.6	369.6	442.1	476.9	369.3
사업비	39.3	75.4	85	87.7	91.5	84.7	87.3	95.5	92.7	85.7
기금운영비	0.5	0.9	2.4	2.2	2.4	2.2	2.3	2.5	2.1	2.4
여유자금운용	19.3	65.5	115.7	123.4	116.9	111.1	146.6	149.1	145.5	129.2
내부거래 등	23.1	75	107.9	118.6	147.4	110.6	133.4	195.0	236.6	152.1

주 : 1. 2005년까지 실적 기준
2. 2006~2011년은 국회 심의 · 의결된 금액
자료: 기획재정부

3. 기금 수입

2011년도 각 기금별 수입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11년도에 자체수입이 큰 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41조 908억원), 국민주택기금(10조 7,581억원), 공무원연금기금(9조 8,117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5조 5,969억원) 등이 있다.

표 4. 20 2011년도 기금별 수입 계획

(단위 : 억원)

	기금명	자체수입	정부 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 회수	합계
사업성	과학기술진흥기금	506	554	-	339	1,399
	관광진흥개발기금	5,854	44	-	532	6,430
	국민건강증진기금	16,616	1,079	-	1,903	19,598
	국민주택기금	107,581	94,997	95,000	58,058	355,636
	국민체육진흥기금	5,540	579	-	2,306	8,425
	국제교류기금	541	213	-	-	754
	군인복지기금	4,866	407	-	2,423	7,696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693	315	-	2,278	4,286
	금강수계관리기금	884	-	-	70	95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995	-	-	23	2,018
	남북협력기금	709	4,611	-	8,449	13,76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130	22	-	3,708	25,85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56	350	-	1,055	1,561
	농지관리기금	8,909	100	-	1,958	10,967
	대외경제협력기금	1,112	5,036	-	1,226	7,375
	문화예술진흥기금	476	541	-	1,578	2,595
	문화재보호기금	42	887	-	309	1,23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939	1,584	-	2,082	6,606
	방송통신발전기금	4,356	255	-	834	5,44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	618	-	-	624
	보훈기금	2,713	740	-	3,066	6,520
	사학진흥기금	1,715	2,210	-	108	4,032
	석면피해구제기금	79	60	-	-	139
	수산발전기금	5,269	660	-	497	6,426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21	53	-	334	508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3	8,374	-	417	8,795
	언론진흥기금	187	50	-	312	549
	여성발전기금	10	1,267	-	57	1,33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705	-	-	28	733
	영화발전기금	515	419	-	2,150	3,08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898	-	-	79	1,977
	응급의료기금	110	1,870	-	15	1,995
	임금채권보장기금	3,544	124	-	2,319	5,987

	기금명	자체수입	정부 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 회수	합계
사업성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08	3,019	-	707	4,13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2,209	580	-	586	3,375
	전력산업기반기금	16,570	775	-	3,069	20,414
	정보통신진흥기금	9,611	639	-	1,851	12,102
	중소기업진흥및창업기반기금	47,339	2,659	22,494	59	72,551
	지역신문발전기금	25	40	-	246	312
	청소년육성기금	253	356	-	398	1,007
	축산발전기금	6,013	-	-	403	6,41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59	-	-	69	127
	한강수계관리기금	4,273	-	-	5	4,279
	소계	290,540	136,089	117,494	105,904	650,027
계정성	공공자금관리기금	49,635	235,824	824,335	1,750	1,111,545
	공적자금상환기금	31	24,654	-	-	24,685
	복권기금	26,135	115	-	7,163	33,413
	양곡증권정리기금	3	6,134	-	78	6,215
	외국환평형기금	39,087	160,000	11,500	155,143	365,729
	소계	114,891	426,728	835,835	164,133	1,541,587
금융성	구조조정정리기금	4,233	-	50,000	1,518	55,751
	기술신용보증기금	10,606	-	-	14,461	25,06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4,886	-	-	19,521	24,40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637	637	-	268	1,542
	무역보험기금	8,837	1,000	-	14,033	23,870
	부실채권정리기금	15,517	-	-	13,397	28,91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341	180	-	1,677	2,198
	신용보증기금	22,765	-	-	23,480	46,24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5,009	-	15,000	30,683	80,69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8,213	-	-	6,496	14,709
	소계	111,043	1,817	65,000	125,533	303,394
사회보험성	고용보험기금	48,840	2,845	-	21,721	73,406
	공무원연금기금	98,117	20,280	1,569	21,798	141,765
	국민연금기금	410,908	107	-	356,562	767,577
	군인연금기금	3,656	20,069	-	1,854	25,57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8,645	7,191	-	46,171	92,00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55,969	877	-	40,973	97,819
	소계	656,135	51,369	1,569	489,080	1,198,154
합계		1,172,610	616,002	1,019,898	884,651	3,693,161

주 : 당초계획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4. 기금 지출

2011년도 각 기금별 지출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11년도에 사업비 지출이 큰 기금에는 국민주택기금(15조 5,736억원), 공무원연금기금(11조 3,524억원), 국민연금기금(10조 5,124억원) 등이 있다.

표 4. 21 2011년도 기금별 지출 계획

(단위 : 억원)

	기금명	사업비	기금 운영비	정부내부 지출 등	여유자금 운용	합계
사업성	과학기술진흥기금	995	9	343	51	1,399
	관광진흥개발기금	5,419	6	600	405	6,430
	국민건강증진기금	17,959	1	398	1,240	19,598
	국민주택기금	155,736	3	149,194	50,704	355,636
	국민체육진흥기금	6,846	218	800	561	8,425
	국제교류기금	571	105	-	78	754
	군인복지기금	4,637	-	-	3,059	7,696
	근로복지진흥기금	747	79	982	2,479	4,286
	금강수계관리기금	898	16	-	39	954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935	32	-	51	2,018
	남북협력기금	10,153	56	1,272	2,288	13,76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159	601	800	3,299	25,85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00	6	-	1,455	1,561
	농지관리기금	7,918	582	512	1,955	10,967
	대외경제협력기금	6,179	59	444	693	7,375
	문화예술진흥기금	1,005	112	201	1,277	2,595
	문화재보호기금	929	1	-	308	1,23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590	400	1,500	3,115	6,606
	방송통신발전기금	4,429	32	500	484	5,44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515	1	-	108	624
	보훈기금	1,260	13	704	4,542	6,520
	사학진흥기금	2,789	37	697	510	4,032
	석면피해구제기금	118	16	-	5	139
	수산발전기금	5,569	15	14	828	6,426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57	2	-	449	508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7,993	74	118	609	8,795
	언론진흥기금	263	9	-	277	549
	여성발전기금	1,299	1	4	30	1,334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675	11	-	47	733
	영화발전기금	853	93	200	1,938	3,084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748	39	-	190	1,977

	기금명	사업비	기금 운영비	정부내부 지출 등	여유자금 운용	합계
사업성	응급의료기금	1,709	1	-	285	1,995
	임금채권보장기금	2,837	99	200	2,851	5,98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783	33	-	318	4,13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769	432	252	922	3,375
	전력산업기반기금	15,302	90	2,000	3,022	20,414
	정보통신진흥기금	6,915	168	2,500	2,519	12,102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33,423	755	38,374	-	72,551
	지역신문발전기금	124	6	-	181	312
	청소년육성기금	774	1	3	230	1,007
	축산발전기금	5,442	39	56	878	6,41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39	10	-	79	127
	한강수계관리기금	4,110	70	-	98	4,279
	소계	348,571	4,332	202,666	94,458	650,027
계정성	공공자금관리기금	4,335	1	1,105,250	1,959	1,111,545
	공적자금상환기금	-	-	24,685	-	24,685
	복권기금	18,426	13	8,615	6,359	33,413
	양곡증권정리기금	-	-	6,134	80	6,215
	외국환평형기금	-	1	104,438	261,291	365,729
	소계	22,761	16	1,249,122	269,688	1,541,587
금융성	구조조정기금	50,000	184	1,894	3,673	55,751
	기술신용보증기금	11,807	1,626	-	11,634	25,06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375	604	-	20,427	24,40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274	-	-	269	1,542
	무역보험기금	10,493	942	-	12,435	23,870
	부실채권정리기금	1,554	3,099	9,500	14,761	28,91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93	105	-	1,900	2,198
	신용보증기금	24,252	3,100	-	18,893	46,24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55	170	51,811	27,956	80,69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882	574	364	11,889	14,709
	소계	105,584	10,403	63,569	123,837	303,394
사회보험성	고용보험기금	59,461	1,001	2,500	10,444	73,406
	공무원연금기금	113,524	857	601	26,783	141,765
	국민연금기금	105,124	3,979	-	658,475	767,577
	군인연금기금	23,516	6	200	1,856	25,57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3,976	748	-	57,283	92,00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3,871	2,719	2,000	49,229	97,819
	소계	379,473	9,310	5,301	804,070	1,198,154
합계		856,389	24,060	1,520,658	1,292,053	3,693,161

주: 당초 계획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등

정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따라 2011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 등과 2010년도에 사용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총한도액 및 예비한도액

정부는 2011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을 3,704억원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2010년의 2조 4,718억원에 비해 2조 1,014억원 감액된 규모이다. 이 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345억원,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의 한도액은 3,183억원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은 176억원이다.

2011년도 BTL 총한도액
3,704억원

표 4. 22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단위 : 억원, %)

	2010년 (A)	2011년 (B)	증감 (B-A)	증감률 (B-A)/A
총한도액	24,718	3,704	-21,014	-5.0
국가사업	20,147	345	-19,802	-98.3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3,394	3,183	-211	-6.2
예비한도액	1,177	176	-1,001	-85.0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0. 10

대상시설별 한도액

정부가 2011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대상시설별 한도액은 학교시설(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기숙사) 345억원, 도서관(부산 정관도서관) 101억원, 문화복합시설(시흥 복합커뮤니티센터) 423억원, 공공보건의료시설(공주의료원) 541억원, 노인의료복지시설(서울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393억원, 하수관거시설(파주, 부산) 1,72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의 대상시설별 한도액은 군 주거시설 1조 5,595억원, 학교시설 4,552억원, 하수관거 2,217억원, 문화복합시설 380억원, 도서관 147억원, 과학관 531억원, 공공보건의료시설 11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한도액에는 국가사업 중 군 주거시설에 1조 5,595억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2011년 한도액안에는 동 대상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점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축소의 주 요인이다.

표 4. 23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 억원)

대상시설		2010한도액(A)	2011한도액(B)	증감(B-A)
국가사업	군 주거시설	15,595	-	-15,595
	학교시설	4,552	345	-4,207
	소계	20,147	345	-19,802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도서관	147	101	-46
	과학관	531	-	-531
	문화복합시설	380	423	43
	공공보건의료시설	119	541	422
	노인의료복지시설	-	393	393
	하수관거시설	2,217	1,725	-492
	소계	3,394	3,183	-211
예비한도액		1,177	176	-1,001
합 계		24,718	3,704	-21,014

자료 : 1. 대한민국정부,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0. 10
2. 대한민국정부,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09. 10.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9조의2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하여 최초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 중 2010년 6월 30일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급할 정부지급금 규모를 2조 4,456억원으로 전망하였다. 정부는 향후 정부지급금 규모는 증가하지만 연도별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4. 24 정부의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추계

(단위 : 억원)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가사업	13,652	794	2,207	3,183	3,729	3,738
국고보조	10,804	625	1,577	2,356	2,938	3,308
합 계	24,456	1,419	3,784	5,539	6,667	7,046

자료 : 기획재정부, 「2010~2014년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2010. 10

제4절 국가보증채무

국가보증채무란 정부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58조와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2010년말 현재 보증채무 규모는 34.8조원(GDP 대비 3.0%)이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이 26.7조원으로 보증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보증잔액이 4.0조원이며,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보증잔액이 2.5조원 규모이다.

정부는 2011년말 보증채무의 규모를 2010년에 비해 6.5조원 증가한 41.3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구조조정기금채권과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보증잔액이 각각 5.3조원 및 4.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에 주로 기인하며, 한국장학재단채권의 경우 향후 보증채무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GDP 대비 보증채무 비중이 2011년에 3.3%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증채무 규모

· 2010년말 34.8조원(실적)
· 2011년말 41.3조원(전망)

표 4. 25 국가보증채무 현황

(단위 : 조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말 전망
보증채무 (GDP대비 %)	28.1 (2.7)	29.8 (2.8)	34.8 (3.0)	41.3 (3.3)
예보채상환기금채권	28.0	27.3	26.7	23.9
구조조정기금채권	-	0.8	4.0	9.3
한국장학재단채권	-	-	2.5	6.8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	-	1.5	1.5	1.2
수리자금	0.15	0.1	0.1	0.1

주 : 1. 2011년말 전망은 「2010~2014년 국가보증채무관리 계획」 기준임
2. 2010년 GDP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임
자료 : 기획재정부

제5절 성인지 예산

1. 성인지 예산제도 개관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responsive budget)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에서 고려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어떤 특정 범주가 아니라 '자원배분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1)]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경과를 살펴보면, 2002년 11월 국회 여성위원회가 「성인지적 예산편성 및 자료제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06년 말 「국가재정법」 제정을 계기로 성인지 예산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2010년도 예산안부터 정부의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국회제출이 의무화되었다.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그리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일종의 성별영향평가서로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효과를 미리 분석한 보고서"(「국가재정법」 제26조 및 제68조의2)이며, 성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실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재정법」 57조 및 제73조의2)이다.

1) 여성가족부,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2010. 6

2. 2011년도 성인지 예산 현황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2009년 처음으로 29개 중앙부처 195개 사업, 7조 3,144억원 규모의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기금사업까지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34개 중앙관서의 245개 세부사업을 포함한 10조 1,748억원 규모의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포함)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59개 사업(8조 1,309억원), 특별회계가 43개 사업 (2,923억원), 기금이 43개 사업(1조 7,51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2]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관을 2010년과 비교하면, 국회,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기상청이 제외되었다.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 34개부처, 245개사업
· 10.2조원

표 4. 26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 억원, %)

		2010년(a)	2011년(b)	증감(b-a)
제출기관		29개	34개	5개
일반회계	사업수 예산액	156 70,232	159 81,309	3 11,077
특별회계	사업수 예산액	39 2,912	43 2,923	4 11
기금	사업수 예산액	- -	43 17,516	43 17,516
합 계	사업수 예산액 (총지출 대비)	195 73,144 (2.5%)	245 101,748 (3.3%)	50 28,604

주 : 1. 총지출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임
2. 표에 제시된 예산액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상의 예산액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오류를 정정하기 전의 수치임
자료 : 정부제출 성인지예산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상 2011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전체 예산 규모는 10조 1,748억원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성인지 예산서 분석과정에서 8개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액이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상의 예산액이 아닌, 잠정액으로 작성되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실제 성인지 대상사업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 상의 10조 1,748억원이 아닌 10조 1,873억원으로 이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의 오류를 정정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성인지 예산[3]에 대한 국회 심의 및 결과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별도의 심의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가 별도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4]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서가 성별격차를 줄이고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어느 만큼의 재정을 투입하는 가를 보여주는 수치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과 젠더 이슈 개선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성인지적 심사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가 충실히 심의하기 위한 선결 요건으로서, 정부가 작성·제출하는 성인지 예산서가 현재와 같이 단순히 사업내용과 예산규모 등만을 제시하는 수준[5]에 머무르기 보다는, 당해 사업이 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목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액 증감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도 총지출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0.5조원 감액된 것과 달리 성인지 대상사업 전체 예산액은 정부안보다 211억원 증액되었다.

---

3) "성인지 예산"이라 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상의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예산을 말한다.

4) 정부가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의 예산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국회가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별도로 구분 · 분류 · 인정하는 과정을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 「헌법」상 60일간의 예산안 심의기간에 별도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심의를 진행하기 쉽지 않다는 점,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성인지 대상사업은 그 예외를 둘 것인지의 문제 등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5)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사업목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접종률 파악을 통한 질병 발생 예측 및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질병퇴치"라고 밝히고 있는바, 동 사업의 목적 및 내역과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와 그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목표분야로서 "여성권익보호-여성의 건강보호"를 들고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 오히려 "젠더(gender)적 관점"보다는 "저소득 ·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표 4. 27 2011년 성인지 예산 국회 심의 결과

(단위 : 억원, %)

소 관	세부 사업수	2011 예산안(a)	2011 확정예산(b)	국회 심의(b-a)	
				증감액	증감률
【국회운영위원회】					
국 회	1	82.6	82.6	-	-
국가인권위원회	2	0.8	0.8	-	-
소 계	3	83.4	83.4	-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7	427.2	422.2	-5.0	-1.2
법제처	1	8.0	8.0	-	-
소 계	8	435.2	430.2	-5.0	-1.1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	2.5	2.5	-	-
금융위원회	1	17.0	13.5	-3.5	-20.6
국민권익위원회	1	0.1	0.1	-	-
국가보훈처	1	186.1	186.1	-	-
소 계	5	205.7	202.2	-3.5	-1.7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	30.0	30.0	-	-
국세청	1	1.2	1.2	-	-
조달청	1	1.9	1.9	-	-
통계청	3	136.2	131.2	-5.0	-3.7
소 계	7	169.3	164.3	-5.0	-3.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8	426.5	426.5	-	-
통일부	2	85.2	85.2	-	-
소 계	10	511.7	511.7	-	-
【국방위원회】					
국방부	3	45.7	45.7	-	-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9	206.8	206.8	-	-
경찰청	1	8.6	8.6	-	-
소 계	10	215.4	215.4	-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17	8,344.4	8,406.5	62.1	0.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3	1,121.3	1,132.6	11.3	1.0
문화재청	3	181.6	181.6	-	-
소 계	26	1,302.9	1,314.2	11.3	0.9

소 관	세부 사업수	2011 예산안(a)	2011 확정예산(b)	국회 심의(b-a)	
				증감액	증감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27	2,337.4	2,417.4	80.0	3.4
농촌진흥청	10	213.3	213.3	-	-
산림청	1	342.5	342.5	-	-
소 계	38	2,893.2	2,973.2	80.0	2.8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3	360.6	360.6	-	-
중소기업청	10	4,010.6	4,010.6	-	-
특허청	3	49.3	49.3	-	-
소 계	16	4,420.5	4,420.5	-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33	61,086.6	61,193.9	107.3	0.2
식품의약안전청	1	28.4	28.4	-	-
소 계	34	61,115.0	61,222.3	107.3	0.2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7	277.2	277.2	-	-0.1
고용노동부	22	19,277.7	19,253.1	-24.6	-0.1
소 계	29	19,554.9	19,530.3	-24.6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6	505.5	505.5	-	-
해양경찰청	3	6.4	6.4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7.7	7.7	-	-
소 계	10	519.5	519.5	-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29	2,030.6	2,019.9	-10.7	-0.5
합 계	245	101,847.3	102,059.1	211.8	0.2

자료 :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1년도 예산의 국회심의 내역 및 특징

제5장

제1절 국회심의 개요

국회가 심의·확정한 2011년도 총수입[1]은 314.4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0.2조원 감소한 규모이고, 2011년도 총지출[2]은 309.1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0.5조원 감소한 규모이다.

표 5. 1 2011년도 재정규모

(단위 : 조원, %)

	2010			2011				
	정부안 (A)	국회확정		정부안 (C)	국회확정			
		규 모 (B)	정부안대비 증가액 (B-A)		규 모 (D)	정부안대비 증가액 (D-C)	전년예산대비 증가액(증가율) (D-B)	(D-B)/B
총수입	287.8	290.8	3.0	314.6	314.4	-0.2	23.6	8.1
(국 세)	(168.6)	(170.4)	(1.8)	(187.8)	(187.6)	-0.2	17.2	10.1
총지출	291.8	292.8	1.0	309.6	309.1	-0.5	16.3	5.6
- 예 산	202.8	205.3	2.5	215.9	216.3	0.4	11.0	5.4
- 기 금	89.0	87.5	-1.5	93.7	92.8	-0.9	5.3	6.1

주 : 정부안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국회 확정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국회가 심의·확정한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통합재정수지[3]는 당초 정부안 5.0조원 대비 0.3조원 개선된 5.3조원이다. 2010년 예산에 비하여 통합재정수지는 7.3조원, 관리대상수지[4]는 5.1조원 개선된 수치이다.

1)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2) 총지출 = 일반회계지출 + 특별회계지출 + 기금지출 – 회계 · 기금간 거래 – 보전거래(※11개 금융성 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총지출 집계대상에서 제외된다.)
3)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 제3장 제2절 참조하시오.
4) 통합재정수지 중 사회성보장기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원금 소요(2003년부터 2006년까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한다.

한편, 2011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안 대비 0.1%p 감소하였으나 2010년 예산의 전망치인 407.2조원(GDP 대비 36.1%)보다 28.3조원 증가된 435.5조원(GDP 대비 35.1%)[5]으로 추정된다.

표 5. 2 2011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 : 조원, %)

	2010 예산 (A)	2011				
		정부안 (B)	국회확정			
			규 모 (C)	정부안대비 증가액 (C-B)	전년예산대비 증가액(증가율) (C-A)	(C-A)/A
통합재정수지	-2.0	5.0	5.3	0.3	7.3	-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	-30.1 (-2.7)	-25.3 (-2.0)	-25.0 (-2.0)	0.3	5.1	-
일반회계 국채(순증)	29.3	22.0	21.0	-1.0	-8.3	-
국가채무 (GDP 대비, %)	407.2 (36.1)	436.8 (35.2)	435.5 (35.1)	-1.3	28.3	6.9

주 : 정부안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국회확정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5) 2011년 국가채무 전망치 435.5조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50.5%수준인 220.0조원이며, 나머지 49.5% 수준인 215.5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이다.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 제3장 참조)

제2절 국회 심사 경과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1년 10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8일(정무위원회 등)부터 12월 1일(법제사법위원회)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다.[6]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1월 16일에 수정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및 국토해양위원회를 제외하고 12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

표 5. 3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경과

위원회명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비 고
국회운영	2010-10-04	2010-11-24	2010-11-26	
법제사법	2010-10-04	2010-12-01	2010-12-01	
정무	2010-10-04	2010-11-08	2010-11-24	
기획재정	2010-10-04	2010-11-08	2010-11-26[1]	
외교통상통일	2010-10-04	2010-11-15	2010-11-25	
국방	2010-10-04	2010-11-30	2010-11-30	
행정안전	2010-10-04	2010-11-09	2010-11-22	
교육과학기술	2010-10-04	2010-11-11		예비심사 미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2010-10-04	2010-11-08	2010-11-29	
농림수산식품	2010-10-04	2010-11-12	2010-12-01	농림수산식품부 미결
지식경제	2010-10-04	2010-11-11	2010-12-01	
보건복지가족	2010-10-04	2010-11-11	2010-11-16	
환경노동	2010-10-04	2010-11-08	2010-11-30	환경부 미결
국토해양	2010-10-04	2010-11-16		예비심사 미결
정보[2]	2010-10-04	2010-11-23		예비심사 미결
여성가족	2010-10-04	2010-11-15	2010-12-03	

주: 1)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월 7일 의결되었다.
2) 정보위원회의 심사기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전까지로 지정되었다.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6) 2010년의 경우에는 11월 12일부터 12월 8일에 걸쳐 상정되었다.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7] 세입예산안은 1,908억원 증액되고, 3,876만원 감액되어 1,968억원 순감되었다. 세출예산안은 3조 6,059억원 증액되고, 1조 1,210억원 감액되어 2조 4,848억원 순증되었다.

위원회별로는 세입예산안의 경우 순계 기준으로 국방위원회가 137억원, 지식경제위원회가 100억원 증액하였다. 세출예산안은 순계 기준으로 국방위원회가 7,190억원, 보건복지위원회가 6,058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획재정위원회(2,361억원 감액)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하였다.

표 5. 4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예산안 조정 규모 : 예비심사 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	세입			세출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회운영	-	-	-	18,530	-6,250	12,280
법제사법	-	-	-	55,570	-47,508	8,062
정무	67	-	67	414,098	-2,931	411,167
기획재정	166,900	387,600	-220,700	19,651	-255,762	-236,111
외교통상통일	-	-	-	41,617	-3,158	38,459
국방	13,707	-	13,707	816,567	-97,536	719,031
행정안전	-	-	-	210,880	-485	210,395
교육과학기술	미결	미결	미결	미결	미결	미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150	-	150	199,500	-11,463	188,037
농림수산식품	-	-	-	215,452	-	215,452
지식경제	10,000	-	10,000	333,159	-122,100	211,059
보건복지	-	-	-	1,169,498	-563,739	605,759
환경노동	-	-	-	80,363	-10,740	69,623
국토해양	미결	미결	미결	미결	미결	미결
여성가족	-	-	-	30,979	573	31,552
합 계	190,824	387,600	-196,776	3,605,864	-1,121,099	2,484,764

주 : 1. 농림수산식품위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를 제외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예산안에 대해서만 의결
2.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환경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와 기상청 예산안에 대해서만 의결
자료 : 각 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7)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정보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 소관 농림수산식품부 세입 · 세출 예산안, 환경노동위 소관 환경부 세입 · 세출 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의결하지 못하였다.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64개 기금운용계획안 중 46개 기금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의결한 결과 기금 수입안은 1조 3,311억원 증액되고, 2,188억원이 감액되어 1조 1,122억원이 순증되었다. 기금 지출안은 1조 7,653억원이 증액되고, 2,148억원이 감액되어 1조 5,504억원이 순증되었다.

표 5. 5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규모 : 예비심사 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	수입			지출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회운영	-	-	-	-	-	-
법제사법	-	-	-	7,505	-7,505	-
정무	979,722	-8,000	971,722	1,045,162	-8,053	1,037,109
기획재정	38,816	-140,816	-102,000	24,815	-	24,815
외교통상통일	-	-	-	15,978	-15,978	-
국방	-	-	-	-	-	-
행정안전	-	-	-	-	-	-
교육과학기술	미결	미결	미결	미결	미결	미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	-	238,231	-4,023	234,208
농림수산식품	미결	미결	미결	미결	미결	미결
지식경제	223,083	-	223,083	235,583	-7,000	228,583
보건복지	1,066	-70,000	-68,934	108,369	-167,890	-59,521
환경노동	34,800	-	34,800	22,959	-3,635	19,324
국토해양	미결	미결	미결	미결	미결	미결
여성가족	53,531	-	53,531	66,652	-729	65,923
합 계	1,331,018	-218,816	1,112,202	1,765,254	-214,813	1,550,441

주 : 1.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예비심사 대상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사학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등 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의결되지 않음
2.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예비심사 대상인 양곡증권정리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재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수산발전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의결되지 않음
3. 환경노동위원회의 예비심사 대상인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 · 섬진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의결되지 않음
4. 국회해양위원회의 예비심사 대상인 국민주택기금 등 1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의결되지 않음

자료 : 각 위원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7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총 5회, 11.19~11.25)와 부별심사(총 4회, 11.25~11.30), 계수 조정소위(총 6회, 12.2~12.7) 등을 거쳐 12월 8일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세입 예산안의 경우 순계 기준으로 1조 2,814억원이 감액되고, 1,088억원이 증액되어 총 1조 1,726억원이 순감되었다. 세출 예산안의 경우 3조 1,329억원이 감액되고, 1조 5,514억원이 증액되어 총 1조 1,726억원이 순감되었다.

표 5. 6 2011년도 예산안 조정 규모 : 종합심사 결과

(단위: 억원)

세 입		세 출	
<감액>	-12,814	<감액>	-31,329
◇ 국세수입	-2,672	◇ 일반공공행정	-16,507
· 소득세	-18	◇ 국방	-2,670
· 법인세	-1,560	◇ 교육	-1,604
· 부가가치세	-58	◇ 환경	-369
· 증권거래세	-126	◇ 복지	-379
· 관세	-7	◇ 농림수산	-1,786
· 교통·에너지·환경세	-903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86
		◇ SOC	-4,621
◇ 세외수입	-10,142	◇ 기타	-1,808
· 토지매각대	-140		
· 기계기구매각대	-2		
· 공자기금예수금	-10,000		
<증액>	1,088	<증액>	15,514
◇ 국세수입	564	◇ 국방	4,089
· 농어촌특별세	99	◇ 복지	2,026
· 개별소비세	423	◇ 농림수산	1,425
· 교육세	42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468
◇ 세외수입	524	◇ SOC	5,956
· 기타재산수입	104	◇ 기타	4,639
· 기타경상이전	101		
· 법정부담금	100		
· 기금예수금(국특)	178		
· 기타	41		
<합계(순계)>	-11,726	<합계(순계)>	-11,726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별 종합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7 2011년도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조정 규모 : 종합심사 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	세입			세출		
	증액	감액	증감	증액	감액	증감
국회운영	-	-	-	4,276	-6,250	-1,974
법제사법	-	-	-	14,089	-47,541	-33,452
정무	67	-	67	97,944	-405,898	-307,954
기획재정	46,652	-1,267,392	-1,220,740	19,881	-1,313,731	-1,293,850
외교통상통일	-	-	-	7,455	-3,158	4,297
국방	31,507	-	31,507	408,901	-266,954	141,947
행정안전	-	-	-	147,250	-26,847	120,403
교육과학기술	-	-	-	87,309	-167,009	-79,70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150	-	150	56,180	-13,463	42,717
농림수산식품	9,900	-	9,900	142,540	-178,600	-36,060
지식경제	10,000	-	10,000	161,691	-168,592	-6,901
보건복지	-	-	-	65,071	-2,408	62,663
환경노동	10,000	-	10,000	103,734	-54,331	49,403
국토해양	500	-13,995	-13,495	643,753	-477,565	166,188
여성가족	-	-	-	230	-573	-343
합 계	108,776	-1,281,387	-1,172,611	1,960,304	-3,132,920	-1,172,616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정부안에 비하여 운용규모가 감소되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2조 3,583억원), 외국환평형기금(△1,000억원) 등 8개 기금 총 2조 6,353억원이 감액하였다. 감액 사유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채발행규모 축소 등에 따른 국채이자 감액 및 기타 상임위 삭감사업 등이다.[8] 증가한 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금(5,797억원), 여성발전기금(15억원) 등 4개 기금 총 5,829억원이다. 증가 사유는 채소수급안정자금 융자,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지원 및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격에 맞는 국제대회 지원 확대 등에 기인한다.[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 12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 12

표 5. 8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규모

(단위 : 억원)

기 금	정부안	증 감	수정안
공적자금상환기금	24,685	-0.04	24,685
기술신용보증기금	25,147	-80	25,06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4,894	5,797	80,691
공공자금관리기금	1,135,127	-23,582	1,111,54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218	-20	2,198
외국환평형기금	366,729	-1,000	365,729
문화예술진흥기금	2,589	6	2,595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9,881	-1,086	8,795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384	-250	4,134
응급의료기금	1,984	11	1,995
국민주택기금	355,971	-335	355,636
여성발전기금	1,319	15	1,334
소 계	2,004,927	-20,523	1,984,404
총 계(64개)	3,713,685	-20,523	3,693,161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 12

제3절 본회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 12월 8일 개의된 국회 제294회 제1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의결되었다.

조세지출예산서

「국가재정법」 제27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課稅移延)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0호에서 국회 제출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칙 제6조에서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작성·제출하도록 제출시작 연도를 정하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서의 목적은 조세지출의 규모와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조세의 부과·징수 단계에서 지출되는 세원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수치화하여 조세지출도 일반적인 예산시스템 내에서 관리·통제하기 위함이다.

올해에 처음으로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도 국세감면액은 31조 3,600억원으로 2010년도 30조 1,396억원에 비하여 1조 2,204억원이 증가(2010년 대비 4.0% 증가)하여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은 14.3%로 추정된다.

국세감면 추이

(단위 : 억원, %)

	2008	2009	2010 (잠정)	2011 (잠정)	증가율 ((B-A)/A)
국세감면액(A)	287,827	310,621	302,396	313,600	4.0
국세수입총액(B)	1,673,060	1,645,407	1,750,125	1,878,469	7.3
국세감면율(A/(A+B))	14.7	15.8	14.6	14.3	-

자료 : 기획재정부,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감면액의 주요 증가 요인(세금 혜택 요인)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제지원(7,500억원),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2,500억원) 신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549억원) 등이다. 주요 감소 요인(세수 증대 요인)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공제율 하향조정(△3,469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한도 설정(△1,094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축소(△2,767억원) 등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조세지출예산서 대상범위의 불명확, 국세감면액 추계의 부정확성, 이전 조세지출보고서에 비하여 발전이 없는 이번 조세지출예산서, 추계기간의 연장 필요성, 그리고 세제개편안 효과를 반영한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시, 조세지

출의 정의 및 특정 특례제도의 조세지출 포함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감면액의 추정방법, 추정이 곤란한 것으로 분류한 항목들의 사유,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항목별 감면내용 등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석내용을 담도록 하고, 감면한도의 향후 전망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1]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다.

1) 기획재정위원회,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010. 12

제4절 2011년도 예산안 국회 조정내역

국회는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액을 축소하고, 외국인의 채권투자 소득 비과세를 폐지함으로써 세수 증가를 도모하고, 서민생활 집중지원, 안보환경 변화 대비 등에 역점을 두고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조정하였다.

1. 2011년도 세입예산의 주요 조정내역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국회 조정내역의 특징은 세입기반의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충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추경 기준 세입예산은 279.8조원이며, 2010년의 경우 2009년 추경 대비 4% 증가한 규모로 조정하였다.[10] 2011년 세입예산은 2010년 290.8조원 비하여 8.1% 증가한 314.4조원으로 확정하였다.

10) 총수입의 경우 2010년 예산은 290.8조원이며, 2009년 본 예산 291.0조원 대비 0.2조원 감소한 수치이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세수입과 관련하여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1,184억원, 외국인의 채권투자 소득 비과세 폐지로 인한 법인세 446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인한 법인세 255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개정 및 일몰연장에 따른 법인세 △2,200억원, 바이오디젤 유류세 면제 일몰연장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1,038억원,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연장에 따른 개별소비세 △368억원 등을 감액하였다.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국회는 공자기금예수금(차입금) 수입을 1조원 감액하여 21조원으로 확정하는 등 총 1조 142억원을 감액하였다.

전체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정부안보다 0.2조원 감소한 314.4조원으로, 예산수입은 정부안보다 0.2조원 감소한 212.1조원, 기금수입은 정부안보다 0.02조원 감소한 102.2조원으로 확정하였다.

그림 5. 1 2011년 세입예산 조정내역

(단위 :조원)

	정부안		감액		증액		국회확정	증감 (정부안 대비)
총수입 (계)	314.6	-	0.3	+	0.09	=	314.4	-0.2
예산	212.3	-	0.3	+	0.09	=	212.1	-0.2
기금	102.3	-	0.02	+	0.0	=	102.2	-0.02

표 5. 9 2011년도 국세수입예산 세목별 조정내역

(단위 : 억원)

	정부제출안	국회 확정예산	증감내역		
			증액	삭감	계
총 국 세	1,878,469	1,876,361	1,894	-4,002	-2,108
일반회계	1,809,863	1,807,656	1,669	-3,876	-2,207
ㅇ내 국 세	1,514,971	1,513,632	1,444	-2,783	-1,339
소 득 세	400,397	400,379	0	-18	-18
법 인 세	414,561	413,001	701	-2,261	-1,560
상속증여세	30,921	30,921	0	0	0
부가가치세	529,431	529,373	0	-58	-58
개별소비세	49,701	50,124	743	-320	423
증권거래세	39,333	39,207	0	-126	-126
인 지 세	5,324	5,324	0	0	0
과년도수입	45,303	45,303	0	0	0
ㅇ교통·에너지·환경세	124,571	123,668	0	-903	-903
ㅇ관 세	113,664	113,657	0	-7	-7
ㅇ교 육 세	45,976	46,018	225	-183	42
ㅇ종합부동산세	10,681	10,681	0	0	0
특별회계	68,606	68,705	225	-126	99
ㅇ주 세	26,465	26,465	0	0	0
ㅇ농어촌특별세	42,141	42,240	225	-126	99

자료 : 기획재정위원회, 「2011회계년도 기획재정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1년도 국세수입 조정내역

국회에서 2,108억원을 감액한 187조 6,361억원을 2011년 국세수입으로 확정하였다. 증감액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

- 미술품양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 2년 유예 : ([양도가액-필요경비]×원천징수세율 20%) (18억원 감액)

법인세

- 임시투자 세액공제(수도권 과밀권역 제외)(2,200억원 감액)
  - 중소기업 : 임시투자 세액공제(임투) 5%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 대 기 업 : (수도권 밖) 임투 5%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 대 기 업 : (수도권) 임투 4%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 인구 30만 이하 시·군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확대 (50%→80%)(61억원 감액)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축소 (20% 공제 → 10% 공제 및 이월공제 허용)(255억원 증액)
- 외국인의 채권투자 소득 비과세 폐지 (0~14% 탄력세율 적용)(446억원 증액)

법인세 조정내역

(단위 : 억원)

세목	증액	감액	증감액
법인세	701	△2,261	△1,560

자료 : 기획재정위원회, 「2011회계년도 기획재정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1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 (성형수술 · 애완동물 진료 과세, 운전학원은 1년 유예)(58억원 감액)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택시 LPG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연장 (2011.4.30 -> 2012.12.31)(368억원 감액)
-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축소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만 일몰연장)(1,184억원 증액)

증권거래세

- 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과세 2년 연기(252억원 감액)

교통·에너지·환경세

- 부생연료유 개별소비세 특례세율 축소 (유류세 면제 : 90원/ℓ →72원/ℓ)(9억원 증액)
- 바이오디젤 유류세 일몰연장(1,038억원 감액)

※ 바이오디젤 : 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 등 식물성 기름

관세

- 디지털 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일몰연장(7억원 감액)

2. 2011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조정내역

2011년도 세출예산의 국회 조정내역의 특징은 서민생활을 집중 지원하고 최근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면서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 예산안을 조정하였다는[11] 점이다.

이를 주요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주요 증액사업사업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서해 5도 대책 관련 사업이며, 증액규모는 총 3,115억원이다.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서해 5도 지역 전력 증강을 위한 국방예산 2,614억원(국방부 934억원, 방위사업청 1,680억원),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344억원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예산 420억원, 그리고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78억원을 포함한 소방방재청 예산 81억원이다. 이외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500억원 증액), 상주영덕고속도로 건설(300억원 증액) 등 도로건설 관련 SOC 투자 확대를 위하여 3,554억원 증액하였다.

복지지원을 위하여 613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청소년 및 노인 지원 관련예산 353억원, 보건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예산 147억원, 그리고 다문화 및 주거환경개선 관련예산 113억원이다. 청소년 및 노인지원 관련예산 내역을 보면, 방과후돌봄서비스(38억원 증액) 등 51억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5억원 증액) 등 14억원 및 경로당 난방비지원 218억원이다. 보건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예산 내역을 보면,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18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30억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9억원, 의과학지식센터 건립 15억원 및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5억원 등이다. 다문화 및 주거환경개선 관련예산 내역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5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50억 및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 48억원 등이다.

주요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정비사업 2,000억원, 4대강과 연계된 하수도, 하구둑 및 저수지 둑높임 사업 700억원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2,700억원을 감액하였다. 그리고 지방교부금 258억원, 교육재정교부금 229억원 등 교부금 487억원이 감액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층 고용 관련 사업 178억원 감액 조정되었는데, 감액내역은 청년층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71억원 감액, 잡영프라자 설치운영 50억원 감액, 청년사회적기업 육성 출자 25억원 감액, 글로벌취업지원 18억원 감액,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12억원 감액 등이다.

---

11)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 12

그림 5. 2 2011년도 세출예산 조정내역

(단위 :조원)

	정부안		감액		증액		국회확정	증감 (정부안 대비)
총지출 (계)	309.6	-	2.57	+	2.07	=	309.1	△0.5
예산	215.9	-	1.50	+	1.92	=	216.3	0.4
기금	93.7	-	1.07	+	0.15	=	92.8	△0.9

예산안 순계 기준으로 세출 예산안 조정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예산안 순계 기준 총액은 236.7조원이며, 이 중 5.1조원이 국회에서 증·감 조정되어 235.6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예산안 순계 총액 대비 조정 규모는 2.2%이다. 이 값은 OECD 국가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회 수정률 평균치인 1%[12]에 비해 높은 편이다.

12) 기획재정부 예산실 편, 「2010 한국의 재정」, 매일경제신문사, 2010, p126.

제5절 주요 증감 및 신규 사업

2011년도 세출예산안 증액 및 감액 규모를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증액은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액규모가 6,438억원으로 가장 컸고, 감액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의 감액규모가 1조 3,137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증액과 감액을 합한 순증규모는 국토해양위원회가 1,662억원으로 가장 컸다.

표 5. 10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 수정 현황

(단위 : 억원)

	부처명	증액	감액	증감
1	국토해양위원회	6,438	-4,776	1,662
2	국방위원회	4,089	-2670	1,419
3	행정안전위원회	1,473	-268	1,204
4	보건복지위원회	651	-24	627
5	환경노동위원회	1,037	-543	494
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562	-135	427
7	외교통상통일위원회	75	-32	43
8	정보위원회	0	0	0
9	여성가족위원회	2	-6	-3
10	국회운영위원회	43	-55	-12
11	지식경제위원회	1,617	-1,686	-69
12	법제사법위원회	141	-475	-334
13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425	-1,786	-361
1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873	-1,670	-797
15	정무위원회	979	-4,066	-3,087
16	기획재정위원회	199	-13,137	-12,938

주 : 1.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조정 없이 원안과 동일한 규모인 4,964억원으로 의결되었음
2. 상임위원회는 증액과 감액을 합한 순계규모가 큰 상임위원회 순서임

자료 :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1년도 총지출 수정규모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SOC'분야 등 8개 분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된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등 4개 분야는 정부 제출안보다 감액되었다.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SOC'분야로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1,3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로서 8,800억원이 감액되었다.

표 5. 11 분야별 총지출 국회 수정 현황

(단위 : 조원)

	분야	정부안	확정예산	증감
1	SOC	24.3	24.4	0.13
2	보건·복지·노동	86.3	86.4	0.12
3	국방(일반회계)	31.3	31.4	0.12
4	문화·체육·관광	4.1	4.2	0.11
5	환경	5.7	5.8	0.07
6	공공질서·안전	13.6	13.7	0.04
7	R&D	14.9	14.9	0.02
8	외교·통일	3.7	3.7	0.001
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2	15.2	-0.01
10	농림·수산·식품	17.7	17.6	-0.03
11	교육	41.3	41.2	-0.09
12	일반공공행정	53.2	52.4	-0.88
	합 계	309.6	309.1	-0.50

주 : 분야는 증감규모가 큰 분야 순서임
자료 :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안 수정현황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증액의 경우 국토해양부(6,380억원), 방위사업청(2,571억원), 지식경제부(1,527억원), 국방부(1,518억원), 농림수산식품부(1,240억원) 등의 규모가 컸다. 감액의 경우 기획재정부(1조 2,769억원), 국토해양부(4,586억원), 금융위원회(4,005억원), 방위사업청(2,249억원), 농림수산식품부(1,786억원) 등의 규모가 컸다. 증감 순계를 살펴보면, 국토해양부가 증액 6,380억원, 감액 4,586억원, 순증 1,794억원으로 순증규모가 가장 컸다.

표 5. 12 부처별 세출예산 국회 수정 현황

(단위 : 억원)

	부처명	증액	감액	증감
1	국토해양부	6,380	-4,586	1,794
2	국방부	1,518	-421	1,098
3	행정안전부	1,213	-265	948
4	국가보훈처	965	-	965
5	보건복지부	629	-24	604
6	환경부	882	-359	523
7	방위사업청	2,571	-2,249	322
8	문화재청	271	-0.5	270.5
9	문화체육관광부	291	-129	161
10	소방방재청	126	-	126
11	산림청	126	-	126
12	경찰청	106	-4	102
13	농촌진흥청	60	-	60
14	해양경찰청	58	-	58
15	기상청	47	-	47
16	중소기업청	90	-50	40
17	국회	43	-10	32
18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30	-0.6	29.4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8	-	28
20	외교통상부	40	-14	26
21	식품의약품안전청	22	-	22
22	감사원	1.5	-1	0.5
23	조달청	142	-142	0
24	공정거래위원회	2.6	-3.3	-0.7
25	헌법재판소	-	-0.7	-0.7
26	법제처	-	-2	-2
27	국민권익위원회	-	-3	-3
28	국가인권위원회	-	-3	-3
29	여성가족부	2	-6	-3
30	방송통신위원회	-	-5	-5
31	통계청	6	-13	-7
32	특임장관실	-	-8	-8
33	통일부	5	-17	-12
34	관세청	-	-26	-26
35	대법원	72	-100	-28
36	국무총리실	11	-48	-37
37	대통령실	-	-41	-41
38	고용노동부	109	-185	-76
39	지식경제부	1,527	-1,636	-109
40	국세청	50	-187	-137
4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	-190	-190
42	법무부	67	-372	-305
43	농림수산식품부	1,240	-1,786	-546
44	교육과학기술부	873	-1,670	-797
45	금융위원회	0.5	-4,005	-4,004.5
46	기획재정부	2	-12,769	-12,767

주 : 1. 부처는 증액과 감액을 합한 순증 규모가 큰 부처 순서임
2. 병무청, 특허청, 국가정보원은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조정이 없었음
자료 :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출예산안 수정현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규모 순으로 10대 증액사업 및 감액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5. 13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10대 사업

(단위 : 억원)

	소관	회계	사업명	정부안	증액
1	지식경제부	에특	예비비	53	963
2	국가보훈처	일반	참전명예수당	2,534	840
3	국토해양부	교특	포항-삼척철도건설	-	700
4	방위사업청	일반	K-9 자주포	4,850	620
5	방위사업청	일반	F-15K 2차	9,143	600
6	국토해양부	교특	울산-포항 복선전철	-	520
7	국토해양부	광특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2,000	500
8	행정안전부	일반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	420
9	행정안전부	일반	충남도청신축지원	200	300
10	국토해양부	교특	상주-영덕고속도로건설	950	300

주 : 1. 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 중 내역이 수정된 경우 내역을 직접 표시하였음
2. 사업은 증액규모가 큰 사업 순서임
자료 :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14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10대 사업

(단위 : 억원)

	소관	회계	사업명	정부안	증액
1	기획재정부	일반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전출금(이차보전, 융자계정)	13,866	-6,006
2	기획재정부	일반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이자 상환(총괄계정)	77,784	-4,689
3	금융위원회	일반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금	18,494	-4,000
4	국토해양부	일반	일반철도시설개량	3,585	-2,252
5	국토해양부	일반	국가하천정비	36,300	-2,000
6	교육과학기술부	일반	한국장학재단 출연	3,218	-1,300
7	농림수산식품부	농특	농특회계에서 쌀소득기금 전출금	9,460	-1,086
8	기획재정부	일반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1,000	-1,000
9	기획재정부	일반	예비비	25,000	-1,000
10	지식경제부	에특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6,618	-600

주 : 1. 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 중 내역이 수정된 경우 내역을 직접 표시하였음
2. 사업은 감액규모가 큰 사업 순서임
자료 :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국회에서 순증된 세출예산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표 5. 15 국회에서 순증된 10대 사업

(단위 : 억원)

	소관	회계	사업명	예산
1	국토해양부	교특	포항-삼척 철도건설	700
2	국토해양부	교특	울산-포항 복선전철	520
3	행정안전부	일반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420
4	문화재청	일반	세계유산 보존관리(보조)	220
5	보건복지부	일반	경로당 난방비 지원	218
6	국방부	일반	대피호(병력, 전차)	158
7	국토해양부	광특	초정-화명광역도로건설	150
8	조달청	조달	조달특별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전출금(원금상환)	142
9	방위사업청	일반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	111
10	국방부	일반	백령도 관제부대 화생방 방호기능	100

주 : 1. 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업 중 내역이 수정된 경우 내역을 직접 표시하였음
2. 사업은 증액규모가 큰 사업 순서임
자료 :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6절 부대의견

국회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첨부한 부대의견은 총 12건으로 2009년도 본예산의 56건, 2010년도 17건에 비해 감소하였다. 2010년 예산안의 경우 각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채택된 총 118건의 부대의견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채택한 부대의견은 17건(14.4%)이며, 2011년도 예산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총 233건의 부대의견[13]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부대의견은 12건(5.2%)이다.

13) 국회운영위원회 5건, 법제사법위원회 4건, 정무위원회 28건, 기획재정위원회 63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35건, 국방위원회 17건, 행정안전위원회 3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3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0건(대정부 촉구사항), 지식경제위원회 8건, 보건복지위원회 10건, 환경노동위원회 5건, 여성가족위원회 12건 등 총 233건이다.

표 5. 16 부대의견 성질별 구분

(단위 : 건)

	2009년		2010년	2011년
	본예산	추경		
제도개선	41	9	4	-
국회보고	7	3	1	-
지원조건설정	3	4	11	11
집행유보	5	1	1	1
합 계	56	17	17	12

주 : 1. 제도개선: 정책방향 제시 또는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 내용
2. 국회보고: 제도개선사항 또는 사업수행 내용에 대한 국회보고를 의무화한 내용
3. 집행조건설정: 예산 지원 기간,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 내용
4. 집행유보: 부대의견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내용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부대의견

국회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방위사업청 소관 K-2전차사업의 파워팩(엔진+변속기) 소요예산 (55억원)은 K-2전차의 시험평가과정에서 발생된 제 결함을 해결하고, 3계절 시험평가 후 집행한다.

(2)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가 특정언론에 집중되지 않도록 중앙지와 지방지 간 그리고 중앙지 간의 형평성을 유지한다.

(3) 지식경제부는 창의자본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그 수익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4) 지식경제부는 '지역투자촉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낙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연말 불용액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5) 지식경제부는 도심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배관 건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책자금의 우선 융자지원 등의 소외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6) 지식경제부는 노인복지시설에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시 현장의 수요를 감안하여 에어컨 외에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등을 탄력적으로 보급하도록 한다.

(7) 정부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한다.

(8)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보완 대책으로 편성한 2011년 관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 905억원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음)에 대해서는 당해 협정이 국회에서 각각 비준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

(9)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사 공제회 설립 사업'은 초기 설립준비금 명목으로 2011년에 한하여 지원한다.

(10)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5개월, 436억원)'에 대해 일반회계와 특별교부세로 2분의 1씩 분담하여 2011년에 한하여 지원한다.

(11) 지식경제부 소관 '연구개발특구(대덕) 기반시설 구축 사업(죽동 지구진입도로 건설, 화암네거리입체화 건설)'은 국비지원율을 50%로 하고, 2011년 예산(50억원)은 죽동지구진입도로 건설 10억원, 화암네거리입체화 건설 40억원으로 반영한다.

(12)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특별교부세로 동 지원금과 같은 금액만큼을 추가하여 지원한다.

<별표> 2011년도 한·미 FTA 및 한·EU FTA 관련 사업중 집행유보 사업 목록

한 · 미 FTA 관련 사업중 집행유보 사업 목록

(단위 : 억원)

회 계	사 업 명	'11 예산
농림수산식품부		74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소득보전직불 • 폐업지원	250 300
축산발전기금	•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 생축수송특장차량지원	5 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친환경농산물소비지유통활성화 • 신선편이가공시설현대화	22 64
수산발전기금	• 관리회사제도 도입 • 소득보전직불 • 폐업지원	30 15 50
보건복지부		11
일반회계	• GMP·GLP 인력양성지원 • 독립적 검토절차지원 • 보건의료해외박람회참가지원	4 2 5
합계		755

한 · EU FTA 관련 사업중 집행유보 사업 목록

(단위 : 억원)

회 계	사 업 명	'11 예산
농림수산식품부		15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가공원료유지원 • 한우농가조직화	100 50
합계		150

부대의견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가 특정 예산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재정의지를 표명하는 별도의 수단으로 부대의견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대의견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예산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구속력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대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포함(첨부)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대의견의 대 정부 구속력을 부인하는 것은 예산의 심의 · 확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제54조)의 취지에 반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부대의견의 내용이 예산의 집행시기 및 집행조건 등을 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효력에 준하는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만, 예산의 집행시기 및 집행조건 등에 관한 국회의 재정의지를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할 경우 부대의견이 아닌 예산총칙에 규정하거나 더 나아가 부대의견의 근거·효력 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제7절 2010년도 통과 재정수반 법률과 2011년도 예산

국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편성된다. 이와 같이 법률 중에서도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편성근거로 사용되는 법률을 재정수반 법률[14]이라 한다.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하 "예산"이라 한다)에는 2010년도에 통과된 재정수반 법률에 근거하여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재정수반 법률은 수입관련 법률과 지출관련 법률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지출관련 재정수반 법률에 의한 영향만 살펴보았다.

14) 재정수반 법률에 관해 「국회법」 제79조의2에서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으로, 「국가재정법」 제87조에서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 로 정의되고 있다.

1. 2010년도 통과 재정수반 법률과 2011년도 예산 규모

재정수반 법률과 이에 근거하여 편성된 2011년도 예산은 [표 5.1]과 같다. 2010년도 통과 재정수반 법률은 총 56개[15]이며, 이를 근거로 편성된 2011년도 예산은 4,714억원이다. 재정

표 5. 17 2010년도 통과 재정수반 법률의 소관 위원회별 현황

위원회(재정수반 법률 수)	소관 행정부처	재정수반 법률 (개)	2011년도 예산 (억원)
환경노동위원회(14개)	환경부 고용노동부	7 7	607.5 703.9
법제사법위원회(10개)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8 1 1	910.2 16.0 36.4
국토해양위원회(5개)	국토해양부	5	101.0
지식경제위원회(5개)	지식경제부 특허청	4 1	432.0 14.2
농림수산식품위원회(4개)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3 1	23.7 3.0
보건복지위원회(4개)	보건복지부	4	845.5
외교통일통상위원회(3개)	통일부	3	762.5
여성가족위원회(2개)	여성가족부	2	9.7
행정안전위원회(2개)	행정안전부	2	46.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개)	문화체육관광부	2	72.8
교육과학기술위원회(2개)	교육과학기술부	2	107.8
국회운영위원회(1개)	대통령실	1	9.8
정무위원회(1개)	국무총리실	1	6.2
기획재정위원회(1개)	관세청	1	6.0
합 계		56	4,714.3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5) 2010년도 통과 재정수반 법률 중 2011년도 예산과 관련된 법률만 포함하였다. 따라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장애인 연금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 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8건은 2010년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법률 시행 비용이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된 적이 있어 이를 제외하였다.

수반 법률 56개는 2010년도(2010.1.1.~2010.12.31.)에 통과된 50개와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예산편성 근거로 사용된 6개[16]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모두를 '재정수반 법률'이라 한다.

통과된 재정수반 법률 50개를 제·개정 형태로 보면, 신규 제정 법률이 13개이며 나머지 37개는 개정 법률이다.

재정수반 법률을 소관 위원회별로 보면, 총 14개 위원회가 관련되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14개, 법제사법위원회 10개, 국토해양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각각 5개,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4개 등의 순이다.

재정수반 법률과 관련된 예산을 소관 행정부처별로 보면, 법무부가 910억원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가 846억원, 통일부가 763억원이며, 그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704억원, 환경부 608억원, 지식경제부 432억원 등의 순이다.

2.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수반 법률

법률시행에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수반 법률은 [표 5.2]와 같이 3개이다.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777억원과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624억원, 「남북협력기금법」 500억원이다.

표 5. 18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수반 법률

(단위 : 억원)

부처명	법률명	사업명	예산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	777.0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623.8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교역경협보험	50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해양부), 지식재산기본법안(국무총리실).

3. 재정수반 법률 내용과 관련 사업명 및 예산액

제·개정된 재정수반 법률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편성된 사업 및 예산액은 위원회별로 다음과 같다.

가.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은 환경부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14건이며, 이를 근거로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1,311억원이다. 한편 예산 확정 당시에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환경부)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및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을 근거로 53.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1)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7] 시행일 '11.6.9.)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하수 처리수 재이용사업과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298.2억원이며, 사업명은 '하수처리수 이용사업'이다.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시행일 '11.1.1.)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석면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 석면피해대책위원회, 피해보상·의료비·요양급여·장제비 및 유족조위금 등과 석면오염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39억원이며, 사업명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피해신고 센터운영'이다.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정, 시행일 '10.5.17.)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34.6억원이며, 사업명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준비'이다.

---

17) 신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하며, 이하에서 별도 표시가 없는 것은 일부개정 법률을 말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11.6.1.)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24.9억원이며, 사업명은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운영지원'이다.

표 5. 19 환경노동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과 관련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부처명	법률명(의결일)	사업명	예산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0.5.19.)	하수처리수 이용사업	298.2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10.2.26.)	석면피해구제급여, 피해신고 센터운영	139.0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정, '10.4.28.)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준비	134.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4.28.)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지원	24.9
	수도법 ('10.5.25.)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제한 지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	8.9
	야생동·식물보호법 ('10.6.29.)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0.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	산업수질 관리체계 개선사업	1.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4.28.)	산재보험급여(진폐제도 개선)	514.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4.28.)	진폐 위로금 지급	102.6
	사회적기업 육성법 ('10.5.19.)	사회적기업 육성	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4.28.)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	10.2
	숙련기술장려법 ('10.4.28.)	기능장려 선진화사업	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39.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	한국 고용정보원 인건비, 직업정보제공 및 진로지도	13.4
합 계			1,311.4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수도법 (시행일 '10.5.25.)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의 공장설치 제한과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8.9억원이며, 사업명은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고시'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일 '11.1.24.)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야생 동·식물 위해성 평가를 위한 현지 자료조사와 현장 활동 및 전문가 자문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0.9억원이며, 사업명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

제·개정될 재정수반 항목은 폐수 종말처리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별로 개별적인 배출기준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인허가 체계 도입 규정이다(안 제12조, 안 제32조 등).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억원이며, 사업명은 '산업수질 관리체계 개선사업'이다.

(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10.11.21.)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진폐보상체계의 개편에 따라 기초연금 도입 등 진폐보상 연금을 도입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514.3억원이며, 사업명은 '산재보험급여(진폐제도 개선)'이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10.11.21.)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재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생전에 진폐재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진폐위로금 지급기준 및 수준을 변경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02.6억원이며, 사업명은 '진폐 위로금 지급'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일 '10.12.9.)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 실시, 사회적 기업 육성기금을 설치 및 지원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21억원이며, 사업명은 '사회적기업 육성'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10.11.21.)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보험급여 부정수급권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0.2억원이며, 사업명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이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일 '11.1.1.)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조사·연구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과 국내·국제·민간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3억원이며, 사업명은 '기능장려 선진화사업'이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

제·개정될 재정수반 항목은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규정이다(안 제74조의2).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39.4억원이며, 사업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

제·개정될 재정수반 항목은 한국잡월드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안 제18조의2제3항).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3.4억원이며, 사업명은 '한국잡월드 인건비와 한국잡월드 운영지원'이다.

나.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과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등 10건이며, 이를 근거로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총 962.6억원이다.

표 5. 20 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과 관련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부처명	법률명(의결일)	사업명	예산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정, '10.4.2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623.8
	출입국관리법 ('10.4.21.)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 운영	98.3
	정부법무공단법 ('10.4.21.)	정부 법무공단 운영지원	10.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10.6.29.)	성폭력 범죄자 약물치료	1.6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0.6.29.)	민경식 특별검사	2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10.3.31.)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9.0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0.3.31.)	특정범죄자 전자감독	49.9
	범죄피해자보호법 ('10.4.21)	범죄피해구조금	93.1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 '10.2.26.)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16.0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10.4.21.)	헌법재판연구원 인건비 및 기본 경비	36.4
합 계			962.6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시행일 '11.1.1.)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벌금징수액의 4% 이상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설립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623.8억원이며, 사업명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이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일 '10.11.15.)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불법입국 방지와 외국인 신원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98.3억원이며, 사업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 운영'이다.

정부법무공단법 (시행일 '10.5.4.)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와 소송사건 및 법률자문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변호사 및 일반·사무직 충원에 따른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0억원이며, 사업명은 '정부 법무공단 운영지원'이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일 '11.7.24.)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성도착증 환자에게는 성기능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6억원이며, 사업명은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이다.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일 '10.7.12.)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특별검사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업무추진비 등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24.5억원이며, 사업명은 '민경식 특별검사'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시행일 '11.4.16.)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인근주민에 고지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9억원이며, 사업명은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10.7.16.)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전자장치 피부착 대상자를 관리하는 직원 채용에 대한 인건비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소재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외에 4대 광역시에 별도의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토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49.9억원이며, 사업명은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일 '10.8.15.)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중장해로 한정된 범죄피해자 구조 대상을 일반 장해를 입은 피해자로 확대하고 중상해구조금을 신설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93.1억원이며, 사업명은 '범죄피해구조금'이다.

(2)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일 '10.7.1.)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독립된 감사부서와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설치 및 감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6억원이며, 사업명은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이다.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시행일 '10.11.5.)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설립함에 따라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36.4억원이며, 사업명은 '헌법재판연구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이다.

다.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은 국토해양부의 「항공법」 등 총 5건이며, 이를 근거로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101억원이다. 이 중 2건(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미통과된 상태이며, 이를 근거로 57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5. 21 국토해양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과 관련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부처명	법률명(의결일)	사업명	예산
국토해양부	항공법 ('10.2.26.)	첨단우주항공 인력양성	43.0
	주택법 ('10.3.18.)	하자심사 분쟁조정업무 민간대행	0.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0.2.26.)	전국호환 교통카드장비 설치지원	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 장비 구축	37.0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	항운노조 상용화 지원	20.0
합 계			101.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항공법 (시행일 '10.3.22.)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이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육성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43억원이며, 사업명은 '첨단우주항공 인력양성'이다.

주택법 (시행일 '10.10.6.)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을 상근으로 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0.1억원이며, 사업명은 '하자심사분쟁조정업무 민간대행'이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10.3.22.)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화 대상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0.9억원이며, 사업명은 '전국호환 교통카드장비 설치지원'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

제·개정될 재정수반 항목은 천연가스자동차(CNG)의 재검사 등 안전관리 규정이다 (안 제35조의7과 제35조의8).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37억원이며, 사업명은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 장비 구축'이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

제·개정될 재정수반 항목은 항운노조원에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부족액을 융자해 줄 수 있으며(안 제6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노조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안 제7조).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20억원이며, 사업명은 '항운노조 상용화 지원'이다.

라.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은 지식경제부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과 특허청의 「발명진흥법」 등 총 5건이며, 이를 근거로 2011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총 446.2억원이다.

표 5. 22 지식경제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과 관련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부처명	법률명(의결일)	사업명	예산
지식경제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3.18.)	기술확산 지원	247.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0.3.18.)	산업단지 환경조성	150.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10.3.18.)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34.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0.5.19.)	석유 품질관리	1.0
특허청	발명진흥법 ('10.5.19.)	경제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	14.2
합 계			446.2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 지식경제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10.7.13.)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공공연구기관(대학 제외)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녹색기술 및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지주회사와 출자회사의 설립 및 지원을 규정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247억원이며, 사업명은 '기술확산 지원'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10.7.13)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50억원이며, 사업명은 '산업단지 환경조성'이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일 '10.10.13.)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실태조사와 엔지니어링 산업정보 체계의 구축·운영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대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34억원이며, 사업명은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일 '10.12.9)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억원이며, 사업명은 '석유 품질관리'이다.

(2) 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일 '10.12.9.)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4.2억원이며, 사업명은 '경제적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이다.

마.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등 총 4건이며, 이를 근거로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26.7억원이다.

표 5. 23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과 관련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부처명	법률명(의결일)	사업명	예산
농림수산식품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0.4.28.)	축산식품 안전관리, 검역원 업무 정보화	6.4 13.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10.6.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2.0
	축산물위생관리법 ('10.4.28.)	축산물 검사	1.9
산림청	산지관리법 ('10.4.28.)	불법전용 산지조사 위탁	3.0
합 계			26.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 농림수산식품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10.12.22.)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규정된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9.8억원이며, 사업명은 '축산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원 업무 정보화'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11.1.24.)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제정·운용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각각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2억원이며, 사업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일 '10.11.26.)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축산물의 수입 등의 금지 또는 해제 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책임수의사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9억원이며, 사업명은 '축산물 검사'이다.

(2)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일 '10.12.1.)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산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 및 상세조사의 실시 등의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3억원이며, 사업명은 '불법전용 산지조사 위탁'이다.

바.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총 4건이며, 이를 근거로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845.5억원이다.

표 5. 24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과 관련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부처명	법률명(의결일)	사업명	예산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0.12.8.)	장애인 활동지원	777.0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정, '10.2.18.)	제대혈 공공관리	12.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10.4.28.)	장기구득기관 운영지원 및 홍보, 장기 이식관리 정보화	38.1
	의료법 ('10.6.29.)	의료기관 평가 인증	17.8
합 계			845.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일 '11.10.5.)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3개월 소요액으로 777억원이며, 사업명은 '장애인 활동지원'이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일 '11.7.1.)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증 제대혈 은행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2.6억원이며, 사업명은 '제대혈 공공관리'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일 '11.6.1.)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장기구득기관을 설립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38.1억원이며, 사업명은 '장기구득기관 운영지원 및 홍보와 장기 이식관리 정보화'이다.

의료법 (시행일 '11.1.24.)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7.8억원이며, 사업명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이다.

사.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법」 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건이며, 이를 근거로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762.5억원이다.

표 5. 25 외교통일통상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과 관련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부처명	법률명(의결일)	사업명	예산
통일부	남북협력기금법 ('10.3.2.)	교역경협보험	500.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10.3.2.)	개성공단 운영대출	222.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10.3.2.)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39.6
합 계			762.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남북협력기금법 (시행일 '10.9.27.)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남북간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 및 자금융자와 기업경영 외의 문제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조 등을 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500억원이며, 사업명은 '교역경협보험'이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10.9.27.)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영정상화 지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 등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222.9억원이며, 사업명은 '개성공단 운영대출'이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일 '10.9.27.)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와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 및 납북자가족단체에 경비 지원 등을 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39.6억원이며, 사업명은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이다.

아.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은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건이며, 이를 근거로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9.7억원이다.

표 5. 26 여성가족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과 관련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부처명	법률명(의결일)	사업명	예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3.31.)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및 홍보	8.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4.28.)	가정폭력 예방 홍보	1.5
합 계			9.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10.4.15.)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촬영·보존하고 등록대상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8.2억원이며, 사업명은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및 홍보'이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10.11.18.)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가정폭력 예방과 계도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배포 및 송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5억원이며, 사업명은 '가정폭력 예방 홍보'이다.

자.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은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건이며, 이를 근거로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46.1억원이다.

표 5. 27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과 관련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부처명	법률명(의결일)	사업명	예산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0.5.19.)	국가재난관리 통합시스템 확대	6.5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9.16.)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운영	39.6
합 계			46.1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일 '10.6.8.)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국가기반체계 보고상황실을 종합상황실로 개편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6.5억원이며, 사업명은 '국가재난관리 통합시스템 확대'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일 '10.10.1.)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추진기구와 통합절차,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의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39.6억원이며, 사업명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 운영'이다.

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건이며, 이를 근거로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72.8억원이다.

표 5. 2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과 관련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부처명	법률명(의결일)	사업명	예산
문화체육 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0.2.18.)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52.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0.5.19.)	박물관문화재단 지원	20.3
합 계			72.8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일 '10.6.18.)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해 필요시 국고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52.5억원이며, 사업명은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일 '10.12.11)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와 사용을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20.3억원이며, 사업명은 '박물관문화재단 지원'이다.

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유아교육법」 2건이며, 이를 근거로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107.8억원이다.

표 5. 29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과 관련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부처명	법률명(의결일)	사업명	예산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10.12.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100.0
	유아교육법 ('10.3.2.)	유아 학비지원 시스템 운영 및 개선	7.8
합 계			107.8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일 '11.4.5.)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건설비 및 연구 장비 구축과 연구원 연구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100억원이며, 사업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다.

유아교육법 (시행일 '10.3.24.)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무상교육 및 비용부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7.8억원이며, 사업명은 '유아 학비지원 시스템 운영 및 개선'이다.

타.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은 대통령실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건이며, 이를 근거로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9.8억원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10.3.12.)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전직대통령 및 유족의 경호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9.8억원이며, 사업명은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이다.

파.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은 국무총리실의 「지식재산기본법안」 1건이며, 이를 근거로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6.2억원이다.

지식재산기본법안 (국회 계류중)

제정될 재정수반 항목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와 제11조)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6.2억원이며, 사업명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운영'이다.

하.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재정수반 법률은 관세청의 「관세법」 1건이며, 이를 근거로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6억원이다.

관세법 (시행일 '11.1.1.)

제·개정된 재정수반 항목은 무역 관련 중소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자격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 2011년도 예산액은 6억원이며, 사업명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이다.

제8절 결산심사와 예산안 심사의 연계

국회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2009년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점검하고, 결산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를 조정하는 등 결산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연계하였다.

국회는 2009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총 1,045건[18]에 대하여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중 상당 부분이 불용액 과다 등 집행부진, 사업계획 미비, 다른 용도로의 이 · 전용, 사업의 유사 · 중복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의 부적절한 편성이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회의 시정요구 중 해당 사업의 유사·중복이나 연례적 집행 부진 등 예산안 심의와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지적사항의 시정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결산 심의 결과를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9]

18) 200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단위 : 건)

구 분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합 계
건 수	310	310	310	325	410	1,045

주 : 표의 시정요구 총 건수가 1,045건인 것은 하나의 시정요구명(건)에 대해 두 가지의 시정요구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 (예: 시정 및 제도개선)가 6건 있기 때문이며, 중복 적용된 건수를 제외하면 총 시정요구 건수는 1,039건임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10.10

19) 국회예산정책처는 시정요구의 내용상 예산안 심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항들을 선정하여 총 223건(전체 시정요구의 21.5%)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하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시정요구의 내용상 예산안 심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항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결산 시정요구사항이 예산심사결과에 반영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본다.

첫째, 결산 심사 시 불용액이 과다하거나 과도한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 부진 문제를 지적한 사업이 있다.

집행실적 부진 사업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법무부와 대법원의 경우 인건비 예산이 과도하여 해당 재원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결원율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국세청 조사반활동비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방위사업청 전구작전지휘시설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예산규모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산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예산심사 시 해당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부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였다. 특히, 법무부와 대법원 인건비의 경우 결원율 및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각각 정부안 대비 350억원, 100억원이 감액되는 등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

표 5. 30 집행부진사업 예산조정사례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결산 시정요구사항	2011 예산안	2011 확정예산
법무부	인건비	결원율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	1,574,476	1,539,476 (-35,000
대법원	인건비	법관 결원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편성시 적정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704,341	694,341 (-10,000)
국세청	조사반 활동비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정할 것	35,825	35,666 (-159)
방위사업청	전구작전 지휘시설	방위사업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이 연기됨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전구작전지휘시설 신축사업의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면밀하게 재검토	101,024	81,024 (-20,000)
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간 예산조정을 최소화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점검하여 집행률을 높이도록 할 것	203,360	183,431 (-19,929)
	폐기물 자원화시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지자체 수준의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	12,044	7,837 (-4,207)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둘째, 2009년도 결산 심사 시 사업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업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였다.

사업관리가 부실한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국무총리실 소관 공직윤리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예산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민간인 사찰 등이 문제가 되면서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행정안전부 소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의 경우 그 운영성과가 미흡하므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주요정책홍보사업의 경우 자의적인 내역변경을 통한 예산집행이 문제와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시 정당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글로벌 취업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단체공동협력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성과가 미흡하거나 예산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성과가 미흡하거나 예산집행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였다. 공직복무관리 사업의 경우 조직규모 및 기능에 맞추어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의 경우 효율화를 통한 경비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1억원의

표 5. 31 사업관리 부실 사업 예산조정사례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결산 시정요구사항	2011 예산안	2011 확정예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 사업	공직사회의 비리근절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활동의 강화 등 필요에 맞게 2011년 예산은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부적정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857	701 (-156)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를 지방분권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향후 효율적인 추진단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302	202 (-100)
문화체육 관광부	국가주요정책 홍보사업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규모에 증감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내역변경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정부 정책의 광고나 홍보물 발간시에 정당의 정책을 소개할 경우에는 각 정당간에 균형을 갖출 것	11,381	10,603 (-778)
고용노동부	글로벌 취업지원	해외취업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사업성과가 미진하므로, 해외취업기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성과가 부진한 기관을 배제하는 등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30,347	28,547 (-1,800)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공동협력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와 달리 녹색생활 홍보성 사업 등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특정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편중 지원하는 등의 사업 추진은 지양할 것	2,500	2,375 (-12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을 감액조정하였다. 국가주요정책 홍보사업의 경우 사업확대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아 201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셋째, 2009년도 결산 심사 시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의 규모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사업이 있다.

예산의 과다편성을 지적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알리기 사업의 경우 홍보비 예산이 과도하므로 합리적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하였으며, 국세청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단계이므로 현금영수증 홍보사업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심사 시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여전히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홍보사업 예산을 감액조정하였다. 금융정책알리기 사업에 편성된 홍보예산 중 7,700만원을 감액하였고, 현금영수증 홍보사업을 위한 예산 1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다.

표 5. 32 예산 과다편성 사업 예산조정사례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결산 시정요구사항	2011 예산안	2011 확정예산
금융위	금융정책 알리기 사업	향후 홍보관련 동 사업 예산을 합리적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할 것	407	330 (-77)
국세청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단계이므로 현금영수증 홍보사업을 축소할 것	3,097	2,984 (-113)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국회

제2부
위원회별 재정 및 주요 현안

제6장 분야별 재원배분 개관
제7장 법제사법
제8장 정무
제9장 기획재정
제10장 외교통상통일
제11장 국방
제12장 행정안전
제13장 교육과학기술
제14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제15장 농림수산식품
제16장 지식경제
제17장 보건복지
제18장 환경노동
제19장 국토해양
제20장 여성가족
제21장 국회운영
재22장 정보

nabo

분야별 재원배분 개관 제6장

제1절 2011년도 재원배분

1. 개관

2011년도 정부 총지출[1)]은 309.1조원으로 2010년도 대비 16.2조원(5.5%) 증가하였다. 분야별 총지출은 2010년도 대비 SOC 분야만 유일하게 0.7조원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11개 분야는 모두 증가하였다. 그 중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가 5.1조원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뒤를 이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6조원, 교육 분야가 3조원 증가하였다.

2010년도 대비 분야별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5.5%)보다 높은 분야는 R&D(8.7%), 보건 · 복지 · 노동(6.3%), 교육(7.8%), 문화 · 체육 · 관광(7.8%), 환경(6.2%), 국방(6.2%), 외교 · 통일(9.0%), 공공질서 · 안전(5.6%), 일반공공행정(7.5%)의 9개 분야이다.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0.3%), SOC(△2.7%), 농림·수산·식품(2.2%)의 3개 분야이다.

2011년도 국회 확정예산은 정부안 대비 0.5조원 감액된 규모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증액된 분야는 R&D, SOC, 보건 · 복지 · 노동, 문화 · 체육 · 관광, 환경, 국방, 외교 · 통일, 공공질서 · 안전의 8개 분야이며, 감액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교육, 일반공공행정의 4개 분야이다. SOC 분야가 0.13조원 증액되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0.88조원 감액되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1)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 기금의 지출에서 회계, 기금 간 내부거래 및 국채 · 차입금 상환과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한 것이다.

표 6. 1 2011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단위 : 조원, %)

구 분	2010년 (A)	2011년		증감		
		정부안 (B)	국회확정 (C)	정부안 대비 (C-B)	2010년 대비 (C-A)	2010년 대비 (%)
1. R&D	13.7	14.9	14.9	0.02	1.2	(8.7)
2.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15.1	15.2	15.2	-0.01	0.04	(0.3)
3. SOC	25.1	24.3	24.4	0.13	-0.7	(-2.7)
4. 농림 · 수산 · 식품	17.3	17.7	17.6	-0.03	0.4	(2.2)
5. 보건 · 복지 · 노동	81.2	86.3	86.4	0.12	5.1	(6.3)
6. 교 육	38.3	41.3	41.2	-0.09	3.0	(7.8)
7. 문화 · 체육 · 관광	3.9	4.1	4.2	0.11	0.3	(7.8)
8. 환 경	5.4	5.7	5.8	0.07	0.3	(6.2)
9. 국 방(일반회계)	29.6	31.3	31.4	0.12	1.8	(6.2)
10. 외교 · 통일	3.3	3.7	3.7	0.001	0.3	(9.0)
11. 공공질서 · 안전	12.9	13.6	13.7	0.04	0.7	(5.6)
12. 일반공공행정	48.7	53.2	52.4	-0.88	3.6	(7.5)
총 지 출	292.8	309.6	309.1	-0.50	16.2	(5.5)

주 : 1. 총지출(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의 총계에서 계정간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제외) 기준
2. R&D는 각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R&D 지출을 합계한 금액
자료 : 기획재정부

그림 6. 1 2010년도 대비 분야별 재원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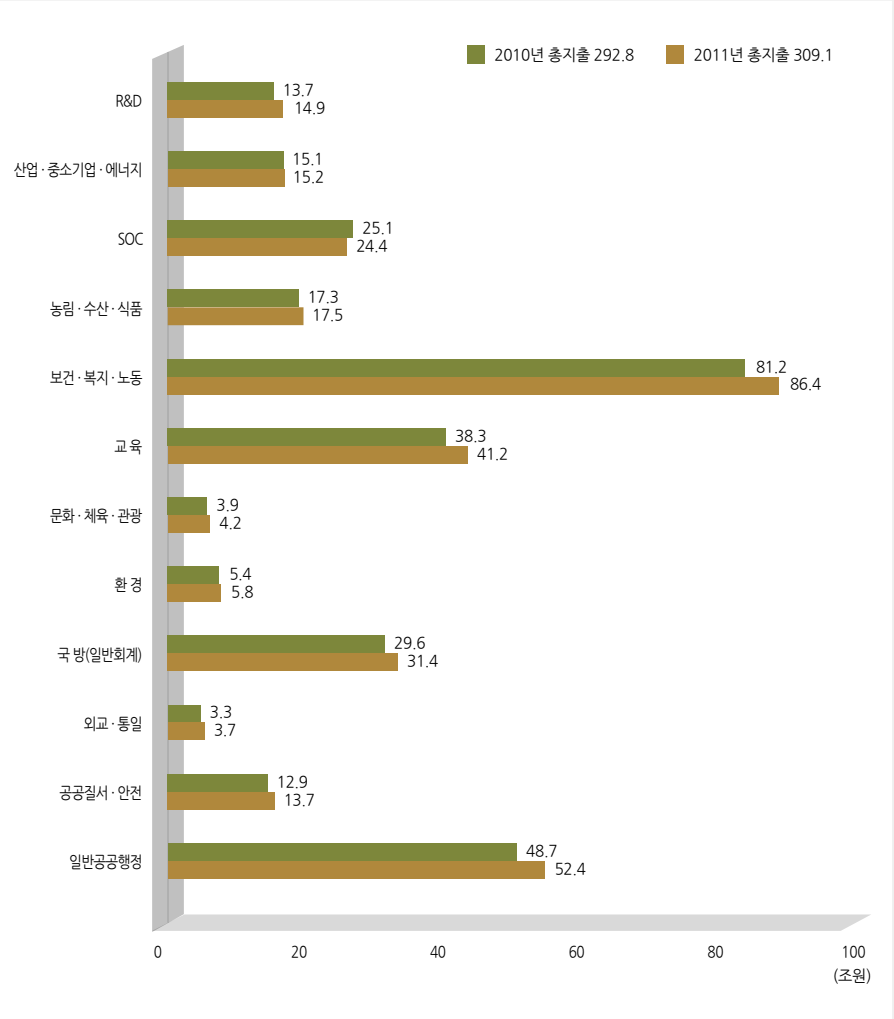

주 : 1. 총지출(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의 총계에서 계정간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제외하여 산출) 기준
2. R&D는 각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R&D 지출을 합계한 금액
자료 : 기획재정부

2.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200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0년간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6.2]와 같다. 대한민국 재정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의 경우 2014년도에 102.4조원에 이를 전망이며, 교육 분야의 경우 52.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OC 분야의 경우 2009년도에 재정 규모가 25.5조원으로 2005~2014년도 중 최대치이며 2014년도에는 23.5조원으로 그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정부 총지출의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0%이며, 재정규모가 큰 보건 · 복지 · 노동, 교육, 국방, SOC 4개 분야의 경우 각각 8.1%, 7.3%, 6.0%, 2.8%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2 2005~2014년도 재원배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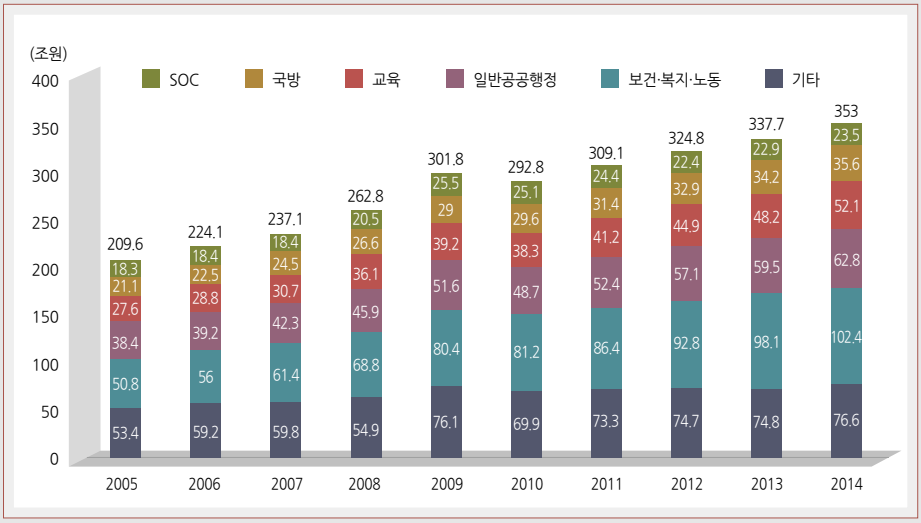

주 : 1. 2005~2010년은 추경 반영한 최종예산이며, 2011년은 국회확정예산 기준
2. 2012~2014년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서 제시된 전망치
3. 2008년 분야 · 부문 개편사항은 2008년 예산부터 반영
자료 : 기획재정부

2) 2012~2014년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서 제시된 전망치이다.

제2절 중기재정운용 방향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3] 상에서 제시된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창조적 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기술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통해 중장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문화콘텐츠·환경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의 고용창출기반을 확충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주거·의료 지원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촉진할 계획이다.

셋째는 G-20·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격을 제고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공적개발 원조 등 국제기여를 확충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며, 국방투자를 효율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위의 세 가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에 따라 R&D 분야의 2010~2014년 연평균 증가율이 8.7%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뒤를 이어 교육 분야가 8.0%, 외교 · 통일 분야가 7.7%로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뒤를 이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5%,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가 5.9%, 국방 분야가 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는 1.4%,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0.5%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SOC 분야는 12개 분야중 유일하게 연평균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2010년 5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수입은 세입 · 세외수입 · 기금수입으로, 지출은 2012년부터 의무 · 재량지출로 세분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도 전망과 함께 그 근거 및 관리계획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년도 계획 대비 변동사항 등에 대한 평가 · 분석 보고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표 6. 2 2010~2014년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 조원, %)

	2010년	2011년		2012	2013	2014	연평균 증가율
		정부안(B)	국회확정(C)				
1. R&D	13.7	14.9	14.9	16.6	18.1	19.1	8.7
2.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15.1	15.2	15.2	15.5	16.0	16.0	1.4
3. SOC	25.1	24.3	24.4	22.4	22.9	23.5	-1.7
4. 농림 · 수산 · 식품	17.3	17.7	17.6	18.2	16.9	17.6	0.5
5. 보건 · 복지 · 노동	81.2	86.3	86.4	92.8	98.1	102.4	5.9
6. 교 육	38.3	41.3	41.2	44.9	48.2	52.1	8.0
7. 문화 · 체육 · 관광	3.9	4.1	4.2	4.2	4.2	4.3	2.7
8. 환 경	5.4	5.7	5.8	5.7	5.7	6.0	2.4
9. 국 방(일반회계)	29.6	31.3	31.4	32.9	34.2	35.6	4.8
10. 외교 · 통일	3.3	3.7	3.7	3.9	4.2	4.5	7.7
11. 공공질서 · 안전	12.9	13.6	13.7	14.2	14.3	14.7	3.2
12. 일반공공행정	48.7	53.2	52.4	57.1	59.5	62.8	6.5
총 지 출	292.8	309.6	309.1	324.8	337.7	353.0	4.8

주 : 1. R&D는 각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R&D 지출을 집계
2. 연평균 증가율에서 2011년도는 국회확정예산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0

제3절 상임위원회별 재정규모

제1절과 제2절에서는 기존의 12개 분야별로 2011년 재원배분의 특성과 변화 추이,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은 12개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국회법」[4]에 따라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12개 분야에 따른 재정정보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 활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4) 제84조(예산안 · 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각 부처 단위로 국회 확정예산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재원 배분을 살펴보는 것은 국가 재정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에서는 2011년 국회 확정 예산을 상임위원회별로 분석 · 정리하고, 국회 심의 과정의 특징과 결과, 주요 현안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6. 3 상임위원회별 재정규모

(단위 : 억원,%)

분야	2010 (A)	2011 (B)	증감 (B-A)	증가율 (B-A)/A
운영	6,385	7,108	723	11.3
법제사법	38,204	41,070	2,838	7.4
정무	43,345	45,815	2,470	5.7
기획재정	202,849	211,957	9,108	4.5
외교통상통일	28,647	30,274	1,627	5.7
국방	310,586	332,052	21,466	6.9
행정안전	493,631	529,303	35,672	7.2
교육과학기술	451,820	484,336	32,516	7.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42,311	47,453	5,142	12.2
농림수산식품	172,074	176,303	4,229	2.5
지식경제	217,802	220,971	3,169	1.5
보건복지	312,635	337,993	25,358	8.1
환경노동	177,527	184,708	7,181	4.0
국토해양	426,538	432,242	6,357	1.5
여성가족	3,089	4,265	1,176	38.1
정보	4,837	4,964	127	2.6

주 : 1. 총지출(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의 총계에서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제외) 기준
2. 정보위원회는 총계기준
자료 : 2010년도 총지출은 각 부처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1년도 총지출은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각 상임위원회별 총지출 기준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표 6.3]과 같다. 2011년도 소관 부처의 총지출 규모가 가장 큰 위원회는 행전안전위원회로 52조 9,303억원이며, 뒤를 이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48조 4,336억원, 국토해양위원회 43조 2,242억원의 재정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규모가 작은 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회로 4,265억원이다.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소관 부처의 총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위원회는 3조 5,672억원이 증가한 행정안전위원회이며, 정보위원회는 127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작게 증가하였다. 2010년도 대비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한 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회로 38.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지식경제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도 정부 총지출은 309.1조원이며 2010년도 대비 5.5% 증가하였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한 위원회는 운영, 법제사법, 정무 등 10개 위원회이며,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인 위원회는 기획재정,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등 6개 위원회이다.

제1절 재정 현황

1. 개관

2011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4조 1,070억원으로 2010년 대비 2,866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이다.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하는 각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가 2010년 대비 2,092억원(8.9%) 증가한 2조 5,542억원, 법제처 244억원(10.9% 증가), 감사원 1,010억원(11.5% 증가), 헌법재판소 315억원(21.6% 증가), 대법원 1조 3,959억원(4.4% 증가)이다.

2011년도 법제사법 위원회 소관 총지출
4.1조원

표 7. 1 2011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2010(A)	2011(B)	증감(B-A)	증감률 [(B-A)/A]
법제사법 분야	38,204	41,070	2,866	7.5
총지출 대비 비중	1.2	1.3		
법무부 (비중)	23,450 (61.4)	25,542 (62.2)	2,092	8.9
법제처 (비중)	220 (0.6)	244 (0.6)	24	10.9
감사원 (비중)	906 (2.4)	1,010 (2.5)	104	11.5
헌법재판소 (비중)	259 (0.7)	315 (0.8)	56	21.6
대법원 (비중)	13,369 (34.5)	13,959 (34)	590	4.4

주 :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 2010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2010. 10), 2011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총지출 4조 1,070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 99.7%이며,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은 33.7%이다.

표 7. 2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 억원, %)

	총지출 (A)	의무 지출 (B)	재량지출(A-B)				
			경직성 재량지출				비경직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법제사법위원회	41,070 (100)	134 (0.3)	24,701	2,134	257	27,092 (66)	13,844 (33.7)
법무부	25,542	134	15,395	1,252	-	16,647	8,761
법제처	244	-	118	31	-	149	95
감사원	1,010	-	654	100	-	754	256
헌법재판소	315	-	169	54	-	223	92
대법원	13,959	-	8,365	697	257	9,319	4,640

주 : 괄호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총지출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법무부

2011년도 법무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으로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400억원(2.3%) 증액되는 등 총 41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가 336억원(72%) 증액되는 등 총 2,086억원(8.9%)이 증액되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11년에 신설된 기금으로 624억원이 편성되었다. 신규사업으로는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10억원),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8억 9,900만원), 부산 솔로몬 로파크(16억 8,900만원) 등이 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운영(97억 4,100만원, 110.5% 증액), 검찰청 시설운영(80억 7,300만원, 44.5%), 검찰 국외훈련 및 국제형사 협력지원(45억 4,200만원, 75.5%)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공소유지(12억 8,400만원, 17.4%), 검찰업무정보화(9억 2,300만원, 3.3%) 등이 있다.

표 7. 3 법무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6,117	17,651	18,052	400	2.3
교도작업 특별회계	457	420	430	10	2.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	624	624	순증
합 계	16,574	18,071	19,106	1,034	5.7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7. 4 법무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1,836	22,565	24,304	1,739	7.7
교도작업 특별회계	344	420	430	10	2.4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	467	804	336	7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	624	624	순증
합 계	22,180	23,452	26,162	2,709	11.6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법제처

2011년도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원(10.9%) 증액된 244억원이 편성되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법제정비사업(6억 3,000만원, 203.2% 증액), 법제전문인력육성사업(3억 5,600만원, 174.5% 증액) 등이 있다.

표 7. 5 법제처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04	220	244	24	10.9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감사원

2011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300만원(20.8%) 증액된 3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3억 5,900만원(11.4%) 증액된 1,010억 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1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주요 예산으로는 제1별관 증축공사 건설비 31억 1,600만원, 본관 등 내부 수선공사비 4억 5,000만원,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12억 4,000만원 등이 있다.

표 7. 6 감사원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7	3	3.7	0.6	20.8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7. 7 감사원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821	906	1,010	104	11.4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헌법재판소

2011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5억 1,800만원(21.3%) 증액된 31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신규사업으로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연구·교육 기능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사업에 17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7. 8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27.8	259.3	314.5	55.2	21.3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대법원

2011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20억 3,600만원(11.3%) 증액된 6,11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13억 6,400만원(5.3%) 증액된 1조 4,242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사법업무전산화(84억 100만원, 22.9% 증액), 사법운영지원(58억 8,100만원, 18.8% 증액), 법원시설확충(36억 7,500만원, 4% 증액) 등이 있다.

표 7. 9 대법원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757	3,195	3,713	517	16.2
등기특별회계	2,078	2,298	2,401	103	4.5
합 계	4,835	5,493	6,114	620	11.3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7. 10 대법원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0,472	11,231	11,842	611	5.4
등기특별회계	1,926	2,298	2,401	103	4.5
합 계	12,398	13,529	14,242	714	5.3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법제사법위원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17일에 걸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1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소수의견으로는 마산지청 개청 준비 비용 관련하여 마산지청 관사임차료가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법무부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304.1억원

법무부는 세출예산의 경우 예비심사결과 37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372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확정예산에는 감액은 동일하게 반영된 반면, 증액은 67억 3,900만원만 이뤄졌다. 법무부 전체 인건비가 집행실적 부진을 이유로 350억원 감액되었고, 검찰국 특수활동비 1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검찰 수사활동지원비가 10억원 증액되었으며, 마산지청 개청을 위하여 검찰시설운영사업이 40억원 증액되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수정없이 정부안대로 확정되었다.

법제처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2.2억원

법제처 세출예산은 예비심사결과 5억원이 증액되었고, 2억원이 감액되었으나, 확정예산에는 증액은 반영되지 않고, 감액은 2억 2,000만원이 이뤄졌다. 감액사유는 홍보비 예산의 비중이 타 부처에 비해 높으므로 홍보비 예산 중 공익광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감사원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0.5억원

감사원은 예비심사결과 증액 2억원, 감액 1억원이 이뤄졌으나, 확정예산에는 감액은 동일하게 1억원이 이뤄진 반면, 증액은 1억 5,000만원만 반영되었다. 예비심사결과 감사활동경비 중 특수활동비를 1억원 삭감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2억원 증액하였으나, 확정예산에서는 특수활동비를 동일 규모로 삭감하되, 업무추진비를 1억 5,000만원만 증액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0.7억원

헌법재판소는 예비심사결과 증액 2,000만원, 감액 5,800만원이 이뤄졌으나, 확정예산에는 증액은 반영되지 않고, 감액은 7,100만원 이뤄졌다. 상임위에서는 해외연수에 있어서 헌법연구관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일반직원의 해외실무연수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예결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확정예산에서 추가로 감액된 1,300만원은 본부기본경비가 감액된 것이다.

대법원은 예비심사결과 17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10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확정

예산에는 감액은 동일하게 이뤄진 반면, 증액은 72억원만 반영되었다. 상임위원회는 국선변호료 지원 15억원 등 9개 사업을 증액하였으나, 확정예산에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증축예산만 반영된 것이다. 감액은 2009년도 인건비 불용액이 309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인건비를 100억원 삭감하였다.

대법원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28억원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1.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11년 신설되는 기금으로서 법무부,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등 3개부처가 사업을 수행한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벌금 수납액, 구상금,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기부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구성되어 2011년 지출계획은 623억 8,100만원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사업계획을 보면 과거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일반회계 및 여성발전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기금으로 이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수이고, 기금이 신설되면서 편성된 신규 사업은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매년 벌금의 4%이상이 수입으로 계상되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사업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출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2011년도 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던 여유자금(113억 2,800만원, 기금 총 지출액의 18.2%)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유자금을 75억 500만원 감액하는 대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58억 5,100만원을 증액하고,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지원에 16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는 여유자금을 5억 1,300만원, 가족폭력피해자가족지원강화를 1억 7,700만원 줄이고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지원을 계획안보다 6억 9,000만원 증액하였다.

표 7. 11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0예산	2011예산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	4,326	1,961
	형사조정활성화	654	2,742
	범죄피해자구조금	3,268	9,305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	신규	200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진술 전문가 양성 및 배치	신규	800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1,535	1,535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지원 강화	신규	3,54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9,033	18,76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10,146	11,368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지원	585	1,285

자료 :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주로 정보활동 수행자의 교통비·식비·숙박비, 정보제공자에 대한 사례금, 기타 국가기밀의 보안유지와 사업내용이 노출될 경우 정책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가 포함된다. 특수활동비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대통령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전체 특수활동비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편성 단계에서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될 뿐만 아니라, 집행이 이뤄진 이후에도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감사원은 2006년 9월 국회의 감사청구에 의해 국정홍보처 등 4개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특수활동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등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구체적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어 확인이 곤란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 부처의 경우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으로 편성하여도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하여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하고 있다.

국회는 2008년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특수활동비는 일체의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특수활동비의 적정규모를 판단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문제

를 지적하였으며, 각 중앙관서에 대해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을 의결하였다.

국회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법무부 예산 중 검찰의 특수활동비 10억원 감액과 연계하여 검사수사활동지원경비 10억원과 부수사활동비 5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고,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감사활동경비 1.5억원을 증액함으로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2. 대법원

공탁출연금의 예산외 운용

법인형태의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공탁법」을 근거로 공탁금의 보관 및 관리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의 일부를 출연받아 운용하고 있는데, 2011년도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사업비 예산은 549억 1,000만원이다. 공탁출연금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탁제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므로 국가 재정내에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률에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한다는 명시적 규정 없이 예산외로 운용하고 있다. 공탁금관리위원회는 법인이지만 공탁출연금의 운용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통하여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되는 사항이며, 법원행정처장이 공탁금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지휘·감독권 및 회계검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예산 기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사업비의 88.1%가 법원행정처에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액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고 있다.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경비로서, 경찰청이 2011년도 예산에 가장 많은 금액을 편성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무부, 대법원 등에도 편성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지침'에 특정업무경비 편성이 가능한 업무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일부부처의 경우 수사,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기획재정부가 정한 한도액(30만원)이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의 경우 '재판부 활동비', '판례심사활동비' 등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특정업무경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심의 일정상 논의하지 못하였다.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1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총지출
4.6조원

2011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4조 5,815억원으로 2010년 대비 5.7%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이다. 이를 정무위원회 소관 각 부처별로 보면, 국무총리실이 2010년 대비 5.2% 증가한 4,879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788억원(6.8% 증가), 금융위원회가 1,031억원(28.0% 감소), 국민권익위원회가 613억원(0.8%증가), 국가보훈처가 3조 8,504억원(7.2% 증가)이다.

표 8. 1 2011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2010(A)	2011(B)	증감(B-A)	증감률 [(B-A)/A]
정무위원회	43,345	45,815	2,470	5.7
총지출 대비 비중	1.5	1.5	-	-
국무총리실 (비중)	4,636 (10.7)	4,879 (10.6)	243	5.2
공정거래위원회 (비중)	738 (1.7)	788 (1.7)	50	6.8
금융위원회 (비중)	1,431 (3.3)	1,031 (2.3)	-400	-28.0
국민권익위원회 (비중)	608 (1.4)	613 (1.3)	5	0.8
국가보훈처 (비중)	35,932 (82.9)	38,504 (84.0)	2,572	7.2

주 :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정무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 2010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2010. 10), 2011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무위원회 소관 총지출 4조 5,815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9.9%, 40.1%로 의무지출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 총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예산 중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의무지출 성격의 경비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의 총지출에서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은 35.5%로 나타난다.

표 8. 2 정무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 억원, %)

	총지출	의무지출	재량지출(A-B)				
			경직성 재량지출				비경직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정무위원회	45,815 (100)	27,456 (59.9)	1,748 (3.8)	464 (1.0)	-	2,212 (4.8)	16,147 (35.2)
국무총리실	4,879	-	331	103	-	434	4,445
공정거래위원회	788	-	308	55	-	363	425
금융위원회	1,031	637	164	75	-	239	155
국민권익위원회	613	-	295	124	-	419	194
국가보훈처	38,504	26,819	650	107	-	757	10,928

주 : 괄호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총지출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정무위원회 소관 재정은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총 5개 기관에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11개의 기금에 편성되어 있다.

정무위원회 소관 재정을 분야·부문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4개 분야, 국정운영, 재정금융, 일반행정, 보훈, 농업농촌, 산업금융지원, 주택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총리실

2011년도 국무총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모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세출예산은 2010년에 비해 244억원(5.3%) 증액된 4,879억원이 확정되었다.

표 8. 3 국무총리실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901	4,535	4,772	236	5.2
에특회계	95	100	108	8	7.6
합 계	3,996	4,636	4,879	244	5.3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1년도 국무총리실 전체 예산 중 85.9%인 4,190억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정부출연금이며, 국무총리실 고유의 일반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14.1%인 688억원에 불과하다.

2011년도 국무총리실 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국정의제 및 이슈에 대한 기획·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홍보사업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사업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다.

표 8. 4 2011년도 국무총리실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 관리	-	391	391	순증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	535	535	순증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201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0년도 예산 대비 348억원(9.3%) 증가한 4,082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대부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으로 구성된다.

표 8. 5 201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121	3,734	4,082	348	9.3

자료 : 201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 세출예산 개요, 2011. 1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788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 대비 50억원(6.8%)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소비자종합정보망 구축, 디지털 조사센터 구축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2010년도 대비 18억원(52.5%)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표 8. 6 201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일반회계	734	738	788	50	6.8

자료 : 201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 세출예산 개요, 2011. 1

한편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문화 조성 및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억 2,400만원이 편성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이 있으며, 디지털 조사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기존에 정보화 기반확충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도 예산부터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었다.

표 8. 7 201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규사업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	-	124	124	순증
디지털 조사센터 구축사업	-	909	909	순증

자료 : 2011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 세출예산 개요, 2011. 1

금융위원회

2011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용되며, 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2%(15억원) 축소된 107억원이며,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금 및 몰수금 수입은 전년 대비 14억원 축소된 95억원이다.

표 8. 8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일반회계	89	122	107	-15	-12.2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5%(1조 5,898억원) 감소한 1조 5,556억원이다. 세출예산은 금융정책지원, 금융서비스, 금융정보분석, 금융행정지원,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회계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의 7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규모가 전년 대비 1조 5,506억원 감액되었고, 2010년 예산에 각각 100억원, 300억원 반영되었던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예산이 2011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표 8. 9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8,838	31,464	15,556	-15,898	-50.5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금융위원회 소관 9개 기금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전년보다 운용규모가 증가하였으며, 공적자금상환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은 전년보다 운용규모가 줄어들었다. 특히,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87.2% 축소된 규모이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39.2%, 구조조정기금은 47.6% 축소된 규모이다.

표 8. 10 금융위원회 기금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계획(A)	2011 계획(B)	증감	
				(B-A)	(B-A)/A
공적자금상환기금	108,941	193,291	24,685	-168,606	-87.2
기술신용보증기금	32,668	20,821	25,067	4,246	20.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202	15,736	24,406	8,670	55.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560	1,569	1,542	-27	-1.7
신용보증기금	63,982	42,206	46,245	4,039	9.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9,735	132,668	80,691	-51,977	-39.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2,962	14,577	14,709	132	0.9
부실채권정리기금	14,386	21,899	28,914	7,015	32.0
구조조정기금	11,604	106,416	55,751	-50,665	-47.6
합 계	366,040	549,183	302,010	-247,172	-45

주 : 2010 계획은 당초 계획 기준임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금융위원회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1조 4,494억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637억원을 각각 출연하고 있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외에도 우체국예금특별회계(445억원)·우체국보험특별회계(215억원)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전입금(9,500억원) 등을 받아,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 상환(2조 4,685억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림 8. 1 2011년도 금융위원회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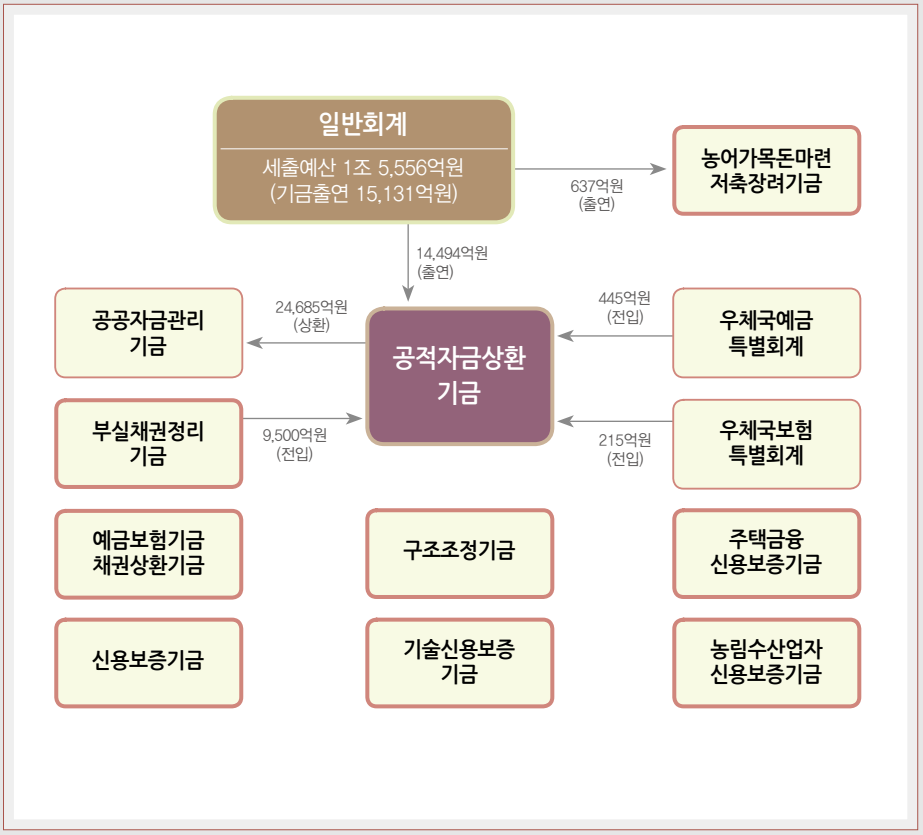

주 : 1. 2011년도 예산 기준
2.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 · 기금은 굵은 선으로 표시

국민권익위원회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용되며 특별회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원 증액(0.8%)된 613억원이다.

표 8. 11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일반회계	555	608	613	5	0.8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민권익위원회 예산구조를 살펴보면 조직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직성 예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는 294억 9,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경비는 124억 3,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3%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2011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운용된다. 2011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 대비 2,553억원 증가한(7.4%) 3조 7,233억원이다.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의 증액은 보상금 단가 인상,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각종 보훈급여금의 단가가 2010년에 비하여 인상된 것에 기인한다.

표 8. 12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1,834	34,325	36,878	2,553	7.4
에너지	341	342	342	-	-
광역지역	11	12	13	1	5.8
합 계	32,186	34,679	37,233	2,554	7.4

자료 : 2011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 · 세출예산 개요, 2011. 1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3조 7,232억원 중 보훈보상금, 의료지원비, 교육지원비, 인건비 등 법정 의무지출 및 경직적 성격의 경비가 3조 4,374억원으로서 9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재량적 사업의 경우도 의료시설 건립, 독립기념관 운영 등 대부분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공훈선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처 소관의 기금은 보훈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등 2개가 있다. 보훈기금의 2011년도 계획액은 총 6,519억원으로 2010년 계획에 비해 844억원(14.9%) 증가하였고,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508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109억원(27.3%) 증가하였다.

표 8. 13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계획 총괄

(단위 : 억원, %)

기금	2009 결산	2010 계획(A)	2011 계획(B)	증감	
				(B-A)	(B-A)/A
보훈기금	3,687	5,675	6,519	844	14.9
순애기금	212	399	508	109	27.3
합 계	3,899	6,074	7,027	953	15.7

자료 : 2011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 · 세출예산 개요, 2011. 1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 11월 8일부터 24일까지 16일에 걸쳐서 정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11월 24일 정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다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소관 공직복무관리관실 운영예산과 국가보훈처 소관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 예산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우선 두 사업을 제외한 예산을 합의 처리한 후, 이견이 발생한 두 건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표결로 처리하였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이 크게 인상되었다는 점이다. 2009년도 결산 심의 시 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감안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예산심의 전에도 법률안 및 결의안 형태로 참전명예수당 인상 논

의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월 9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월 1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참전명예수당 예산을 840억원 증액하였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운영을 위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다. 동시에,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수행하는 감찰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지 않도록 하고, 운영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그 운영에 관한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다.

국무총리실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36.8억원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회 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국무총리실은 11억원 증액되고 47억 7,900만원 감액되어 확정예산에는 36억 7,900만원 순감하였다.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2011년에 신규로 편성된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 관리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중복 등을 사유로 1억 6,000만원 감액되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편성된 협동연구비 예산이 22억 3,000만원 감액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0.6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2억 6,400만원 증액되고, 3억 2,800만원 감액되어 6,400만원 순감하였다. 이는 2011년에 신규로 편성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 중 상생협력 워크샵 개최 등을 위한 예산 3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4,004억원
· 기금운용규모 5,717억원

금융위원회의 경우 먼저 세출예산은 당초 예비심사결과 감액규모인 4억 6,700만원보다 4,000억 1,900만원이 더 감액되었는바, 이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이 4000억 400만원 추가로 감액되었고, '금융관련국제협력'사업이 2009년 예산 집행실적

표 8. 14 정무위원회 소관 2011년 예산안 주요사업 심의내역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국무총리실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 관리	551	551 (-160)	391 (-16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비	14,230	12,000 (-2,230)	12,000 (-2,230)
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452	124 (-328)	124 (-328)
금융위	일반회계에서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전출금	1,849,357	1,849,357 (-)	1,449,353 (-400,004)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253,400	505,407 (252,007)	261,800 (84,000)
	무공영예수당	54,000	83,520 (29,520)	64,800 (10,800)

자료 : 정무위원회 2011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500만원 추가로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965.3억원

국가보훈처의 경우 965억 3,000만원이 순증되었다. 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단가를 인상함에 따라 해당 예산 840억원이 증가되었고, 보훈급여금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 역시 인상되어 108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1.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 사업

공직복무관리 사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는 2010년도 예산 대비 3,500만원(3.9%) 감소한 8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기능과 조직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제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추진하였고, 그 명칭을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변경하였다.

2011년도 예산 심사 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부당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직규모와 예산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공직복무관리관실 예산 중 18.2%에 해당하는 1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직복무관리관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기관의 인력 파견 금지, 운영실적의 국회 보고, 업무에 대한 감독 및 통제장치 마련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정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공직복무관리관실 운영예산에서 1억 5,600만원 감액된 7억 100만원의 예산을 의결하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사업

2011년도 확정예산을 기준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4,190억 4,900만원으로, 국무총리실 전체 예산 중 85.9%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지원되는 정부출연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동연구사업은 연구회가 주관하는 사업과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2011년도 예산안에는 연구회 주관 협동연구사업으로 2010년도 대비 41억 8,000만원(41.6%)이 증액된 14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연구기관 주관 협동연구사업은 전년 대비 100만원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연구회 주관 협동연구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22억 3,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를 반영하였다.

둘째, 한국노동연구원의 정상화 문제가 논의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한국노동연구원 지원예산은 105억 6,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6억 3,400만원(30.5%)이 감액되었다.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은 대부분의 정부수탁용역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의뢰를 받고 있으나, 2010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책용역사업을 받지 못함에 따라 자체수입 실적미달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원장선임 등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하여 적정한 수탁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예산안 심사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셋째,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에 정부출연금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부출연금은 연구기관 고유의 연구과제에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개별 부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구과제는 개별 부처의 정책연구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평가사업,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사업 및 재정소요추계사업 등 기획재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국무총리실 소관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동 사업들은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 관리사업

동 사업은 정부정책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국정 홍보의 종합·조율·기획 기능 등을 국무총리실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5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동 사업의 세부내용과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이 수

행하는 사업의 세부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정홍보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실에 별도의 사업을 신설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사업내용 중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사업"(1억원)과 "주요 국정현안 여론조사 사업(6,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 국정홍보 및 여론조사 기능은 원칙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에 부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무위원회에서는 동 사업 중 중복예산으로 비판받은 1억 6,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유사한 이유로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1억 6,000만원 감액된 3억 9,100만원으로 확정하였다.

2. 금융위원회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모기지론 이차보전'사업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대하여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를 0.5~1%p 인하하여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1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47억원이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 예결위 예산안 검토보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 등에서 집행실적 저조 문제와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가 지적되었다.

우선 집행실적 문제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예산액 39억 300만원 중 27억 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9.4%에 그쳤고, 2010년에도 10월 현재까지 집행액이 27억 600만원, 12월 말까지의 집행 추정액은 37억 6,2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국민주택기금(국토해양부 소관)이 수행하고 있는 '주택자금·전세자금 융자'사업과 동일하게 부부합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m2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원을 하고 있어, 신청대상 및 주택의 범위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표 8. 15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과 근로자 ·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비교

구 분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주택구입 · 전세자금 융자사업 (근로자 ·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상여금	포함	제외
대출금리	5.3~5.8%(20년만기 기준)	5.2%(정부 고시에 따라 변동)
기타 사후관리	주택 추가취득 및 소득증가시 기한이익 상실 또는 가산금리	사후조치 없음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2010. 5

참고로, 국회는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동 사업의 사업중복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청대상을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현실에서 3자녀이상의 다자녀 가구나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 소득기준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사업과 통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 부실채권정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기금은 보유자산 매각과 여유자금 회수 등으로 총 2조 8,914억원을 조달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5,500억원을 전입하고, 금융기관에 900억원을 반환한 뒤 기말 여유자금으로 1조 9,415억원을 보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2011년도 여유자금운용 예상수익률이 3.26%로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2011년도 예상 국채이자율(1분기 5.05%, 2분기 4.88%, 3,4분기 6%)보다 낮고, 공적자금상환기금의 2011년도 국채 이자 부담액이 2조 4,6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채 조기상환을 통한 이자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기금의 기말여유자금 보유규모를 축소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1)]

1) 「2011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p122, 2010.11,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에 따라 예비심사에서 '통화금융기관예치'사업이 4,654억원 감액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이 4,000억원, 금융기관반환금이 654억원 증액되었으며,[2]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 증액을 반영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이 4,000억원 증액되었다.

예결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 목적이 잔여자산의 회수 극대화를 통한 공적자금 상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말여유자금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바, 확정예산에는 예비심사결과와 동일하게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이 4,000억원, 금융기관반환금이 654억원 증액되었다.

다만, 확정예산에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4,000억원 증액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은 증액된 반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금이 4,000억원 추가로 감액됨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수입규모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보호사업

'금융소비자 보호'사업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금융소비교육 추진을 목표로 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하여 유관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예산에는 1억 2,8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금융소비자 관련 현황조사 실시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함에 따라 조사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다.

예결위에서도 동 사업의 세부내용은 이미 소비자단체와 기업 및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있고, 기존의 '금융정책알리기'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감액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확정예산은 예비심사결과와 동일하게 4,000만원이 삭감되었다.

기금채권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 중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은 국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채권의 발행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92조[3]에 따라 미리 국가보증동의안을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 있다.

---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금융기관들은 기금 잔여재산을 86:14의 비율로 반환받도록 되어있다.

3)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2010년 11월 11일 '201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2011년도에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의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액은 1조 5,000억원 이내이고,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액은 5조원 이내이다.

두 동의안은 2010년 11월 26일, 제294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2011년 2월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4)]

3. 국가보훈처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중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는 참전명예수당을 2010년 수준인 월 9만원으로 동결하였고, 이에 대한 예산 2,520억 800만원이 반영되었다.

그런데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참전유공자의 국가 공헌과 희생에 비추어 월 9만원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견이 법률안 및 결의안 형태로 제출되었다.

표 8. 16 참전명예수당 인상논의

제안자	제안형태	인상폭
이회창의원	법률 개정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지급
김영선의원	법률 개정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지급
임영호의원	결의안	월 15만원 이상으로 인상
이인기의원	결의안	월 20만원 이상으로 인상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부처별 분석 Ⅲ」, 2010. 11

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2011년 2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9만원을 인상하여 월 18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2,52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현실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월 3만원을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840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보훈급여금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유사한 성격인 무공영예수당 지급단가 역시 3만원 인상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08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다.

4.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

동 사업은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상생협약 이행평가 지원(1억 2,400만원, 상생협력 워크샵 개최(3,000만원),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TV광고비(2억 9,800만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로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워크샵 개최, TV 광고 등의 홍보사업으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특히, TV 광고비 예산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조성은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을 주된 정책 대상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TV 광고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워크샵의 경우도 협약체결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참석인원 200여명 규모의 일회성 행사라는 점에서 상생협력 문화 조성 효과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도 대두되었다.

표 8.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 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예산안	2011 확정예산	증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452	124	-328
상생협약 이행평가 관련 만족도 조사	124	124	-
상생협력 워크샵	30	-	-30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TV광고	298	-	-298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TV 광고비 예산과 워크샵 예산을 감액조정하였고, 예산결산특별원회 역시 상임위 조정안을 수용하여 동 사업 예산을 당초보다 3억 2,800만원 감액된 1억 2,400만원으로 의결하였다.

5.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 운영사업

110 콜센터는 국민이 단일 전화번호(110)로 정부 민원을 상담·안내받을 수 있도록 구축한 정부대표 콜센터로, 그 운영을 위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54억 4,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국회 예산심사 시 110콜센터 이외에도 정부 부처가 개별적 필요에 따라 별도의 콜센터를 구축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110 콜센터외에도 교육부, 국세청, 기상청 등의 정부기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콜센터는 총 30개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110콜센터가 개소된 이후에도 별도의 콜센터가 신규 개설되는 등 각종 민원 콜센터가 난립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110콜센터의 응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유사한 서비스인 서울시 120콜센터 등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콜센터의 응대율과 만족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10콜센터 위탁용역을 4년간 업체변경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리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기관 콜센터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과 “110콜센터 용역업체 선정기준과 입찰자격 요건 등을 재검토하여 콜센터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다.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지출
21.2조원

201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21조 1,957억원으로 2010년 대비 4.5%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이다. 이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각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2010년 대비 5.5% 증가한 18조 9,199억원, 국세청이 1조 4,631억원(1.9% 증가), 관세청이 4,202억원(3.9% 증가), 조달청이 1,123억원(2.9% 증가), 통계청이 2,802억원(31.6% 감소)이다.

표 9. 1 201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2010(A)	2011(B)	증감(B-A)	증감률 [(B-A)/A]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849	211,957	9,108	4.5
총지출 대비 비중	6.9	6.9	-	
기획재정부 (비중)	179,264 (88.4)	189,199 (89.3)	9,935	5.5
국세청 (비중)	14,356 (7.1)	14,631 (6.9)	275	1.9
관세청 (비중)	4,044 (2.0)	4,202 (2.0)	158	3.9
조달청 (비중)	1,091 (0.5)	1,123 (0.5)	32	2.9
통계청 (비중)	4,094 (2.0)	2,802 (1.3)	-1,292	-31.6

주 :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 2010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2010. 10), 2011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지출 21조 1,957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3.4%, 36.6%이며,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은 29.0%이다. 의무지출 비중이 큰 이유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상환 규모가 총지출 기준 13조 1,935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며, 그 밖에 복권기금의 법정배분금(1,845억원), 국세청의 납세조합법정교부금(18억원) 등이 의무지출로 분류된다.

표 9. 2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 억원, %)

	총지출 (A)	의무지출 (B)	재량지출(A-B)				
			경직성 재량지출				비경직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기획재정 위원회 소관	211,957 (100)	134,493 (63.4)	13,987 (6.6)	2,100 (1.0)	- -	16,087 (7.6)	61,377 (29.0)
기획재정부	189,199	134,475	655	171	-	826	54,446
국세청	14,631	18	9,270	1,397	-	10,667	3,946
관세청	4,202	-	2,407	262	-	2,669	1,533
조달청	1,123	-	542	123	-	665	458
통계청	2,802	-	1,113	147		1,260	1,542

주 : 괄호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총지출에서 해당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5개 부처가 있으며, 기획재정부 소관에 일반회계, 1개의 특별회계 및 5개의 기금이 있고, 국세청·관세청·통계청 소관에 각각 일반회계 및 1개의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으며, 조달청 소관에 2개의 특별회계가 있다.

기획재정부

2011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1개의 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개의 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복권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4조 12억원(국세수입 180조 7,656억원, 세외수입 23조 2,356억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조 4,077억원으로 총 213조 4,090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3%(8조 7,35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표 9. 3 2011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993,178	1,953,663	2,040,012	86,349	4.4
광특회계	92,019	93,076	94,077	1,001	1.1
합 계	2,085,197	2,046,739	2,134,090	87,350	4.3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조 8,603억원으로 전년 대비 9.8%(1조 4,145억원) 증가하였다.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산이 전년 대비 13.1%(8,485억원) 증가하는 등 법정성격 사업의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11.9%(8,669억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표 9. 4 2011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19,504	144,458	158,603	14,145	9.8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의 운용규모는 152조 26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6%(80조 4,449억원) 감소하였다. 주된 감소 이유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규모가 전년 대비 각각 28.4%(44조 78억원), 50.2%(36조 8,432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주요 감소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국공채 인수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이 전년 대비 전액 감소하였다.

표 9. 5 2011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	1,469,428	1,551,623	1,111,545	-440,078	-28.4
외국환평형기금	1,805,342	734,161	365,729	-368,432	-50.2
복권기금	29,113	30,335	33,413	3,078	10.1
대외경제협력기금	8,095	6,716	7,375	659	9.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848	1,875	2,198	323	17.2
합 계	3,314,827	2,324,709	1,520,260	-804,449	-34.6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1년도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수의 사회복지사업이 신규 편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복권기금의 경우 취약계층지원사업으로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지원',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구축', '교정기관 시설관리인 고용 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경우 '민간보육시설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표 9. 6 2011년도 신규 편성된 기획재정부 소관 사회복지사업

(단위 : 억원, %)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복권기금운영 취약계층지원(복권기금)]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	1,200	1,200	순증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지원	-	25	25	순증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구축	-	30	30	순증
교정기관 시설관리인 고용 지원	-	6	6	순증
[사회복지-보육 · 가족및여성-민간보육시설지원(공공자금관리기금)]				
민간보육시설지원	-	300	300	순증

주 : [ ]는 분야-부문-프로그램-순서로 기술하였음
자료 :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 복권기금 운용계획」 및 「201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2011.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획재정부 재정구조의 특징은 국세 및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타부처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재원을 배분한다는 것이며, 타부처의 여유자금을 예수받아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점 또한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관에는 세입예산만 계상되어 있다.

그림 9. 1 기획재정부 재정구조–2011년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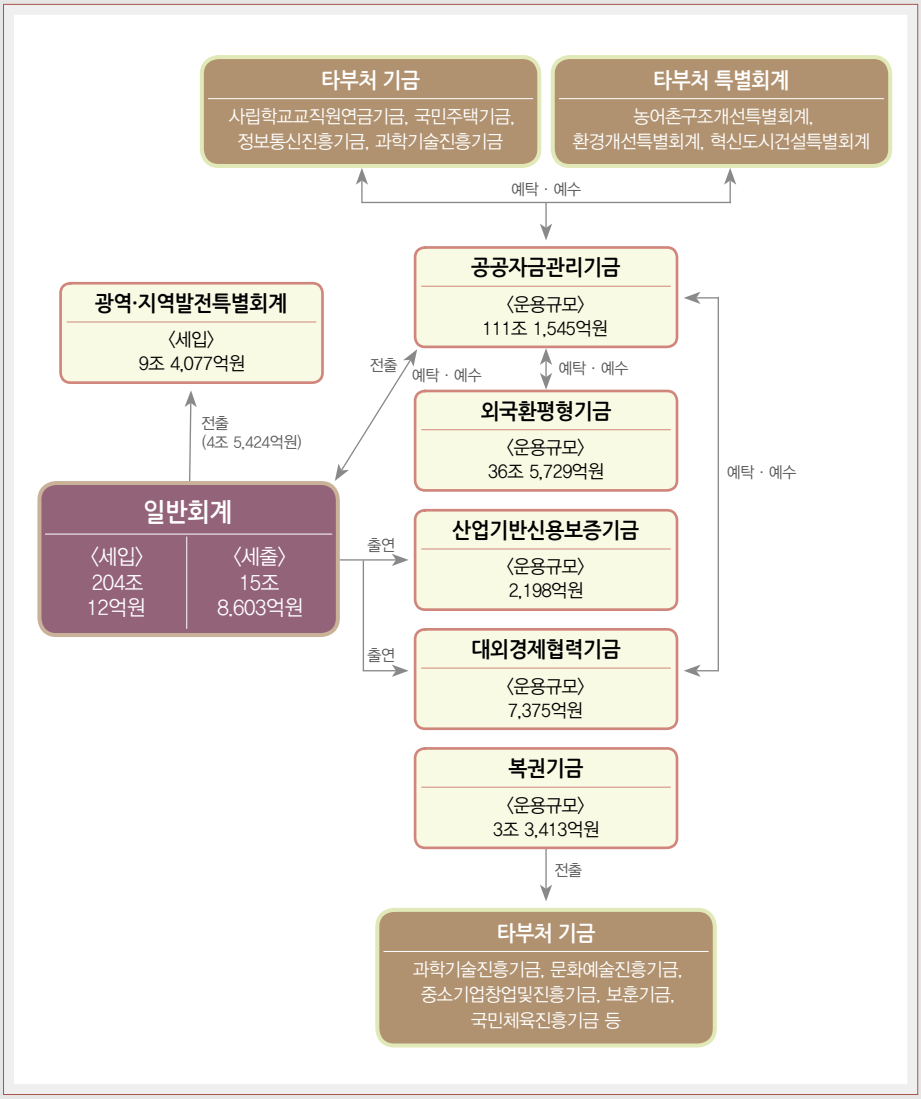

주 : 2011년도 예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국세청

2011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1조 4,145억원) 대비 0.5% 증가한 1조 4,212억원이고, 혁신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211억원) 대비 98.8% 증가한 419억원이다.

표 9. 7 2011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 ·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세입	일반회계	9,172	6,748	5,504	-1,244	-18.4
세출	일반회계 세출	13,007	14,145	14,212	67	0.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2	211	419	208	98.8
	세출 총계	13,007	14,356	14,631	275	1.9

자료 : 국세청, 「2011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 개요」, 2011.1

분야·부문별 현황을 보면, 국세청 세출예산은 모두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재정·금융부문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9,290억원)와 기본경비(1,397억원) 등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5.2%에 달한다.

표 9. 8 2011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의 분야 · 부문별 현황

(단위: 억원, %)

분야	부문	회계, 기금	2009 결산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감률 (B-A)/A
일반공공행정	재정 · 금융	일반회계	13,007	14,145	14,212	0.5
		혁신도시특별회계	0.2	211	419	98.8
합 계			13,007	14,356	14,631	1.9

자료 : 국세청, 「2011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 개요」, 2011.1

관세청

2011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 예산액이 총 218억원으로 전년(202억원) 대비 8.0% 증액되었다. 세입 증액은 주로 벌금과 과태료 세입이 전년 대비 26.3%(18억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모두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재정·금융 부문에 속해 있는데,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이 4,202억원으로 2010년(4,044억원) 대비 3.9%(158억원) 증액되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FTA 체결 및 이행지원과 원산지업무위탁 등을 위하여 전년(33억원) 대비 66.1%(22억원) 증액된 FTA이행지원 사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 확산을 위하여 전년(5억원) 대비 186.5%(9억원) 증액된 AEO제도 추진 지원사업 등이 있다.

표 9. 9 2011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 ·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세입	일반회계	334	202	218	16	8.0
세출	일반회계 세출	3,894	4,028	4,172	145	3.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17	30	13	76.8
	세출 총계	3,894	4,044	4,202	158	3.9

자료 : 관세청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조달청

2011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 · 세출예산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 · 자본계정)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조달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회전자금을 보유 · 운용하고 있다.

먼저 세입예산은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을 합한 예산액이 총 3,822억원으로서 전년(3,437억원) 대비 11.2%(385억원) 증액되었다. 영업수익 중 시설공사사업수익은 25.5% 증가한 반면 외자구매사업과 원자재비축 사업수익은 각각 22.8%, 22.2% 감소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조달특별회계(손익계정 · 자본계정)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합한 총액이 3,960억원으로 전년(3,505억원) 대비 13.0%(454억원) 증액되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나라장터와 내부조달정보시스템 통합 등을 위하여 전년(159억원) 대비 35.3%(56억원) 증액된 조달정보화 사업, 원자재 비축물자 보관을 위한 창고 신축비로 전년(4억원) 대비 1,950%(77억원) 증액된 군산비축창고 신축사업 등이 있다.

표 9. 10 2011년도 조달청 소관 세입 · 세출 총괄

(단위: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세입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	2,566	2,172	2,358	186	8.5
	조달특별회계 자본계정	1,179	1,265	1,464	199	15.8
	세입 총계	3,745	3,437	3,822	385	11.2
세출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	1,750	2,172	2,358	185	8.5
	조달특별회계 자본계정	1,177	1,265	1,464	199	15.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6	68	138	70	101.9
	세출 총계	2,933	3,505	3,960	454	13.0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통계청

2011년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은 2010년 대비 31.6% 감소한 2,802억원으로, 인구주택 총조사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1,704억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표 9. 11 2011년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146	4,094	2,802	-1,292	-31.6

자료 : 통계청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자료」(2010.3),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2011.1)를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분야·부문별 현황을 보면, 통계청 세출예산은 모든 예산이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일반행정 부문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 9. 12 2011년도 통계청 소관 세출예산의 분야 · 부문별 현황

(단위: 억원, %)

분야	부문	회계, 기금	2009 결산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감률 (B-A)/A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일반회계	2,146	4,094	2,802	-31.6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0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에 걸쳐서 2011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제외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2010년 11월 26일)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김성곤 위원은 국세청 소관 예산안 중 역외탈세 정보활동비 50억원을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증액 심사한 것에 대하여 "사업시행 첫 해부터 소위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집행경과를 보고 점진적으로 증액하자"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를 소수의견으로 정리하여 의결하였다.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예비심사는 관련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조세소위원회의 심사가 12월 6일 완료됨에 따라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2010년 12월 7일)에서 세법개정 등에 따른 감액분(2,207억원)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는 크게 다음의 2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16개 상임위원회 중 유일하게 예비심사 결과 감액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2,074억원, 국세청은 124억원 감액 조정되는 등 총 2,361억원이 감액(순계 기준)되었다. 전체 기금운용규모는 정부안 대비 1,020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전입금(1,0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 등에 기인한다.

두 번째 특징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16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63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으나 국회가 최종 확정한 예산에는 단 1건의 부대의견도 채택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의 경우 최종 감액규모는 예비심사 결과인 2,074억원 보다 1조 694억원 많은 1조 2,768억

원으로 이는 주로 융자계정 이차보전(△6,006억원, 공자기금 전출금)과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상환(△4,689억원)의 감액에 주로 기인한다.

기획재정부 소관 5개 기금의 2011년도 운용규모는 총 152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정부안(154.5조원) 대비 2.5조원 감소한 것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채발행규모 축소 등에 따른 국채이자 감액(△8,005억원) 등에 기인한다.

기획재정부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1.3조원
· 기금운용규모△2.5조원

표 9. 13 기획재정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단위: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 (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공자기금 전출금(이차보전, 융자계정)	13,866	13,866 (-)	7,859 (-6,006)
일반	공자기금으로 예수이자상환	77,784	77,784 (-)	73,095 (-4,689)
일반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1,000	- (순감)	- (순감)
공공자금 관리기금	국채이자상환	202,663	202,663 (-)	194,568 (-8,005)

자료 : 기획재정위원회, 「201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12

국세청의 경우 당초 예비심사결과 감액규모인 124억원보다 13억원 많은 137억원이 최종 감액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대부분 반영하였다. 상임위와 예결위 감액규모 차액의 주요 요인은 '국세행정 전산화'사업에서 감액 규모가 13.4억원 증가(△18.6억원→△32.0억원)되었기 때문이다. 상임위가 예산안을 조정한 나머지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는 상임위의 감액 및 증액의견을 이견없이 수용하였다.

국세청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137억원

표 9. 14 국세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단위: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 (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역외탈세조사		361	411 (50)	411 (50)
일반	정보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6	51 (-4)	51 (-4)
		연말정산증빙서류 간소화	44	42 (-1)	42 (-1)
		국세행정 전산화	808	790 (-19)	776 (-32)
		근로장려세제 운영	61	57 (-4)	57 (-4)
일반	기타(6개 사업)		730	724 (-6)	724 (-6)
혁신도시 특별	교육원 등 혁신도시 이전		559	419 (-140)	419 (-140)
합 계			2,618	2,494 (-124)	2,481 (-137)

자료 : 기획재정위원회, 「201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12

관세청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26억원

관세청의 경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AEO인증 업무의 직접수행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AEO 위탁예산 7억원을 감액하였고, 그 밖에 집행가능성이 낮은 장비 임차료 2억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11억원 등 총 25억원의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반영함과 동시에 관세행정 정보화 예산의 감액규모를 1억원 증가(△13억원→△14억원)시켜 총 26억원의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다.

표 9. 15 관세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 (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관세행정 정보화	449	436 (-13)	435 (-14)
일반	관세탈루심사 (AEO공인심사업무위탁)	46	39 (-7)	39 (-7)

자료 : 기획재정위원회, 「201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12

조달청의 경우 2009년에 고철을 비축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받은 400억원을 조기상환하도록 한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에 따라 미집행액 142억원을 2011년도에 상환하도록 예산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이자 3억원, 시급성이 떨어지는 조달정보화사업 위탁사업비 7억원, 회전자금 전출금 130억원 등 총 142억원을 감액 의결하였다.

표 9. 16 조달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 (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조달특별	조달특별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전출금(원금상환)	-	142 (순증)	142 (순증)
조달특별	조달정보화	222	215 (-7)	215 (-7)

자료 : 기획재정위원회, 「201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12

통계청 세출예산의 감액은 예비심사 결과인 7억 9,400만원과 동일하나, 이에 더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를 8,000만원 증액하였다.

통계청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7억원

표 9. 17 통계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경제총조사 사업	53,032	52,586 (△446)	52,586 (△446)
일반	국가통계인식제고사업	894	624 (△270)	624 (△270)
일반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	303	303 (-)	383 (80)

자료 : 기획재정위원회, 「201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12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1.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은 전략적 경제협력 필요성이 높은 국가 등과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사업이다. 2004년부터 예산규모 1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87.9% 증가한 14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은 신규로 수행하는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 사업예산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회는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업효과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0억원을 감액하였다.

표 9. 18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 기능별 예산 내역

(단위 : 억원, %)

	2010				2011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예산 (D)	증감률 (D-A)/A
정책자문 사업	66	80	51	63.6	100	52.7
발전경험 모듈화	9	9	9	100.0	20	122.2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	-	-	-	-	20	순증
합 계	75	89	60	67.3	140	87.9

자료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5.2%~72.5%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이월과 불용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2010년 집행률 또한 67.3%로 부진한 편이다. 2008년 이후 이월률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동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9. 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의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	불용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2006	800	291	1,091	695	367	29	63.7	33.6 (2.7)
2007	1,500	367	1,867	844	1,015	8	45.2	54.4 (0.4)
2008	2,500	1,015	3,515	2,517	752	246	71.6	21.4 (7.0)
2009	5,000	752	5,752	4,169	1,453	130	72.5	25.3 (2.3)
2010	7,450	1,453	8,903	5,989	2,233	681	67.3	25.1 (7.6)

주: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국제금융센터 보조사업

국제금융센터 보조사업은 국제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금융센터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도 예산은 20억원이다.

동 센터는 1999년 4월 설립된 이후 「외국환거래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등에 따라 외환정보 분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당초 설립 시 정부, 한국은행, 은행권이 각각 100억원씩 총 300억원의 운영기금을 조성한 후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동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계획과는 달리 정부와 한국은행만이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각각 100억원씩 지원하여 운영기금이 목표수준 만큼 조성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운영경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정부 보조금에 일대일로 매칭(matching)하여 자금을 보조하고 있다.

동 센터가 정부를 대신하여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등 위기 감시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가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으나, 당초 설립 취지대로 기금을 적립하여 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사원분담금 증액, 운영기금 수익률 제고, 정보 판매와 용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9. 20 연도별 기관 기여금현황

(단위 :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정부	15.0	17.5	20.0	20.0	20.0	20.0	18.0	20.0	20.0	20.0
한국은행	3.0	25.0	20.0	20.0	20.0	20.0	18.0	20.0	20.0	20.0
사원은행 분담금	8.0	10.0	10.8	13.5	16.0	18.8	21.8	21.3	21.8	

자료 : 기획재정위원회, 「201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11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 차관사업

대개도국 차관사업은 개도국 경제발전 지원 및 이를 통한 국격 제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정부는 국제적 위상 변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고 등을 위하여 현재 0.10% 수준인 ODA/GNI 비율[1]을 2012년까지 0.15%,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2] 이에 따라 2011년도 차관 제공 규모는 전년 대비 1,347억원(28.7%) 증가한 6,047억원이 계획되었다. 아울러 차관규모 확대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의 출연 규모도 전년 대비 2,000억원(133.3%) 증가한 3,5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대개도국 차관은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으로서 상환에 소요되는 기간이 40년 이상 장기이며 아직 상환실적이 미미한 점, 향후 ODA 확대 과정에서 동 기금을 통한 유상원조 규모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출연을 통한 기금 재정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가능성과 수원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표 9. 21 연도별 대개도국차관사업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집행	계획(A)	2,600	3,000	3,500	3,500	4,700
	실적(B)	1,361	1,553	2,371	3,128	4,107
집행률(B/A)		52.3	51.8	67.7	89.4	87.4

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1) ODA/GNI 비율은 국민총소득(GNI)에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10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은 유사·중복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심층분석하는 것으로서 2011년도 예산은 15억원이며, 2010년 국무총리실에 편성된 사업(KDI 출연금 18억원)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심층평가 주체는 기획재정부이므로 이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9. 22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의 2011년도 예산

(단위 : 억원, %)

	2009 예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B-A)	
				B-A	(B-A)/A
재정사업 심층평가	-	-	15	15	순증

자료 : 기획재정부, 「2011 회계연도 예산 개요」, 2011.1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은 출연 형태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행정주체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기관·기금·공단 등 정부출연기관에 대하여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급부를 말하며,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개별 법률에 교부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3]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4]는 성과평가와 심층평가의 조건에 관하여만 각각 규정하고, 출연의 근거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기획재정부가 직접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출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제6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권기금의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사업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사업은 금융위원회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2010.4)」에 따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햇살론'[5]의 보증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이다. 2010년 7월부터 1년간 '햇살론' 보증에 필요한 4,000억원을 정부(30%), 지자체(20%), 금융회사(50%)가 분담하기로 하였는바, 정부는 2011년에 복권기금의 재원을 통해 1,200억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할 계획이다.

표 9. 23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단위 : 억원)

	2009년		2010년 계획 (A)	2011년 계획 (B)	증감(B-A)
	계획	결산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	-	-	1,200	1,200

자료 : 기획재정부, 「2011년도 복권기금 운용계획」, 2011.1

표 9. 24 기관별 출연재원 배분율

(단위 : 억원)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비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0% (1,200)	-	20%(800)	재보증 재원
지역신용보증재단	-	20%(800)	30%(1,200)	재단 보조

주 : 괄호는 각 기관별 출연액을 나타냄
자료 : 기획재정부

5) '햇살론'은 저신용 · 저소득 서민 전용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서 정부가 보증재원의 일부를 출연한다는 점이 타 서민대출상품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햇살론과 유사금융상품 간 비교

	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햇살론
대상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7등급 이하 및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신청자격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농림어업인, 자영업자
용도 (대출한도)	긴급생계비, 사업자금(최대 2천만원)	창업 · 운영자금 (최대 5천만원)	창업자금(최대 5천만원), 운영자금(최대 2천만원) 생계자금(최대 1천만원)
금리	7~19%	4.5%	연 10~13%(0.85%의 보증 수수료 추가부담)
취급처	16개 은행	미소금융지역재단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재원 (보증여부)	은행자금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7월중단), 근로복지공단 보증 및 신용대출)	기부금, 휴면예금 (보증없음)	서민금융회사·정부 출연금 2조원(서민금융기관 15%, 지역신보 85% 보증)

자료 : 금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보증재원을 기초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신용대출신청에 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보의 보증에 대하여 50% 내외로 재보증하게 된다.

'햇살론'의 대출추이를 보면, 출시 약 6개월 만인 2011년 1월 18일 현재까지 대출액은 1조 4,130억원으로 1년간 목표액인 2조원[6]의 70%를 넘어섬에 따라 보증재원이 소진될 위험이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열악한 재정상태를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계획대로 연 4,000억원의 보증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과 외환보유액 규모

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주요 수입재원은 정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이며, 주요 운용방법은 외국환의 매매, 한국은행·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등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이 신규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한 금액은 2008년 8.8조원에서 2010년 14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도 16조원을 예수할 것으로 계획하여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9. 25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규모

(단위 : 억원)

	추가예수금(A)	상환금(B)	순증(A-B)
2008년 결산	157,819	70,000	87,819
2009년 결산	266,000	188,000	78,000
2010년 계획	334,157	194,157	140,000
2011년 계획	160,000	-	160,000

자료 : 기획재정부

6) 연내 보증재원 출연액 × 예상 보증배수 = 4,000억원 × 5 =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외환을 매입한 결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자산과 부채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부채의 조달금리와 자산의 운용금리간 차이로 인해 이차손실이 2004년 이후 계속해서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과 2011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보유액 (2010년 말) 2,916억달러

한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010년 12월말 기준 2,916억달러로서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IMF 기준과 대외계정기준 따른 적정규모를 상회하지만,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기준에 따른 적정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표 9. 26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현황

보유액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		금액
2,916억달러 ('10.12월말)	IMF 기준	3개월 치 경상지급액	1,322억달러 ('10.1~9월 평균 기준)
	대외계정기준	단기외채 100%	1,521억달러 ('10.6월말 기준)
	BIS 기준	BIS 기준 = 3개월치 수입액 + 단기외채 + 외국인주식투자 1/3	3,520억달러 = 1,022억달러('10.1~9월 평균 기준) + 1,521억달러('10.6월말 기준) + 977억달러('10.9월말 기준)

주 : 1. 보유액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발췌
2. 적정 외환보유액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자료 참조
자료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2. 국세청

교육원 및 혁신도시 이전사업

동 사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하여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 교육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기술연구소를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이며, 2011년 예산은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으로 419억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2010년(211억원) 대비 98.8% 증가한 규모이다.

정부가 제출한 동 사업의 2011년도 예산안은 559억원이었으나, 국회는 2010년도 180억원에 이르는 예상 이월액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40억원 감액하였다.

표 9. 27 2011년 교육원 등 혁신도시 이전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09		2010		2011		증감액 (B-A)	증감률 (B-A/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정부안	확 정 (B)		
교육원 등 혁신 도시이전 사업	3,402	23	21,090	0	55,914	41,919	13,995	98.8

자료 : 국세청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 간에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이러한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허위계산서의 발행 차단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약 40만명)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2012년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약 80만명)까지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인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억 9,300만원(△3.6%) 감액된 51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9. 28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09		2010		2011		증감액 (B-A)	증감률 (B-A/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정부안	확 정 (B)		
전자세금 계산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7,888	7,527	5,332	4,885	5,584	5,139	-193	-3.6

자료 : 국세청 확정예산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획재정위원회는 동 사업의 세부내역 중 홍보용 책자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편 서비스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5억원)는 시급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하여 동 사업예산을 정부안 대비 4억 4,500만원이 감액된 51억 3,9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3. 관세청

FTA 활용 지원 사업

관세청 FTA 이행지원사업은 FTA확대에 따른 협상 · 이행 기반 구축 및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은 2010년 33억원 대비 66.1% 증액된 55억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칠레(2004), 싱가포르(2006), ASEAN(2007), 인도(2010) 등 16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발효 중이며, EU·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FTA 체결이 확산되면서 2009년 기준으로 16개 FTA 발효국과의 교역량은 987억달러로 전체의 14.4%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2009년 기준으로 수출의 12.8%와 10.4%, 수입의 10%와 9%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EU 및 미국과의 FTA까지 발효될 경우 FTA 교역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FTA에 따른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 충족, 원산지 검증 등 복잡한 규정 및 절차 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 발효 중인 일부 FTA의 경우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수출액 기준으로 각 FTA별 활용도를 살펴보면, 97%(2008년 기준)가 특혜를 적용받고 있는 한 · 칠레 FTA 외에는 한 · 싱가포르 0%, 한 · EFTA 30%대, 한 · 아세안 21%, 한 · 인도 15.4% 등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7]이다.

이처럼 체결된 FTA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Spaghetti Bowl)"효과[8]로 인해 FTA 활용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010년 4월 무역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인력 부족과 원산지관리시스템 미비 등으로 조사대상의 75%가 FTA 활용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FTA 활용 지원사업은 개별 부처별로 각기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유사 ·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관세청의 중소기업 대상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지원을 위한 전문가 파견 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기획재정부, 무역협회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의 원산지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관련 사업도 FTA 인증, 표준 등 국가별 무역정보 제공을 위한 DB 및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식경제부 소관(무역협회 수행) 통합무역정보서비스기반구축사업과 유사점이

---

7) 자료: 관세청, FTA 관세행정 종합대책, 2010.7

8) 많은 나라 사이에 동시다발로 FTA가 체결되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다량 투입돼 협정체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는 표현으로 J. 바그와티 교수가 처음 사용하였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FTA 활용지원 사업이 다수의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수혜자인 중소기업 관점에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며, 지원센터와 포털사이트의 중복 설립 · 운영 등에 따른 비효율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 각 부처 간에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4. 조달청

비축사업

조달청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수요물자사업과 원자재비축사업 등 조달사업을 위해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회전자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운용 수익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07년 이후 각 계정별 회전자금과 해당 자금으로 운영되는 조달사업 수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회전자금은 연평균 9.9%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조달사업 수입은 연평균 2.2%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비축사업의 경우 사업의 재원인 회전자금 비축물자계정은 연평균 15.4%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오히려 연평균 2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29 계정별 회전자금 규모 및 관련 사업 수입 추이

(단위 :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감률
회전자금 규모	8,152	8,743	9,650	10,555	11,891	9.9
수요물자계정	2,634	2,572	2,500	2,232	2,115	-5.3
비축물자계정	5,518	6,171	7,150	8,323	9,776	15.4
관련사업 수입	1,077	1,144	1,160	1,005	1,176	2.2
내자구매수입	773	941	943	930	1,101	9.2
비축물자수입	304	203	217	75	75	-29.5

주 : 2009년까지는 결산, 2010 · 2011년은 예산(회전자금은 전망) 기준
자료 : 조달청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최근 비축물자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조달청이 과거 높은 가격에 구입한 비축물자를 방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달청에 따르면 2009년 총 방출금액 4,216억원 중 공동구매 물량을 제외한 일반방출 규모가 178억원(총 방출액 대비 4.2%)에 불과하며, 2010년의 경우도 일반방출 비율이 21.3%로 과거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동구매의 경우 수수료율이 방출액의 0.094%에 불과하지만 일반방출은 약 7.3%(2007~2009년 평균)에 이르므로 일반방출의 감소는 수익성 하락과 직결된다.

표 9. 30 최근 비축물자 방출 금액 및 일반방출 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2007	2008	2009	2010
방출 금액	5,742	6,206	4,216	3,722
일반방출 비율	46.1	49.3	4.2	21.3

주 : 2010년 방출 금액은 전망치이며, 2010년 일반방출 비율은 9월말 기준
자료 : 조달청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원자재 가격은 조달청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며 가격 변동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축물자 사업을 위한 회전자금의 운용 규모가 2011년 계획 기준으로 약 1조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는 점, 그리고 최근 중국의 희토류(Rare Earth Elements)[9] 금수조치 등에 따라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희소금속[10] 비축 확대를 위해서는 동 사업의 안정적 수익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비축재고 목표 수준인 국내수입수요 60일분도 전략적 관점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표 9. 31 주요 국가별 핵심원자재 비축재고 목표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비축재고 목표수준	국내수입수요 60일분	국내총수요 60일분	국내총수요 1~3년분	미공개

자료 : 조달청

9) 희토류는 주기율표상 57번(란타늄)부터 71번(류테늄)까지의 란탄계열 15개 원소와 스칸듐과 이트륨을 합한 17개 원소를 총칭하는 명칭으로 각종 전기 · 전자제품, 배터리, 태양전지 등에 사용되고 있다.
10) 현재 희소금속은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가 품목을 분담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조달청이 니켈, 실리콘, 코발트, 바나듐, 망간, 인듐 등 6개 품목, 광물자원공사가 크롬, 몰리브덴,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안티모니, 셀륨, 희토류 등 8개 품목을 비축하고 있다.

5. 통계청

사회통계작성사업

통계청의 사회통계작성사업은 사회조사 및 사회통계개선, 가계금융조사, 사교육비조사, 가계동향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예산은 2010년(34.5억원) 대비 242.0% 증가한 118억원이다.

2011년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1년 예산의 대부분(82.7%)을 차지하는 지역별 고용조사가 2010년까지 연 1회 수행되었으나, 2011년부터 연 4회로 확대 실시될 계획이기 때문이다.

표 9. 32 사회통계작성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2010				2011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예산 (D)	증감률 (D-A)/A
사회통계작성	34.5	34.5	33.1	95.9	118.0	242.0

자료 : 통계청, 「2011회계연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2011.1

지역별 고용조사는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업률 등 지역별 고용현황을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기존의 연도별 조사에서 분기별 조사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동 조사의 2011년 예산은 2010년 예산(23.3억원) 대비 319% 증가한 97.6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동 조사의 표본이 분기마다 교체되는 비율은 전체 표본의 10%에 불과하여 한 해 동안 표본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분기부터는 동일한 응답자를 방문하여 대부분 동일한 설문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조사비용 및 인력을 절약하고 응답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전자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11)]

11) 현재까지 동 조사의 전자조사 활용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0.03%, 2009년 2.75%, 2010년 경우 1.11%에 불과한 실정이며, 2011년 목표도 2%에 불과하다.

외교통상통일 제10장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1년도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소관 총지출
3.0조원

2011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3조 274억원으로 2010년 대비 5.7%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이다. 이를 외교통상위원회에 속하는 각 부처별로 보면, 외교통상부가 2010년 대비 13.4% 증가한 1조 7,766억원, 통일부가 1조 2,265억원(3.9% 감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43억원(14.6%)이다.

표 10. 1 2011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2010(A)	2011(B)	증감(B-A)	증감률 [(B-A)/A]
외교통상통일	28,647	30,274	1,627	5.7
총지출 대비 비중	1.0	1.0	-	
외교통상부 (비중)	15,670 (54.7)	17,766 (58.7)	2,096	13.4
통일부 (비중)	12,765 (44.5)	12,265 (40.5)	-500	-3.9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212 (0.7)	243 (0.8)	31	14.6

주 :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 2010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2010. 10), 2011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총지출 3조 274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6%, 87.4%이다.

표 10. 2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억원, %)

	총지출 (A)	의무지출 (B)	재량지출(A-B)				
			경직성 재량지출				비경직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외교통상통일	30,274	3,825 (12.6)	2,857 (9.4)	2,732 (9.1)	-	5,589 (18.5)	20,860 (68.9)
외교통상부	17,766	3,808	2,510	2,633	-	5,143	8,815
통일부	12,265	17	305	87	-	392	11,856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243	-	42	12	-	54	189

주 : 괄호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총지출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외교통상부

2011년도 외교통상부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국제교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7%(2,240억원) 증가한 1조 7,444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한 출연금이 전년 대비 15.0%(638억원), 국제기구분담금이 전년 대비 22.2%(757억원)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표 10. 3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억원,%)

	2009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4,256	15,204	17,444	2,240	14.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음으로 국제교류기금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12.3%(106억원) 감소한 754억원이다.

표 10. 4 국제교류기금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2009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국제교류기금	1.067	860	754	-106	-12.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0. 5 외교통상부 소관 세출예산의 분야 · 부문별 현황

(단위 : 억원,%)

분야	부문	회계, 기금	2009 결산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감률 (B-A)/A
외교 통일	외교 통상	일반회계	14,256	15,206	17,444	14.7
		국제교류기금	1,142	860	754	-12.3
합 계			15,398	16,066	18,198	13.3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1년도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총 5개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들 신규사업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과 사회적 책임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한편, 북핵 일괄타결 구상의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련하고 있다.

표 10. 6 2011년 신규 편성된 외교통상부 예산

(단위 : 억원,%)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1. 재외공관 세일즈외교 추진	-	15	15	순증
2.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원자력 협력 증진	-	12.9	12.9	순증
3.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CSR) 지원	-	10.1	10.1	순증
4. 북한 비핵화 이행·검증	-	7.8	7.8	순증
5. 디지털네트워크 외교		7.3	7.3	순증
합 계	-	53.1	53.1	순증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외교통상부 일반회계는 재외공관 운영비 및 인건비와 국제기구 분담금의 비중이 크며, 그 밖에 한국국제협력단 및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이 있다. 국제교류기금은 재외동포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사업비(재외동포재단 지원 제외) 비중은 56.5%이다.

통일부

2011년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2%(515억원) 증가한 5,556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통일정책수립 인프라 구축사업, 북한 종합 DB 구축 및 개발 등 중장기 통일준비에 대응하는 성격을 갖는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신설, 전시납북 진상규명 사무국 설립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10. 7 통일부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 : 억원,%)

	2009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세출	1,268	5,042	5,556	515	10.2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 대비 38.2%(8,510억원) 감소한 1조 3,768억원이다. 2011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상환이 없음에 따라 공자기금 원리금 상환액이 전년 대비 86.9%(8,399억원)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표 10. 8 남북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2009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남북협력기금	12,241	22,279	13,768	-8,510	-38.2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0. 9 통일부 2011년 세출예산 분야 · 부문별 현황

(단위 : 억원,%)

분야	부문	회계, 기금	2009 결산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감률 (B-A)/A
외교 통일	통일	일반회계	1,268	5,042	5,557	10.2
		남북협력기금	12,241	22,279	13,768	-38.2
합 계			13,509	27,321	19,325	-29.2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1년도 통일부 일반회계 세부사업(인건비 및 기본경비 제외)은 총 45개이며, 신규사업 5개와 계속사업 40개로 구분된다. 2010년 세부사업 중 3개 사업은 사업이관 등에 따라 종료되었다.

2011년도 통일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총 5개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통일부는 이들 신규사업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이산가족과 전시납북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표 10. 10 2011년 신규 편성된 통일부 예산

(단위 : 억원,%)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1.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	247.9	247.9	순증
2.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	39.7	39.7	순증
3. 이산가족 실태조사	-	9.8	9.8	순증
4. 하나원 시설 개보수	-	9.41	9.41	순증
5. 사이버 보안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	7.24	7.24	순증
합 계	-	314.04	314.04	순증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1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1억원 증가한 243억원이다.

표 10.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출예산

(단위 : 억원,%)

	2009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세출	168	212	243	31	14.6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지역통일활동 지원사업 내에 청소년 대상 통일활동 사업 내에 청소년대상 통일사업활동에 30억원을 증액하는 등37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는 지역통일활동 30억원만 반영되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중립성을 강화할 것 등 3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다.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11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에 걸쳐서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11월 25일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전재희 의원이 “외교통상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보면 '환차손 발생 시 이를 전액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 이렇게 해서 진일보한 느낌은 드나, 통상 국회에서 이 부대의견을 달아 주면 이것이 이행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4년도 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로 제도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기준, 김형오, 김동철 의원이 재외동포재단 출연 사업 중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을 요구하여 멕시코 메리다주 이민 100주년 기념탑 재건립 및 박물관 지원 20억원 증액, 사할린 한인학살피해자 추념비 건립지원 15억원 증액, 브라질 한인회관 및 노인회관 이전(깜부시→봉헤찌로) 지원 2억 3,000만원 증액 등 모두 37억 3,000만원의 증액을 의결하였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다.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 및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는 외교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집행 내역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열람에 제공할 것, 외교네트워크 구축사업 내 한미 전략동맹 심화발전 사업 예산 5억원의 집행 내역을 공개할 것, 국제교류기금의 잠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원을 줄일 것 등 총 21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고,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남북협력교류기금의 심사과정에서는 단체보조금지원단체 지원 중 통일교육위원협의회의 이념적 편향성이 없게 할 것 등 11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채택되지 못하였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의 특징은 외교통상부 예산과 통일부 예산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는 각각 195억 1,100만원, 100억 5,000만원 증액되었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는 외교통상부의 경우 25억 8,300만원만이 증액되고 통일부의 경우 12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점이다.

외교통상부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25.8억원

외교통상통일분야에 대한 국회 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외교통상부의 경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에 없던 '디지털 네트워크 외교 사업' (예산액 7억 3,000만원)이 신설되어 예결위에서 확정되었다. '디지털 네트워크 외교 사업'의 내용으로는 SNS 등 뉴미디어를 외교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시스템구축 및 컨텐츠 제작 등이 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 예산 중 '재외동포재단 출연' 사업 내 재일민단지원은 2011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액 73억원보다 54억 1,500만원 감액된 18억 8,500만원만이 편성되었으나, 상임위는 재일동포 사회 및 재일민단 조직의 특수성, 재일민단의 고국에 대한 기여 등을 감안하여 54억 1,500만원 증액 의결하였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증액이 주장되었으나, 확정예산에 32억 2,500만원 증액만 반영되었다. 동 예산을 2010년 수준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재외동포재단 예산의 자체전용 등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재단은 자체전용을 통한 충당은 다른 기존 사업에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국제교류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표 10. 12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특징 및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5,787	4,698 (-819)	4,868 (-919)
일반	G20글로벌거버넌스 대응강화	1,598	1,295 (-303)	1,295 (-303)
일반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	5,220	5,070 (-150)	5,070 (-150)
일반	디지털 네트워크 외교	-	730 (730)	730 (730)
일반	재일민단지원	1,885	7,330 (5,415)	5,110 (3,225)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12.

통일부의 경우 '제 2하나원 신축사업' 예산 30억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 예산 25억원,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업' 22억원 등이 상임위에서 증액되었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다.

통일부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12.3억원

표 10. 13 통일부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특징 및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통일미래비젼수립	824	550 (-274)	550 (-274)
일반	통일정책수립 인프라 구축	2,965	2,515 (-450)	2,515 (-450)
일반	북한정세지수	2,002	1,552 (-480)	1,552 (-480)
일반	통일정책커뮤니케이션 활성화	2,116	1,781 (-335)	1,781 (-335)
일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4,200	5,600 (1,400)	4,700 (500)

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12.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1. 외교통상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지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개도국의 녹색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글로벌 연구소로, GGGI에 대한 지원예산은 2011년도부터 신규로 58억원이 편성되었다. GGGI의 설립 과정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에 설립계획이 발표되고, 2010년 5월에 GGGI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6월에 GGGI 설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나 2010년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예산 편성 시에는 GGGI의 설립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지원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53억 6,300만원의 예비비가 2010년도에 배정되었다.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안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GGGI 설립 및 운영계획 등이 갑작스럽게 수립되어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KOICA는 산하기관 지원비로 58억원을 GGGI에 지원하는 것 이외에 KOICA의 단위사업인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추가로 60억원을 GGGI에 지원하고 있으나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수립 등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KOICA는 집행기관으로서 예산 집행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된바 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지원 예산 관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운영비 지원이 KOICA가 수행하는 업무와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이를 외교통상부로 이관하기 위하여 예산과목을 '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협력사업 지원(단위사업)-협력사업 지원(세부사업)'에서 '경제통상외교(프로그램)-에너지 외교 및 대외경제협력강화(단위사업)-에너지·녹색 성장 외교강화(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예결위에서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재외국민선거기반구축

'재외국민 선거기반 구축' 사업은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으로서 2012년 최초로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차질 없는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의 2011년 예산은 12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4.9%(758백만원) 증가한 것이다.

2010년 4월 16일 외교통상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기획조정실장간 업무협의시 재외선거 실시와 관련한 예산 배정 방식이 협의[1]되었으나, 외교통상부의 사업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선관위의 사업과 중복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첫째, 외교통상부는 운영비 항목(210목)에 '재외선거 제도 관련 자료집 발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이는 선관위의 '재외선거관리'사업의 운영비 항목(210목)에 편성된 '교육 및 제도안내 교재'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외교통상부는 현지 실태조사를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체에 따라 공관원에 의한 실태조사와 국내직원에 의한 실태조사로 나뉜다. 이 중 국내직원(4급·5급 각 1명)에 의한 실태조사는 총 14회(미주지역 4회, 아주지역 6회, 구주지역 2회, 아중동지역 2회) 이루어질 예정인데, 선관위의 경우에도 국내직원(4명)에 의한 실태조사를 총 21회 계획하고 있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와 선관위 국내직원의 현지 실태조사가 수행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5개 공관에 파견되는 선관위의 주재관 및 재외공관 직원에 의한 실태조사 예산, 주재국 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축 예산(재외공관) 등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 사업은 'FTA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이다.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2,800만원이 증액된 5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1억 5,000만원 감액되어 50억 7,0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동 사업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대미경제통상네트워크사업'이 신규 사업내역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며, '대미경제통상네트워크사업'이란 그동안 워싱턴에 편향되었던 우리 경제통상 외교가 미 의회 정치의 근간인 지역구 차원에서도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DB 구축회사 및 풀뿌리 홍보회사와 계약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한-미 FTA 인준관련 자문회사고용비가 과도하다고 하여 1억 5,000만원을 심사과정에서 감액하였다.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FTA관련 예산안 전체 내역은 각주와 같다.[2)]

---

1) 재외선거 실시와 관련된 예산은 재외선거 준비기간(2011년 10월 이전)에는 각 기관의 기능에 맞추어 이원적으로 편성하고, 재외선거 실시기간(2011년 10월 이후)에는 선관위 소관에 편성(선거인 모집, 임시행정원 고용, 투표소 설치 등)하기로 합의하였다.

2) ㅇ외교부 한 · 미 FTA 예산 현황

FTA관련 예산안 내역

· (예산 내역) 'FTA 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의 내역사업으로 동 사업내 자문회사 고용비용(28억) 및 이행조치(90백만)로 구성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	'10년 예산	'11년 예산안
자유무역 협정체결 및 후속조치	**FTA 체결(협상) : 1,616** ·한-호주 FTA(216), 한-콜롬비아 FTA(263), 한-뉴질랜드FTA(196), 한-GCC FTA (279), 한-터키 FTA(186), 한-멕시코 FTA(138), 연구개발비 등 기타 (305)	**FTA 체결(협상) : 1,616** ·한-뉴질랜드FTA(175), 한-GCC (275), 한-터키(175), 한-멕시코 FTA (175), 한-중국 FTA (200), 한-일본 (175), 한-이스라엘(125), 연구개발비 등 기타 (316)
	FTA후속조치(이행) : 775 ·한-칠레FTA (67), 한-인도 FTA(39), 한-EFTA FTA(35), 한-ASEAN FTA(78), 한-EU FTA(59), 한-캐나다 FTA(64), 한-페루 FTA(62), 한-미 FTA(64), 법률자문비(340)	**FTA후속조치(이행) : 775** ·한-칠레 FTA(25), 한-인도 FTA(25), 한-EFTA FTA(20), 한-ASEAN/ 한-싱가포르 FTA(30), 한-EU FTA(80), 한-페루 FTA(40), 한-캐나다 FTA(40), 한-호주 FTA(50), 한-콜롬비아(50), 한-미 FTA(90), 법률자문비(375)
	한-미FTA 의회인준 및 후속조치 (2,001) ·법률자문회사 (276), 전문홍보회사 (345), 의회활동 자문회사 (1,380)	**한-미 FTA 의회인준 및 후속조치 (2,829)** ·법률회사(276), 홍보회사 (345), 의회활동 자문회사 (1,104), 통상정책자문회사(276), 대미경제통상 네트워크 사업 (828)
세부사업 합계	4,392	5,220

· 한 · 미FTA 의회인준 및 후속조치 예산 상세

내 역	'11년 예산안		
	예산(a)	계약회사(계약일)	계약금액(b)
의회활동자문회사	$1,200,000 (1,380백만원)	대형자문회사 1개, 통상정책 자문회사 1개 ('11.1.1)	$1,200,000 (1,380백만원)
법률자문회사	$240,000 (276백만원)	Sidley Austin社 ('11.1.1)	$240,000 (276백만원)
전문홍보회사	$300,000 (345백만원)	Frateli Group社 ('11.1.1)	$300,000 (345백만원)
대미경제통상네트워크사업 (신규)	$720,000 (828백만원)	iMAP社 등 2개社 ('11.1.1)	$720,000 (828백만원)
계	$2,460,000 (2,829백만원)		$2,460,000 (2,829백만원)

ㅇFTA 교섭대표 기본경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0년 예산	'11년 예산안
FTA 교섭대표 기본경비	902	902
	운영비(210) : 482 - 일반수용비(국운영비): 182 - 공공요금 및 제세(홈페이지, 통신요금): 39 - 임차료(복사기 등) : 253백 - 차량선박비(유류대) : 8	**운영비(210) : 482** - 일반수용비(국운영비): 182 - 공공요금 및 제세(홈페이지, 통신요금): 39 - 임차료(복사기 등) : 253백 - 차량선박비(유류대) : 8
	여비(202) : 159 - 국내여비 (FTA공동연구 관련 공관직원 일시 귀국 등)):3 - 국외여비(정부간 FTA 준비협의):156	**여비(202) : 159** - 국내여비 (FTA공동연구 관련 공관직원 일시귀국 등)):3 - 국외여비(정부간 FTA 준비협의):156
	업무추진비(240) : 173 - FTA준비협의 추진,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 173	**업무추진비(240) : 173** - FTA준비협의 추진,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 173
	기타유형자산(430) : 88 - 컬러복사기 구입 등	**기타유형자산(430) : 88** - 컬러복사기 구입 등
총 계	902	902

자료 : 외교통상부

2. 통일부

북한정세지수

북한정세지수 사업은 '북한정세분석관리'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동 사업은 과학적인 지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북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도 심의결과 전년 대비 17.2%(3억 2,800만원) 감액되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북한정세지수 개선·보완'사업에 3.8억원, '과거년도 북한정세지수 산출'사업에 2.4억원, '북한정세지수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사업에 6.2억원, '자료 수집'사업에 2.6억원 편성되어 있다. 2011년도 예산안에는 '과거년도 북한정세지수 산출을 위하여 7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과거 3개년도 중 2개년도 부분은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지수산출 예산을 감액하였고, 예결위 정책질의 과정에서도 개발모델에 대한 평가를 정밀하게 진행한 후 사업조정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북한정세지수 사업은 지수의 공개여부 및 공개수준을 고려할 때 사업효과성이 매우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다. 지수가 미공개 되는 경우 목적했던 사업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동 사업은 2010년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통일부는 2010년 예산안 제출시 북한정세지수 개발을 통해 북한관련 특정이슈(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에 대하여 국민의 안보·심리불안, 대외투자자 심리위축 및 국내경제 불안정 등 불안심리와 과민반응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재 통일부는 공개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로 공개하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회에 한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초 목적했던 '단발성 이슈에 대한 국민의 대북관련 심리안정, 한국경제의 신용도 저하 및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의 간접방지' 등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은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내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인 '경협기반(무상)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경협기반(무상)사업에는 87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중 100억원이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에 계획되어 있다.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은 남북간 평화·경제·민족 3대 공동체 구축을 통해 평화통일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를 개발·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되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인문사회분야에 해당하는 동 사업의 연구용역 단가(용역과제당 3~5억원)가 높은 수준이므로 적정 단가를 감안한 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며,

둘째, 예산제출 단계에서 과제의 주요내용, 용역수행자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았으므로 공모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셋째,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은 3대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의 개발·연구사업으로서 상위 세부 사업인 '남북간 경제협력기반의 조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평화공동체사업을 포함하여 총 30억원 감액되었으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30억원이 삭감되었다. 또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개성공단 지원

개성공단 지원은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사업으로서, 개성공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개성공단 근로자와 입주기업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서나 응급의료시설을 건립하는 등의 '개성공단 조성'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및 관리위원회 운영비를 대출하는 융자사업인 '개성공업지구재단지원' 및 '개성공단 기반시설 대출'로 이루어져 있다. 2011년도 예산은 929억 6,8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1,106억원보다 176억원이 감액되었다.

개성공단소방서건설은 개성공단 내 화재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개성공단에는 2010년 8월 현재 121개 기업이 가동 중으로, 기업 입주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발생빈도 및 대규모의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66%가 화재에 취약한 섬유·봉제·화학업종이고, 밀집구조의 아파트형 공장 등 노동집약적 공장이 많아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 및 지원사업은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관리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는 전액 융자 사업이었으나, 정부대행업무 부분까지 재단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0년부터는 무상지원과 융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제1절 재정 현황

1. 개관

2011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33조 2,052억원으로 2010년 대비 6.9%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7%이다. 이를 국방분야에 속하는 각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가 2010년 대비 7.1% 증가한 23조 3,345억원, 방위사업청이 9조 6,887억원(6.5% 증가), 병무청이 1,820억원(7.2%증가)이다.

2011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총지출
33.2조원

표 11. 1 2011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2010(A)	2011(B)	증감(B-A)	증감률 [(B-A)/A]
국방위원회	310,586	332,052	21,466	6.9
총지출 대비 비중	10.6	10.7	0.1p	-
국방부 (비중)	217,902 (70.1)	233,345 (70.3)	15,443	7.1
방위사업청 (비중)	90,987 (29.2)	96,887 (29.2)	5,900	6.5
병무청 (비중)	1,697 (0.5)	1,820 (0.5)	123	7.2

주 :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 2010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2010. 10), 2011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방위원회 소관 총지출 33조 2,052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5%, 90.5%이다. 한편, 국방분야 총지출에는 군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직성 재량지출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방분야 총지출 대비 27.1%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비경직성 재량지출은 62.3%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 2 국방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 억원, %)

	총지출	의무지출	재량지출(A-B)				
			경직성 재량지출				비경직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국방위원회	332,052 (100.0)	31,533 (9.5)	90,152 (27.1)	3,542 (1.1)	-	93,694 (28.2)	206,825 (62.3)
국방부	233,345	31,533	88,773	3,345	-	92,118	109,694
방위사업청	96,887	-	475	100	-	575	96,312
병무청	1,820	-	904	97	-	1,001	819

주 : 괄호안은 국방위원회 소관 총지출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총 3개 부처의 재정으로 구성되며, 분야별로 보면 국방분야와 사회복지분야 등 2개 분야에 편성되어 있다. 병력운영비, 전력유지비 등 대부분의 국방예산은 국방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나, 군인연금기금의 경우 사회복지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병력운영, 전력유지, 방위력개선, 병무행정, 공적연금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병력운영, 전력유지 및 공적연금부문은 국방부 소관이며, 방위력개선부문은 방위사업청, 병무행정부문은 병무청에 각각 편성되어 있다.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구조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2개의 기금(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2011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22조 8,851억원에는 군인복지기금으로의 전출금 407억원(병력운영부문 173억원, 전력유지부문 234억원),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2조 39억원 및 공무원연금 부담금 776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1. 1 국방위원회 소관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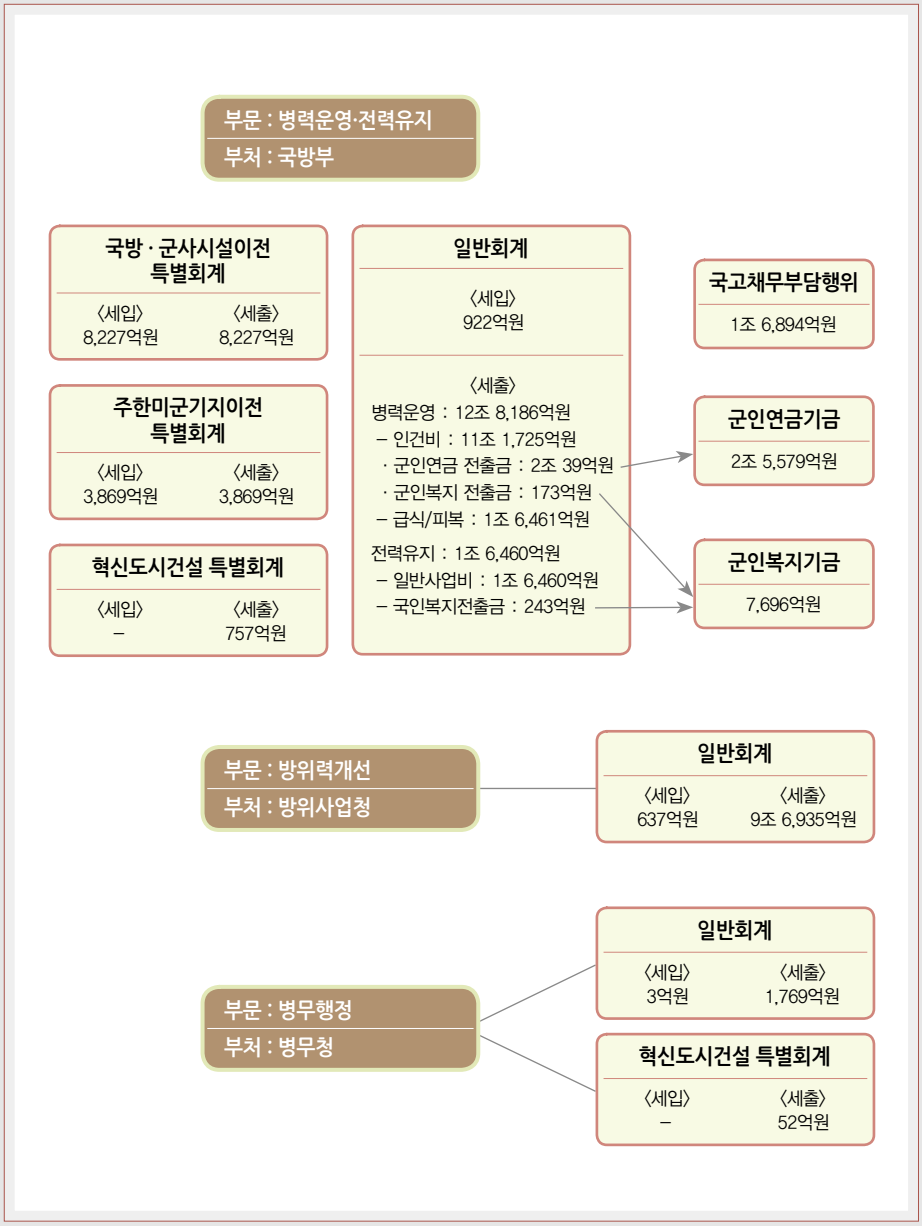

주 : 2011년도 예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국방부

2011년도 국방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2개의 기금(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22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227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69억원으로 총 1조 3,018억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도 예산 대비 28.1%(2,852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표 11. 3 국방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753	599	922	323	53.9
국방군사	6,754	2,599	8,227	5,627	216.5
주한미군	2,257	6,967	3,869	-3,098	-44.5
합 계	9,765	101,66	13,018	2,852	28.1

자료 : 국방부,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11. 1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조 9,948억원으로 전년 대비 6.9%(1조 4,864억원) 증가하였는데, 공무원 처우 개선 등에 따라 군인 등 인건비가 2010년 예산 대비 4.9% 증가하였고, 장비 및 물자획득 예산이 14% 이상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상운영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1. 4 국방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01,233	204,597	217,096	12,499	6.1
국방군사	2,755	2,599	8,227	5,627	216.5
주한미군	2,386	6,967	3,869	-3,098	-44.5
혁신도시	0	920	757	-164	-17.8
합 계	206,374	215,085	229,948	14,864	6.9

자료 : 국방부,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11. 1

국방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의 운용규모는 3조 3,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였는데, 이는 군인복지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이 2010년도 대비 각각 11.4%, 10.6%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1. 5 국방부 기금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군인복지기금	7,030	6,908	7,696	788	11.4
군인연금기금	22,264	23,128	25,579	2,451	10.6
합 계	29,294	30,036	33,275	3,239	10.8

자료 : 국방부,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11. 1

2011년도 국방부 세출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에서 드러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핵심전력을 보강하고 현존 전력을 극대화한 것이다. 국방부는 적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영상수집장비 등의 감시·탐색장비를 보강하고 구조용 고속단정을 도입하는 등 구조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 해안포 대응전력인 K-55와 K-9 자주포의 탄약고·정비고 및 수리부속을 보강하고, 연평도 증편 부대의 병영생활관 신축하는 등 서해5도 지역의 전력증강을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되었다.

방위사업청

2011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세출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방위력개선 부문에 편성되어 있다. 2011년도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예산은 2010년(9조 1,030억원) 대비 6.5% 증가한 9조 6,935억원이다.

표 11. 6 방위사업청 소관 2011년 세출예산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88,099	91,030	96,935	5,905	6.5

자료 : 방위사업청, 2011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개요, 2011. 1

2011년도 방위사업청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위하여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도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2,219억원(12.4%) 증가한 2조 164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방위력 개선비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10% 이상의 빠른 증가율로 성장하고 있다.

표 11. 7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연구개발 예산 5년간 추이

(단위 :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방연구개발	12,584	14,522	16,090	17,945	20,164

주: 예산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히, 2011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국방연구개발 사업은 총 11개 사업, 440억원 규모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보라매 사업이나 한국형공격헬기 사업 등 핵심 전력을 국산화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2011년에 새로 편성된 것이 특징적이다.

표 11. 8 2011년도 국방연구개발 신규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보라매사업	-	152	152	순증
한국형공격헬기	-	55	55	순증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	-	29	29	순증
장애물개척전차	-	22	22	순증
고정형장거리레이더	-	27	27	순증
차기국지방공레이더	-	5	5	순증
연합군사정보유통체계	-	20	20	순증
차기군위성통신체계	-	37	37	순증
자항기뢰	-	26	26	순증
신형화생방정찰차	-	29	29	순증
군단정찰용 UAV	-	38	38	순증
합 계		440	440	

자료: 방위사업청, 2011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개요, 2011. 1

병무청

2011년도 병무청 소관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1개의 특별회계(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계의 경우 2010년(1,747억원) 대비 1.2% 증가한 1,769억원이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경우 2010년(21억원) 대비 31억원(151.9%) 증가한 52억원이다.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경우 중앙신체검사소의 대구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건설비가 편성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1. 9 병무청 소관 2011년 세출예산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064	1,747	1,769	22	1.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	21	52	31	151.9
합 계	2,065	1,768	1,821	53	29.9

자료 : 국방부, 201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11. 1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두 번의 전체회의와 네 번의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국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11월 30일 제294회국회 국방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제2차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던 11월 23일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면서 회의가 중단되었다. 이후 국방부는 연평도 포격 재발 방지 및 대응태세 강화를 위하여, 서해5도 지역의 전력을 증강하기 위한 긴급 예산소요를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국방위원회는 정부가 보고한 긴급 예산소요를 조정·반영하여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긴급전력소요로 증액된 예산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방위력사업청 소관 무기획득사업 중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2010년도 예비비로 연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기획재정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안에 대한 심의 도중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2010년 10월 1일 국회 제출)한 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부 예산안에는 연평도 포격과 관련된 긴급 전력소요 등이 미반영되어 있었고, 국회심의를 통하여 연평도 포격 관련 예산으로 국방부 934억원, 방위사업청 1,680억원이 증액되었다.

다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5도 지역 긴급 전력보강을 위한 예산증액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보강된 전력의 운용에 관한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의 시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국방비 증액소요는 가급적 국방비 내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충당하기로 함에 따라, 국방부 소관 예산 중 39억 9,000만원,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중 2,249억원을 각각 감액하였다.

국방부 소관 국회 조정 내역

· 세출예산 1,097억원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국회 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국방부의 경우 1,518억원을 증액하였고, 420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1,097억 5,000만원 순증하였다. 감액규모는 예비심사 결과인 207억 7,600만원보다 212억 7,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세부내역 조정(189억 7,400만원)과 IPTV 수신료 감액(23억원)에 기인한다.

방위사업청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321.9억원

방위사업청의 경우 국회에서 2,249억 400만원을 감액하고, 2,571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확정예산에는 321억 9,700만원이 순증하였다. 감액규모는 예비심사 결과인 958억 5,600만원보다 1,290억 4,800만원 늘어났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연평도 증액소요를 가급적 자체조정을 통해 충당하기로 함에 따라 국방획득예산에 대한 감액폭이 증가하게 되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프로그램별 증감액 현황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경우 서해5도 지역의 전력증강 소요가 발생하면서 군사시설건설과 군수지원을 위한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주로 국방정보화 프로그램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는 결함이 발생한 K계열 무기에 대한 예산이 조정되면서 기동전력 프로그램의 예산이 크게 감액되었으며, 서해5도 지역 전력증강을 위하여 자주포 등 화력이 보강되면서 화력탄약 프로그램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11. 10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프로그램별 증감현황

(단위 : 억원)

국방부			방위사업청		
프로그램	증액	감액	프로그램	증액	감액
급여정책	2	2	기동전력	-	1,121
군사시설건설	761	-	함정	-	441
군수지원 및 협력	157	1	항공기	600	425
국방정보화	28	23	화력탄약	1,689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190	190	감시정찰정보전자전	148	202
기 타	6	13	기 타	134	61
합 계	1,144	229		2,571	2,249

주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프로그램별 증감액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작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1. 국방부

서해5도 지역 전력증강

2010년 11월 23일 북한에 의한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이후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지역의 전력증강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정부 예산 제출 시점인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정부 예산안에는 서해5도 전력증강 소요가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서해5도 전력증강 소요를 판단하여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였다.

국방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서해5도 지역의 긴급 전력증강 소요를 심사한 결과 국방부 예산(경상운영비)에서 934억원을 증액하였고, 방위사업청 예산(방위력개선비)에서 2,172억원을 증액하여 총 3,106억원을 증액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해5도 지역 전력증강과 관련하여 국방부 예산 934억원, 방위사업청 예산 1,680억원 등 총 2,614억원의 국방

예산을 증액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방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나, 시급성이 높은 일부 사업은 2010년도 예비비로 연내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비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편성된 일부 예산을 조정하였다.

표 11. 11 서해5도 전력증강 관련 2011년 증액예산

(단위 : 억원, %)

소관	세부사업명	2011년도 예산안(A)	국방위원회	예결위 (B)	증감 (B-A)
국방부	통신시설	323	351	351	28
	의무장비획득	457	460	460	3
	통신전자장비	266	272	272	6
	일반장비	406	425	425	20
	공병물자	208	231	231	22
	병참물자	886	888	888	2
	외주정비	6,054	6,103	6,103	49
	수리부속지원	11,232	11,274	11,274	42
	해공군/국직 병영생활관	2,205	2,395	2,395	190
	기타병영기본시설	601	635	635	34
	정비 및 보급시설	420	538	538	118
	일반지원시설	3,595	4,014	4,014	419
	소 계	26,653	27,586	27,586	934
방위사업청	전술비행선	-	51	51	51
	신세기함 탑재 UAV	-	91	91	91
	대포병탐지레이더	325	696	585	260
	음향표적탐지장비	-	90	63	63
	FO용 주야관측장비	400	416	416	16
	고성능영상감시체계	-	7	7	7
	K-9 자주포	4,850	5,717	5,470	620
	K-55A1 자주포	566	681	681	115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	20	20	20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	-	111	111	111
	K-10 탄약운반차량	2,656	2,846	2,739	83
	BTCS 성능개량	96	102	102	7
	155밀리 교체시설	152	390	390	238
	소 계	9,045	11,217	10,725	1,680
합 계		35,698	38,803	38,312	2,614

자료 : 국회 국방위원회 2011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시 연평도 포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방비 증액소요는 가급적 국방비 내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충당함으로써 국방비 증액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방분야에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 중 국방부 소관 예산 40억원,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2,249억원 등 총 2,289억원의 예산을 감액하였다.[1)]

국방 IPTV 시청료

국방부는 국가 방송통신 정책에 부응하고 군 장병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군의 병영생활관에서 IP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2011년도 예산안에 IPTV 시청료로 2010년에 비해 44억원(66.1%) 증액된 111억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IPTV사업자와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케이블 TV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 군 장병의 채널 선택권 침해 문제, 국방 IPTV 요금의 적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국방 IPTV 사업의 시급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 23억원을 감액조정하였다.

2. 방위사업청

사전절차 미이행 신규사업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의 방위력개선 부문 신규사업 중 일부사업의 경우 사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방위사업법」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 선행연구,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된 30개 사업 중 KF-16 전투기성능개량 사업 등 7개 사업, 246억 7,300만원 규모의 예산이 법령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1) 국방부 감액 예산 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189억 7,400만원)의 경우 항목간 내역을 조정한 것으로, 최종적인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동일하므로 감액예산에서 제외하였다.

표 11. 12 사전절차 미이행 신규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1 예산안	선행연구 실시여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여부	법률적 검토 이행여부
1	KF-16전투기 성능개량	9,722	실시	미수립	검토
2	한국형공격헬기	6,477	실시	미수립	미검토
3	울산급Batch-Ⅱ	3,120	실시	미수립	미검토
4	연합군사정보유통체계	1,978	실시	미수립	미검토
5	정밀탐색구조장비	1,665	미실시	수립	검토
6	초계함용신형탐지레이더(소)	1,000	미실시	수립	검토
7	해군특수전모의훈련장비(소)	711	실시	미수립	검토
	합 계	24,673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2011년도 부처별 분석 Ⅲ」, 2010. 11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예비심사 시 "정부는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을 수립한 후에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 중 한국형공격헬기 사업과 울산급 Batch-Ⅱ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각각 10억원씩 감액하였다.

국내개발 무기체계의 결함

국내개발무기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으나, 2011년 예산안에는 결함이 발생한 무기체계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검증기간 없이 양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K-2 전차의 경우 핵심부품인 파워팩에서 결함이 발생되어 양산이 지연되고 있고, K-9 자주포의 경우 엔진에서 캐비테이션(cavitation) 현상[2)]이 발생하였다. K-21 장갑차의 경우 도하훈련 중 침수사고가 있었고, 차기고속함인 한상국함의 경우 고속에서 직진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기 복합형 소총인 K-11에서는 시험용 소총에서 다양한 결함이 보고되었다.

2) 캐비테이션 현상 : 디젤엔진의 냉각수에 기포가 형성, 성장 및 붕괴되면서 고압의 미세분사(micro jet)가 발생하여 엔진 실린더 표면을 손상시키는 현상

무기결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산을 추진할 경우 유사한 결함이 재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군의 전력화 시기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내개발 무기체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의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군의 전력증강을 위하여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특히, 일부 무기체계의 경우 결함에 대한 시험·검증이 미흡하므로 양산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K-2전차사업의 파워팩 소요예산은 K-2전차의 시험평가과정에서 발생된 제 결함을 해결하고, 3계절 시험평가 후 집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으며, 결함이 보고된 무기체계 중 K-21 보병전투차량, K-11 복합형 소총, 검독수리-A 등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조정하였다.

표 11. 13 결함발생 무기체계 예산조정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2011 예산안(A)	2011 확정예산(B)	증감(B-A)
K-21 보병전투차량	2,944	2,444	-500
K-11 복합형 소총	543	316	-227
검독수리-A 급(차기고속함)	2,649	2,529	-120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 12

집행실적 부진 사업

방위력개선 부문에 편성된 일부 무기획득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방위력개선 부문 세부사업 중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점(2010년 9월말)에 집행률이 50% 이하인 집행부진사업이 66개이며, 해당 사업에 편성된 2011년도 예산안은 1조 6,54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부진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부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10년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2011년도 예산의 집행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조정하였다.

표 11. 14 집행부진사업 예산조정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집행부진 사유	2011 예산안	2011 확정예산	증감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미측 LOA 제공 지연	449	249	-200
C-130H성능개량	주장비 5종 중 1종은 획득 불가	140	122	-18
전술함대지유도탄	합참의 ROC/소요량 검토 중	56	38	-18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2011년도 부처별 분석 Ⅲ」, 2010. 11

제1절 재정 현황

1. 개관

201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52조 9,303억원으로 2010년 대비 7.2%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이다. 이를 행정안전위원회 속하는 각 부처별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0년 대비 8.2% 감소한 2,532억원, 행정안전부가 44조 1,766억원(8.1% 증가), 경찰청이 7조 7,600억원(3.5% 증가), 소방방재청이 7,405억원(1.3% 증가)이다.

201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총지출
52.9조원

표 12. 1 201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2010(A)	2011(B)	증감(B-A)	증감률 [(B-A)/A]
행정안전위원회	493,631	529,303	35,672	7.2
총지출 대비 비중	16.9	17.1	0.2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중)	2,757 (0.5)	2,532 (0.5)	-225	-8.2
행정안전부 (비중)	408,574 (82.8)	441,766 (83.5)	33,192	8.1
경찰청 (비중)	74,987 (15.2)	77,600 (14.6)	2,613	3.5
소방방재청 (비중)	7,313 (1.5)	7,405 (1.4)	92	1.3

주 :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 2010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2010. 10), 2011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총지출 52조 9,303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6.1%, 23.9%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무지출 비중이 큰 이유는 소관 부처 중 행정안전부의 의무지출 사업인 지방교부금의 규모(2011년 예산기준 30.2조원)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비경직성 재량지출은 총지출의 11.9%이다.

표 12. 2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 억원, %)

	총지출 (A)	의무지출 (B)	재량지출(A-B)				
			경직성 재량지출				비경직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행정안전위원회	529,303 (100.0)	402,729 (76.1)	59,371	4,285	0	63,656 (12.0)	62,918 (11.9)
중앙선관위	2,532	415	1,394	136	0	1,530	587
행정안전부	441,766	402,295	2,028	389	0	2,417	37,054
경찰청	77,600	19	55,570	3,642	0	59,212	18,369
소방방재청	7,405	0	379	118	0	497	6,908

주 : 괄호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총지출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4개 부처가 있는바, 이들 부처 재정의 특징 및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관유물매각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보다 5.8%(4,900만원) 감액된 7억 8,900만원이다.

표 12.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백만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796	838	789	-49	5.8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011.2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8.1%(224억원) 감소하였는바, 그 감소 이유는 지방선거관리, 정당보조금 등 지방선거관련 경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표 12.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190	2,757	2,533	-224	-8.1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011.2

201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재외선거관리, 재외선거인력운영 등 재외선거 관련 사업이 증액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외선거관리사업은 80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2,200만원(361.3%)이 증액되었고, 재외선거인력운영사업은 신규로 52억 5,300만원이 반영되었다.

행정안전부

2011년도 행정안전부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개의 기금(공무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011년도 예산은 276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 대비 22.9%(51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증액분의 대부분은 경상이전수입(49.1억원)으로 각종 계약 위약 및 지체상금 5.2억원, 국고보조금·위탁사업 집행잔액 및 교육비 등 반환금 144.3억원 등이다.

표 12. 5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90	225	276	51	16.1

자료 : 행정안전부,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개요」, 2011.1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조 7,805억원으로 전년 대비 8.2%(2.6조원)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의무지출예산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고 주요사업예산이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즉, 의무지출인 지방교부금이 전년에 비해서 2조 7,984억원 증가하였고 경직성 재량지출인 인건비(37억원 증), 기본경비(12억원 증) 등이 증가한 반면에 주요 사업비는 1조 6,8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감소(1,913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2010년에 희망근로프로젝트(4,456억원),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179억원) 등의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2. 6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28,326	312,073	337,805	25,732	8.2
특별회계	5,009	5,268	6,143	875	16.6
광특회계	5,009	4,713	4,996	283	6.0
혁특회계	0	555	1,147	592	106.7
합 계	333,335	317,341	343,948	26,607	8.4

주 : 광특회계는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 혁특회계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임
자료 : 행정안전부,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개요」, 2011.1

행정안전부의 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혁특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2011년도 광특회계 예산은 17개 사업에 4,9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83억원(6.0%)이 증액되었다. 혁특회계의 2011년도 예산은 1,147억원으로 전년 대비 592억원(106.7%) 대폭 증액 되었는바, 이는 행정안전부 소속 3개 공공기관(중앙공무원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1년에 본격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소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1개로서 동 기금의 2011년도 운용계획 규모는 14조 1,765억원으로 전년 대비 8,216억원(6.2%) 증가하였다. 동 기금의 2011년도 급여대상인원은 32만 2,000명이고, 공무원연금지급액은 9조 2,036억원이다.

표 12. 7 행정안전부 기금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공무원연금기금	220,612	133,548	141,765	8,216	6.2

자료 : 행정안전부,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개요」, 2011.1

2011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된 행정안전부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1,240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420억원)”,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지원(401억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367억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73억원)” 등 13개 사업이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2010년 종료됨에 따라 이후 지역고용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2011년 예산에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2010년 12월 8일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동 법률에 의해 2011년 예산에 신규 반영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사업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자율통합 자치단체인 통합 창원시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연간 147억원, 10년간 지원)으로서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계상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창원시에 대한 재정지원을 광특회계 국고보조금으로 50%, 특별교부세로 50% 지원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어 2011년 예산에 73억원이 반영되었다.

표 12. 8 2011년도 신규 반영된 행정안전부 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지역공동체일자리	일반	-	124,400	124,400	순증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일반	-	42,000	42,000	순증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지원	일반	-	40,090	40,090	순증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광특	-	36,650	36,650	순증
접경권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광특	-	8,800	8,800	순증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광특	-	7,332	7,332	순증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운영	일반	-	3,955	3,955	순증
자치단체공통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시설보안강화지원	일반	-	3,500	3,500	순증
B-1 정부 노후시설 정비	일반	-	3,000	3,000	순증
국가정보통신기반효율화	일반	-	1,500	1,500	순증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	일반	-	1,000	1,000	순증
고양 지방합동청사신축	일반	-	885	885	순증
주부물가모니터단운영	일반	-	258	258	순증

자료 : 행정안전부,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개요」, 2011.1

행정안전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및 공무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89.4%인 30조 1,904억원이 지방교부금이며, 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98%인 1조 6,822억원이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조 6,662억원이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전출되며, 이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계획에 계상된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이 4,996억원에 이르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공기관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1,147억원이 반영되었다. 공무원연금기금은 2011년 운용규모

그림 12. 1 행정안전부 재정구조–2011년도 예산

주 : 2011년도 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

가 14조 1,765억원에 이르며, 수입계획은 자체수입이 9조 8,117억원, 정부내부수입이 2조 280억원 등이다.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사업비가 11조 3,524억원, 기금운영비가 857억원, 여유자금운영이 2조 6,783억원 등이다.

경찰청

2011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77억원(0.8%) 감액된 9,287억원이고,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7억원(7.9%) 증액된 648억원이다.

표 12. 9 경찰청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899	9,364	9,287	-77	-0.8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1,295	1,198	0	-1,198	100
경찰병원	600	601	648	47	7.9
합 계	8,794	11,164	9,936	-1,228	-11

주 :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업무는 2010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이양되었음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011.2

2011년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463억원(6.2%) 증액된 7조 6,231억원이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106억원(57.6%) 감액된 813억원이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5억원(7.8%) 감액된 297억원이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은 전년도보다 47억원(7.9%) 증액된 648억원이다.

표 12. 10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8,312	71,768	76,231	4,463	6.2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0.3	1,919	813	-1,106	-57.6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327	321	297	-25	-7.8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777	1,198	0	-1,198	-100
경찰병원	596	601	648	47	7.9
합 계	70,011	75,808	77,989	2,181	2.9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011.2

소방방재청

2011년도 소방방재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경상이전수입 11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억원(26.4%) 감액되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91억원(1.2%) 증액된 7,405억원이다.

표 12. 11 소방방재청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33	151	111	-40	-26.4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011.2

표 12. 12 소방방재청 소관 세출예산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852	4,787	5,157	370	7.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902	2,072	2,072	-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3,701	3	4	1	21.9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1	452	172	-279	-61.9
합 계	8,456	7,313	7,405	92	1.2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011.2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0년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에 걸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11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에 계상된 재외선거 관련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간 균형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의 2012년 예산편성 시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국고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공원조성 공사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경찰청에 대해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2012년부터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채택되었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는 크게 다음의 2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전체적으로 소관 4개 부처의 예산이 2,104억원 순증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확정 결과 순증 규모가 1,211억원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시 증액 규모는 2,109억원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473억원만이 반영되었고, 감액 규모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억 8,500만원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교부금의 감액 등에 따라 261억원이 반영되었다.

표 12. 13 2011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예산안 심의현황

(단위 : 백만원)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감액	소계	증액	감액	소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0	0	80	28	0	28
행정안전부	1,142	-1	1,141	1,213	-258	955
경찰청	494	-4	490	106	-4	102
소방방재청	393	0	393	126	0	126
합계	2,109	-5	2,104	1,473	-261	1,211

자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12

두 번째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채택한 4건의 부대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는 1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특별교부세로 동 지원금과 같은 금액만큼을 추가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한 국회 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안전부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운영"에 대해서만 1억원의 감액조정이 있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서는 동 사업이외에 지방교부금이 258억원의 감액조정이 이루어졌고, 정보화교육 운영이 5억원, 정부청사 노후시설 등 정비가 6,100만원의 감액조정이 이루어졌다. 지방교부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조정은 내국세 세입예산의 감액에 따른 것이다.

표 12. 14 행정안전부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의내역(감액)

(단위 : 백만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행안위(B) (B-A)	예결위(C) (C-A)
일반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운영	302	202 (-100)	202 (-100)
일반	정보화교육 운영	2,363	2,363 (0)	1,824 (-539)
일반	정부청사 노후시설등 정비	8,226	8,226 (0)	8,165 (-61)
일반	지방교부금	30,216,142	30,216,142 (0)	30,190,380 (-25,762)
	감액합계		-100	-26,462

자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12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시 행정안전부 소관 증액대상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증액조정 규모는 1,142억원이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 최종적으로 예비심사 증액규모보다 71억원이 많은 1,213억원의 증액조정이 이루어졌다. 예비심사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위험도로구조개선, 정보격차해소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145억원의 증액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반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충남도청·경북도청 신축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 1,213억원의 증액조정이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심의 과정의 특징은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지 않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었거나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서해5도종합발전지원(420억원 증액, 신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73억원 증액, 신규), 전직대통령기념사업지원(64억원 증액, 신규), 새마을운동세계화(50억원 증액) 등 7개 사업이다.

서해5도종합발전지원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시 연평도 등 서북도서 지역의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긴급전력보강 및 국방비 증액, 서해5도 주민에 대한 주민대피시설 지원 등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되어 신규로 반영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은 창원시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규로 반영되었다.

표 12. 15 행정안전부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의내역(증액)

(단위 : 백만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행안위(B) (B-A)	예결위(C) (C-A)
일반	2.28민주운동기념회관건립지원	2,500	5,500 (3,000)	5,500 (3,000)
일반	경북도청신축지원	5,000	30,000 (25,000)	25,000 (20,000)
일반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	1,000	2,000 (1,000)	1,000 (0)
일반	국가기반체계관리및비상대비업무지원	1,931	1,931 (0)	1,951 (20)
일반	국가상징선양	200	200 (0)	210 (10)
일반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8,334	13,334 (5,000)	10,334 (2,000)
일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26	7,206 (1,080)	6,126 (0)
일반	수탁출제수입대체경비	928	1,182 (254)	928 (0)
일반	아름다운화장실 조성	679	1,179 (500)	679 (0)
일반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1,360	1,660 (300)	1,360 (0)
광특	위험도로 구조개선	74,043	75,043 (1,000)	74,043 (0)
일반	일제강제동원조사지원위원회 운영	11,202	11,882 (680)	11,202 (0)
일반	새마을운동세계화	2,640	2,640 (0)	7,640 (5,000)
일반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0	0 (0)	42,000 (42,000)
일반	승강기시설안전관리개선(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고도화)	590	590 (0)	1,090 (500)
일반	자원봉사활동진흥을 위한 기반구축	1,616	3,616 (2,000)	1,616 (0)
일반	전직대통령기념사업지원	0	0 (0)	6,400 (6,400)
일반	정보격차해소지원	15,521	17,137 (1,616)	15,521 (0)
일반	정보화 역기능대응	6,556	9,466 (2,910)	6,556 (0)
일반	정보화기획및국제협력지원(정보화)	1,599	2,549 (950)	2,399 (800)
일반	정보화마을 조성	4,037	5,717 (1,680)	4,037 (0)
일반	제주4.3평화재단지원	2,000	3,500 (1,500)	2,000 (0)
일반	주부물가모니터단운영	0	704 (704)	258 (258)
광특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0	0 (0)	7,332 (7,322)
일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운영	0	4,995 (4,995)	3,955 (3,955)
일반	충남도청신축지원	20,000	80,000 (60,000)	50,000 (30,000)
	증액합계		114,169	121,275

자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12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은 예비심사결과 80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확정예산에는 27억 8,100만원만 증액되었는바, 이는 '재외선거관리'사업의 증액규모가 감소(39억원→3억원)하는 등 상임위 증액사업의 증액규모가 대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경찰청 소관은 예비심사결과 3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493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다. 확정예산의 경우 감액은 예비심사결과와 동일하게 이뤄졌으나, 증액은 예비심사결과보다 387억 9,900만원이 감소한 105억 7,600만원만 증액되었다. 이는 전의경 급식소 영양사·조리사 배치(40억 4,000만원), 전의경 급식비(58억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20억 8,700만원) 등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 소관은 예비심사결과 393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확정예산에는 126억 1,8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다. 상임위에서는 소방장비검사·검수센터 예산 55억원, 초고층건물화재진압용 헬기도입 예산 237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나, 확정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상임위에서는 증액되지 않았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수저류시설설치(4억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전시시설 등 확충(16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도 연평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상임위 심사결과(6억 9,600만원 증액)보다 71억 2,100만원 많은 78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다.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관리

'재외선거관리'사업은 선거법 개정(2009.2)으로 재외선거가 도입됨에 따라 재외선거 준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계도홍보, 예방단속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63억 2,200만원(361.3%)이 증액된 80억 7,200만원이다.

표 12. 16 재외선거관리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액 (B-A)	증감률 (B-A/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정부안	확 정 (B)		
재외선거관리	200	181	1,750	2,030	7,730	8,072	6,322	361.3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부가 제출한 동 사업 예산안은 77억 3,000만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다.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2012년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공정하고 차질없는 준비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모의선거비 추가배정 및 홍보활동 강화 등 재외선거관련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9억 700만원이 증액되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2012년 재외선거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배정이 필요하고, 재외선거는 방대한 업무량, 주권행사 제약, 재외국민들의 국내선거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48억 700만원의 증액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확정예산에는 3억 4,200만원만 반영되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동 사업에 대해서 선관위와 외교부 예산안에 재외선거 관련 실태조사·간담회·홍보안내 등 유사한 성격의 경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으므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중복된 예산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예결위에서는 외교부 '재외국민 선거기반 구축'사업에 대해 교육 및 제도안내 교재발간, 국내직원에 의한 해외현지 실태조사 등은 선관위의 재외선거관리사업과 일정부분 중복되고, 선관위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확정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2.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 종료 이후 지역고용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생산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예산에 신규로 1,244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2. 17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2009 예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
지역공동체 일자리	-	-	1,244	1,244	순증
희망근로프로젝트	13,280	4,456	-	-	순감

자료 : 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국고보조율의 적정성과 계속사업으로서 타당성의 문제가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다. 기존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국고보조율은 약 78%수준이었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희망근로프로젝트와 다르게 국고보조율을 50%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일자리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기존 희망근로프로젝트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동 사업을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계속사업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표 12. 18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비교

	2010년 희망근로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목적	취약계층 실업대책	취약계층 실업대책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규모	10만명(상반기)	4만명(1,2차 각각 2만명)
예산규모	5,727억원 국비 4,456억(78%) 지방비 1,271억(22%)	2,480억원 국비 1,240억(50%) 지방비 1,240억(50%)
사업기간	상반기 4개월 ('10. 3 ~ 6월)	·1차 4개월('11.3~6월) ·2차 4개월('11.8~11월)
소득 및 재산기준	최저생계비120%이하, 재산1.35억원 이하인 자	최저생계비 120%이하 (지역 사정에 따라 150%이하도 가능), 재산1.35억원 이하인 자
참여자	취약계층 실업자 위주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중심 ※ 청년 미취업자 20% 우선 채용
급여	월 83만원	월 83만원(4대보험 제외) ※ 전문기술인력 등 탄력적용
상품권	임금 중 30%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도입·운영

주 : 2010년 하반기에는 자치단체별 예산절감분(총 3,688억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1,000억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자체 수행하고 있음
자료 :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2010년 희망근로프로젝트와 비교하여 보면, 사업규모는 10만명에서 4만명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은 1,271억원에서 1,240억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고, 국고보조율이 78% 수준에서 50%로 낮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정책 질의 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매칭방식의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의 매칭없이 전액 국고보조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지만, 동 지역동공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지역공동체일자리의 성격

- 취약계층의점진적민간적응을 위한 중간 단계의 일자리 제공
- 지역에필요한생산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 자립기반을 마련

당초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보조의 급격한 폐지 시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우려하여 2010년 그 규모를 축소하여 일시적으로 연장한 것이다. 반면,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한시적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매년 1,200억원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동 사업의 성격이 "취약계층 실업대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중 어느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동 사업 성격을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같이 "취약계층 실업대책"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할 경우, 동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가까운 사업이라면 계속사업으로의 추진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 재정확장 정책"이었던 2009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해당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폐지하는 것이 원칙인 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현 시점에서 동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바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는 동 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취약계층), 급여수준(83만원/월) 등에서 사실상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동일한 사업으로, 경제가 회복된 현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 동 사업과 같은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은 취업연계효과가 낮아 지역맞춤형·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소득보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확정예산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DMZ 인근의 평화, 안보, 생태, 역사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보 및 자전거길 조성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접경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예산에 신규로 88억원이 편성되었다. 총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058억원(국비 1,440억원, 지방비 618억원)이며, 사업규모는 585km이다.

동 사업에 대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한정된 국가재원을 자전거도로 구축에 투입함에 있어 '생활교통형'자전거도로가 충분히 구축되기도 전에 '레저형'자전거도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접경권인 DMZ 인근의 자전거도로 구축은 교통수단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취미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전거 정책이 지향하는 바에 비추어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전거도로의 구축이 접경지역 지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접경지역의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광역적 연계 기능을 갖는 고속도로 기능이 열악하고, 고속도로 이외에도 총 도로 연장에서 국도 연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이에 대한 도로시설의 개선·확충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자전거도로의 구축이 어느 정도 관광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넷째, 동 사업은 5년 동안 총 사업비가 2,05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예비타당성 조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 제13조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동 사업은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하나의 단위사업이지만, 실제로는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개별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였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시 상기에 기술한 문제점을 들어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예산의 감액은 물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경찰청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은 전국 주요도시에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및 관련 시설(CCTV, 가변전광판) 등 '광역교통정보 기반시설'을 확충하려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27억원이 감액된 270억원이다.

표 12. 19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액 (B-A)	증감률 (B-A/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정부안	확 정 (B)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	297	297	297	297	270	270	-27	-9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실집행실적 부진 문제가 지적되었다.

국회는 2009회계연도 결산 심의결과, 동 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금액 287억원[1] 중 12.3%인 35억 1,9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여 실적이 크게 저조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집행부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2011년 예산안에는 지역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 편성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까지도 2009년 예산이 여전히 집행되고 있었으며(2009년도 예산 이월액의 2010년 9월말 기준 집행률이 88.6%), 2010년도 예산액 287억원 또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전액 교부되었으나, 2010년 9월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교부된 금액의 24.4%인 70억 1,100만원에 불과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이처럼 국회가 결산 심의결과 실집행실적의 부진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예산의 감액 조정(-50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확정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1) 2010년도 예산안 297억원 중 10억원은 여수시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집회시위 관리장비 구입비

집회시위 관리장비 구입비는 '전의경 대체지원'사업의 일부로 2011년도 예산은 65억 6,000만원이며, 이는 2010년도 예산액 46억 100만원보다 19억 5,900만원(42.6%) 증액된 것이다. 주요 증가 사유는 위생차량 15대 구입비 16억 5,000만원의 신규계상 등에 따른 것이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최근 집회시위 상황이 과거보다 다소 안정적인 국면으로 유지되고 있어 물포, 물보급차, 차벽트럭, 이격용분사기, 충약차량 등의 장비는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 바, 물포 1대, 물보급차 1대, 차벽트럭 4대 구입 예산 7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명차 2대. 위생차 3대 신규 구입을 위한 예산 6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8,000만원이 삭감되었다.

표 12. 20 2011년도 집회시위관리장비 구입계획

(단위 : 백만원)

장비명	경찰청 보유목표	2010년말 보유량	2011예산	
			수량	예산액
물 포	22대	18대	1대	240
물보급차	22대	18대	1대	90
차벽트럭	44대	14대	5대	550
이격용분사기	8,280대	3,263대	3,282대	174
충약차량	22대	13대	6대	570
신형보호복	5,400벌	5,308벌	92벌	60
보호복내피	2년주기교체	5,308벌	2,106벌	636
무선수신기	23,400대	11,056대	4,055대	649
소화기	26,850대	6,789대	2,606대	68
비디오카메라/디지털카메라	460대	52대	140대	490
조명방송차량	40대	6대	7대	1,260
첨단영상장비	필요분	1식	-	-
위생차	76대	28대	15대	1,650
캡사이신희석액	필요분	5,000ℓ	6,150ℓ	123
총 계				6,560

자료 :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경찰청 소관)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예결위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는바, 결국 상임위 예비심사결과와 동일하게 최종적으로 8,000만원이 삭감되었다.

민생치안확립 프로그램

'민생치안확립'프로그램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첨단과학수사, 사이버범죄수사, 교통사고예방, 교통행정전산화,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 등 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서,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3,845억원보다 519억원(13.5%) 증액된 4,364억원이다.

표 12. 21 민생치안확립 프로그램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프로그램명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
	예산	결산	예산(A)	예산안	예산(B)	(B-A)
민생치안확립	70	69	3,845	4,307	4,364	519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프로그램의 분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민생치안확립'프로그램을 구성하는 7개 단위사업 중 '교통사고예방', '교통행정전산화',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 등 3개 단위사업은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범죄예방', '범죄수사'등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다른 단위사업들과 정책목표가 상이한 바, 이질적인 성격의 단위사업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것은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려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2011년도 경찰청 소관 10개 프로그램 예산 중 '민생치안확립'프로그램이 기본경비 성격을 가진 '경찰행정지원'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민생치안확립'프로그램에서 '교통사고예방', '교통행정전산화',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 등 3개 단위사업을 제외할 경우, 전체 프로그램 중 네 번째 순위로 비중이 떨어지게 되는바, 이질적인 단위사업을 동일 프로그램에 편성함에 따라 예산배분구조를 왜곡하여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예결위에서는 이러한 취지로 교통관련 단위사업을 별개의 프로그램 예산으로 분할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확정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4. 소방방재청

소하천 정비

'소하천정비'사업은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072억원이다.

표 12. 22 소하천 정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세부사업명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액 (B-A)	증감률 (B-A/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A)	집행액	정부안	확 정(B)		
소하천 정비	1,909	1,666	2,072	2,072	2,072	2,072	0	0

자료 : 소방방재청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하천 정비율 및 피해액을 감안하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는 2009회계연도 결산 심의결과 동 사업과 유사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이 60%로, 동 사업의 국고보조금 지급비율 50%보다 높은 것은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소하천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을 6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최근 5년(2005~2009) 간 소하천의 피해액이 전국 하천 피해액의 47%에 달하고 있고, 소하천의 정비율이 39%로 국가하천 95%, 지방하천 79%에 비해 낮으므로, '소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예산규모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었으며, 국고보조율 또한 50%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예결위에서는 하천 종류별 정비율 및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국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바 있고, 소하천 정비율과 사업비가 국가 및 지방하천에 비해 낮으므로, 하천 종류별로 정비예산 투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 간 조정을 통해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적정 규모로 증액하고, 국고보조율 또한 60% 이상 상향조정 하며,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 제도(최소 50% 보장)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확정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5. 지방재정 지원

가. 지방재정 지원 예산

지방재정 지원 예산현황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자체보조금 등 지방재정 지원의 2011년도 예산은 총 97.8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10년 예산 대비 6.5조원 증가한 액수로 증가율로는 7.1% 증가하였다.

표 12. 23 2011년도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현황

(단위 : 억원, %)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B-A)	증감률
지방교부세	273,920	301,904	27,984	1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2,980	352,831	29,851	9.2
지자체보조금	316,392	323,289	6,897	2.2
지방재정 지원 합계	913,292	978,024	64,732	7.1

주 : 지자체보조금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더한 액수임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011.2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가 30.2조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8조원 증가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교육세 전액)은 35.3조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0조원 증가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 32.3조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0.7조원이 증가하였다.

지방교부세

2011년도 지방교부세 총액은 2010년 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30조 1,904억원이다. 구체적으로 법정교부세는 2010년 예산 대비 10.5%가 증가한 29조 1,223억원이고, 부동산교부세는 2010년 예산 대비 2.1%가 증가한 1조 681억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내국세 세입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내국세가 1,339억원 감액됨에 따라 정부예산안에 비해 257억원이 감소하였다.

표 12. 24 2011년도 지방교부세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2010 예산(A)	2011년			2010년 예산대비	
		예산안(B)	예산(C)	증감 (C-B)	증감 (C-A)	증감률 [(C-A)/A]
법정교부세	263,458	291,480	291,223	-257	27,765	10.5
부동산교부세	10,461	10,681	10,681	-	220	2.1
합계	273,919	302,161	301,904	-257	27,985	10.2

자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 검토보고서」,2010.11.22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2. 25 2011년도 지방교부세 예산 배분 내역

(단위 : 억원, %)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B-A)	증감률 [(B-A)/A]
법정 교부세	보통교부세	240,903	266,255	25,352	10.5
	특별교부세	9,683	10,740	1,057	10.9
	분권교부세	12,872	14,228	1,356	10.5
	소계	263,458	291,223	27,765	10.5
부동산교부세		10,461	10,681	220	2.1
합계		273,919	301,904	27,985	10.2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2011. 2"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21.5조원, 2007년 25.2조원, 2008년 31.1조원, 2009년 28.3조원, 2010년 28.0조원, 2011년 30.2조원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교부총액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3조 7,355억원, 5조 9,021억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의 경우, 2008년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세조치와 경제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액추경으로 인해 교부총액이 전년에 비해 2조 7,793억원이 감소되었다. 2010년에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지방소비세제도의 도입으로 내국세가 감소하여 지방교부세의 감소추이가 이어졌으나, 2011년에는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 추정액의 증가로 지방교부세 예산액이 전년 교부총액에 비해 2조 1,536억원 증가하였다.

표 12. 26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 억원, %)

	법정분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 (예비비)	부동산교부세		교부총액
	당초분	추경·정산분	최종분		당초분	최종분	
2006	203,465	949	204,414	0	10,200	10,200	214,614
2007	226,242	6,835	233,077	0	19,455	18,892	251,969
2008	257,797	24,340	282,137	0	31,770	28,853	310,990
2009	272,791	-20,922	251,869	18,600	14,882	12,728	283,197
2010	263,459	6,448	269,907	0	10,461	10,461	280,368
2011	291,223	-	-	-	10,681	-	301,904

자료 :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2010.3.”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액을 보장해줌으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을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력 지수[2)]가 1을 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의 조정률[3)]이 2011년 기준 88.2%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보통교부세의 재정지원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되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나 확정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국고보조금

최근 들어 중앙정부가 경제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세출대응의 필요성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이전재원 중 국고보조금의 규모와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2)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보통교부세 조정률이란, 보통교부세의 총액을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단체의 재정부족액의 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각 단체별 재정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한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최근 5년 동안 추이를 살펴보면, 2007~2008년까지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되는 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을 상회하였으나, 2009년 본예산부터 지방교부세보다 국고보조금의 규모와 비중이 더 커지게 되었다. 특히 2009년 추경예산에서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2009년 본예산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을 2조원 이상 증액시킨 바 있다.

국고보조금의 증가

- 2009년 본예산부터 지방교부세를 앞서기 시작
- 지자체 세출자율성의 악화 우려

표 12. 27 연도별 일반 지자체 지방재정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2007	2008	2009 (본예산)	2009 (추경)	2010	2011
지방교부세(A)	245,134	289,567	287,673	284,284	273,920	301,904
국고보조금(B)	222,992	249,611	294,059	319,279	316,391	323,289
합계(C)	468,126	539,178	581,732	603,563	590,311	625,193
지방재정 지원 중 지방교부세비율(A/C)	52.4	53.7	49.5	47.1	46.4	48.3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010.10

일반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자체 전체 세입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으로 지방정부의 세출집행 행태를 좌우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교부세보다 국고보조금의 규모와 비중이 더 커진다는 것은 지방정부에게 그만큼 세출의 자율성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지방정부로 하여금 대응 지방비 부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세출여력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금과 달리, 국고보조금은 그 사용 용도가 지정되는 경직적인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방비가 매칭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규모 이상으로 지방정부의 세출 자율성을 제한하게 된다.

최근 연도별 지방정부의 국고보조금 수입 및 보조사업 세출[4] 현황을 보면, 지방정부의 전체 세입 대비 국고보조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7.8%에서 2010년 21.2%로

4) 지방정부의 세출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며, 정책사업은 다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세출은 보조사업으로 편성된다.

3.4%p 증가하였고, 전체 세출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2006년 30.9%에서 38.5%로 7.6%p 증가하는 등 매년 지방재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에 대한 제약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이전재원의 하나로, 국고보조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복지 수요를 해소하고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통일적 기준에 의한 국가 시책사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금보다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재원의 성격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산 편성 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자율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지방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을 검토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과 지자체 매칭방식의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의 매칭없이 전액 국고보조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정부는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정부의 신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개편하였다. 2011년도 광특회계의 예산은 9조 8,52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89억원이 감소한 액수이다.

표 12. 28 2011년도 광특회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	증감	증감률
지역개발계정	36,924	36,332	-592	-1.6
광역발전계정	57,907	58,252	345	0.6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784	3,942	158	4.2
합계	98,615	98,526	-89	-0.1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010.10

광특회계는 기존의 지역개발, 지역혁신, 제주 3개 계정을 지역개발, 광역발전, 제주의 3개 계정으로 개편하면서 재원규모를 일부 확대하였다. 가장 큰 특징은 지역개발계정에 포괄보조금제도(시·도 편성/시·군·구 편성)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업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균특회계 지역개발 사업계정 하에 각 소관부처 별로 추진되던 200여개의 내역사업을 22개의 포괄 보조사업(시도자율편성 18개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4개)으로 통폐합하였다.

포괄보조금 제도가 적용되는 광특회계는 중앙정부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해당 사업이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으로 결정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세출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일반적인 자치단체 국고보조 사업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한계가 있는 바, 광특회계가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다. 즉, 광특회계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인 포괄보조사업 개발과 타 회계에 편성된 지역개발사업을 광특회계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

표 12. 2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비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목적	• 국가균형발전 지원	•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
회계구조	• 지역개발사업계정 : 6.2조원 • 지역혁신사업계정 : 2.0조원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0.4조원 ⇒ 합계 : 8.6조원('09예산기준)	• 지역개발계정 : 3.6조원 • 광역발전계정 : 5.8조원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0.4조원 ⇒ 합계 : 9.9조원('11예산기준)
지역계정	• 200여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22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폐합
광역계정	• 시·도 단위 사업에 주로 지원	• 시·도간 연계 사업 중점 지원
재원배분	• 과거실적치(재원배분모델 적용) 기준으로 재원배분	• 지자체 노력 및 성과 등과 연동된 재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예산검토	• 200여 개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	• 22개 포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
예산집행	• 낮은 실집행률, 상습적인 예산 이월 사례 빈번	•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자료 : 기획재정부, 2010.11

그러나 2010년 광특사업으로 추진된 포괄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과거 균특회계 당시 지원되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5]인 바, 자치단체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지역개발 사업 기획을 유도하고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한 광특회계의 당초 취지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균특회계 당시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적되어온 내역사업들을 기초생활기반확충, 중심시가지재생, 주거지재생, 지역역량강화의 4개의 내역사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기존 내역사업들을 범주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바, 각 지역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포괄보조사업 개발·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광특회계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005년 농촌지역 배수로 정비 등과 같은 지방양여금 사업을 흡수하고 규모를 늘려 설치됐던 균특회계 사업이 5년을 경과하고 이후 광특회계로 개편되었는 바, 이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균특회계가 광특회계로 개편된 이후 부분적으로 포괄보조금화 되었는 바, 지자체 자율예산(일반재원)의 확대를 위해 광특회계를 일반재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다.

다. 지자체 소방재정 지원

소방예산 현황 및 재원구조

우리나라의 소방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총 2조 5,270억원으로 이중 98%인 2조 4794억원이 시·도에서 편성 집행되는 예산이다. 또한 시·도 소방예산 중 98.2%에 달하는 2조 4,357억원이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으로 분담되는 지방비이다.

---

5) 특히, 시 · 군 · 구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도서지역 개발, 소도읍 육성,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농촌마을 종합개발, 어촌 종합개발 등 대부분의 내역사업이 기존 균특회계에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6)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도 농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업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안 9,101억원 중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및 창조지역사업을 위한 예산은 53억원(0.6%)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예산이 기존 균특회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2011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0. 11).

표 12. 30 2010년도 소방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계	행정운영경비 (인력·기본경비)	사업비
소방방재청 및 소속기관	소방정책국	24,693	5,404	19,289
	중앙소방학교	8,186	4,815	3,371
	중앙구조대	14,700	7,329	7,371
	소계	47,579	17,548	30,031
시·도	국비	43,678	0	43,678
	지방비	2,435,699	1,857,517	578,182
	소계	2,479,377	1,857,517	621,860
합계		2,526,956	1,875,065	651,891

주 : 1. 2011년 예산은 지자체 예산이 집계되지 않았고 2011년 4월 이후 집계가 가능함
2. 소방방재청 및 소속기관 예산은 예방안전과 방재관리를 제외한 소방관련 예산임
자료 : 소방방재청, 「소방행정 및 통계자료」, 2010.4

소방예산의 재원은 광역자치단체 시·도의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원인자부담에 기초한 수수료 및 과태료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시·도세이다.

다음의 [표 13.31]에서 보듯이 2010년 소방예산을 기준으로 시·도 전체 소방예산의 재원 중 공동시설세는 5,992억원으로 전체의 24.2%를 차지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이 437억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2005년도부터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교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 및 국고보조금과 같은 특정목적재원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나머지 소방예산의 70% 이상을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수입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12. 31 연도별 시도 소방예산 재원 및 비중

(단위 : 백만원)

	시도소방예산(A)	국고보조금		공동시설세	
		금액(B)	비중(B/A)	금액(C)	비중(C/A)
2005	1,762,731	37,900	2.2%	506,672	28.7%
2006	1,936,128	35,200	1.8%	502,229	25.9%
2007	2,103,680	35,000	1.7%	532,255	25.3%
2008	2,238,626	34,800	1.6%	558,379	24.9%
2009	2,342,865	27,500	1.2%	592,142	25.3%
2010	2,479,377	43,678	1.8%	599,205	24.2%

주 : 2011년 예산은 지자체 예산이 집계되지 않았고 2011년 4월 이후 집계가 가능함
자료 : 소방방재청, 「소방행정 및 통계자료」, 2010.4.

소방예산의 거의 유일한 자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시설세가 전체 소방재원의 약 25% 내외에 불과함에 따라 공동시설세가 사실상 목적세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2.31]에서 보듯이 공동시설세가 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하락하는 추세이고 반면에 시도일반재원으로 소방예산을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반재원이 부족하고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더 곤란하게 하고 다른 예산투자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지 못한 소방예산을 다른 경비보다 상대적으로 더 축소조정함으로써 소방수요 증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또한 소방재정수요 및 소방비 증가 속도에 비해 공동시설세의 세수 신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소방재원으로서 한계가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시도 소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7.1%에 달하지만, 공동시설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3.4%에 불과하다. 공동시설세 세수의 빈약성은 일차적으로 소방공동시설세 세목의 협소성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은 1962년에 제정된 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건축물과 선박에 한정되어 왔다.

소방재정에 대한 국회 논의사항

오늘날의 소방 및 구조구급 서비스는 단순히 개별 지자체의 책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소방관련 지출소요 증가의 대부분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국고보조금은

2010년도 소방예산 2.5조원의 1.8%에 해당되는 43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정력이 열악한 일부 광역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자체재원으로 소방예산을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부 소방관련 사업을 후순위로 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국회에서는 최근에 소방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소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2010년 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9조는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 국고보조의 대상을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대한 개정이전에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소방차량을 포함한 소방장비 등에 대한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기획재정부 소관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 소방장비 구입 등에 대한 국고보조를 어렵게 하였으나, 동법 개정 이후 장비 구입관련 국고보조

표 12. 32 시도 노후 소방차 교체예산 확보현황

(단위 : 대, 백만원)

			2009	2010	증감
대수	신규		54	74	20
	대체		476	441	-35
	계		530	515	-15
예산	신규	국비	6,320	4,340	-1,980
		지방비	4,014	4,693	679
		계	10,334	9,033	-1,301
	대체	국비	16,978	16,332	-646
		지방비	50,637	41,464	-9,173
		계	67,615	57,796	-9,819
	합계	국비	23,298	20,672	-2,626
		지방비	54,651	46,157	-8,494
		계	77,949	66,829	-11,120
		지방비부담률	70.1%	69.1%	

주 : 2011년 예산은 지자체 예산이 집계되지 않았고 2011년 4월 이후 집계가 가능함
자료 : 소방방재청, 「소방행정 및 통계자료」, 2010.4

를 소방방재청 소관의 「소방기본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구입 등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부담률이 70%에 이르러 지방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9조의 2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는 소방관련 국고보조사업의 대상사업과 국비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준보조율은 소요비용의 1/3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자체는 소방예산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지만, 소방자동차 등 고가 장비관련 신규 및 대체 예산은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소방장비 관련 예산의 국비 지원률(기준보조율, 2010년 예산기준 30% 수준)이 낮으면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에서도 타 사업에 비해 밀릴 수밖에 없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소방예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바, 「소방기본법」 상 국고보조사업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전국적 소방 통신망, 고가의 첨단 소방장비의 구입 등에 대해서는 국고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된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소방장비 검사검수센터 설립(55억원)", "초고층건물 화재진압용 헬기도입(237억원)" 등의 소방장비 확충예산의 신설이 검토되었으나 확정예산에서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는 "소방서비스 수요증가 대비 현장대응능력강화를 위하여 3교대 부족인력, 관서신설 등에 소요되는 소방공무원 증원(새비목 설치, 541억원)", "고가사다리차 도입(새비목 설치)"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확정예산에서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소방재원의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내국세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하는 소방관련 교부세를 별도로 두는 소방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2008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년 결산심사시 논의된 바 있으나, 정부가 새로운 특정목적 재원 교부세 신설에 난색을 표명하여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다.

또한 소방관련 목적세인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화재발생 원인인 유류, 가스, 전기, 담배 등을 포함시켜서 세원을 확대하고 세수신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 제13장

제1절 재정 현황

1. 개관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48조 4,336억원으로 2010년 대비 7.2%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이다.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총지출
48.4조원

표 13. 1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2010(A)	2011(B)	증감(B-A)	증감률 [(B-A)/A]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451,820	484,336	32,516	7.2
총지출 대비 비중	15.4	15.6	0.2p	

주 : 총지출 대비 비중은 총지출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2010년도 재정규모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2010. 10), 2011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총지출 48조 4,336억원 중 의무지출은 37조 741억원으로 76.6%에 해당하는데, 주요 의무지출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5조 2,831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등이다. 총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4%이며,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은 19.4%이다.

표 13. 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 억원, %)

	총지출	의무지출	재량지출(A-B)				
			경직성 재량지출				비경직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교육과학기술부	484,336 (100)	370,741 (76.6)	17,336	2,229	-	19,565 (4.0)	94,030 (19.4)

주 : 괄호안은 총지출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교육과학기술부 재정 구성

· 교육분야 93.7%
· 과학기술분야 6.3%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도 두 분야의 비율은 교육분야 93.7%, 과학기술분야 6.3%이다. 부문별로 2011년 확정예산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35조 8,311억원으로 전년대비 9% 증가하였고,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 교육부문은 5조 6,612억원으로 2010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과학기술 부문은 3조 4,9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49억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1억원으로 총 4,300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도 대비 12.2%(467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표 13.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회계명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319	3,439	3,749	310	9.0
특별회계	451	394	551	157	40.0
합 계	3,770	3,833	4,300	467	12.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0. 2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2011년 세출예산을 보면,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43조 4,583억원, 특별회계는 9,41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1%, 8.7% 증가하였다. 특히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경우 2010년 대비 161.7%(281억원) 증가하였고, 국립과천과학관 책특회계도 59.5%(117억원) 증가하였다.

표 13. 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회계명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84,400	401,953	434,583	32,630	8.1
특별회계	8,573	8,655	9,411	756	8.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346	970	1,157	187	19.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914	-	-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174	455	281	161.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7,156	7,287	130	1.8
국립과천과학관 책특회계	161	195	312	117	59.5
국립중앙과학관 책특회계	152	160	200	40	24.8
합 계	392,973	410,608	443,994	33,385	7.3

주 : 총지출 기준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0. 2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기금운용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2010년 대비 1.3% 감소한 4조 339억원으로, 전년 대비 사학진흥기금이 200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이 150억원 감소하여, 기금 전체적으로는 572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5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금총괄

(단위 : 억원, %)

기금명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사학진흥기금	1,717	3,025	2,825	-200	-6.6
과학기술진흥기금	1,419	1,154	1,004	-150	-13.0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826	1,756	1,786	30	1.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9,166	34,916	34,724	-192	-0.6
합 계	34,128	40,851	40,339	-572	-1.3

주 : 총지출 기준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0. 2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4개의 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상호 간에 재원의 전·출입 또는 위탁, 교부, 융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3. 1 교육과학기술부 재정 구조–2011년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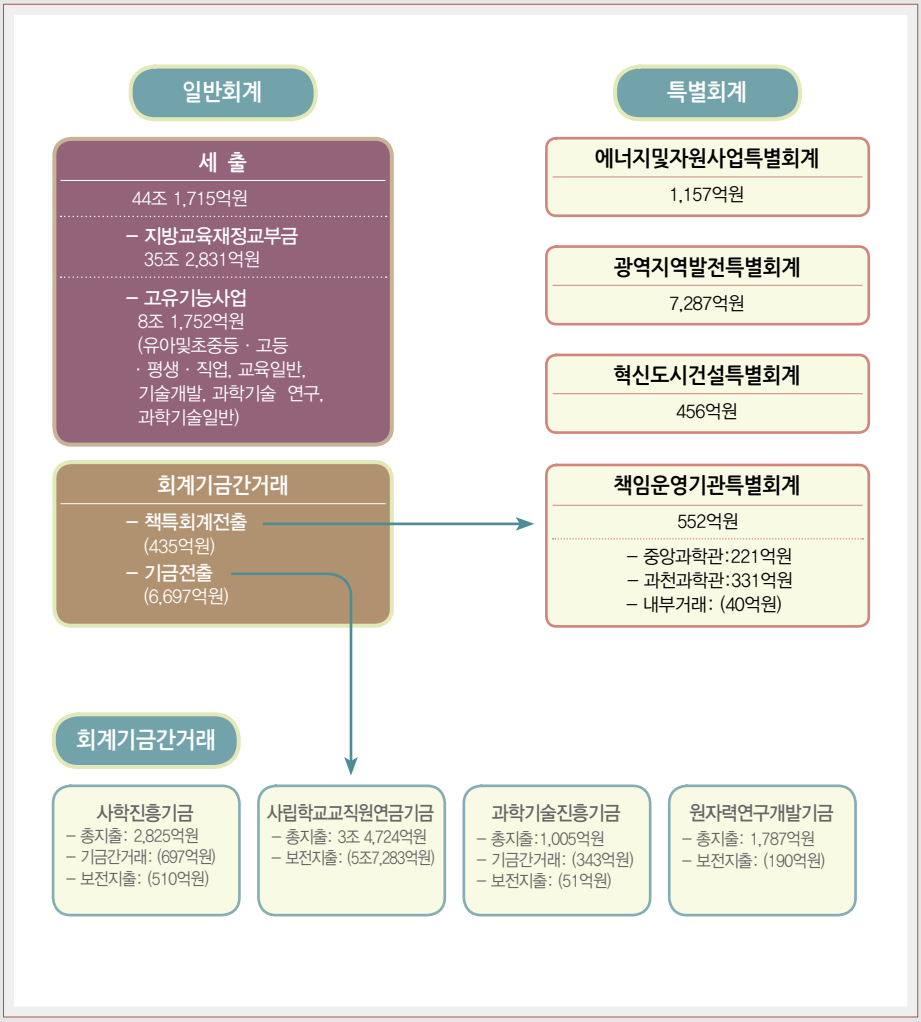

주 : 1. 2011년도 예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총지출 금액은 총계에서 거래, 보전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총지출 기준 외는 괄호로 표시함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010년 11월 11일에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였으며, 2010년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 4세대 가속기와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의결하지 못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정부안보다 1,670억원 감액, 873억원 증액되어 총 797억원이 감액되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출액 1억원을 증액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회 조정 내역

· 세출예산 △797억원
· 기금운용규모 1억원

표 13. 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의 결과

(단위 : 억원)

	정부안 (A)	국회 조정			국회확정 (A+D)
		증 액 (B)	감 액 (C)	증 감 (D=B+C)	
일반회계 (a)	435,432	821	-1,670	-849	434,583
특별회계 (b)	9,360	52	-	52	9,412
일반+특별 (c=a+b)	444,792	873	-1,670	-797	443,995
기금 (d)	40,340	1	-	1	40,341
합계 (c+d)	485,132	874	-1,670	-796	484,336

주 : 1. 총지출 기준임
2. 기금 지출 증액에 따른 통화금융기관예치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음
자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 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 12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9개 사업이 감액되었으며, 28개 사업이 증액되었다. 또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1개 사업이 증액되었다. 총 38개 증감 사업 중에서 50억원 이상 증감이 발생한 사업은 6개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출연은 국가장학기금의 운용배수 유지와 관련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국가장학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안 대비 1,300억원이 감액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규정되어 있는데,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안보다 229억원 감액 되었다.

표 13. 7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한국장학재단 출연	3,218	-	1,918 (-1,3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3,060	-	352,831 (-229)
	국립대학 시설확충	3,249	-	3,571 (321)
	대학생근로 장학금지원	750	-	810 (60)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지원	708	-	805 (97)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	402	-	454 (52)

주 : 정부안 대비 50억원 이상 증감된 사업만 표시하였음
자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 12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2011년도 국가장학 및 학자금지원 사업의 변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 장학금 사업(7개)과 한국장학재단으로 출연하는 학자금 대출사업(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출 제외) 등 총 8개 사업의 2011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72억원(15.8%)이 감소한 8,399억 원이다.

표 13. 8 국가 장학 및 학자금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사업명	2010	2011	증감	증감률	재원
장학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성적우수 신설포함)	1,817	3,312	1,495	82.3	일반회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999	1,095	96	9.6	일반회계
	대통령과학장학생	100	85	-15	-15	
	국가장학생	888	913	25	2.8	
	국가연구장학생	11	0.7	-10	-93.6	
	전문대우수학생	-	96	96	순증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750	810	60	8.0	일반회계
	전문계고 장학금 지원	-	1,264	1,264	순증	일반회계
	소 계	3,566	6,481	2,915	81.8	
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정부보증대출)	2,119	1,918	4,487	-70.1	일반회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ICL, 든든학자금)	4,286				일반회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소 계	6,405	1,918	7,402	-70.1	
합 계		9,971	8,399	-1,572	-15.8	

주 : 2011년 예산편성 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으로 통합되었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1

2011년도 장학 및 학자금대출 사업의 지원내역 및 조건 등이 2010년과 비교하여 변화하는 내용은 [표 14.9]와 같이 ①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의 경우, 장학금의 재원이 2010년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과 ICL 2개 재원에서 2009년 방식인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1개 재

원으로 통합되는 점, ② 차상위계층 장학금이 한시사업 일몰제가 적용되어 2011년도에 종료된다는 점, ③ 2010년도에 시행되려다가 미시행 상태에 있는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1,000억원)이 시행된다는 점이다.

표 13. 9 2011년도 저소득층 장학 및 학자금 대출사업의 전년 대비 변화내용

사업명	2010년 대비 사업내용 변화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기초생보자 장학 수혜〉 2009년 저소득층 장학금: 연간 450만원 2010년 저소득층장학금 250만원 + ICL 200만원(무상) 2011년 저소득층 장학금: 연간 450만원(2009년과 동일)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2학년 제외 (추경 한시사업으로 일몰제 적용) - 2011년 1학기는 3,4학년만 지원(2011년 1학기 후 사업종료)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신규)	신규사업 ICL법 통과시 저소득층 소득 5분위이하(B학점 이상)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사업 신설 (2011년 시행예정)
대학생 근로장학금	변화 없음
일반대출상환대출	변화 없음
취업후상환대출	변화 없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한시적 사업으로 출발한 '차상위계층 장학금'사업이 2011년에 종료되고, 2009년 도입된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은 2010년부터 시급 수준이 하향 조정되었는데 교내 근로는 6,500원에서 6,000원으로, 그리고 교외 근로는 9,000원에서 8,000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하여야 2009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수입을 갖게 되고 상대적으로 공부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이 받는 국가연구장학생 사업은 BK21사업의 지원영역과의 유사·중복 문제가 있어 일몰제가 적용되어 2012년 말에 최종 폐지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① BK21 지원영역 이외의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지원 제도가 사라진다는 점, ② BK21이 종료되는 2013년부터는 이공계 대학원생 국가지원은 공백상태에 이른다는 점 등이 예상된다.

근로장학금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을 제외하면, 일반 대학생들(C학점 이상)이 전공 및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학자금 지원제도이므로 국가장학 및 학자금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유효한 사업이다.

표 13. 10 국가 근로장학금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2009	2010	2011
근로장학금 예산규모	1,200	750	81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1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사업

2010년 1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통과시 부대의견으로 "매년 1,000억원을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한다"고 명시하여,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는 ICL(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든든 학자금) 도입으로 소득분위별 이자지원 폐지 및 차상위계층 신입생 지원 폐지 등 저소득층 지원이 축소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실시 예정이었던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사업비 1,000억원은 2010년도 확정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국회는 동 사업의 실시를 위해 타 사업(예 : ICL 등)의 불용액 전용 등의 방법으로 2010년 2학기에 필요한 5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불용액을 활용한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배' 및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2010년 저소득층 우수장학금 사업은 2010년도에 시행되지 못하였고, 2011년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ICL은 2010년도 대출 실적이 저조한데, 든든 학자금을 이용한 대학생은 1학기 11만 4,722명, 2학기 11만 7168명으로 총 23만 1980명에 그쳐 당초 목표한 70만명의 32% 수준에 머물렀다. 실적 저조의 여러 가지 사유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은 대출금리(5.2%, 2010년 2학기)가 비교적 높다는 점과 제도시행 첫 해로 ICL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을 들 수 있다.[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받은 후 미래에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하는 사업

표 13. 11 연도별 정부학자금 대출 금리 현황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대출금리	7.30	5.80	5.70	5.20	4.9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1

1) 2010년 5월 기금존치평가에서 "국가장학기금"의 폐지가 결정되면서 동 기금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들이 2011년부터 ICL 집행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교부되었다.

나로호 3차 발사 관련 예산
200억원

나로호 3차 발사 관련 예산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에 나로호 3차 발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2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나로호 3차 발사 일정 및 관련 예산의 집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표 13. 12 나로호 3차 발사 관련 2011년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세부사업 / 세사업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우주발사체 3차 발사 (A)	-	180	180	순증
상단부 점검 및 발사운용	-	17	17	순증
발사대시스템 유지·보수	-	62	62	순증
국제협력비 환차손 보전	-	100	100	순증
과학기술위성 등 소형위성개발	124	49	-75	-60.5
과학기술위성 3호 개발	124	29	-95	-76.6
나로호 3차 발사 위성 개발 (B)	-	20	20	순증
나로호 3차 발사 관련 합계 (A+B)	-	200	200	순증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1

나로호 2차 발사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한·러 사고조사위원회(FRB, Failure Review Board)에서 조사 중이이나, 한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서 2011년 2월까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나로호 3차 발사를 위해서 러시아는 1단 로켓을 추가로 제작하여 우리나라로 이송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2단 로켓과 탑재위성을 준비해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임무실패를 확정한 이후 3차 발사까지는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나로호 3차 발사는 2011년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협력비 지급은 나로호 3차 발사 완료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국제협력비 환차손 보전(100억원)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예산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과 첨단 융·복합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도 예산안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한 사업은 총 103억원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대로 확정되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예산
104억원

표 13. 13 2011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70	-	100	100	순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	3	6	3.6	-2.4	-40.0
합 계	73	6	103.6	97	1,632.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에 편성된 100억원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운영과 중이온 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의 개발·설치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중이온 가속기의 개발·설치에는 총 4,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위치와 면적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의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이온 가속기 등 대형기초연구시설을 개발·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형기초연구시설의 개발·설치와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 예산

2011년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은 14조 8,740억원이었으나,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162억원이 증액되어 최종적으로는 14조 8,902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8.7% 증가한 규모이다.

국가연구개발 예산
14조 8,902억원

표 13. 14 2011년도 부처별 연구개발예산안 심의 결과

(단위 : 억원, %)

	2010 예산 (A)	2011			증 감	
		예산안 (B)	예산 (C)	증감 (C-B)	(C-A)	(C-A)/A
교육과학기술부	43,922	47,418	47,497	79	3,575	8.1
지식경제부	44,169	45,240	45,269	29	1,100	2.5
방위사업청	17,945	20,192	20,164	-28	2,219	12.4
소 계 (비 중)	106,036 (77.4)	112,850 (75.9)	112,930 (75.8)	80	6,894	6.5
중소기업청	5,607	6,288	6,288	-	681	12.1
국토해양부	5,750	6,095	6,161	66	411	7.1
농촌진흥청	4,605	5,018	5,028	10	423	9.2
국무총리실	3,940	4,229	4,190	-39	250	6.3
보건복지부	3,083	3,356	3,371	15	288	9.3
농림수산식품부	2,377	2,798	2,799	1	422	17.8
환경부	2,142	2,355	2,355	-	213	9.9
방송통신위원회	100	2,098	2,098	-	1,998	1998.0
산림청	788	788	798	10	10	1.3
문화체육관광부	589	659	644	-15	55	9.3
기상청	490	574	607	33	117	23.9
식품의약품안전청	543	583	583	-	40	7.4
문화재청	310	332	332	-	22	7.1
국방부	260	309	309	-	49	18.8
소방방재청	222	258	258	-	36	16.2
행정안전부	54	62	62	-	8	14.8
기 타	117	89	88	-1	-29	-24.8
합 계	137,014	148,740	148,902	162	11,888	8.7

주 : 기타는 기획재정부, 노동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통일부, 여성가족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등 11개 부처임
자료 : 기획재정부, 2010. 10
기획재정부, 2011. 2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의 2011년 연구개발 예산 합계액은 11조 2,930억원으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75.8%를 차지하여, 전년보다 비중이 축소되었다. 이는 지식경제부 소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일부 사업이 2011년에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총지출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68%에서 2011년 4.82%로 0.14%p 늘어났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16.2조원으로 증액할 계획[2] 인데, 이는 2012년 연구개발 예산이 2011년 대비 8.7% 증가할 경우 달성 가능할 수준이다. 이 경우 총지출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15 총지출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억원, %)

	2010 (A)	2011 (B)	증감	
			(B-A)	(B-A)/A
연구개발 예산	137,014	148,902	11,888	8.7
정부 총지출	2,928,159	3,090,567	162,408	5.5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4.68	4.82	0.14p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R&D 재정지출 규모는 우리의 12배, 일본은 2.3배, 독일은 1.8배, 프랑스는 1.2배 수준이다. 다만, GDP 대비 정부 R&D 예산의 비율 0.98%로 미국(1.15%) 보다는 낮지만,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R&D 투자 규모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경제 규모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로는 선진국에 못지않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16 R&D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단위 : 구매력평가 기준 억달러,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 R&D 예산 (A)	137	1,653	310	244	159	115
배 율	1.0	12.0	2.3	1.8	1.2	0.8
GDP (B)	14,017	143,765	41,803	28,161	21,207	17,897
GDP 대비 비율 (A/B)	0.98	1.15	0.74	0.87	0.75	0.64

주 : 1. 2009년도 기준임(프랑스는 2008년도 기준임)
2. 배율은 우리나라를 1로 보았을 때 정부 R&D 예산의 배율임
자료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Volume 2010. 1, 2010. 6

2) 기획재정부 등 22개 부처,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08. 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제14장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
4.7조원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4조 7,453억원으로 2010년 대비 12.2%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이다. 이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 소관 각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 대비 8.9% 증가한 3조 4,557억원, 방송통신위원회가 7,668억원(43.3% 증가), 문화재청이 5,228억원(0.3% 증가)이다.

표 14. 1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2010(A)	2011(B)	증감(B-A)	증감률 [(B-A)/A]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42,311	47,453	5,142	12.2
총지출 대비 비중	1.4	1.5	0.1p	
문화체육관광부 (비중)	31,747 (75)	34,557 (72.9)	2,810	8.9
방송통신위원회 (비중)	5,352 (12.7)	7,668 (16.1)	2,316	43.3
문화재청 (비중)	5,212 (12.3)	5,228 (11)	16	0.3

주 :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 2010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2010. 10), 2011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 4조 7,453억원의 99.8%가 재량지출에 해당하고, 총지출에서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은 91.6%에 달한다. 의무지출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전환 취약계층지원” 1개 사업으로 2011년 103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4. 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 억원, %)

	총지출 (A)	의무 지출(B)	재량지출(A-B)				
			경직성 재량지출				비경직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47,453 (100)	103 (0.2)	3,131	767	-	3,898 (8.2)	43,452 (91.6)
문화체육관광부	34,557	-	1,708	527	-	2,235	32,322
방송통신위원회	7,668	103	947	158	-	1,105	6,460
문화재청	5,228	-	476	82	-	558	4,670

주 : 괄호안은 총지출에서 해당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집행방식은 대부분 민간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하는 형태인데, 이는 중앙부처가 직접수행하는 방식보다 집행단체의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의 방만한 운영 및 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2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18억원으로 총 1,110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도 대비 25.7%(227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표 14.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회계명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33	386	392	529	1.4
아특회계	872	496	718	221	44.7
균특회계	82	-	-	-	-
합 계	1,187	882	1,110	227	25.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2011년 세출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1조 2,621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는 719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263억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출예산은 2010년 대비 7.9% 증가하였다.

표 14. 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회계명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0,551	11,898	12,621	723	6.1
아특회계	5,370	496	719	221	44.7
광특회계	325	5,771	6,263	491	8.5
합 계	16,247	18,166	19,603	1,436	7.9

주 : 총지출 기준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전년도에 비해 245억원 감소하였으나, 영화발전기금이 408억원(75.9%),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095억원(18.4%) 증가하여, 2010년에 비해 1,371억원이 증가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증액사업은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지원(76억원) 및 각종 국제대회개최지원(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F1코리아 그랑프리 지원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등) 등이며,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증액사업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위해 신규로 편성된 "글로벌펀드 조성" 사업(400억원)이다.

표 14. 5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총괄

(단위 : 억원, %)

기금명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문화예술진흥기금	847	999	1,116	117	11.7
영화발전기금	533	538	945	408	75.9
지역신문발전기금	154	112	130	17	15.8
언론진흥기금	75	292	272	-20	-7.0
관광진흥개발기금	5,608	5,770	5,425	-245	-4.3
국민체육진흥기금	4,372	5,969	7,063	1,095	18.4
합 계	11,589	13,580	14,951	1,371	10.1

주 : 총지출 기준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의 기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에서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등에 전출되는 기금 전출금 총 규모는 979억원이다.

그림 14. 1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구조 – 2011년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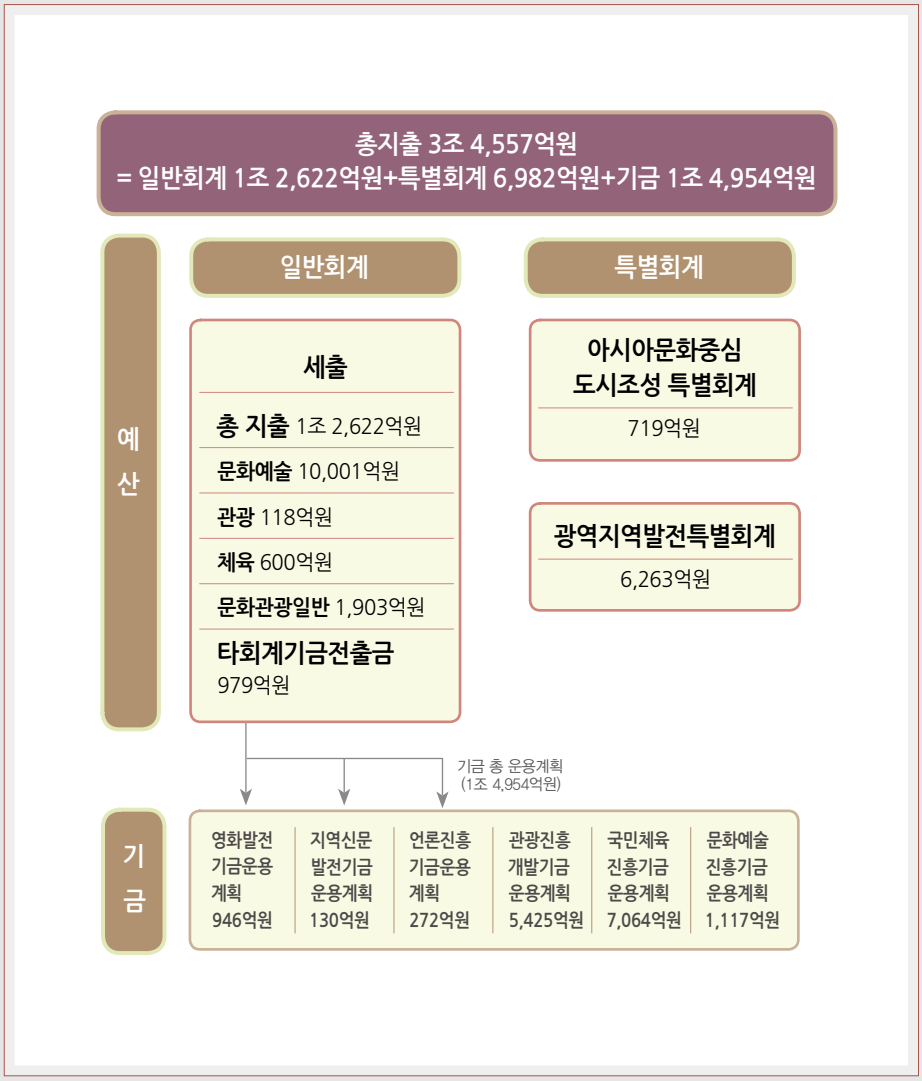

주 : 2011년도 예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문화재청

2011년도 문화재청의 세입·세출 예산구조는 일반회계와 1개의 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그리고 1개의 기금(문화재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도 문화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9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200억원 대비 34.3%인 69억원이 증액되었다. 세입예산 규모가 증액된 가장 큰 사유는 2010년까지 납부하지 못했던 태릉푸른동산의 변상금 및 연체료(39억원)를 2011년에 징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궁능과 유적관리소 입장료 수입은 2010년도 예산 94억원에 비해 11억원(12.1%)이 증액된 105억원이 계상되었다.

표 14. 6 문화재청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20	200	269	69	34.3

자료: 문화재청,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2011년도 총지출 기준으로 문화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2.4%(99억원) 증가한 4,087억원이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33.7% 감소한 210억원이며, 문화재보호기금은 전년 대비 2.6%(25억원) 증가한 930억원이다.

표 14. 7 문화재청 소관 세출 및 기금 총괄

(단위 : 억원, %)

회계, 기금명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572	3,988	4,087	99	2.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39	-	-	-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317	210	-107	-33.7
문화재보호기금	-	905	930	25	2.6

주 : 총지출 기준임
자료 : 문화재청,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문화재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개 분야(문화 및 관광) 1개 부문(문화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지출은 5,228억원 규모이다.

그림 14. 2 문화재청 재정구조 – 2011년도 예산

주 : 2011년도 예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1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세입예산은 5,445억원으로 총 8,561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도 예산 대비 38.8%(2,395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규모

- 세입 3,116억원
- 세출 3,208억원
- 기금 4,461억원

표 14. 8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578	3,504	3,116	-388	-11.0
방송통신발전기금	2,785	2,662	5,445	2,783	104.5
합 계	6,363	6,166	8,561	2,395	38.8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 기준 세출 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2010년(3,256억원) 대비 6.3% 감소한 3,050억원이고, 혁신도시특별회계의 경우 2010년(65억원) 대비 143.1% 증가한 158억원이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경우 2010년(2,031억원) 대비 119.6% 증가한 4,461억원이다.

표 14. 9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11년 세출 및 기금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095	3,256	3,050	-206	-6.3
혁신도시특별회계	5	65	158	93	143.1
방송통신발전기금	1,642	2,031	4,461	2,430	119.6
합 계	4,742	5,352	7,669	2,317	43.3

주 : 1. 총지출 기준임
2. 2010년 3월 22일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이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일부 사업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관되었음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의 분야·부문별 현황을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와 통신 분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다.

표 14. 10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 분야 · 부문별 현황

(단위 : 억원, %)

분야	부문	회계·기금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률 (B-A)/A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일반회계	69	-	-	-
		방송통신발전기금	1,643	2,031	2,259	11.2
		소 계	1,712	2,031	2,259	11.2
통신	방송통신	일반회계	3,025	3,256	3,050	-6.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	65	158	142.1
		방송통신발전기금	-	-	2,201	순증
		소 계	3,030	3,321	5,409	62.9
합 계			4,742	5,352	7,669	43.3

주 : 총지출 기준임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0. 2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 년도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재청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1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매칭, 행정절차 이행 등 집행여건을 갖추었을 때 교부함으로써 국고재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용, 내역변경 또는 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신규사업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당초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사업비 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의 특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사업을 대부분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유산보존사업 3억 6,500만원, 수변연계문화관광권개발사업 11억원, 국가브랜드가치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사업에서 6억원을 각각 삭감한 것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조정 없이 의결하였다.

표 14. 11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

회계	사업명	정부안 (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종교문화유산보존사업	17	14 (-3)	14 (-3)
	수변연계문화관광권개발사업	56	45 (-1.1)	45 (-1.1)
	국가브랜드가치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사업	36	30 (-6)	30 (-6)
	종교문화활동지원	70	83 (13)	86 (16)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183	240 (5.7)	190 (7)
관광기금	도시관광활성화	50	60 (10)	60 (10)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지원 사업	109	185 (75.5)	122.5 (13)
체육기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927	1,308 (381)	1,063 (136)
	국제대회개최지원	106	508 (407)	313 (213)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처우개선)	207	218 (11)	218 (11)
문예기금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장애인문화예술역량강화)	474	480 (6)	480 (6)

자료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 1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 12

한편,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에 대하여 2011년 정부안인 109.5억원보다 75.5억원이 증액된 185억원을 의결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 증액분인 75.5억원 중 여수엑스포지원을 위한 템플스테이 예산 및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13억원만을 증액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161억원
· 기금운용규모 686억원

국회 심의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최종 감액규모는 예산안의 경우 예비심사 결과인 109억원 보다 20억원 많은 129억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삭감되지 않았던 광역발전특별회계에서 20억원이 추가로 삭감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상임위에서는 관광기금 5억원을 감액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0.5억원이 많은 5.5억원을 감액의결하였다.

문화재청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270억원

문화재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예비심사결과와 동일하게 각각 0.5억원 및 3.3억원이 최종 감액되었다.

표 14. 12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 (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문화재홀로그램 제작활용	9	8.5 (-0.5)	8.5 (-0.5)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 지자체)	1,850	2,080 (230)	1,879 (29)
문화재 보호기금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		2 (2)
	문화재긴급보수사업	60	50 (-10)	50 (-10)

자료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 1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 1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입예산 40억원
· 세출예산 △4.7억원
· 기금운용규모 12억원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을 1.5억원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40억원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총지출 176억원을 증액하였다. 그러나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일반회계 세입 증액 및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감액은 반영되었으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4.7억원 감액되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총지출은 12억원 증액되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8억원 증액되었다.

표 14. 1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 (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벌금 및 과료 (스팸 과태료) [세입]	96	98 (2)	98 (2)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지원	35	34 (-1)	34 (-1)
	녹색 방송통신 확산 기반 조성	4	2 (-2)	2 (-2)
방통기금	국제 방송통신 컨퍼런스	5	4 (-0.9)	4 (-0.9)
	방송광고 기반조성	20	18 (-2)	18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지원	164	170 (6)	170 (6)
	국악방송 지원	17	27 (10)	22 (5)

자료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 1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 12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민간법인에 대한 국고지원

2010년 10월말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민간법인은 총 1,627개로, 재단법인은 509개, 사단법인은 1,118개이다.

표 14. 14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민간법인 현황(2010.10월말 기준)

구분	재단법인	사단법인	계
법인 수	509개	1,118개	1,627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수행방식의 특징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법인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조 2,491억원 중 4,534억원(36%)이 민간 경상보조금이며, 이 중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법인에 교부된다.

민간법인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고, 공적 성격이 강하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법인 중 일부는 사업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경비까지 전액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결산 기준으로, 한국문화정보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체육인재육성재단 등 일부 법인은 국고지원율이 100%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 요청으로 실시된 감사원 감사(2010.5)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결과보고서 중 관련 사항

종합적으로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의 보조사업 선정 및 집행 관련 문제가 드러난 총 179개 단체, 금액 532.6억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169개 단체, 금액 527.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전체 단체수의 94.4%, 전체 금액의 99.1%)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국가가 민간법인의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연례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국고지원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관리 절차 미비

감사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감사결과보고서(2010. 5)」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공무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또는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특정 단체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을 제정(2010. 1. 1)하였으나, 동 규정에서는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기준과 보조비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1)]

표 14. 15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사업 선정 주체 및 선정 방법

(단위 : 건, %)

선정주체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특정 공무원	기타	소계	공모	섭외	기타	소계
내부	외부							
314 (32.8)	346 (36.2)	205 (21.4)	92 (9.6)	947	365 (38.5)	423 (44.7)	159 (16.8)	947

자료 : 감사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2010. 5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에 대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함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훈령 등에는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규정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사행산업을 통한 기금 재원 조성 및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예산

사행산업으로 조성되는 재원규모

2011년 경륜 · 경정 · 복권 등 사행성 산업으로 조성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원규모는 7,423억원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카지노, 경륜·경정·복권 등의 사행성 산업 등에서 재원을 조성한다. 2011년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카지노사업에서 2,066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경륜·경정사업에서 413억원,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서 4,369억원, 복권사업으로부터 575억원의 재정수입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

1) 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선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 · 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 전에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14. 16 사행성 산업(카지노사업 및 경륜 · 경정 · 복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내역

(단위 : 억원)

기금명	사행산업 분야	기금 수입 산정 기준(방식)	수입액		
			2009	2010	2011
관광 진흥 개발 기금	카지노	총매출액(전년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일정비율을 납부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 : 총매출액의 1/100 총매출액이 10~100억원 :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 초과금액의 5/100 총매출액이 100억원 초과시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 초과금액의 10/100	1,680	1,702	2,066
국민 체육 진흥 기금	경륜	(수입-지출)×40%(기금전입율)	360	339	413
	경정	(수입-지출)×40%(기금전입율)			
	체육진흥 투표권	(수입-지출)×75%(기금전입율)	3,573	3,936	4,369
	복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따라 체육기금에 배분되는 수입(복권 수익금의 10.371%)	268	259	57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Ⅱ」, 2010. 11

정부는 사행산업의 부작용인 도박 중독 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지난 2007년 국무총리 소속하에 출범시켰다.

그러나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규모는 2011년 예산을 기준으로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교육·홍보 등)에 15억원 3,400만원수준이며, 이 중 12억원이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 신규설치 및 기존 센터의 운영에 지원될 예정이다. 사행산업이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사행산업의 중독에 대한 예방과 이후에도 적정 수준의 예산을 투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표 14. 17 사행산업 중독 예방 · 치료 기관 예산 지원내역: 2009~2011년

(단위 : 억원)

중독 예방·치료 기관명	주요 업무 내용	조직 및 인원	주요 수입원	2009	2010	2011
부산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8명 (센터장 1, 상담원 6, 행정 1)	국고 및 비용부담금	-	3	3
경기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8명 (센터장 1, 상담원 6, 행정 1)	국고 및 비용부담금	-	3	3

주 : 2011년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총 예산은 12억원이며, 6억원은 이미 기 운영중인 부산 및 경기 지원센터에 지원되고, 나머지 6억원은 추가 공모 설치할 2개소에 지원될 계획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Ⅱ」, 2010. 11

2011년도 문화바우처 사업 예산의 특징

2011년도 문화바우처 예산 규모
- 문화분야 245억원
- 체육분야 86억원
- 관광분야 48억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문화 행복' 측면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기금사업으로 문화, 체육, 여행 바우처 지원사업을 [표 14.18]와 같이 집행하고 있다.

표 14. 18 문화바우처, 체육바우처, 여행바우처 사업 예산 현황 : 2009~2011년

(단위 : 억원)

분야	세부사업명 (기금명)	2009 예산	2010 예산	2011 예산	단가		수혜자수(단위: 명)	
					2010	2011	2010	2011
문화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 (문화예술진흥기금)	40	50	245	1인당 5만원	1가구당 5만원	350,000명	850,000명
체육	스포츠바우처사업 (국민체육기금)	19	30	86	-강좌 6만원 -용품 6만5천원		13,900명	28,960명
관광	취약계층복지관광 (관광진흥개발기금)	8	8	24	최대 15만원		5,300명	24,500명
		-	8	24			6,000명	24,500명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Ⅱ」, 2010. 11

2011년 바우처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민간보조사업에서 지자체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를 이용하여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며, 비용분담 측면에서도 지자체 분담제도(사업비 매칭)를 활용하고 있다. 지방비 부담비율은 30% 내외로, 이에 동 사업들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및 적극적 추진이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복지관련 사업의 지방이양 후 복지재정 급증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지원액 확대가 수혜자 수의 양적 증가로만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1인당 지원액이 2010년도에 비해 동일하거나 오히려 감소하여, 수혜자가 체감하는 사업의 효과 즉, 바우처 사업내용의 질적 향상 및 만족도 제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동 바우처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소득층 성인 특히 생계유지를 부담하고 있는 계층들의 경우 동 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사업 혜택이 대부분 자녀(청소년) 계층으로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010년 3월 22일에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설치된 기금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법」 제36조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발전기금을 승계하고,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일부 재원과 사업을 이관 받아 설치되었다. 2011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4,461억원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발전기금을 승계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일부 사업을 이관받아 2011년 신설

표 14. 19 방송통신발전기금의 2011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2009		2010 예산		2011	증 감	
예산	결산	개편전	개편후(A)	예산(B)	(B-A)	(B-A)/A
1,653	1,643	2,031	4,436	4,461	25	0.5

주 : 1. 총지출 기준임
2. 2009년 예 · 결산 및 2010년 개편전 예산은 방송발전기금 기준이며, 2010년 개편후 예산은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2011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변경된 사업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지식경제부 소관인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관된 재원은 2011년 1월 1일부터 기존 IMT-2000 할당대가를 제외한 주파수할당대가의 45%에 해당한다. 또한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했던 기존 사업들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 전체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관리한 과제의 일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관되었다.

표 14. 20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의 사업이관 내역

(단위 : 억원, %)

세부사업	2010 예산 (A)	이관규모 (B)	(B/A)
전파방송위성 원천기술개발(R&D)	244	244	100.0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융자)	300	300	100.0
정보통신표준화활동지원(R&D)	112	112	100.0
차세대네트워크기반구축(R&D)	97	97	100.0
방통융합공공서비스활성화(R&D)	42	42	100.0
방송통신정책연구(R&D)	91	91	100.0
방송통신R&D관리기반구축(R&D)	45	45	100.0
EMC기술지원(R&D)	15	15	100.0
주파수자원 재개발 기반구축(R&D)	13	13	100.0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R&D)	35	35	100.0
전파방송기술인력양성(R&D)	27	27	100.0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비R&D)	55	55	10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지원(R&D)	1,125	501	44.5
정보통신미디어 산업원천기술개발(R&D)	560	184	32.8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산업원천기술개발(R&D)	717	421	58.7
SW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R&D)	801	146	18.3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R&D)	498	14	2.8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지원(R&D)	153	64	42.1
합 계	4,929	2,406	48.8

주 : 2010년 예산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전 금액임
자료 : 지식경제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 2011.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와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 이관의 결과, 2008년 2월 실시된 정부조직개편 이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과 집행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었던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2011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2011년 이후 신규로 할당되는 주파수에 대한 할당대가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45:55로 배분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주파수할당 대가는 특정한 주파수의 배타적 이용권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에서 주파수할당을 소관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할당대가 더 많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17조 6,303억원으로 2010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이다. 총지출 규모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각 부처별로 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2010년 대비 1.3% 증가한 14조 8,644억원, 농촌진흥청이 1조 917억원(전년대비 19.6% 증가), 산림청이 1조 6,742억원(전년대비 3.3% 증가)이다.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총지출
17.6조원

표 15. 1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2010(A)	2011(B)	증감(B-A)	증감률 [(B-A)/A]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172,074	176,303	4,229	2.5
총지출 대비 비중	5.9	5.7	-0.2p	
농림수산식품부 (비중)	146,738 (85.3)	148,644 (84.3)	1,906	1.3
농촌진흥청 (비중)	9,128 (5.3)	10,917 (6.2)	1,789	19.6
산림청 (비중)	16,208 (9.4)	16,742 (9.5)	534	3.3

주 :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 2010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2010. 10), 2011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 의무지출 비중 5.9%
· 재량지출 비중 94.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총지출(17조 6,303억원) 중 94.1%가 재량지출이며, 특히 총지출 대비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이 90.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의무지출은 농기계환차손(OECD차관 환차손보험)(2011년 30억원), 국제기구분담금 지원(2011년 197억원), 비료계정적자보전(2011년 457억원), 살처분보상금(2011년 500억원), 수입양곡대(2011년 2,995억원), (2011년 6,19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청의 의무지출은 책임건강보험부담금(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2011년 2억원)이다.

표 15. 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 억원, %)

	총지출 (A)	의무 지출 (B)	재량지출(A-B)				
			경직성 재량지출				비경직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농림수산식품	176,303 (100)	10,376 (5.9)	5,100 (2.9)	880 (0.5)	-	5,980 (3.4)	159,947 (90.7)
농림수산식품부	148,644	10,374	2,811	430	-	3,241	135,029
농촌진흥청	10,917	-	1,247	185	-	1,432	9,485
산림청	16,742	2	1,042	265	-	1,307	15,433
기타	211	-	-	-	-	-	211

주 : 괄호 안은 총지출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5개의 특별회계 및 8개의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재정구조를 보면, 회계와 회계, 회계 내 계정, 회계와 기금 사이의 전입·전출을 통하여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체적인 재정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정부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그림 15. 1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운용체계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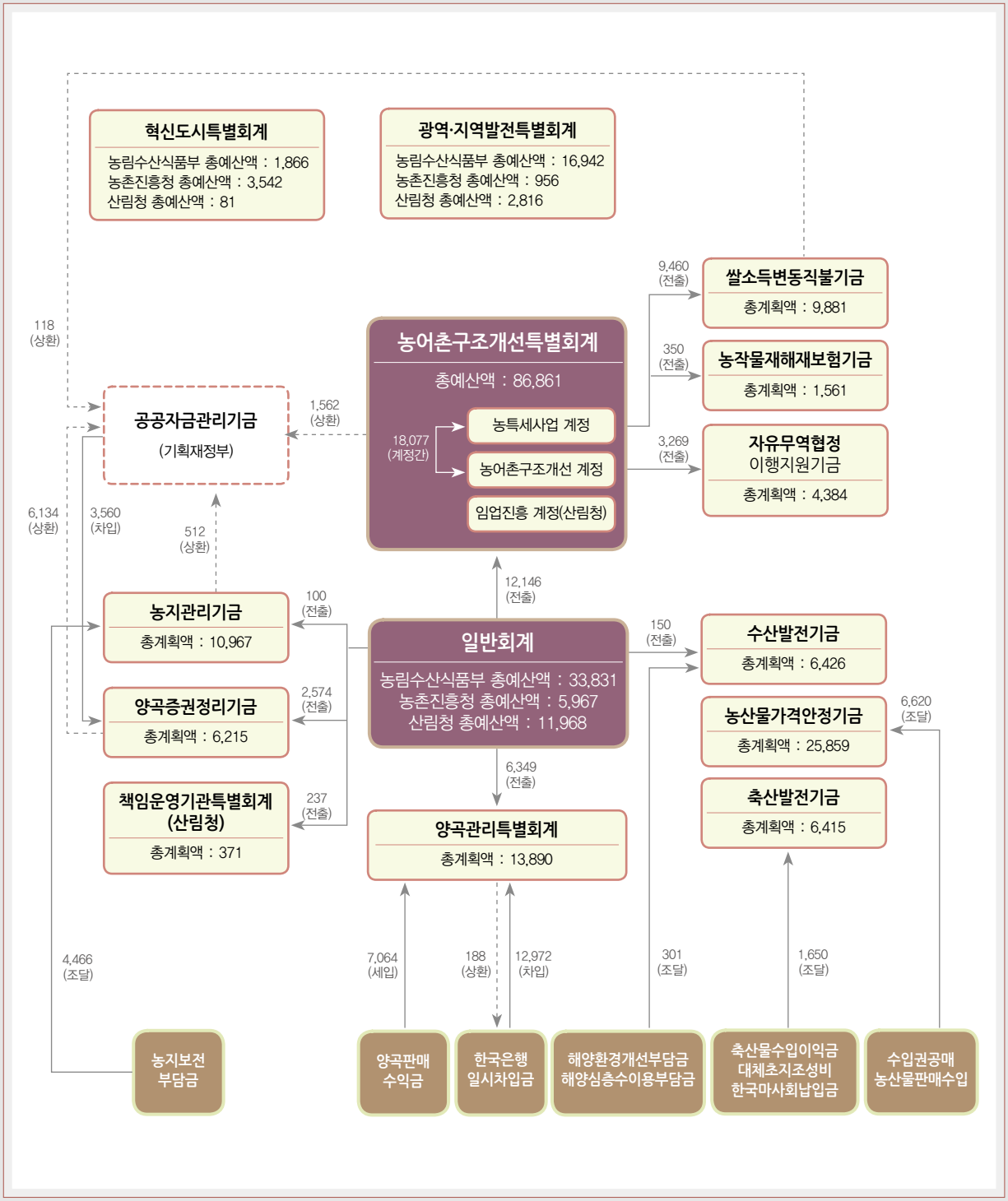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자료」를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한 불투명성 문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도 재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1] 농림수산식품부의 재정구조가 복잡해진 이유는 재원마련 없이 재정사업을 실시하고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부족한 재원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사용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한편, 확보한 재원을 기금에 배분하여 사업을 실시하면서 재정구조는 복잡하게 되었다.

외부에서 차입한 경우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외부에서 조달된 재원은 농어촌특별세와 더불어 농림수산식품부의 세입으로 편성되며,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자체 재정사업을 실시하거나, 개별 기금으로 배분되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재정사업을 실시한다.

특별회계의 경우 복수의 부처에 의해 운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금의 경우 단일 부처가 단독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전체 65개의 기금 중에서 8개의 기금을 운용하여 단일 부처 중 가장 많은 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별도로 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2]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세입예산
9조 5,122억원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 8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조 1,029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3,890억원으로 총 9조 5,122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도 예산 대비 4.2%(4,218억원) 감소한 규모이다.

---

1) 국회예산정책처는 「2005년도 예산안분석 Ⅱ」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재정구조가 가지는 복잡성을 지적한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8)도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재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 「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금융성 기금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이하, 2.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이하"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경우 변경절차가 까다로운 반면, 기금은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어 신축적 운용이 가능하다.

표 15. 3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75	191	203	12	6.3
농특회계	85,055	85,781	81,029	-4,752	-5.5
광특회계	119	-	-	-	-
혁특회계	79	-	-	-	-
양특회계	15,335	13,368	13,890	522	3.9
합 계	100,763	99,340	95,122	-4,218	-4.2

주 : 총지출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1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규모는 9조 5,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883억원(0.9%) 감소한바, 양곡관리특별회계와 혁신도시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의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세출예산
9조 5,328억원

표 15. 4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6,339	19,738	16,575	-3,163	-16.0
농특회계	72,257	43,667	44,565	-898	-2.1
에특회계	-	1,528	1,422	-106	-6.9
광특회계	19,875	17,118	17,010	-108	-0.6
양특회계	13,448	13,368	13,890	522	3.9
혁특회계	-	791	1,866	1,075	135.9
합 계	151,918	96,211	95,328	-883	-0.9

주 : 총지출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1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의 운용규모는 7조 3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2% 감소하였다. 농지관리기금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그리고 양곡증권정리기금 등의 운용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기금운용계획
7조 371억원

표 15. 5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기금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3,613	22,298	25,859	3,561	16.0
농지관리기금	24,411	19,905	10,967	-8,938	-344.9
축산발전기금	7,138	7,223	6,415	-808	-11.2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1,436	11,505	8,795	-2,710	-23.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161	4,405	4,134	-271	-6.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273	1,349	1,561	212	15.7
양곡증권정리기금	8,154	21,801	6,215	-15,586	-71.5
수산발전기금	5,996	5,651	6,426	775	13.7
합 계	76,182	94,137	70,371	-23,766	-25.2

주 : 2009 결산 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을 포함한 것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1

농촌진흥청

2011년도 농촌진흥청
· 세입예산 66억원
· 세출예산 1조 919억원

2011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원으로 총 66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도 예산 대비 11.9%(7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표 15. 6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06	54	60	6	11.1
농특회계	84	5	6	1	20.0
합 계	190	59	66	7	11.9

주 : 총지출 기준임
자료 : 산림청, 「2011년도 예산 개요」, 2011.1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규모는 1조 919억원으로 일반회계 등 4개의 회계의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증가(전년 대비 1,789억원, 19.6%)하였다.

표 15. 7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958	5,393	5,989	596	11.1
농특회계	658	386	393	7	1.8
광특회계	546	869	995	126	14.5
혁특회계	11	2,482	3,542	1,060	42.7
합 계	6,173	9,130	10,919	1,789	19.6

주 : 총지출 기준임
자료 : 산림청, 「2011년도 예산 개요」, 2011.1

산림청

2011년도 산림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6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232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1억원으로 총 7,709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도 예산 대비 6.3%(515억원) 감소한 규모이다.

2011년도 산림청

· 세입예산 7,709억원
· 세출예산 1조 6,742억원

표 15. 8 산림청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59	1,885	1,106	-779	-41.3
농특회계	8,103	6,009	6,232	223	3.7
책특회계	361	330	371	41	12.4
합 계	9,123	8,224	7,709	-515	-6.3

주 : 총지출 기준임
자료 : 산림청, 「2011년도 예산 개요」, 2011.1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규모는 1조 6,742억원으로 전년 대비 534억원(3.3%) 증가한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혁신도시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의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표 15. 9 산림청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3,107	7,149	7,741	591	8.3
농특회계	7,126	6,009	5,799	-210	-3.5
혁특회계	74	215	81	-134	-62.3
광특회계	2,216	2,509	2,757	248	9.9
책특회계	314	326	364	38	11.7
합 계	22,836	16,208	16,742	534	3.3

주 : 총지출 기준임
자료 : 산림청, 「2011년도 예산 개요」, 2011.1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 등의 예비심사를 진행하였다.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등 4대강 관련사업과 한식세계화사업 등 쟁점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국회법」 제84조제6항[3]에 따라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비심사기간인 11월 17일 09시 30분까지 의결하지 못하자, 국회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예산안을 회부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이 11월 17일에 회부되어 종합심사가 진행되었고 12월 8일 의결되었으며, 같은 날 제294회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예산이 확정되었다.

3) 「국회법」 제84조(예산안 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⑥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농림수산식품 총지출은 정부안 17조 6,564억원에서 261억원 감소한 17조 6,30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각 부처별로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총지출은 정부안 14조 9,092억원에서 448억원이 감소한 14조 8,644억원으로 확정되었고 농촌진흥청 총지출은 정부안에서 60억원 증가한 1조 91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산림청은 정부안에서 127억원 증가한 1조 6,742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회 조정 내역

총지출 △448억원 감액

표 15. 1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부처 2011년 예산안 심의 내역

(단위 : 억원)

소관 부처명	정부안(A)	예결위(B)	증감(B-A)
농림수산식품	176,564	176,303	-261
농림수산식품부	149,092	148,644	-448
농촌진흥청	10,857	10,917	60
산림청	16,615	16,742	127

주 : 총지출 기준
자료 : 각부처,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사업별로 보면,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국회는 유류피해지역지원, 수협경영정상화, 청사시설지원사업 등 27개 사업에서 1,839억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쌀소득변동직불사업 등 6개 사업에서 2,287억원을 감액하였다.

표 15. 11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의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예결위(B)	증감(B-A)
일반	유류피해지역지원	195	205	10
	수협경영정상화	329	334	5
	청사시설지원(수과원 영남지원)	29	59	30
농특	농어업재해보험	1,193	1,367	174
	고품질쌀유통화	130	139	9
	내수면자원조성	33	43	10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	80	88	8
	시도가축방역	505	530	25
	다목적농촌용수개발	1,330	1,729	399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	100	110	10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	100	110	10
	수리시설개보수	2,400	2,600	200
	서산간척지농업기반시설재정비	110	150	40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18	35	17
	국가어항	1,361	1,393	32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535	542	7
	도농교류활성화	146	169	23
	농업인교육훈련	340	350	10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8,730	8,480	-250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3,200	3,000	-200
광특	수산물가공산업육성	230	238	8
	수산물유통시설건립	112	116	4
	농산물유통개선	254	260	6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94	144	50
농안	산지유통활성화	5,097	5,597	500
	저온유통체계 구축	42	119	77
	전통발효식품 육성	79	89	10
	한식세계화	310	312	2
	농식품전문투자펀드	1,000	500	-500
축발	가축개량지원	334	344	10
쌀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	9,079	7,995	-1,087
FTA	소득보전직불	400	250	-150
	폐업지원	400	300	-100

주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략하였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농촌진흥청 소관 국회 조정 내역

· 세출예산 60억원 증액

농촌진흥청 총지출은 정부안에서 60억원 증가한 1조 917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국회는 국책기술개발,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에서 예산을 조정하였다.

표 15. 12 농촌진흥청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의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예결위(B)	증감(B-A)
일반	국책기술개발	662	672	10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45	57	12
광특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	190	228	38

주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략하였음
자료 : 농촌진흥청, 「2011년도 예산 개요」, 2011. 1

산림청의 총지출은 정부안에서 127억원 증가한 1조 6,742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국회는 생활림조성관리, 산림휴양등산증진,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임업기술연구개발,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에서 예산을 조정하였다.

산림청 소관 국회 조정 내역

· 세출예산127억원증액

표 15. 13 산림청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의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예결위(B)	증감(B-A)
일반	생활림조성관리	76	85	9
	산림휴양등산증진	237	254	17
	산림휴양등산증진(보조)	144	179	35
	산림생물다양성증진	526	576	50
농특	임업기술연구개발(R&D)	125	135	10
광특	청정임산물이용증진(보조)	441	446	5

주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략하였음
자료 : 산림청, 「2011년도 예산 개요」, 2011. 1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1. 농림수산식품부

쌀소득보전 변동직불사업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시기
· 고정직불금: 12월 지급
· 변동직불금: 익년3월지급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은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 개방폭 확대 전망 등으로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고정직불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며 쌀값과 관계없이 농지의 형상을 유지할 경우 ㏊당 70만원을 지급하며 당해연도 12월에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 차액의 85%를 지원하되 고정직불금으로 보전이 안 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익년도 3월에 지급한다.

쌀소득보전 변동직불사업의 연도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07~2009년도까지 집행률은 매우 부진하였다. 변동직불금이 불용되었던 이유는 예산 편성시 수확기 산지쌀값[4]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실제 수확기 산지쌀값과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7~2009년도까지 집행률은 0.0 ~ 52.4%였으며, 동 기간중 농림수산식품부 추정값보다 실제 수확기 산지쌀값이 9,305원에서 13,244원 높게 나타남에 따라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표 15. 14 쌀소득보전 변동직불사업 결산내역: 2007~2010년도

(단위 : 억원, %, 원/80kg)

구분	결산 내역				산지쌀값		
	계획액 (A)	지출액 (B)	불용액	집행률 (B/A)	추정값 (C)	실제값 (D)	차액 (C-D)
2007	9,501	4,370	5,131	46.0	138,222	147,715	-9,493
2008	5,330	2,791	2,539	52.4	141,505	150,810	-9,305
2009	676	-	676	0.0	149,063	162,307	-13,244
2010	5,951	5,945	6	99.9	145,000	142,360	2,64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4) 수확기 산지쌀값이란, 전년도 10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의 전국 평균 산지쌀값(80㎏ 기준)을 의미한다.

한편, 2010년도의 경우 수확기 산지쌀값은 예산편성 당시의 예측가격(145,000원/80kg)보다 2,640원/80kg 하락된 142,360원/80kg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편성 당시의 지급면적(941천ha)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실제 지급면적(809천ha)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표 15. 15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지급면적 비교

(단위 : 천ha)

	예산편성시 면적(A)	실제 지급면적(B)	B-A
2009	941	809	-13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이와 같이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쌀값의 추정 미흡으로 인해 과거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010년도의 경우에도 수확기 산지쌀값 추정 미흡 뿐만 아니라 면적을 과다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이 연례적으로 부적절하였다. 2011년도의 경우에도 정부는 135,000원/80kg으로 수확기 산지쌀값을 추정하였으나, 수확기 산지쌀값은 138,230원/80kg으로 결정되었고 차액은 3,230원/80kg이었다. 국회는 쌀소득보전 변동직불사업의 과다예산 편성 문제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예산안을 정부안에서 1,087억원 감액된 7,995억원으로 확정하였다.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출자사업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출자사업은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모태펀드에서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농식품전문펀드에 출자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동 사업의 목표로서 4개 펀드를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0년 정산 결과 결성된 펀드는 없었고 예산 507억원은 운용주체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교부되었을 뿐, 전액 현금으로 보유하였다.

농식품 전문펀드 출자
농식품 모태펀드에서 농식품 전문펀드에 출자하여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

한편, 동 사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의 실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5] 다음 표는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농업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에서 운영중인 3호부터 6호 투자조합까지의 투자금액 및 현금보유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5) 농업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은 2011년부터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출자사업과 통합되었다.

현재 운용중인 3~5호 투자조합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를 포함한 투자자의 출자총액은 500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투자에 활용되는 부분은 246억원으로 나머지 254억원은 현금으로 보유하였다.

표 15. 16 농업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의 투자금액 및 현금 보유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존속기간	전체 출자액	농식품부 출자액	투자 누계	현금 보유	현금 비율
3호 조합	2007. 1.~2014. 1.	100	40	60	40	40.0
4호 조합	2007.12.~2014.12.	200	100	96	104	52.0
5호 조합	2008.12.~2015.12.	200	100	90	110	55.0
6호 조합	2009.12.~2016.12.	160	90	-	160	100.0
합계		660 (500)	330 (240)	246 (246)	414 (254)	62.7 (50.8)

주 : 1. 투자누계는 2009년 12월말 기준임
2. 합계 중에서 괄호 안은 3~5호 조합의 합계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이와 같은 동 사업의 2010년도 추진실적 부진문제와 더불어, 투자처를 찾지 못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사업(농업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의 투자성과 저조문제를 바탕으로, 국회는 2011년도 정부예산안 1,000억원 중 500억원을 감액하여 500억원으로 예산을 확정하였다.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대상지구수
96개 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되고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담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재까지 한강 등 4대강 유역내 96개 지구의 총량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내역은 3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표 15. 17 농업용저수지 지구변경 내역

구분	2009년 6월 (마스터플랜 확정시점)	2010년 4월	2010년 10월	비고
변경·교체 내역	44개 지구 변경·교체	21개 지구 변경·교체	3개 지구 변경·교체	총 68개 지구 변경·교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우선 2009년 4월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2009년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정부에서 제시하였던 96개소 중 44개소가 변경·교체되었다. 그리고 2010년 4월 시점에서 21개소, 동년 10월 시점에서 3개소 등 총 68개소가 변경되었다. 4대강 유역내 96개 저수지 중 28개소(29.2%)만이 당초 계획시부터 추진되고 있는 저수지이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필요한 적지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사업시행 이후 3차례에 걸친 계획변경은 당초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지구 선정의 신뢰성 상실, 무리한 턴키발주, 홍보비 낭비 등에 대한 지적으로 감액하자는 의견과 더불어, 물부족과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증액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국회는 2011년도 정부예산안 8,730억원 중 250억원을 감액하여 8,480억원으로 예산을 확정하였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추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은 국가전체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낮다. 다음 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규모와 전년대비 증가율, 국가전체 총지출 대비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표 15. 18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규모의 추이: 2005~2014년

(단위 : 조원, %)

	국가전체 총지출(A)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B)		비중 (B/A)
2005	209.6	(-)	13.8	(-)	6.6
2006	224.1	(6.9)	14.8	(7.3)	6.6
2007	238.4	(6.4)	15.6	(5.4)	6.5
2008	257.2	(7.9)	16.0	(2.6)	6.2
2009	284.5	(10.6)	16.9	(5.6)	5.9
2010	292.8	(2.9)	17.3	(2.4)	5.9
2011	309.1	(5.6)	17.7	(2.3)	5.7
2012	324.8	(4.9)	18.0	(1.7)	5.5
2013	337.7	(4.0)	16.8	(-6.7)	5.0
2014	353.0	(4.5)	17.4	(3.6)	4.9

주 : 1. 2005~2011년까지는 확정예산이며, 2012~2014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수치임
2.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 기획재정부의 각년도 나라살림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작성함

우선 2011년도의 경우 국가전체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5.6%인데 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의 증가율은 2.3%로 낮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의 증가율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거의 국가전체 증가율보다 낮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규모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05년 국가전체 총지출의 6.6%를 차지했던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 규모는 2011년 5.7%까지 낮아졌으며, 2014년에는 4.9%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지고 있다.

2.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 예산 추이

2011년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예산
8,625억원

농산물 시장개발의 진전에 따른 농업경쟁력 대책의 일환으로서 연구개발이 강조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R&D)예산은 2005년 4,982억원에서 2011년 8,62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15. 19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 예산추이: 2005~2011

(단위 : 억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가 R&D 예산	77,996 (100.0)	89,096 (100.0)	97,629 (100.0)	110,784 (100.0)	123,437 (100.0)	137,014 (100.0)	148,902 (100.0)
농림수산식품분야 (A+B+C)	4,982 (6.4)	5,646 (6.3)	5,719 (5.9)	6,554 (5.9)	7,189 (5.8)	7,752 (5.7)	8,625 (5.8)
농촌진흥청(A)	3,044 (3.9)	3,381 (3.8)	3,674 (3.8)	3,935 (3.6)	4,333 (3.5)	4,606 (3.4)	5,028 (3.4)
농림수산식품부(B)	1,522 (2.0)	1,788 (2.0)	1,482 (1.5)	1,944 (1.8)	2,165 (1.8)	2,377 (1.7)	2,799 (1.9)
산림청(C)	416 (0.5)	477 (0.5)	563 (0.6)	675 (0.6)	691 (0.6)	769 (0.6)	798 (0.5)

주 : 괄호 안은 국가 R&D 예산 중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 농촌진흥청

그러나,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R&D 예산을 합친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예산은 전체 국가 R&D 예산의 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국가 R&D 전체예산에서 차지했던 비중도 2005년 6.4%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1년에는 5.8%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전체 R&D 예산 증가율에 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예산 증가가 낮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집계한 주요국가의 농업과학기술 수준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업과학기술 수준은 세계최고 대비 78.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식량 및 농축산물 안정생산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미흡하다.

표 15. 20 농업과학기술 7개분야(36핵심기술) 주요국 기술수준 비교

(단위 : 점)

분 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	호주	인도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농업생명공학기술	72.1	100.0	87.1	69.5	89.4	74.1	63.6	78.6	62.3	65.5
국민식량의 안정 생산기술	83.1	97.1	93.7	76.2	86.6	81.1	68.8	82.1	72.0	71.9
친환경 농업 및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76.2	97.4	92.5	62.3	95.9	81.0	60.4	83.0	64.5	66.5
농축산물 고품질 안정생산기술	81.8	93.7	91.7	68.7	92.7	75.5	58.9	80.9	65.6	63.1
농업기계화 자동화 기술	75.6	99.9	95.7	61.8	94.2	76.2	56.8	82.8	61.5	66.1
농업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이용기술	74.2	100.0	92.6	71.2	95.2	77.0	63.4	80.4	67.9	73.9
농업녹색기술	72.7	94.9	95.0	63.9	96.2	77.2	59.2	82.3	64.6	63.9
종합기술수준	78.0	96.6	92.3	68.3	92.5	77.5	61.6	81.4	66.0	66.6

주 : 점수는 세계최고의 기술수준국을 100으로 하여, 논문, 성과, 특허, 인력 등을 상대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부여한 것임
자료 :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농업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진단분석」, 2010

3.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과 농산촌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산림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1년도 숲가꾸기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2%가 감소된 2,938억원으로 산림청 총지출 1조 6,742억원 중 17.6%를 차지하는 산림청의 주요 예산사업 중 하나이다.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 숲가꾸기와 공공산림 가꾸기로 구분된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전통적인 육림으로 숲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숲의 발달단계에 따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의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며, 예산은 전년 대비 6.2%

2011년 숲가꾸기 사업 예산
2,938억원

감소한 747억원이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농산촌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성이 강한 산림(생활권 인근, 도로변, 수원함양림 등)에 대해 숲가꾸기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전년대비 11.7% 감소한 2,191억원이다.

표 15. 21 2011년도 숲가꾸기 사업 예산

(단위 : 억원, %)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숲가꾸기	3,132	2,938	-193	-6.2
정책 숲가꾸기	650	747	98	15.0
공공산림 가꾸기	2,482	2,191	-291	-11.7

자료 : 산림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촌 고용창출 여건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산림 가꾸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국회는 정부예산안과 동일한 2,938억원으로 예산을 확정하였다.

목재펠릿지원사업

목재펠릿은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개발되어, 최근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목재펠릿 생산시설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예산이 증가되고 있다. 목재펠릿생산을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은 2010년까지는 펠릿제조시설에 대한 지원에 많이 투입되어 목재펠릿의 수요창출보다는 제조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 22 목재펠릿생산지원 예산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목재펠릿생산지원	24	113	116	128
- 펠릿제조시설지원	18	60	70	30
-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6	53	46	98

자료 : 산림청

목재펠릿의 연도별 생산현황을 보면, 2009년도 여주목재유통센터 등 3개 업체가 생산한 목재펠릿은 8,527톤이고 판매량은 6,174톤이며, 재고량은 2,353톤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 목재펠릿 생산량의 27.6%를 판매하지 못하고 재고처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목재펠릿이 과잉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도의 경우에도 목재펠릿생산량은 SK임업 등 6개 업체가 총 9,762톤을 생산하고 8,023톤을 판매하여, 재고량은 2010년 11월 까지 총 생산량의 41.3%인 4,032톤을 나타내고 있는바, 목재펠릿이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되고 있다.

표 15. 23 목재펠릿 생산 · 판매 · 재고량 추이

(단위 : 톤, %)

연도	업체명	생산량 (A)	판매량	재고량 (B)	재고율 (B/A)
2009	계	8,527	6,174	2,353	27.6
	여주목재유통센터	5,601	4,120	1,481	
	SK임업	2,467	1,606	861	
	일도바이오	459	448	11	
2010	계	9,762	8,083	4,032	41.3
	여주목재유통센터	4,711	4,494	1,698	
	SK임업	1,862	2,163	560	
	일도바이오	448	421	38	
	단양산림조합	270	203	67	
	양평산림조합	85	42	43	
	신영 E&P	2,386	760	1,626	

주 : 2010년의 경우 11월까지의 수량임
자료 : 산림청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1년도 지식경제 위원회 소관 총지출
22.1조원

2011년도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22조 971억원으로 2010년 대비 1.5%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이다. 이를 지식경제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각 부처별로 보면, 지식경제부가 2010년 대비 1.9% 증가한 15조 8,013억원, 중소기업청이 5조 9,762억원(0.001% 증가), 특허청이 3,196억원(8.2% 증가)이다.

표 16. 1 2011년도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2010(A)	2011(B)	증감(B-A)	증감률 [(B-A)/A]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217,802	220,971	3,169	1.5
총지출 대비 비중	7.4	7.2	-0.2p	
지식경제부 (비중)	155,128 (71.2)	158,013 (71.5)	2,885	1.9
중소기업청 (비중)	59,721 (27.4)	59,762 (27.0)	41	0.001
특허청 (비중)	2,953 (1.4)	3,196 (1.5)	243	8.2

주 :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3. 지식경제부 총지출 중 금융성기금인 무역보험기금은 제외하였음

자료 : 2010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2010. 10), 2011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총지출(22조 971억원) 중 96.2%가 재량지출이며, 특히 총지출 대비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 의무지출은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2011년 14억원), 폐광대책비(2011년 17억원)이며, 중소기업청 의무지출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이자상환액(2011년 8,29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 의무지출 비중 3.8%
· 재량지출 비중 96.2%

표 16. 2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 억원, %)

	총지출 (A)	의무지출 (B)	재량지출(A-B)				
			경직성 재량지출				비경직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지식경제 위원회 소관	220,971 (100)	8,325 (3.8)	16,782	1,359	-	18,141 (8.2)	194,505 (88.0)
지식경제부	158,013	31	15,406	1,039	-	16,445	141,537
중소기업청	59,762	8,294	404	177	-	581	50,887
특허청	3,196	-	972	143	-	1,115	2,081

주 : 괄호 안은 위원회 소관 총지출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소관 재정은 7개 회계(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및 5개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무역보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0.7%(806억원) 감소한 10조 7,19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특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4,227억원)했는데, 이는 2010년도 기타재산수입에 포함되었던 '유가완충준비금 폐지로 인한 전입액'(2010년도 6,956억원)이 2011년도에는 없기 때문이다.

2011년도 지식경제부 세입 예산
10조 7,194억원

표 16. 3 2011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세입예산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628	2,453	903	-1,551	-63.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38	89	116	27	30.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0,065	45,075	40,847	-4,227	-9.4
우편사업특별회계	32,601	34,427	36,721	2,294	6.7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3,080	19,804	22,080	2,276	11.5
우체국보험특별회계	5,703	6,152	6,528	377	6.1
합 계	112,217	108,000	107,194	-806	-0.7

자료 : 지식경제부,「2011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2011년도 지식경제부 세출 예산(총지출 기준)
13조 3,499억원

2011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세출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1.8%(2,367억원) 증가한 13조 3,49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각각 11.1%, 4.3% 감소한 반면, 그 외 5개 회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감소는 유전개발사업 출자 사업(전년 대비 5,456억원 감소), 석유비축사업 출자 사업(전년 대비 1,002억원 감소) 등의 감액 편성 등에 주로 기인한다.

표 16. 4 2011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세출예산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6,203	28,544	30,652	2,109	7.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0,855	14,366	14,779	413	2.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1,887	39,158	34,806	-4,352	-11.1
우편사업특별회계	28,252	30,241	31,677	1,436	4.7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1,092	15,657	18,206	2,549	16.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800	2,926	2,800	-126	-4.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	241	579	338	140.5
합 계	131,089	131,132	133,499	2,367	1.8

주 : 총지출 기준
자료 : 지식경제부, 2011. 2

2011년도 지식경제부 소관 기금운용규모(총지출 기준)
2조 4,514억원

지식경제부 소관 4개 기금[1)]의 2011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2.2%(519억원) 증가한 2조 4,514억원이다.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규모가 전년 대비 19.8% 감소했는데, 이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일부 사업이 2011년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상기 4개 기금과는 별도로 무역보험기금의 2011년도 기금운용규모는 2010년(1조 3,960억원) 대비 18.1% 감소한 1조 1,435억원인데, 기금운용규모가 감소한 것은 환변동보험의 만기도래 유효계약액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운용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표 16. 5 지식경제부 소관 기금 운용규모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전력산업기반기금	15,413	14,435	15,393	957	6.6
정보통신진흥기금	8,706	8,835	7,083	-1,753	-19.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456	673	1,990	1,317	195.6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54	52	48	-3	-6.3
합 계	24,629	23,996	24,514	519	2.2

주 : 총지출 기준
자료 : 지식경제부, 2011. 2

지식경제부 소관 재정구조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체국 영업망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로 관련 경비를 전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1)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총지출 기준 합계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림 16. 1 지식경제부 재정구조-2011년도 예산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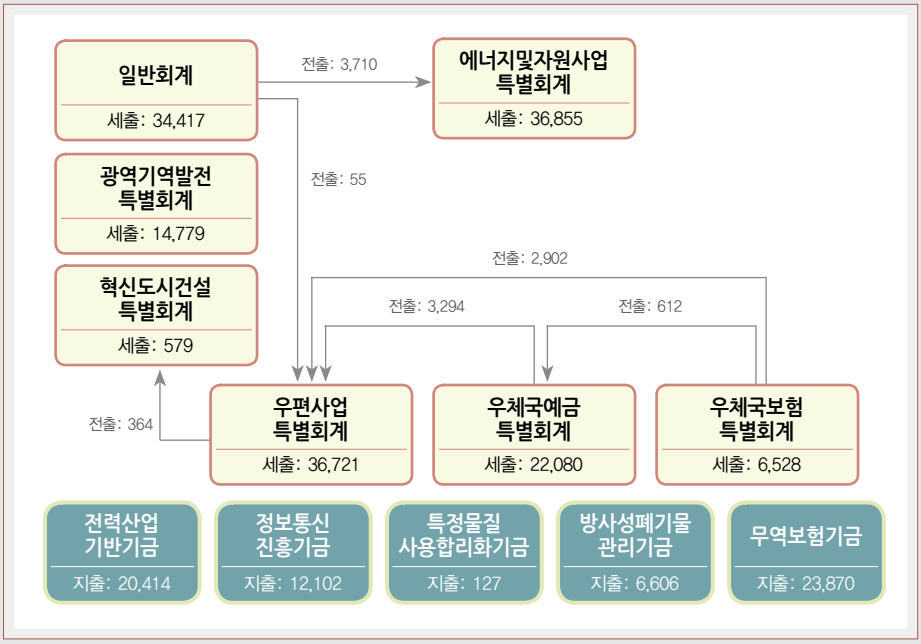

주 : 2011년도 예산(총계) 기준

중소기업청

2011년도 중소기업청 세입 예산
137억원

중소기업청 소관 재정은 2개 회계(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및 1개 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8.4% 증가한 13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표 16. 6 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세입예산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13	116	137	21	18.4

자료: 중소기업청,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 개요」, 2011. 1

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세출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한 1조 7,290억원으로 확정되었는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3% 감소한 반면, 일반회계 예산은 5.3% 증가하였다.

2011년도 중소기업청 세출 예산(총지출 기준)
1조 7,290억원

표 16. 7 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세출예산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9,389	12,230	12,881	651	5.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744	4,544	4,409	-135	-3.0
합 계	53,132	16,774	17,290	516	3.1

주 : 총지출 기준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2

또한 중소기업청 소관 기금인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경우, 2011년도 기금운용규모가 총지출 기준 4조 2,472억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수준이다.

2011년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운용규모(총지출 기준)
4조 2,472억원

표 16. 8 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기금운용규모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0,338	42,948	42,472	-476	-1.1

주 : 총지출 기준
자료 : 중소기업청, 2011. 2

한편, 중소기업청 소관 재정구조의 특징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매년 경륜수익금 중 4%가 익년도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출연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16. 2 중소기업청 재정구조-2011년도 예산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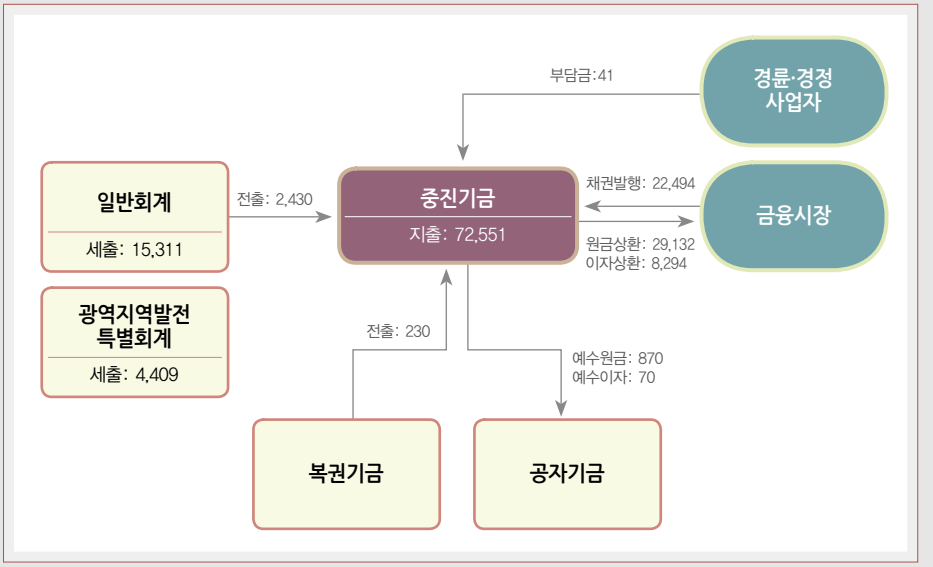

주 : 2011년도 예산(총계) 기준

특허청

2011년도 특허청 세입 예산
3,633억원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기업형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청 계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 소관 세입예산은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없이 자체 수입(영업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데, 2011년도 특허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9%(135억원) 증가한 3,63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이유는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16. 9 2011년도 특허청 소관 세입예산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427	3,498	3,633	135	3.9

자료 : 특허청,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 개요」, 2010. 12

2011년도 특허청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3,63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9%(135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증액된 이유는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사업이 각각 전년 대비 25.7%, 14.9%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1년도 특허청 세출 예산
3,633억원

표 16. 10 2011년도 특허청 소관 세출예산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290	3,498	3,633	135	3.9

주 : 총계 기준
자료 : 특허청,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 개요」, 2010. 12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지식경제부 등 소관 부처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12월 1일 제14차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예비심사 결과, 지식경제부 세출예산안은 939억원 증액 조정되었으며, 중소기업청 세출예산안은 1,172억원 증액 조정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 12월 8일 제18차 회의에서 수정의결하였다. 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지식경제부 세출예산안은 109억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중소기업청 세출예산안은 40억원 증액 조정되었다. 특허청 세출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지식경제부 소관 국회 조정 내역

· 세출예산 △109억원

중소기업청 소관 국회 조정 내역

· 세출예산 40억원

2011년도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의 전체적인 특징은 지식경제위원회 예비심사 시 증액 조정된 사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상당 부분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비심사 시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 세출예산안이 각각 939억원, 1,172억원 증액 조정된 반면, 심사 시에는 지식경제부 세출예산안은 오히려 109억원 감액 조정되었고 중소기업청 세출예산안은 40억원만 증액 조정되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중소기업청)의 경우 예비심사 시 기금운용규모가 조정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에는 기금운용규모가 조정되지 않았다.[2)]

표 16. 11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부처별 예산안 조정규모

(단위 : 억원)

부처	회계/기금		상임위 조정규모	예결위 조정규모
지식경제부	회계	일반회계	+1,257	+26
		광특회계	-20	-108
		에특회계	-298	-27
		소계(A)	+939	-109
	기금	전력기금(B)	+55	0
	합계(A+B)		+994	-109
중소기업청	회계	일반회계	+985	-20
		광특회계	+186	+60
		소계(C)	+1,172	+40
	기금	중진기금(D)	+2,231	0
	합계(C+D)		+3,403	+40
특허청	회계	책특회계	0	0

주 : 1. +는 증액을, –는 감액을 의미함
2. 각 조정규모는 감액조정분과 증액조정분을 합한 것으로 양자가 동일할 경우 순 조정규모가 0이 될 수 있음

지식경제부 예산의 경우, 가장 크게 감액 조정된 사업은 석유비축사업 출자 사업으로 국제기준 대비 비축규모 과다를 이유로 정부안 1,650억원에서 400억원 감액한 1,250억원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10개[3)]) 연구운영비 지원도 연구기관의 여유재원 과다 등을 이유로 총 100억원 감액 조정되었다.

2) 다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2개 사업이 70억원 감액 조정되고, 3개 사업이 70억원 증액 조정되어 순 조정규모는 0이 되었다.
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성장동력기술 사업화 투자지원 사업과 지역투자촉진(지자체 보조) 사업은 사업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감액 조정된 사례인데, 전자의 경우 펀드 투자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후자는 보조금의 지역편중 및 사업 효과성 의문 등을 이유로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각각 100억원, 200억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에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송유관이설사업 융자 사업은 최종적으로 25억원 감액 조정되었는데,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동 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의 송유관 이설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추가 감액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예비심사 결과대로 의결되었다.

한편, 가장 크게 증액 조정된 사업은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사업으로 국내 모바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설립에 25억원, 모바일융합 신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50억원 등 총 75억원이 증액 조정되었다.

표 16. 12 지식경제부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의 주요내역

(단위 :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신성장동력기술사업화투자지원	400	300 (-100)	300 (-100)
	산하 연구기관 연구운영비 지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10개 기관)	4,898	4,813 (-85)	4,798 (-100)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	147	182 (35)	222 (75)
	마산자유무역지역확대조성	235	-	300 (65)
광특	지역투자촉진(지자체 보조)	1,413	1,213 (-200)	1,213 (-200)
에특	석유비축사업 출자	1,650	-	1,250 (-400)
	송유관이설공사 융자	145	120 (-25)	120 (-25)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의 경우, 국회에서 감액 조정된 사업은 신기술창업인프라구축 사업이 유일하며,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기업가정신재단 관련 예산이 50억원 감액 조정되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해당하는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과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은 총 60억원 증액 조정되었는데, 특히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사업은 상임위 예비심사 시 115억원 증액 조정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에는 15억원만 증액 조정되었다.

표 16. 13 중소기업청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의 주요내역

(단위 :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신성장동력기술사업화투자지원	352	302 (-50)	302 (-50)
광특	시장경영혁신지원	366	417 (51)	411 (45)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1,741	1,851 (110)	1,751 (10)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제주)	43	48 (5)	48 (5)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1. 지식경제부

녹색성장 관련 연구개발 예산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을 포괄하는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신성장동력, 녹색뉴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 주요 정책과 중첩·보완되는 관계이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회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6. 3 녹색성장과 주요 정책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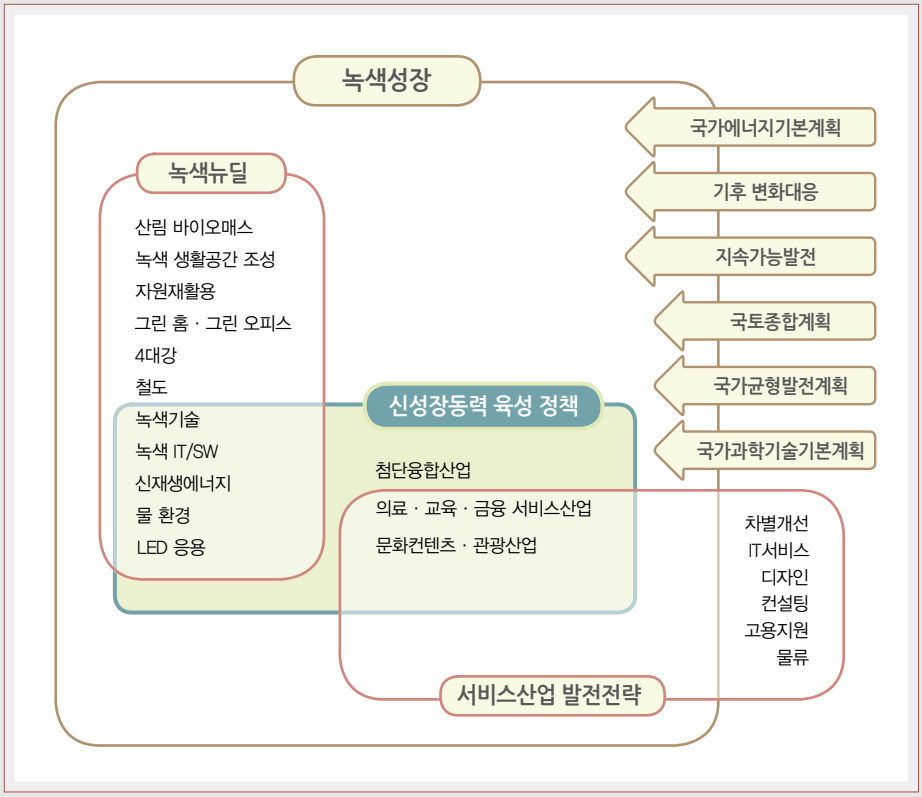

2009년 7월에 발표된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녹색성장 재정소요는 107.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9년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에 의하면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에 대한 투자는 2008년 1.4조원에서 2012년까지 2.8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2011년도 녹색기술 연구개발 예산
2조 5,493억원

2011년 녹색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2조 5,493억원으로 2010년도의 2조 1,935억원보다 16.2% 증가한 규모이다. 부처별 2011년도 녹색기술 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지식경제부가 9,259억원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지식경제부 총지출 15조 8,013억원에서 녹색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에 해당하는데, 녹색기술 연구개발 예산의 규모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6. 14 2011년도 녹색기술 연구개발 예산

(단위 : 억원, %)

	2010 예산 (A)	2011 예산		증감	
		(B)	비 중	(B-A)	(B-A)/A
지식경제부	8,648	9,259	36.3	611	7.1
교육과학기술부	4,893	6,343	24.9	1,450	29.6
국토해양부	3,006	3,495	13.7	489	16.3
농촌진흥청	1,875	2,087	8.2	212	11.3
환경부	1,326	1,620	6.4	294	22.2
농림수산식품부	934	1,142	4.5	208	22.3
중소기업청	403	507	2.0	105	25.8
산림청	332	379	1.5	47	14.2
보건복지부	210	219	0.9	9	4.3
기상청	139	223	0.9	84	60.4
문화체육관광부	97	111	0.4	14	14.4
방위사업청	52	65	0.3	13	25.0
소방방재청	19	23	0.1	4	21.1
식품의약품안전청	-	18	0.1	18	순증
합 계	21,935	25,493	100.0	3,558	16.2

주 : 녹색성장 관련 연구개발 예산의 규모는 각 사업에 포함된 과제의 공모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 2011. 2

그러나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및 「중점 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전략」 등 관련 기본계획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배분·조정되기 보다는 각 부처의 예산안을 사후적으로 집계하여 발표되고 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관련된 세부사업의 예산을 집계한 다음, 이를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규모라고 발표하는 것은 적극적인 투자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위 종합심사에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등 기본계획에서 녹색기술 투자의 총액과 기술별 투자 우선순위 등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기술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각 부처의 세부사업에 배분하는 하향식 예산안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지역투자촉진 사업(지자체 보조)

지역투자촉진(지자체 보조) 사업은 지역으로 이전 및 신·증설하는 기업의 투자지원을 통해 고용과 생산력 증대에 의한 지역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 예산안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예비심사 시 200억원 감액 조정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예비심사 결과대로 확정되었다.

지역투자촉진 사업
지자체보조 사업(2011년도 1,213억원)과 민간보조 사업(2011년도 7억원)으로 구성

표 16. 15 지역투자촉진 사업(지자체 보조) 예산

(단위 : 억원)

	2010년	2011년		
		정부안(A)	상임위(B) (B-A)	국회 확정(C) (C-A)
지역투자촉진	1,107	1,413	1,213 (-200)	1,213 (-200)

자료 : 지식경제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 12

동 사업의 경우 2005~2010년간 충남·충북 지역에 전체 보조금의 53.4%가 집중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2005~2009년간 지역투자촉진 사업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방이전기업 수는 2008~2009년간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회는 2011년도 지식경제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감안, "지식경제부는 지역투자촉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낙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연말 불용액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은 기존 전력망(Grid)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표 16. 16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 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	791	744	740	-4	-0.5
스마트그리드수출산업화	10	6	35	29	483.3
스마트미터디스플레이 보급	-	80	80	-	-
에너지표준화및 인증지원	-	-	10	10	순증
에너지정보화및 정책지원	-	-	43	43	순증
합 계	801	830	908	78	9.4

자료 : 지식경제부, 2011. 1

IHD(In Home Display)
가정 내 전자기기들의 전력 사용량을 원격 점검 · 조작하는 통합 단말기

동 사업의 경우 현재 IHD(스마트미터 디스플레이) 보급을 실시 중이다. 그러나 보급 중인 IHD는 각 가구의 전력사용량과 그에 따른 전기요금을 실내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여주는 역할만 할 수 있고,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의 원격제어 등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급사업의 효과가 의문시된다. 더욱이 현재처럼 전기요금이 상당히 저렴한 수준에서는 각 가구의 전력사용 절감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시 "스마트미터 디스플레이 보급사업은 실시간요금제 등 관련제도의 변경과 AMI시스템(Advanced Metering System, 지능형 계량시스템) 구축을 위한 R&D과제가 종료된 후에 보급사업을 진행하여야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4)]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2010년대비5.8%증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수행된다.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해양 등 전기 생산과 관련된 과제는 전력기금에서 지원하며, 태양열, 바이오, 폐기물, 지열 등의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는 에특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다. 2011년도 예산의 합계액은 2,433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규모이다.

4)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9. 11

표 16. 17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세부사업의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에특회계	36,626	40,000	3,374	9.2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전력기금	193,305	183,341	-9,964	-5.2
한국형300MW급 IGCC실증플랜트기술개발		-	20,000	20,000	순증
합 계		229,931	243,341	13,410	5.8

자료: 지식경제부, 「2011년도 예산 세부사업 설명자료」, 2011. 1

2011년도 예산의 에너지원별 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태양광이 34.8%로 가장 높으며, 풍력이 19.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계획이다. 이는 2010년 10월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육성할 계획에 부합되는 예산 편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료전지 분야는 전년보다 183억 4,800만원(39.5%) 감액[5]되었고, 석탄이용 분야는 203억 2,000만원 증액되었는바, 2009년 8월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에서 재원투입을 확대할 분야로 선정되었던 연료전지 분야에 대해서 1년 만에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5) 지식경제부는 연료전지 분야의 예산 감소는 계속과제의 상당수가 2010년에 종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신규과제 예산은 2010년도에 40억원, 2011년도에 11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16. 18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세부사업의 에너지원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증감	
			예산(B)	비 중	B-A	(B-A)/A
에특회계	바이오	12,864	18,810	7.7	5,946	46.2
	폐기물	6,703	7,701	3.2	998	14.9
	지열	7,205	5,968	2.5	-1,237	-17.2
	태양열	8,654	6,486	2.7	-2,168	-25.1
	평가관리비	1,200	1,035	0.4	-165	-13.8
	소 계	36,626	40,000	16.4	3,374	9.2
전력기금	태양광	86,450	84,774	34.8	354	0.4
	풍력	40,520	47,500	19.5	6,980	17.2
	수소	2,881	2,328	1.0	-553	-19.2
	연료전지	52,628	33,024	13.6	-18,348	-35.7
	석탄이용	550	21,390	8.8	20,320	1899.1
	소수력	503	1,172	0.5	-66	-5.3
	해양	5,273	7,700	3.2	-89	-1.1
	평가관리비	4,500	5,453	2.2	953	21.2
	소 계	193,305	203,341	83.6	9,551	4.9
합 계		229,931	243,341	100.0	12,925	5.6

주 : 전력기금의 에너지원별 예산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최종 지출계획 기준임
자료 : 지식경제부, 「2011년도 예산 세부사업 설명자료」, 2011. 1

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기업의 경영실적은 크게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적게 개선되는 이른바 양극화 문제가 주목된 바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양극화 해소가 중요한 화두로 부상했다.

중소기업청은 「중기사업계획(2011~2015)」을 통해 R&D 및 정책금융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중소기업청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중소기업청 재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금융지원 부문 예산을 연평균 6.5% 증가시키고, 산업기술지원 부문 예산을 연평균 17.3%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표 16. 19 향후 5년간 중소기업청 재정운용계획 : 2011~2015년

(단위 : 억원, %)

부문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산업금융지원	28,815	36,603	37,708	36,350	37,060	6.5
산업기술지원	9,168	11,536	13,393	15,200	17,347	17.3
무역·투자유치	842	1,152	1,308	1,480	1,678	18.8
산업진흥고도화	19,264	22,487	24,464	24,906	24,863	6.6
산업중소기업일반	1,673	1,916	1,822	1,831	1,874	2.9
합 계	59,762	73,694	78,694	79,767	82,822	8.5

자료: 중소기업청, 「중기사업계획(2011~2015)」, 2011. 1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기술혁신형 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량형 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지원융자 사업 예산안을 500억원 증액 의결한 바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에도 증액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정책금융
정부가 특정부문의 육성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배분해주는 제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경영현대화)과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사업(시설현대화)을 추진 중이다. 2011년도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은 국회에서 45억원 증액 조정되었고,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사업은 15억원 증액 조정되었다.

표 16. 20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

(단위 : 억원, %)

사업명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1,752	1,597	1,800	202	12.7
시장경영혁신지원	286	369	411	41	11.2
합 계	2,038	1,967	2,210	243	12.4

주 :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예 · 결산액에는 제주 계정도 포함됨
자료 : 중소기업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2011.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2007~2010년 연평균 실집행률이 약 47% 수준으로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전년도 이월액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당해연도 교부액은 일부만 집행하고 대부분을 차년도로 이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16. 21 연도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 실집행 실적 : 2007~2010년

(단위 : 억원, %)

연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07	1,566	778	49.7
2008	1,926	699	36.3
2009	1,766	1,070	60.6
2010	1,543	647	41.9

주 : 제주 계정 예산액 및 실집행액은 제외하였으며, 2010년 실집행액은 9월까지 기준임
자료 : 중소기업청, 2010. 10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33조 7,993억원으로 2010년 대비 8.1%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이다. 이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각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2010년 대비 8.2% 증가한 33조 5,694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299억원(5.8% 감소)이다.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지출
33.8조원

표 17. 1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2010 (A)	2011 (B)	증감(B-A)	증감률 (B-A)/A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12,635	337,993	25,358	8.1
총지출 대비 비중	10.7	10.9	0.2p	-
보건복지부 (비중)	310,195 (99.2)	335,694 (99.3)	25,499	8.2
식품의약품안전청 (비중)	2,440 (0.8)	2,299 (0.7)	-141	-5.8

주 :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 2010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2010. 10), 2011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지출 33조 7,993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4%, 16%이다. 보건복지부는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4.6%로 타 부처보다 높은 편이다.

표 17. 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 억원, %)

	총지출 (A)	의무지출 (B)	재량지출(A-B)				
			경직성 재량지출				비경직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보건복지 위원회 소관	337,993 (100)	284,033 (84.0)	3,386 (1.0)	461 (0.1)	0 (0.0)	3,847 (1.1)	50,113 (14.8)
보건복지부	335,694 (100)	284,033 (84.6)	2,615 (0.8)	337 (0.1)	0 (0.0)	2,952 (0.9)	48,709 (14.5)
식품의약품 안전청	2,299 (100)	0 (0.0)	771 (33.5)	124 (5.4)	0 (0.0)	895 (38.9)	1,404 (61.1)

주 : 괄호안은 소관 위원회 및 부처별 총지출에서 해당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은 의무지출의 비중이 높아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띠고 있으며, 동 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아서 복지수요가 증가하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건복지부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광역지역발전·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3개의 기금(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84억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47억원으로 총 5,230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도 예산 대비 28.0%(1,146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표 17. 3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376	2,223	3,884	1,661	74.7
특별회계	2,717	1,862	1,347	-515	-27.7
합 계	6,093	4,085	5,230	1,146	28.0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2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조 4,951억원으로 전년 대비 6.7%(1조 2,782억원) 증가하였는바, 그 증가 이유는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보육 및 저출산부문 예산이 2010년도 예산 대비 16.2% 증가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 건강보험 지원사업 등 법적성격 사업의 세출예산이 자동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지출 기준 1,97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3%(356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포함된 국립의료원이 2010년에 법인화되면서 2010년 예산(515억원) 전액이 순감되었기 때문이다.

표 17. 4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90,352	192,169	204,951	12,782	6.7
특별회계	3,157	2,327	1,971	-356	-15.3
농특회계	773	715	672	-42	-5.9
광특회계	378	15	19	4	29.0
책특회계	2,007	1,597	1,279	-318	-19.9
합 계	193,509	194,496	206,922	12,426	6.4

주 : 총지출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11. 2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지출 기준 12조 8,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1조 3,313억원) 증가하였는바, 주된 증가 이유는 인구고령화와 제도성숙에 따라 국민연금 연금수급자가 증가하여 국민연금기금 지출규모가 전년 대비 13.9% (1조 3,295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7. 5 보건복지부 기금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국민연금기금	79,378	95,807	109,102	13,295	13.9
국민건강증진기금	16,501	17,630	17,960	330	1.9
응급의료기금	410	2,022	1,710	-312	-15.4
합 계	96,289	115,459	128,772	13,313	11.5

주 : 총지출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2

보건복지부의 세출예산은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의무지출사업의 비중이 높아서 매년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2011년도 보건복지부 의무지출은 28조 4,033억원으로 전년 대비 9.8%(2조 5,343억원) 증가하였다.

표 17. 6 2011년도 보건복지부 의무지출 사업

(단위 : 억원, %)

사업명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회계
			(B-A)	(B-A)/A	
생계급여	24,492	24,460	-32	-0.1	일반회계
주거급여	5,628	5,987	358	6.4	일반회계
교육급여	1,204	1,299	95	7.9	일반회계
해산장제급여	154	154	0	0.0	일반회계
의료급여 경상보조	34,995	36,718	1,723	4.9	일반회계
기초노령연금지급	27,236	28,253	1,016	3.7	일반회계
기타 의무지출 사업	164,981	187,161	22,180	13.4	-
합 계	258,690	284,033	25,343	9.8	

주 :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정치임

보건복지부 세출예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2011년도 예산 기준으로 14조 8,622억원으로 전년 대비 6.3%(8,758억원)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도 예산 기준으로 44.3%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총지출 33조 5,694억원 중에서 사회보험 지출액(국민연금 10조 9,102억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분 6조 1,705억원)을 제외할 경우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은 90.1%로 정도로 보건복지부 재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높다.

표 17. 7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보건복지부 총지출(A)	310,195	335,694	25,499	8.2
국민연금기금	95,807	109,102	13,295	13.9
건강보험 국고지원분	53,827	57,102	3,275	6.1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분	3,889	4,604	715	18.4
사회보험지출 소계(B)	153,523	170,808	17,285	11.3
차 액(C=A-B)	156,672	164,886	8,214	5.2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D)	139,864	148,622	8,758	6.3
보건복지부 총지출 대비 국고보조사업 비율(D/A)	45.1	44.3	-	-
보건복지부 총지출에서 사회보험지출을 제외한 차액 대비 국고보조사업 비율(D/C)	89.3	90.1	-	-

주 : 기금의 경우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2

보건복지부는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로, 기금은 3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과 기금은 별도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2개 분야(사회복지, 보건)와 8개의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공적연금, 보육 및 저출산,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건강보험)으로 나누어져 편성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지출(20조 6,922억원)의 74%가 사회복지분야에 편성되어 있고, 보건 분야는 26% 정도이다.

그림 17. 1 보건복지부 재정구조-2011년도 예산

주 : 기금의 경우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금액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2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과태료, 기타경상이전수입, 수입대체경비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규모는 전년대비 0.5% 증가한 83억원이다.

표 17. 8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백만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6,835	8,270	8,311	41	0.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 개요」, 2011. 1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51억원으로 전년대비 5.9% 감소,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8억원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2010년에 비하여 5.8%(141억원)가 감소한 2,299억원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표 17. 9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07,950	239,103	225,070	14,033	-5.9
특별회계	-	4,900	4,836	-64	-1.3
합 계	207,950	244,003	229,906	-14,097	-5.8

주: 광역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2010년부터 편성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 개요」, 2011. 1

2011년도 식품의약품 세출예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와 관련된 사업비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의약품 행정지원의 세부사업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 오송이전 비용지원, 서울청 종합민원센터 증축, 장비현대화사업 등이 2010년 종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372억원의 사업비가 감소한데 있다.

표 17. 10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요사업 증감현황

(단위 : 억원, %)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세출예산]	2,440	2,299	-141	-5.8
사업비	1,534	1,355	-179	-11.7
- 식품안전성 제고	123	238	115	93.3
- 의약품안전성 제고	32	57	25	80.6
- 의료기기안전성 제고	24	38	14	57.6
- 식의약안전평가원 운영	556	593	37	6.7
- 지방청 운영	37	39	1	3.8
- 식의약품 행정지원	762	390	-372	-48.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년도 세입 · 세출 예산 개요」, 2011. 1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에 걸쳐서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11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상임위 의결결과,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입예산안의 경우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보건복지부의 경우 정부안보다 일반회계에서 5,933억원을, 특별회계에서 31억원을, 총 5,964억원을 증액시켰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93억원을 증액시켰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운용계획안에서 국민연금기금과 응급의료기금은 각각 700만원과 11억원을 증액시켰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700억원을 감액시켰다. 지출운용계획안에서는 국민연금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각각 134억원과 630억원을 감액시켰고, 응급

의료기금은 170억원을 증액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바탕으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정부안보다 24억원 감액, 618억원 증액, 총 594억원이 증액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정부안보다 22억원이 증액되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운용계획안은 응급의료기금만 상임위 의견을 반영하여 11억원 증액시켰다. 지출운용계획안은 국민연금기금에서 134억원을 감액하였고,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에서 각각 58억원과 33억원을 증액시켜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43억원을 감액하였다.[1)]

종합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세출예산안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부안보다 각각 594억원과 22억원이 증액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공사 설립사업의 예산안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총 43억원이 정부안보다 감액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594억원
· 기금운용규모△43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22억원

2. 심의 특징 및 내역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특이한 점은 2005년에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인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예산안 결정과정이다. 정부는 동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므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부 원안에서는 동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2010년에 이어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서도 동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1) 보건복지부 총지출을 산정할 때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함에 따라 국회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결과에서도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였다. 국회 예결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결과에서 제외된 여유자금운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58억원(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30억원, 한국은행예치금 28억원)을 감액하였고, 응급의료기금의 경우 22억원(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을 감액하였으며,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134억원(국민연금기금 국채매입)을 증액하였다.

이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부대의견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5개월, 436억원)에 대해 일반회계와 특별교부세로 2분의 1씩 분담하여 2011년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218억원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반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상임위 부대의견에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인 결식아동급식사업에 대하여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의결하였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동 사업비에 대한 논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결정되었다. 동 사업은 2010년의 경우 부대의견(29만명을 상회하는 방학 중 급식비의 50%를 행안부, 교과부, 기재부에서 각각 1/3씩 지원토록 결정)에 따라 203억원을 지원하였다.

국회는 취약계층 지원 중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사업비도 증액시켰다.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운영(드림스타트)사업비를 3억원 증액시켰고, 방과후돌봄서비스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자체보조사업비도 각각 38억원과 10억원 증액시켰다.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액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누락된 사업이 일부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사업)과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으로 보인다.

표 17. 11 보건복지부 소관 2011년 주요 예산안 심의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정부안(A)	2011 (B)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경로당 난방비 지원	0	436 (436)	218 (218)
	결식아동급식지원	0	0 (부대의견: 법령 정비를 통한 예산지원방안을 마련 한다)	0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운영	369	399 (30)	372 (3)
	방과후 돌봄서비스	939	1,206 (267)	977 (38)
	아동발달계좌 지자체보조	63	107 (44)	73 (10)
건강 증진 기금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	321	659 (339)	321 (0)
일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898	3,642 (2,744)	898 (0)

자료 :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2010. 11), 예결위 심사보고서(2010. 12)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보조사업은 상임위에서 민간병의원에서 접종 시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증액분(339억원)을 반영하여 동 사업비를 659억원으로 의결하였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미반영되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의 경우 상임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기 위한 증액분(2,744억원)을 반영하여 동 사업비를 3,642억원으로 의결하였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미반영되었다.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1. 보건복지부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복지재정규모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X)[2)]에 의한 단순비교에 의하면, 2007년 기준 1인당 GDP 대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7.5%로, OECD 평균(19.3%)의 38.9%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측면을 본다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은 26.5%로 OECD 국가들의 평균(35.4%)의 74.9% 수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저부담·저급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기준

- 1인당 GDP대비 복지지출 7.5%
- 국민부담률 26.5%

2) OECD는 사회정책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에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개발하였다. 또한 OECD의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X)는 노령(Old-age), 유족(Survivors), 근로무능력 · 장애(Incapacity -related benefits), 보건(Health),가족(Family),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실업(Unemployment), 주택(Housing), 기타(Others)라는 9개의 정책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17. 12 OECD국가들의 국민부담률 및 1인당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비교

(단위 : 미국달러, %)

국가	1인당 GDP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1인당 GDP 대비 복지지출비중
호주	40,660	29.5	29.5	16.0
오스트리아	44,850	27.9	42.1	26.4
벨기에	43,161	30.2	43.8	26.3
캐나다	43,185	28.2	33.0	16.9
체코	16,858	21.1	37.3	18.8
덴마크	56,894	48.0	49.0	26.1
핀란드	46,505	31.1	43.0	24.9
프랑스	40,644	27.4	43.5	28.4
독일	40,468	22.8	36.0	25.2
그리스	27,689	20.6	32.3	21.3
헝가리	13,799	26.7	39.7	23.1
아이슬란드	65,566	37.6	40.6	14.6
아일랜드	59,608	26.2	30.9	16.3
이스라엘	23,257	30.8	36.3	15.5
이탈리아	35,641	30.4	43.4	24.9
일본	34,264	18.0	28.3	18.7
한국	21,653	21.0	26.5	7.5
룩셈부르크	106,831	25.8	35.7	20.6
멕시코	9,741	15.2	17.9	7.2
네덜란드	47,511	25.3	38.7	20.1
뉴질랜드	32,712	35.1	35.1	18.4
노르웨이	82,294	34.7	43.8	20.8
폴란드	11,157	22.8	34.8	20.0
포르투갈	21,770	23.9	35.2	22.5
슬로베니아	23,445	24.1	37.8	20.3
스페인	32,105	25.2	37.3	21.6
스웨덴	50,558	35.0	47.4	27.3
스위스	57,490	22.2	28.9	18.5
영국	45,901	29.5	36.2	20.5
미국	46,627	21.4	27.9	16.2
OECD 평균	-	26.6	35.4	19.3

주 : 1. 2007년 기준임
2.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만 포함
자료 : OECD Stat, 2011. 2, World Bank data, 2011. 2

상기의 단순비교를 볼 경우 소득수준 차이에 따른 1인당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1인당 GDP가 2만불을 달성했을 시기의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을 서로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에 1인당 GDP가 2만불을 달성하였으며,[3] 그 당시 1인당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7.5%이고, 주요 OECD 국가들이 1인당 GDP가 2만불을 달성하였을 시기의 1인당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1.3~32%) 수준이다.

표 17. 13 1인당 GDP 2만불 달성했을 시기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비교

(단위 : 미국달러, %)

국가	1인당 GDP 2만불 달성연도 (당시 1인당 GDP)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	영역별 1인당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	주거	기타	합계
벨기에	1990년 (20,323)	28.1	42.0	1990년									
				6.5	2.6	2.6	6.4	2.3	1.1	2.9	-	0.5	24.9
핀란드	1988년 (21,634)	33.0	42.7	1990년									
				7.0	1.0	4.2	6.3	3.2	0.8	1.1	0.2	0.5	24.3
프랑스	1990년 (21,382)	23.5	42.0	1990년									
				9.2	1.6	2.1	6.2	2.5	0.7	1.7	0.7	0.2	24.9
독일	1990년 (21,584)	21.8	34.8	1995년									
				8.0	2.7	2.5	8.2	2.1	1.2	1.5	0.3	0.2	26.8
일본	1987년 (20,056)	20.7	29.0	1990년									
				4.1	0.9	0.6	4.5	0.4	0.3	0.3	-	0.1	11.3
한국	2007년 (21,653)	21.0	26.5	2007년									
				1.6	0.3	0.6	3.5	0.5	0.1	0.3	-	0.8	7.5
네덜란드	1991년 (20,130)	26.1	42.9	1990년									
				6.3	0.9	6.3	5.4	1.7	1.3	2.5	0.3	0.8	25.6
스웨덴	1987년 (20,416)	39.5	52.1	1995년									
				9.8	0.7	4.9	6.2	3.8	2.2	2.3	1.1	1.0	32.0
미국	1988년 (20,698)	19.6	26.4	1990년									
				5.2	0.9	1.0	4.8	0.5	0.2	0.4	-	0.4	13.5

주: 1.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만 포함
2. 1인당 GDP가 2만불을 달성했을 연도의 사회복지지출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근접한 연도의 자료를 제시함
자료: OECD Stat, 2011. 2, World Bank data, 2011. 2

3) 그 이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1인당 GDP가 19,162불(2008년), 17,078불(2009년)로 하락하였다.

소득수준을 고려할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노령분야의 지출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할 정도로 다른 영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분야의 지출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도입되었고 2007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 사각지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340만명(170만가구)

정부는 2009년 추경예산 편성 당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서도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가 약 340만명(170만가구)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7. 2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현황 :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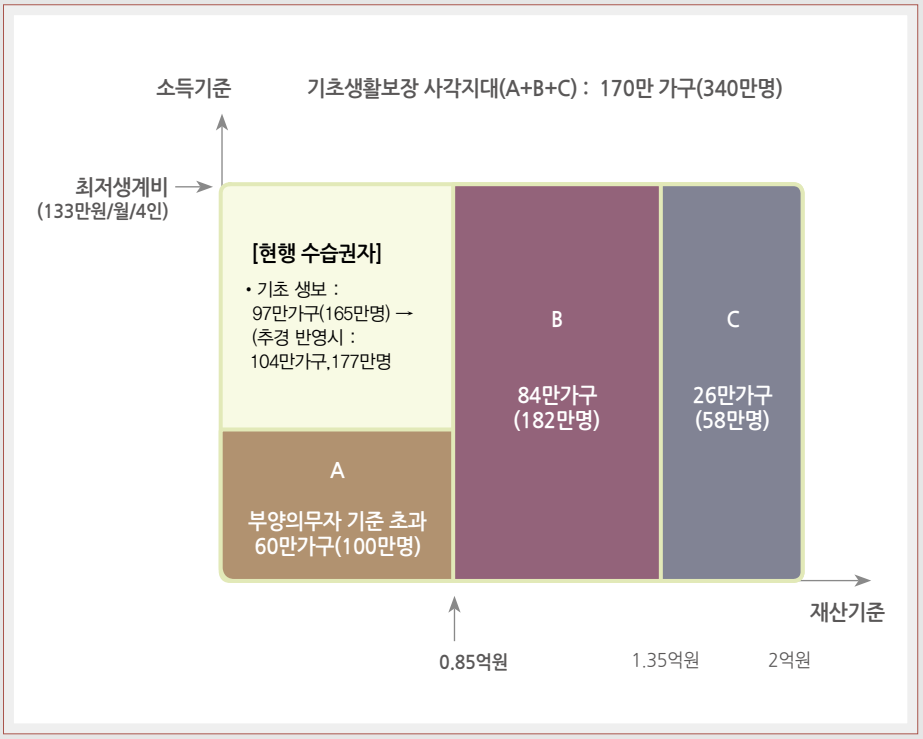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쟁점분석」, 2009. 4

그러나 '부양능력이 있다'는 소득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130%(2009년 기준 243만원)은 2009년 전국가구 평균소득(344만원)의 70% 수준에 불과하여 실제적으로 사적부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006년에 개정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로 상향조정할 경우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빈곤층은 60,278명(35,458가구)으로 전체 사각지대 340만명의 약 1.8%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소요예산은 1,938억원으로 나타났다.[4)]

국민연금 사각지대
510만명

국민연금의 당면과제인 연금적용의 사각지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향후 연금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획득하더라도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납부예외자 계층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크게 구분되는데, 납부예외자 계층은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867만명 중에서 납부예외자가 510만명으로 지역가입자의 5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납부예외자 비중이 증가할 경우 납부예외자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이들은 결국 미래 정부와 후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표 17. 14 2008~2010년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규모

(단위 : 만명, %)

	2008				2009				2010			
	사업장	지역	임의(계속)	합계	사업장	지역	임의(계속)	합계	사업장	지역	임의(계속)	합계
총가입자(A)	949	878	6	1,834	987	868	8	1,862	1,042	867	14	1,923
납부예외자(B)	-	503	-	503	-	505	-	505	-	510	-	510
납부예외자비중(B/A)	-	57.2	-	27.4	-	58.2	-	27.1	-	58.8	-	26.5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1. 2)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복지재정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미흡으로 부정·중복 수급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수혜자인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체감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회안전망이 부처별로 운영됨으로써 부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9.

처간 사업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등돌봄교실사업은 아동청소년의 돌봄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들로 보인다.

그림 17. 3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과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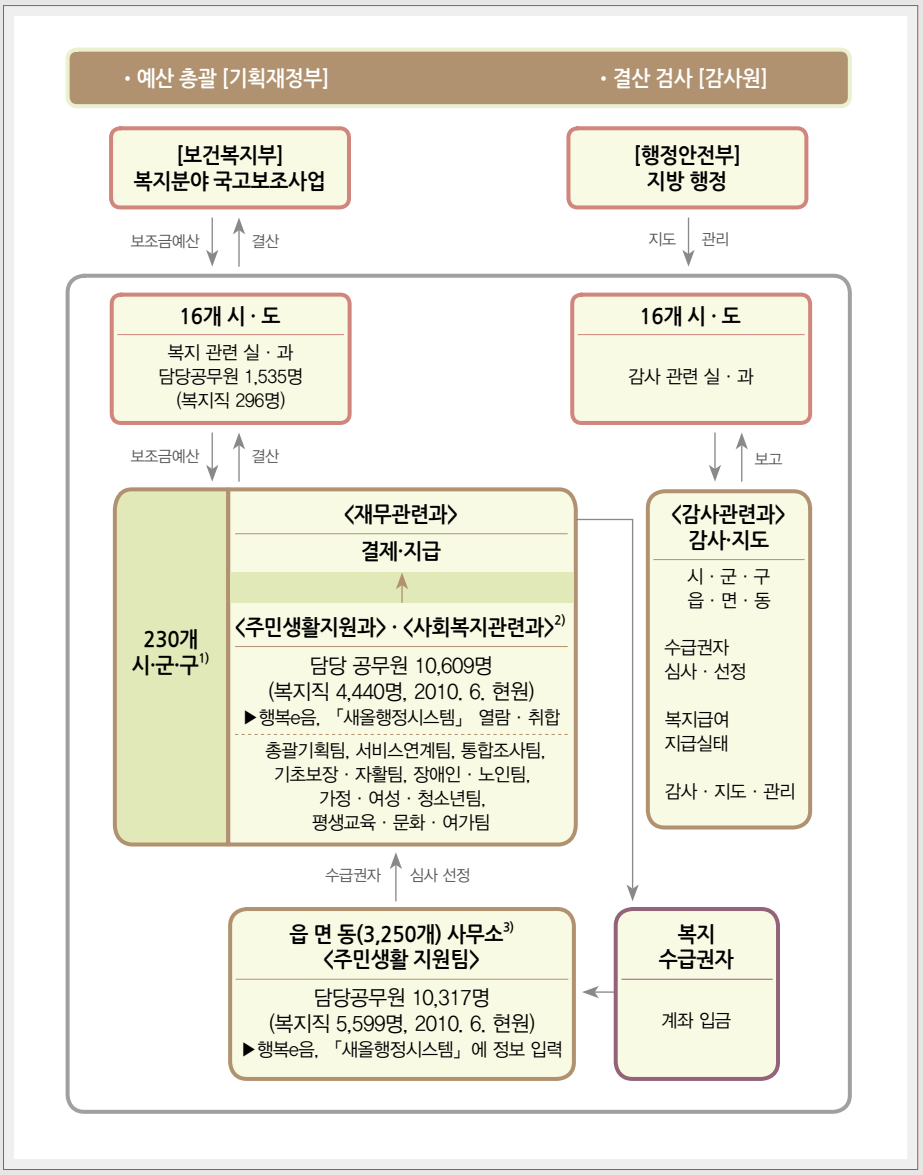

주 : 1. 기초자치단체 228개+제주특별자치도 2개 시(제주시 · 서귀포시) 포함(2010.8기준).
2.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3. 사무소(주민센터등) 수는 2010.6.30 기준으로, 대도시지역 동통합 실시로 실제보다 많음(동주민센터 2,058개, 읍사무소 214개, 면사무소 1,192개)
자료 : 「행정안전백서」(2009) 및 「보건복지부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2010. 9)

정부는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비해 복지급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2010년부터 수혜대상자별로 수혜급여 및 복지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전산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운영하였다. 그러나 동 관리망은 고도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 이외에 타 부처의 복지사업에 행복e음의 자격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지만, 행복e음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타 부처와 정보연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복e음이 2010년부터 시행되면서 기초지자체에 통합조사관리팀이 신설되었는데, 행복e음 개통 이후 기존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담당하던 자격관리 업무가 통합조사관리팀으로 넘어가면서 통합조사관리팀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읍·면·동 일선 복지담당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례관리 등을 통해 필요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예산(국비+지방비)[5]은 2.7배, 수급권자 수는 2.6배가 되었지만, 담당 공무원 수는 1.04배(4% 증가)에 머물고 있다. 2011년 기준 복지담당 공무원 1인이 관리하는 수급권자 수는 평균 450명이며, 사업비(국고보조사업 총액 기준)는 약 1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7. 15 복지예산, 수급권자 및 담당 공무원 비교 : 2006 대 2011년

	2006(A)	2011(B)	배수(B/A)
재정규모			
복지재정(총액)	56.0조원	86.4조원	1.54배
주택제외 복지재정	42.5조원	68.4조원	1.61배
복지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수행 예산 (국고+지방비)	8.2조원	22.2조원	2.71배
복지 수급권자 수	394.7만명	1,016.8만명	2.58배
복지담당 공무원 수	2.15만명	2.25만명	1.04배

자료 : 보건복지부(2011. 2) 등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작성

건강보험 재정

2011년도 건강보험 지출규모는 2010년 대비 9.4% 증가한 38조 1,394억원으로 예상된다. 수입부문과 지출부분을 나눠서 살펴보면, 수입부문은 보험료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대

2011년도 건강보험 지출규모
38.1조원

5) 지방이양(2005년) 복지사업 및 자체 복지사업, 각 공단이 관리하는 사회보험급여비 등은 제외하였다.

비 13.2% 증가하고, 지출부분은 보험급여비의 증가로 전년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도 가입자지원은 국고와 담배부담금을 포함하여 5조 1,424억원으로, 보험료수입(31조 9,465억원)의 16.1%, 건강보험 지출재정의 13.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보험료수입의 증가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정부지원 후 당기수지는 5,130억원 적자로 예상된다.

표 17. 16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 2006~2011년

(단위 :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가율 (2010-2011)
수입(A)	185,514	215,979	248,300	263,717	285,852	323,505	13.2
지출(B)	224,623	255,544	275,412	311,849	348,599	381,394	9.4
당기수지(A-B)	-39,109	-39,565	-27,112	-48,132	-62,747	-57,889	-7.7
정부지원(C)	38,362	36,718	40,779	48,100	49,753	52,759	6.0
가입자지원(일반회계)	28,698	27,042	30,023	36,566	37,984	40,794	7.4
차상위계층지원(일반회계)	-	-	517	1,272	1,139	1,335	17.2
가입자지원(담배부담금)	9,664	9,676	10,239	10,262	10,630	10,630	-
정부지원 후 당기수지 (A-B+C)	-747	-2,847	13,667	-32	-12,994	-5,130	
누적재정수지	11,798	8,951	22,618	22,586	9,592	4,462	

주 : 1. 2010년까지는 결산기준, 2011년은 예산기준
2. 2006년 및 2007년 기금지원액은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실지원액 반영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2

건강보험 재정은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보험료율을 5~6% 인상[6]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의 증가, 의료이용량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복합적이고 구조적 요인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건강보험의 재정위험은 향후 정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

6) 2007~2011년 보험료 인상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보험료율	4.77%	5.08%	5.08%	5.33%	5.64%
보험료율 인상률	6.5%	6.4%	0.0%	4.9%	5.9%

자료 : 보건복지부

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OECD는 「2010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이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고령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계획은 지출증가를 더욱 압박한다고 지적하고 있다.[7)]

정부지원에 있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해 정부지원이 2011년 12월말을 시한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며,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시법으로 규정된 정부지원의 종료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정부지원의 재원문제와 규모문제, 집행문제 등에 대해 다각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2011년도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8.5% 증가한 1조 9,346억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총지출 대비 5.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증가율 또한 보건복지부 총지출 증가율 8.2%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17. 17 2011년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감	
			(B-A)	(B-A)/A
만0~4세 보육료지원	13,689	17,344	3,655	26.7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218	1,012	206	-16.9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463	437	-26	-5.5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	856	-	-856	순감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96	438	342	353.0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	-	115	115	순증
합 계(A)	16,322	19,346	3,024	18.5
보건복지부 총지출(B)	310,195	335,694	25,499	8.2
보건복지부 총지출 대비 보육료지원사업 비중(A/B)	5.3	5.8	11.2	

자료 : 보건복지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7) 박인화,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0. 9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은 세부 6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자의 확대와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만0~4세 보육료지원과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다문화가정 보육료지원은 증가하였고, 만5세 무상보육료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은 지원대상아동수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감소하였다.

2005~2011년 보육료지원예산 연평균 증가율
41.9%

지금까지 정부의 보육료지원 정책은 차등지원을 기본으로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왔다. 2005~2011년 동안 정부의 보육료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차등보육료와 무상보육료의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만0~4세 아동의 경우, 200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까지는 차등보육을 실시하였으나, 2011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 17. 18 만0~4세 연도별 정부 보육료 지원 확대 비교표 : 2005~2011년

(단위 : 억원, %)

<table>
<tr><th rowspan="2">소득수준 1</th><th colspan="8">보육료 지원비율</th><th rowspan="2">소득수준 2</th></tr>
<tr><th>2005</th><th>2006</th><th>2007</th><th>2008</th><th>2009상</th><th>2009하</th><th>2010</th><th>2011</th></tr>
<tr><td>기초수급자등</td><td>100%</td><td rowspan="2">100%</td><td rowspan="2">100%</td><td rowspan="2">100%</td><td rowspan="2">100%</td><td rowspan="4">100%</td><td rowspan="4">100%</td><td rowspan="8">100%</td><td rowspan="4">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td></tr>
<tr><td>차상위 계층</td><td>80%</td></tr>
<tr><td>도시근로자 평균소득50%</td><td>60%</td><td>70%</td><td>80%</td><td>80%</td><td>80%</td></tr>
<tr><td>도시근로자 평균소득70%</td><td>30%</td><td>40%</td><td>50%</td><td>60%</td><td>60%</td><td rowspan="2">60%</td><td rowspan="2">60%</td><td>소득하위 60%초과</td></tr>
<tr><td>도시근로자 평균소득100%</td><td>-</td><td></td><td>20%</td><td>30%</td><td>30%</td><td rowspan="2">30%</td><td rowspan="2">30%</td><td>소득하위 70%초과</td></tr>
<tr><td>도시근로자 평균소득100% 초과</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소득하위 70%초과</td></tr>
<tr><td>만0~4세 보육료지원 (증가율)</td><td>2,125</td><td>4,580 (115.5)</td><td>6,144 (34.1)</td><td>8,802 (43.3)</td><td colspan="2">11,121 (26.3)</td><td>13,689 (23.1)</td><td>17,344 (26.7)</td><td>연평균증가율 (41.9)</td></tr>
<tr><td>그 외 지원</td><td colspan="9">• 장애아 보육료 : 2003년부터 시행
• 만5세아 보육료지원 : 1999년부터 시행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 2005년~2010년
•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 2010년부터 시행
• 다문화가구 보육료 지원(소득상위 30%) : 2011년부터 시행(계획)</td></tr>
<tr><td>보육료지원예산 (증가율)</td><td>3,349</td><td>5,218 (55.8)</td><td>6,309 (20.9)</td><td>11,030 (74.8)</td><td colspan="2">13,215 (19.8)</td><td>16,322 (23.5)</td><td>19,346 (18.5)</td><td>연평균증가율 (34.0)</td></tr>
</table>

주 : 1. 소득기준은 2009년 하반기부터 도시근로자평균소득에서 소득분위 개념으로 변경
2. 보육료지원 예산은 2005~2009년은 결산기준, 2010~2011년은 예산 기준임
3. 만0~4세 보육료지원 예산에는 2006년부터 실시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아에게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를 포함한 금액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Ⅱ」, 2010. 11

이러한 대상자 확대 정책으로 보육료지원 예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2005년 3,349억원이었던 보육료지원 예산은 2011년 1조 9,346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보육료지원의 확대는 중앙정부 보육예산의 증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보육 예산과 교육과학기술부 유아학비지원 예산의 증가로 이어진다. 보육료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8]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보육료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학비지원 예산의 증가는 보육시설 이용과 유치원 이용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두 사업이 동일한 선정기준 및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기인한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대비 증가한 보육예산은 지방비 부담과 유아학비지원 사업의 증가분까지 포함하여 6,790억원으로 추정된다.

표 17. 19 보육지원 확대에 따른 관련사업의 예산 변화

(단위 : 억원)

		2010년 예산 (A)	2011년 예산 (B)	증 감 (B-A)
영유아보육료지원	국고	16,322	19,346	3,024
	지방비	17,129	19,816	2,687
유아학비 지원(지방교육재정)		5,153	6,232	1,079
합 계		38,604	45,394	6,790

자료 :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2011. 2

8) 보육료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지원하는데, 서울은 국고보조율이 10~30%이고, 지방은 국고보조율이 40~60%이다.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1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총지출
18조 4,708억원

2011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18조 4,708억원으로 2010년 대비 3.7%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이다. 이를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각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가 전년 대비 5.5% 증가한 5조 5,639억원, 고용노동부가 전년대비 2.6% 증가한 12조 6,180억원, 그리고 기상청이 전년대비 17.0% 증가한 2,889억원이다.

표 18. 1 2011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2010 (A)	2011 (B)	증감(B-A)	증감률 [(B-A)/A]
환경노동위원회	178,132	184,708	6,576	3.7
총지출 대비 비중	6.1	6.0	-0.1p	-
환경부 (비중)	52,727 (29.6)	55,639 (30.2)	2,912	5.5
고용노동부 (비중)	122,935 (69.0)	126,180 (68.2)	3,245	2.6
기상청 (비중)	2,470 (1.4)	2,889 (1.6)	419	17.0

주 :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총지출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 2010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2010. 10), 2011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총지출 18조 4,708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3.4%, 56.6%이다. 부처별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비교하면, 환경부와 기상청은 총지출의 96.8%와 70.1%를 비경직성 재량지출이 차지하고, 의무지출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환경부의 경우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정비 등 하수도사업(2조 650억원)이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총지출의 63.6%를 의무지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구직급여(3조 3,772억원) 및 산재보험급여(3조 8,159억원)가 대표적인 의무지출이다.

표 18. 2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 억원, %)

	총지출 (A)	의무지출 (B)	재량지출(A-B)				
			경직성 재량지출				비경직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환경노동위원회	184,708 (100.0)	80,261 (43.4)	4,227 (2.3)	659 (0.3)	571 (0.3)	5,457 (2.9)	98,990 (53.7)
환경부	55,639 (100.0)	-	1,037 (1.9)	206 (0.3)	571 (1.0)	1,814 (3.2)	53,825 (96.8)
고용노동부	126,180 (100.0)	80,261 (63.6)	2,492 (2.0)	286 (0.2)	-	2,778 (2.2)	43,141 (34.2)
기상청	2,889 (100.0)	-	698 (24.1)	167 (5.8)	-	865 (29.9)	2,024 (70.1)

주 : 괄호안은 총지출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환경, 고용노동, 기상 등 상이한 관리대상을 재정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 및 청은 그 관리대상의 다양성만큼 상이한 재정운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여타 부처와 다르게 일반회계에서 재정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위주로 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환경부 세출예산의 87.7% 그리고 총지출의 74.9%가 동 회계를 통하여 운용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기금에 비하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 세출예산이 재정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비중이 고용노동부 총지출의 10.4%에 불과하다.

환경부

2011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와 5개의 기

금(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는 일반회계를 편성하지 않고 1994년에 제정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근거로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회계를 위주로 환경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 회계의 세입은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환경 관련 부담금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자체세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2011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세입 1조 4,114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조 8,600억원을 합하여 2010년도 3조 9,651억원보다 3,064억원 증가한 4조 2,715억원이다.

표 18. 3 환경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환경개선특별회계	40,027	39,651	42,715	3,064	7.7
- 자체세입	12,030	13,272	14,114	842	6.4
- 일반회계전입금	27,967	26,378	28,600	2,222	8.4

자료 : 환경부, 「2011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 12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전체 규모는 전년도 4조 4,832억원 대비 6.6% 증가한 4조 7,778억원인데,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이 환경부 전체 세출의 87.7%를 차지함으로써 환경관리사업이 환경개선특별회계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전년에 비하여, 2011년에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사업'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 8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표 18. 4 환경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환경개선특별회계	35,604	38,798	41,881	3,083	7.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28	1,151	909	-242	-21.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191	4,883	4,908	25	0.5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	-	80	80	순증
합 계	40,923	44,832	47,778	2,946	6.6

자료 : 환경부, 「2011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 12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의 운용규모는 8,123억원으로 전년 7,895억원 대비 2.9% 증가하였는바, 주된 증가 이유는 한강수계관리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지출 증가와 더불어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신규 편성에 있다.

표 18. 5 환경부 기금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한강수계관리기금	4,874	4,194	4,279	85	2.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969	1,960	2,018	58	2.9
금강수계관리기금	895	1,013	954	-59	-5.8
영산강수계관리기금	713	728	733	5	0.7
석면피해구제기금	-	-	139	139	순증
합 계	8,451	7,895	8,123	228	2.9

자료 : 환경부, 「2011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 12

2011년도 환경부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첫째, 하수도사업에 있어 경직성 재정투자의 증가에 있다. 2011년 환경부 소관 전체 세출예산의 43.2%에 해당하는 2조 650억원이 하수도사업에 투입될 계획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준공기간 도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임대료 증가, 그리고 시설설치사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지급', 그리고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서 전년대비 사업비의 대폭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2011년 사업기간 도래에 따라 550개 대상사업의 준공을 위해 잔여사업비 전액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전년대비 33.9% 증액된 2,534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연차별 준공이 늘어남으로써 2011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지불' 규모도 전년 502억원에 비하여 160.3% 증가한 1,306억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표 18. 6 2011년도 하수도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0 (A)	2011 (B)	증감(B-A)	증감률 [(B-A)/A]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	**189,216**	**253,352**	**64,136**	**33.9**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214	889	-325	-26.8
분뇨처리시설확충	13,222	12,111	-1,111	-8.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8,229	31,121	2,892	10.2
하수관거정비	**646,503**	**528,440**	**-118,063**	**-18.2**
하수관거융자원리금상환	14,328	13,362	-966	-6.7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지급	**50,163**	**130,559**	**80,396**	**160.3**
하수처리장설치	**621,259**	**748,649**	**127,390**	**20.5**
하수처리장융자원리금상환	134,057	112,049	-22,008	-16.4
하수도연구관리	1,000	1,000	-	-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98,349	148,599	50,250	51.2
하수도시설확충및관리(광특)	2,348	2,373	25	1.1
면단위하수처리장확충(농특)	104,967	82,537	-22,430	-21.3
합 계	1,904,855	2,065,041	160,186	8.4

자료 : 환경부, 「2011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0. 12

둘째, 2010년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개선이 강화되어 2012년 1월부터 총인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동 규칙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 하수처리장은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2011년에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의정서'에 따라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2011년 2월부터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설치가 시급하여, 2011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사업비는 전년대비 20.5% 증액되었다.

환경부 재정구조를 보면, 2011년의 경우, 총지출의 74.9% 그리고 세출예산의 87.7%가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세입예산의 67%를 일반회계전입금에 의존하는 등 자체세입 구조가 견실하지 못하여, 특별회계로서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문제와 더불어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18. 1 환경부 재정구조 – 2011년도 예산

주 : 2011년도 예산(총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고용노동부

201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은 세입·세출 예산(일반회계 및 4개의 특별회계)과 5개 기금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며,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다.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의 특징은 기금 비중이 높고 일반회계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 총지출[1]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9%, 2011년 9.9%이다. 다만, 201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이 14.0%로 높았으며,[2] 이에 따라 일반회계 비중이 1.0%p 높아졌다는 점이다.

표 18. 7 고용노동부 재정운용 구조

(단위 : 억원, %)

구분	2010 예산		2011 예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지출	122,935	100.0	126,180	100.0
일반회계	10,964	8.9	12,500	9.9
특별회계	786	0.6	656	0.5
기금	111,185	90.4	113,024	89.6

주: 총지출 기준, 2010년의 경우 변경 이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011회계연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0억원(과태료수입 약 87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가산금 43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00만원으로 총 131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도 예산 대비 16.2%(25억원) 감소한 규모이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수입 실적 감소에 따른 과태료 수입 감소, 임차보증회수금 감소 등에 따른 기타경상이전수입 감소에 따라 세입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18. 8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백만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3,228	15,577	13,044	-2,533	-16.3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242	15	15	0	0
합 계	23,469	15,592	13,059	-2,533	-16.2

자료 : 고용노동부, 「2009회계연도 세입 · 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 2010. 5
고용노동부, 「2011회계연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1) 총지출은 기금전출금 및 기금 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실 지출소요이며, 기금전출금 및 여유자금을 포함한 총계 기준으로 2011년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은 총 19조 8,487억원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 1조 2,958억원, 특별회계 656억원, 기금 18조 4,874억원 규모이다.

2) 일반회계로 추진되는 사업 중 청년고용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 관련 사업의 증액 규모가 크고 신규사업이 다수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창업 · 창직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 36.7%(391억원) 증가하였으며, 지원요건 완화로 취업장려수당 예산이 810.6%(315억원) 증가하였다.

201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은 총지출 1조 3,15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1,405억원) 증가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청년고용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 관련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14.0%, 1,536억원)을 보였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종합상담센터의 혁신도시 이전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86.2%(16억원) 증가하였다. 반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산재예방사업(진폐위로금 지급 등) 규모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1.5%(149억원) 감소하였다.

표 18. 9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2,226	10,964	12,500	1,536	14.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	9	9	0	1.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03	692	543	-149	-21.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1	67	69	2	2.9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19	35	16	86.2
합 계	12,789	11,751	13,156	1,405	12.0

주 : 총지출, 2010년의 경우 변경 이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2009회계연도 세입 · 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 2010. 5
고용노동부, 「2011회계연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총지출 11조 3,024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다.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각각 23.6%, 2.2%, 0.7% 증가하였으며, 근로자복지진흥기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각각 20.0%, 5.4% 감소하였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규모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주로 체당금 지급 증가(497억원)에 기인한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운용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신용보증대위변제사업 예산 감소(△120억원),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예산 감소(△65억원)에 주로 기인한다.

표 18. 10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고용보험기금	118,559	59,168	60,462	1,294	2.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67,245	46,270	46,590	320	0.7
임금채권보장기금	42,096	2,376	2,936	560	23.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305	2,327	2,201	-126	-5.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3,363	1,044	835	-209	-20.0
합 계	122,858	111,185	113,024	1,839	1.7

주 : 총지출, 2010년의 경우 변경 이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2009회계연도 세입 · 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 2010. 5
고용노동부, 「2011회계연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고용노동부 재정흐름의 특징은 내부거래가 비교적 단순하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금 458억원뿐이라는 점이다. 458억원 중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은 102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의 전출금은 155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으로의 전출금은 200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의 전출금은 8,200만원이다.

그림 18. 2 고용노동부 재정 구조 – 2011년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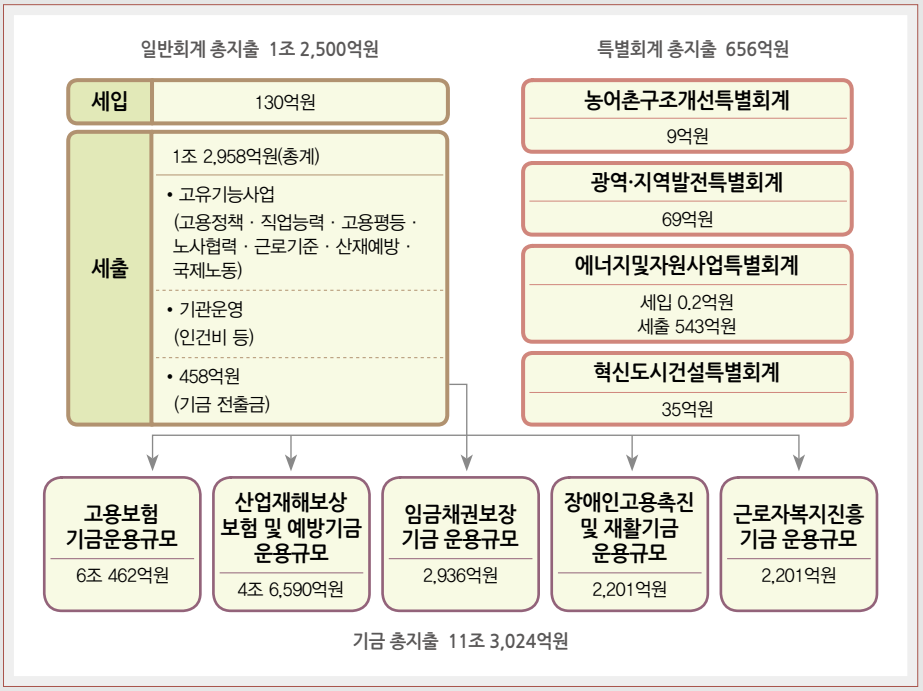

주 : 2011년도 예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기상청

2011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 21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2010년도 예산 대비 0.9%(1,900만원) 감소한 규모이다.

기상청 예산 규모

· 세입 22억원
· 세출 2,889억원

표 18. 11 기상청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백만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066	2,172	2,153	-19	-0.9
합 계	2,066	2,172	2,153	-19	-0.9

자료 : 기상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10. 3
기상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1. 1

2011년도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11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2010년(2,426억원) 대비 14.7% 증가한 2,782억원이고, 혁신도시특별회계의 경우 2010년(44억원) 대비 140.9% 증가한 106억원이다.

표 18. 12 기상청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2,255	2,426	2,782	356	14.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44	106	62	140.9
합 계	2,255	2,470	2,889	419	17.0

자료 : 기상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10. 3
기상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1. 1

분야·부문별 현황을 보면, 기상청 세출예산은 모든 예산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기술일반 부문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 18. 13 기상청 세출예산 분야 · 부문별 현황

(단위 : 억원, %)

분야	부문	회계, 기금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률 [(B-A)/A]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일반회계	2,255	2,426	2,782	14.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44	106	140.9
합 계			2,255	2,470	2,889	17.0

자료 : 기상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10. 3
기상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11. 1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0년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2011년도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11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환경부의 경우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하수 및 폐수총인처리시설의 4대강사업과의 연관성 및 집행실적 부진문제로 인한 사업비 규모조정 문제와, 물이용부담금 요율인상 문제로 찬반양론이 대립하였던바, 결국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최종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다.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30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보다 889억원 증액, 144억원 감액되어 총 745억원 순증된 것으로 의결되었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를 보면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노동부 745억원 그리고 기상청 144억원이 증액 의결되었으나, 국회 최종 심의결과 환경부는 523억원 증액되고 고용노동부는 49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상청은 47억원이 증액 조정되었다.

환경부 소관 국회 조정 내역

· 세출예산 523억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 내역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먼저 환경부의 경우 정부안 4조 7,255억원에 대비 359억원이 감액되고 882억원이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부 예산규모는 4조 7,778억원이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면, 하수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199억원, 폐수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51억원, 그리고 하수관거 BTL임대료지급사업에서 56억원이 각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증액내역을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193억원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119억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8. 14 환경부 소관 2011년 예산안 주요 심의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예결위(B) (B-A)
환특	하수처리장확충(총인처리시설)	2,034	1,834 (-199)
	공단폐수처리시설(총인처리시설)	637	586 (-51)
	하수관거BTL임대료지급	1,361	1,306 (-56)
	하수관거정비	4,119	4,312 (193)
	생태하천복원	1,192	1,311 (119)

주 : 환경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였음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 12

고용노동부 심의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144억원 감액, 889억원 증액되어 총 745억원 증액된 반면, 최종 심의결과에서는 610억원 감액, 119억원 증액되어 총 491억원이 감액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75억원
· 기금운용규모△416억원

표 18. 15 고용노동부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의 결과 총괄

(단위 : 억원)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증액	감액	소계	증액	감액	소계
일반회계	659	-107	552	109	-184	-75
기금	230	-37	193	10	-426	-416
고용보험기금	64	-37	27	10	-3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56	-	156	-	-390	-390
임금채권보장기금	-	-	-	-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	-	3	-	-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6	-	6	-	-	-
합 계	889	-144	745	119	-610	-491

주 : 1.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기준으로 작성. 다만, 기금전출금 증감액은 포함
2. 기금의 경우 사업비 증감에 따른 여유자금 증감액 및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각 기금간 전출입 규모를 제외한 규모
자료 : 환경노동위원회, 「2011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 12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의 특징은 첫째, 일반회계의 유휴 간호인력재취업지원(15억원), 일을 통한 빈곤탈출상담지원(74억원), 외국인력콜센터운영(16억원) 등 총 105억

원이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주로 청년층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감액(178억원)이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으로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71억원, 잡영프라자 설치운영 50억원, 사회적기업 육성 25억원 등이 감액되었다. 셋째, 잡영프라자 설치운영, 사회적기업 육성, 산재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90억원)의 감액은 최종 심의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최종 감액규모가 예비심사 결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넷째,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출금 348억원, 안전보건문화정착 증액 134억원 등이 최종 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종 증액규모가 예비심사 결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16 고용노동부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의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비고
일반	글로벌취업지원	303	285 (-18)	285 (-18)	상임위 예비심사 및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감액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379	308 (-71)	308 (-71)	
	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운영	174	162 (-12)	162 (-12)	
	잡영프라자 설치운영	92	92 (-)	42 (-50)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감액
	사회적기업 육성	969	969 (-)	944 (-25)	
산재기금	산재보험급여	38,548	38,548 (-)	38,159 (-389)	
일반	유휴 간호인력재취업지원	-	15 (15)	15 (15)	국회 신규반영
	일을 통한 빈곤탈출상담지원	-	194 (194)	74 (74)	
	외국인력콜센터운영	-	26 (26)	16 (16)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전출금(모성보호지원)	100	200 (100)	100 (-)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일반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의 전출금(산재예방운영)	92	140 (48)	92 (-)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기금으로의 전출금(장애인기금운영)	200	400 (200)	200 (-)	
산재기금	안전보건문화정착	212	346 (134)	212 (-)	
	산재예방시설건립	312	334 (22)	312 (-)	

자료 : 환경노동위원회, 「2011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 12

기상청의 경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을 144억원 증액하였으나,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47억원 증액하는 것에 머물렀다. 재해기상 연구센터 설립·운영 사업과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사업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상임위에서 증액 심사한대로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기상청 소관 국회 조정 내역

· 세출예산 47억원

표 18. 17 기상청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의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일반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905	953 (48)	905 (-)
	기상정보 콜센터 구축 및 운영	1,200	2,000 (800)	1,500 (300)
	WMO 국가분담금	2,024	2,224 (200)	2,024 (-)
	지진기술개발 사업	3,730	4,730 (1,000)	3,730 (-)
	재해기상 연구센터 설립·운영	-	1,500 (1,500)	1,500 (1,500)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	1,850 (1,850)	1,850 (1,850)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	9,000 (9,000)	- (-)
	부산지방청 청사시설 개선 (대구기상대 이전)	10,470	10,470 (-)	11,470 (1,000)
합 계		18,329	32,727 (14,398)	22,979 (4,650)

자료 : 환경노동위원회, 「2011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 12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1. 환경부

하수도 사업

하수총인 처리시설 사업비
전년 대비 122.2% 증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
전년 대비 122.5% 증가

2011년 하수도사업 예산은 2조 650억원으로 환경부 총 예산의 43.2%를 차지하고 있다.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준공기간 도래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및 하수슬러지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준법정시설에 대한 투자증가로 전년에 비하여 댐상류하수도시설, 하수총인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대폭 증가한 반면, 일반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지원은 감소하였다.

표 18. 18 2011년 하수도시설별 사업비

(단위 : 억원)

하수처리장		총인		찌꺼기		하수관거		댐상류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4,062	2,694	1,344	2,986	807	1,796	6,465	5,284	1,892	2,534

자료: 환경부, 2011. 2

하지만, 이러한 특정시설에 대한 단기간의 집중투자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첫째 많은 지역에서 하수도나 하수관거 보급률이 아직 60%대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총인처리시설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지역간 하수도서비스 제공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경기도, 대전, 광주, 대구의 경우 2010~2011년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대폭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반면, 울산이나 제주도는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특정시설에 투자를 집중하다 보니, 이상기후에 의한 도시침수와 월류수에 의한 비점오염 관리 등과 같은 신규 하수도서비스 수요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우시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발생하는 월류수에 의한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월류수처리시설(CSOs)에 대한 투자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298억원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수도처리시설 전체 투자액 2조 650억원의 1.4%만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특정시설에 투자를 단기간에 집중하다 보니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지

자체에 있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중 2011년 계속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917억원 중 281억원이 교부되었고, 이 중 38억원만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4.2% 그리고 교부액 대비 13.5%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다.[3)]

저탄소 녹색마을사업

환경보호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분야에 걸쳐 정부는 기존 지속가능한 발전을 발전·대체하는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동 전략의 핵심은 기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은 상충된다는 인식을 전환하여 양자는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존은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자원 효율화기술, 환경오염저감기술 등 녹색성장기술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녹색뉴딜대책,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을 제시하고 다양한 재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환경부를 포함하여 4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재정사업의 하나로써,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2009. 7」에 의거,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에너지자립형 마을공동체의 조기 성

표 18. 19 2011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 (회계, 기금)	사업명	2010년 예산(A)	2011년 예산(B)	증감 (B-A)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저탄소녹색마을조성	164	2,770	2,606
농림수산식품부 (일반회계)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608	1,890	1,282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500	2,362	1,862
산림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산림탄소순환마을조성	220	1,513	1,293
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1,492	8,535	7,043

자료 :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2010. 11

공모델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동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600개 에너지 자립형 녹색마을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데, 2011년 정부 예산은 85억원으로 전년대비 5.6배 증액되었다.

하지만 실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실태를 보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활용하는 에너지화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공동체에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유사사업을 부처별로 중복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의 혼선을 야기하여 2010년의 경우 4개 부처 4개 시범사업 공히 지자체의 사업비 집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4)]

지자체의 사업비 집행실적 부진문제와 별도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가축분뇨나 음식물폐기물은 인근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을 이용하여 처리 가능할 뿐만 아니라, 2013년까지 이러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의 전국적 확대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 계획과 연계되지 못한 저탄소 녹색마을사업 확대는 한정된 폐자원을 대상으로 한 유사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시설별 가동률 저하에 따른 투자의 비효율성 우려를 낳고 있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지방상수도사업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환경부는 164개 지자체별 상수도사업을 39개 권역으로 통합하는 광역적 상수도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통합과정에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지자체에 한해서 노후수도관 정비비용의 일부를 2010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상수관망선진화사업」을 통하여 국고로 지원해주고 있다. 즉, 현재 ① 재정자립도 30% 이하, 수돗물 유수율 70% 미만, 그리고 수도요금에 의한 원가보전률 90% 이하의 9개 권역 43개 지자체 중, ② 2010~2014년간 상수도 통합과정에 참여하여 '통합실시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관망 개선비용의 일부(10~50% 차등보조)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이러한 지자체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9.6% 감액된 319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다.

지자체 상수도사업 부채
2009년 현재 9,816억원

지방상수도사업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어, 164개 지자체가 지금까지 자체적 수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자체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오는 영세성으로 수돗물 생산원가와 수돗물 요금의 동반상승을 불러오고 있으며, 지역간 심각한 요금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더욱이, 수돗물 요금의 생산원가 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현실화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80.1%인데, 높은 생산원가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수돗물요금은 상수도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적자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

4)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Ⅱ」, 2010. 11.

한 상수도사업 적자는 신규 시설 확충이나 기존 시설의 개·보수관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노후수도관이나 노후정수장 문제로 인한 누수와 수돗물 수질 저하 등으로 수도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상수도사업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진행 중인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의 추진 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해당지자체에서 국고보조금의 불용이 심각하여 보조사업자 실집행실적이 41%에 머물고 있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5]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지자체에 있어 상수도사업 적자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국고지원에 매칭되는 지방비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지방상수도 보급과정에서 사업 추진체계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와 이에 파생한 노후수도관과 노후정수장을 통한 누수 및 수돗물 수질 저하를 개선하는데, 과연 국고가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표 18. 20 시 · 도별 수도요금 현황(2009년)

(단위: 원/㎥, %, 백만원)

시·도	생산원가	요 금	현실화율	부 채
서울특별시	587.7	514.3	87.5	167,800
부산광역시	833.2	635.7	76.3	22,780
대구광역시	585.0	539.0	92.1	94,485
인천광역시	637.5	633.8	99.4	-
광주광역시	616.3	506.3	82.1	10,985
대전광역시	527.0	497.6	94.4	42,721
울산광역시	920.5	763.1	82.9	37,887
경기도	679.7	614.1	90.3	73,905
강원도	1,277.9	710.0	55.6	40,249
충청북도	822.8	673.5	81.8	20,902
충청남도	1,028.2	714.1	69.5	24,725
전라북도	893.7	750.0	83.9	36,257
전라남도	1,047.0	755.7	72.2	134,233
경상북도	985.4	640.8	65.0	107,019
경상남도	962.4	737.4	76.6	88,663
제주도	985.0	592.9	60.2	79,019
평균/계	761.6	609.9	80.1	981,633

자료: 환경부, 「2009 상수도통계」, 2010.

5) 환경부, 지방상수도 통합추진계획(안), 2010. 5

2. 고용노동부

청년층 고용지원 사업

2011년도 고용노동부 청년층 고용지원 예산 규모

전년 대비 55.3% 증가한 5,248억원

2011년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층 고용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5.3%(1,868억원) 증가한 5,248억원 규모이다. 2011년 청년층 고용지원 사업의 주요 변화는 청년취업아카데미 등을 포함하여 총 5개, 482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다. 또한 2011년 주요 증액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일반회계), 종합직업체험관신축,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청년층 대상)으로 각각 36.7%(391억원), 158.9%(606억원), 88.8%(523억원) 증가하였다.

표 18. 21 201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층 고용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증감률 [(B-A)/A]
[일반회계]	1,560	2,585	1,025	65.7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	112	112	순증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	308	308	순증
청년녹색일자리확산홍보	-	5	5	순증
잡영프라자 설치·운영	-	42	42	순증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	15	15	순증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065	1,456	391	36.7
청년직장·직업체험지원	152	152	0	0
글로벌취업지원	251	285	34	13.6
취업성공패키지(청년층 대상)[1]	92	210	118	128.9
[고용보험기금]	1,820	2,663	843	46.3
종합직업체험관신축	382	988	606	158.9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청년층 대상)[2]	589	1,112	523	88.8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150	85	-65	-43.0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699	478	-221	-31.7
합 계	3,380	5,248	1,868	55.3

주 : 1) 취업성공패키지사업(2010년 734억원, 2011년 574억원) 중 청년층 지원사업
2) 국가기간 · 전략직종훈련(2010년 998억원, 2011년 1,505억원)의 내역사업
자료 : 고용노동부

다른 연령층 보다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 청년층 고용지원에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2010년 예산 기준으로 전부처에 걸친 청년층 고용지원 주요 사업은 직접 일자리창출 7,982억원(8.9만명), 교육 및 훈련 4,551억원 등이다. 한편 2011년에는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고용대책으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대졸이상 청년층 대상 사업

이 증가하였다. 신규사업 중 잡영프라자 설치운영 및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및 글로벌 취업지원은 대졸이상 청년층 지원 비중이 높다.

청년층의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급격한 고학력화로 인한 초과공급, 산업계의 경력직 선호도 증가, 구직자의 좋은 일자리 선호 등 청년 고용의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알선, 취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단편적인 예산사업만으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시장의 수요·공급 간 불일치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산업계 수요에 맞는 교과과정 개편 등 보다 현실에 맞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지원 사업

2011년 모성보호육아 지원 예산

전년 대비 22.3% 증가한 4,111억원 규모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되는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 지원사업은 총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11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1.1%(849억원) 증가한 4,879억원이다. 이 중 육아휴직급여 등을 포함한 모성보호육아지원이 4,11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예산의 특징은 2011년 '서민희망' 예산 중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의 일환으로 전일제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가 신규로 도입되는 등 육아휴직급여 지원액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전일제 육아휴직급여 확대는 급여수준을 월 50만원(정액제)에서 휴직전 임금의 40%(정률제)로 인상하되 하한(50만원)과 상한(100만원)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휴직 전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여성 중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가임기(20~39세) 여성 임금근로자 353만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137만명(38.8%)은 동 급여혜택의 사각지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급여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취업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06년에 시작되어 2009년 233명, 2010년 10월 현재 266명에게 지원되었으며 2011년 410명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되었다.

표 18. 22 201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일하는 여성의 출산 · 육아 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증감률 [(B-A)/A]
모성보호육아지원	336,003	411,051	75,048	22.3
산전후휴가급여	196,139	194,579	-1,560	-0.8
육아휴직급여	139,864	212,535	72,671	52.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3,937	3,937	순증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23,960	33,676	9,716	40.6
육아휴직장려금	22,196	31,762	9,566	43.1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1,764	1,914	150	8.5
직장보육시설지원	39,621	40,088	467	1.2
공공보육시설운영 지원	2,712	3,079	367	13.5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17,977	21,749	3,772	21.0
직장보육시설설치 지원	18,932	12,749	-6,183	-32.7
중소기업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	-	2,511	2,511	순증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	3,420	3,078	-342	-10.0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 융자	1,638	1,680	42	2.6
여성고용환경개선비용 융자	1,782	1,398	-384	-21.5
합 계	403,004	487,893	84,889	21.1

자료 :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책 예산사업

2011년 일자리대책 예산사업 규모
8조 8,059억원

2011년 일자리 분야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927억원) 감소한 8조 8,059억원이다. 부문별로 보면, 감소한 부문은 직접 일자리창출(7.7% 감소), 직업능력개발훈련(2.5% 감소), 고용장려금(6.6% 감소)이며, 증가한 부문을 고용서비스(28.3% 증가), 창업지원(13.0% 증가),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3.3% 증가)이다.

일자리 대책 사업은 현재 각 부처 예산사업을 일자리 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기획재정부가 심사하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총리실 공동으로 확정한 일자리 사업 목록에 따라 취합하는 방식을 따른다. 현재와 같은 방식에서는 일자리 대책 사업을 총괄조정하거나 구조조정을 실효성 있게 하기 어려우며, 주무부처가 경기 및 고용시장 전망, 고용영향평가 등 성과평가,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일자리 대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표 18. 23 일자리 대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증감률 [(B-A)/A]
직접 일자리창출 (지원인원)	27,270 (57.9만명)	25,122 (55.5만명)	-2,148	-7.9
직업능력개발훈련	11,518	11,241	-277	-2.4
고용서비스	2,495	3,138	643	25.8
고용장려금	8,818	8,234	-584	-6.6
창업지원	1,386	1,587	201	14.5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37,498	38,737	1,239	3.3
합 계	88,986	88,059	-927	-1.0

자료 :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책 사업 중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의 비중이 크고 경제위기 시 시작된 한시적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이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조정되기 어렵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이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속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영업자,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접 일자리창출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사각지대에 정체시키고 소득보전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취업연계 효과를 제고하여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고용보험은 8종의 사회보험 중 하나로서,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급여사업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실업자의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포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의 출범 이래 보험적용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를 통하여 현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전체 취업자 2,383만명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57.5%인 1,370만명에 달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2010년 전체취업자 중 57.5%인 1,370만명

표 18. 24 고용보험 사각지대

(단위 : 천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취업자(A)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고용보험 피보험자(B)	8,436	8,942	9,271	9,654	10,131
고용보험 사각지대(A-B)	14,715	14,491	14,306	13,852	13,698
(A-B)/A	63.6	61.8	60.7	58.9	57.5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가 큰 이유는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의 비중[6]이 높으며, 이들은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7] 또한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다.[8]

고용보험 적용범위의 확대는 1차 사회안전망을 공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용창출 및 실업자의 소득보전을 통해 복지지출 및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이 마련되고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2011년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적자

1조 1,277억원 예상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1995년 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충당되며, 동 기금은 2개의 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된다. 실업급여계정에서는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사업을 수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은 신규고용촉진, 취업알선 등의 고용안정사업과 직업훈련지원, 훈련장비 보강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한다.

2011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1조 1,277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전년 5조 276억원에서 3조 8,999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6) 2010년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8.8%, 임금근로자 비중은 71.2%이다.
7)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계정에는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계정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이는 2005년 '영세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법」 제113조(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 자영업자에게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계정 임의가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8)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비정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1.3%이다.

표 18. 25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추이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실업급여계정(A)						
수입	25,412	26,063	28,629	29,938	29,786	30,814
지출	22,843	27,132	32,290	45,294	41,585	41,077
재정수지	2,569	-1,069	-3,661	-15,357	-11,799	-10,263
누적적립금	55,397	54,328	50,667	35,310	23,511	13,24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B)						
수입	15,563	15,531	16,430	17,717	17,920	18,371
지출	15,494	20,226	18,467	21,951	18,426	19,385
재정수지	-131	-4,695	-2,037	-4,235	-506	-1,014
누적적립금	38,238	33,543	31,506	27,271	26,765	25,751
고용보험기금 전체(A+B)						
수입	40,975	41,594	45,059	47,655	47,706	49,185
지출	38,537	47,358	50,757	67,245	60,011	60,462
재정수지	2,438	-5,764	-5,698	-19,592	-12,305	-11,277
누적적립금	93,635	87,871	82,173	62,581	50,276	38,999

주 : 2006~2010년은 결산, 2011년은 계획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특히, 구직급여를 운용하고 있는 실업급여계정의 적자 규모가 크며 최근 5년(2007~2011년)간 연속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실업자 증가 등에 따른 구직급여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2002년 이후 모성보호급여액 급증 등의 요인으로 지출은 급증한 반면, 고용보험기금이 신설된 이후 보험료율 인상 등 수입 측면의 제도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이 보험료율 및 급여제도의 변화 없이 현행대로 운용된다면 실업급여계정 적립금이 2013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9)]

당기수지 적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한 재정불안정은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고용보험의 기본적인 역할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 김성은 · 이진우,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실업급여계정을 중심으로」, 예산현안분석 제37호, 국회예산정책처, 2010. 10

제1절 재정 현황

1. 개 관

2011년도 국토해양 위원회 소관 총지출
43조 2,242억원

2011년도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총지출 기준 재정규모는 43조 2,242억원으로 2010년 대비 1.3%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0%이다. 이를 국토해양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각 부처별로 보면, 국토해양부가 2010년 대비 0.9% 증가한 41조 3,849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7,859억원(13.1% 증가), 해양경찰청이 1조 534억원(10.2% 증가)이다.

표 19. 1 2011년도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2010(A)	2011(B)	증감(B-A)	증감률 [(B-A)/A]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426,538	432,242	5,704	1.3
총지출 대비 비중	14.6	14.0	-0.6p	
국토해양부 (비중)	410,028 (96.1)	413,849 (95.8)	3,821	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비중)	6,951 (1.6)	7,859 (1.8)	908	13.1
해양경찰청 (비중)	9,559 (2.3)	10,534 (2.4)	975	10.2

주 :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정부 전체 총지출은 2010년 292조 8,159억원, 2011년 309조 567억원임
3. 괄호안은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 2010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2010. 10), 2011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총지출 43조 2,242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5%, 94.5%이고, 의무지출은 국토해양부 소관 총지출에만 편성되어 있다. 의무지출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하천편입토지보상 200억원 및 UN ESCAP분담금 1,300만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건강보험부담금 8,400만원,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상환 2조 2,390억원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 1,176억원 등 5개 사업 2조 3,767억원이다. 재량지출의 경우 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은 12.7%이고,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은 81.8%이다.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 의무지출 비중 5.5%
· 재량지출 비중 94.5%

표 19. 2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 억원, %)

	총지출 (A)	의무지출 (B)	재량지출(A-B)				
			경직성 재량지출				비경직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432,242 (100.0)	23,767 (5.5)	8,088	899	46,084	55,071 (12.7)	353,573 (81.8)
국토해양부	413,849	23,767	3,612	511	46,084	50,207	339,87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859	0	96	35	0	131	7,728
해양경찰청	10,534	0	4,380	353	0	4,733	5,801

주 : 괄호안은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경직성 재량지출 및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임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정부는 2011년도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재정의 특징을 크게 새로운 국토창조, 녹색교통위주의 SOC 투자효율화, 주거 및 교통복지 등의 지원강화, 국토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반 강화 등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4대강 살리기 완공, 철도투자 확대, 신규도로 건설 억제 및 시급한 교통애로 해소를 위한 투자확대,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2011년도 국토해양부 세입 예산
전년 대비 0.4% 감소한 16조 4,353억원

2011년도 국토해양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개의 기금(국민주택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45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조 4,899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33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3,664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13억원으로 총 16조 4,353억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도 예산 대비 0.4%(611억원) 감소한 규모이다.

표 19. 3 국토해양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418	453	845	392	86.5
교특회계	172,019	146,999	144,899	-2,100	-1.4
광특회계	5,143	5,450	4,333	-1,117	-20.5
혁특회계	1,760	11,469	13,664	2,195	19.1
책특회계	1,277	593	613	20	3.4
합 계	181,616	164,964	164,353	-611	-0.4

자료 :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1년도 국토해양부 세출 예산(총지출 기준)
전년 대비 2.3% 감소한 23조 5,720억원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23조 5,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5,484억원) 감소하였는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등 4개 회계의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세출예산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가한 SOC 투자 규모를 조정하였기 때문이다.

표 19. 4 국토해양부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7,572	80,760	80,704	-56	-0.1
교특회계	167,363	121,566	118,417	-3,149	-2.6
에특회계	270	250	342	92	36.8
광특회계	28,480	35,952	33,968	-1,984	-5.5
혁특회계	1,510	2,189	1,834	-355	-16.2
책특회계	553	487	456	-31	-6.4
합 계	245,748	241,204	235,720	-5,484	-2.3

주 : 총지출 기준임
자료 : 국토해양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토해양부 소관 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의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7조 8,129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고, 이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지원과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총지출 기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7조 8,129억원

표 19. 5 국토해양부 소관 기금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계획 (A)	2011 계획 (B)	증감	
				(B-A)	(B-A)/A
국민주택기금	149,247	168,824	178,129	9,305	5.5

주 : 총지출 기준임
자료 : 국토해양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1년도 국토해양부 세출예산의 특징은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수자원, 지역 및 도시 부문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고, 철도, 항공·공항, 물류 등 기타, 산업단지, 주택, 해양환경 부문 등에 대한 투자가 증대된 것이다.

이 중 도로 부문 세출예산의 감소와 철도 부문 세출예산의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량수송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속하는 주택 부문 세출예산의 경우 국토해양부 소관 부문 중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여기에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합

주택 부문 재정규모 (총지출 기준)
전년 대비 5.8% 증가한 18조 536억원

한 주택 부문 전체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5.8% 증가한 18조 536억원이며, 이는 국토해양부 총지출의 43.6%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회복지 분야의 주택 부문 재정규모 확대는 저소득·서민층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서민희망 예산에 대한 투자확대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표 19. 6 2011년도 국토해양부 분야 ·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교통 및 물류 분야	168,643	162,919	-5,724	-3.4
- 도로 부문	77,281	72,032	-5,249	-6.8
- 철도 부문	42,020	44,338	2,318	5.5
- 도시철도 부문	11,492	9,717	-1,775	-15.4
- 해운·항만 부문	18,565	16,333	-2,232	-12.0
- 항공·공항 부문	666	679	13	2.0
- 물류 등 기타 부문	18,619	19,820	1,201	6.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8,945	68,567	-378	-0.5
- 수자원 부문	51,076	50,182	-894	-1.8
- 지역 및 도시 부문	8,976	8,574	-402	-4.5
- 산업단지 부문	8,893	9,811	918	10.3
사회복지 분야	1,800	2,407	607	33.7
- 주택 부문	1,800	2,407	607	33.7
환경 분야	1,816	1,827	11	0.6
- 해양환경 부문	1,816	1,827	11	0.6
합 계	241,204	235,720	-5,484	-2.3

주 : 총지출 기준임
자료 : 국토해양부, 「2011회계연도 예산 개요」, 2011.1

국토해양부는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등 총 6개 회계와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회계·기금 간의 재정운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2011년에 교통시설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총 13조 3,608억원을 전출할 예정이며, 이 중 89.9%(12조 79억원)를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1조 8,454억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1년 국토해양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의 총지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국토해양부 전체의 43.1%인 17조 8,129억원 규모이다. 국민주택기금은 28.6%를 차지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11조 8,417억원과 함께 국토해양부 총지출의 대부분인 71.7%를 구성하고 있다.

그림 19. 1 국토해양부 재정 구조-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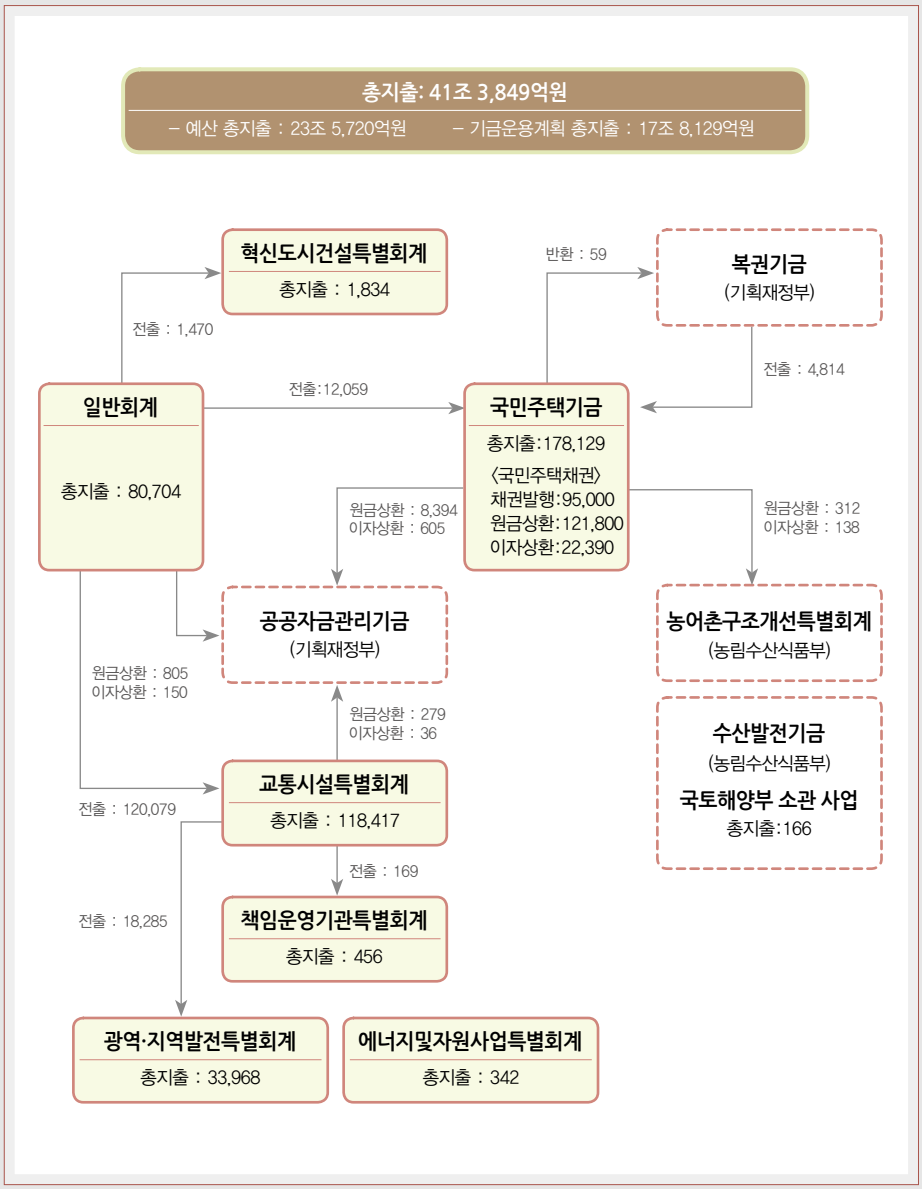

주 :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 예산의 경우, 동 기금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운용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총지출에서 제외함

자료 : 국토해양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1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출 예산

전년 대비 13.1% 증가한 7,859억원

2011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예산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에 2010년(6,951억원) 대비 13.1% 증가한 7,859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9.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1년 세출예산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5,282	6,951	7,859	908	13.1

자료: 국토해양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등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4.5% 증가한 7,134억원이고, 2011년 신규사업은 대통령기록관 건립 등 5개 사업 594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9. 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1년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계속사업	6,826	7,134	308	4.5
중앙행정기관	1,375	2,409	1,034	75.2
광역교통시설	3,676	3,191	-485	-13.2
복합커뮤니티	778	820	42	5.4
학교시설	482	166	-316	-65.6
시청사	71	43	-28	-39.4
광역복지센터	16	30	14	87.5
행정지원센터	8	8	-	-
국립도서관	187	311	124	66.3
공동구	52	52	-	-
직업전환교육	8	8	-	-
은하수공원운영	48	45	-3	-6.3
기타	125	50	-75	-60.0
신규사업	-	594	순증	-
행복아파트	-	121	순증	-
경로복지관	-	41	순증	-
교육청사	-	29	순증	-
총리공관	-	195	순증	-
대통령기록관건립	-	208	순증	-
인건비	91	96	5	5.5
기본경비	34	35	1	2.9
합 계	6,951	7,859	908	13.1

자료 : 국토해양부, 「2011회계연도 예산 개요」, 2011.1

2011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 전년도보다 5억원(27.9%) 증액된 25억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기타고정자산매각대(폐선매각대) 5억원이 증액되었다.

2011년도 해양경찰청 세입 예산
전년 대비 27.9% 증가한 25억원

표 19. 9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40	20	25	5	27.9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총 975억원(10.2%) 증액된 1조 534억원이다.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945억원(10.5%) 증액된 9,958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0억원(5.4%) 증액된 577억원이다.

2011년도 해양경찰청 세출 예산
전년 대비 10.2% 증가한 1조 534억원

표 19. 10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일반회계	8,326	9,012	9,958	945	10.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	547	577	30	5.4
합 계	8,331	9,559	10,534	975	10.2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노후함정 대체건조'사업이 전년 대비 214억원(24.2%) 증액된 1,099억원이고, '청사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이 전년 대비 73억원(45.1%) 증액된 234억원이며, 선박통행이 빈번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해역에 해상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을 구축하는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구축'사업에 69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심의결과 국토해양위 소관 총지출
정부안에서 1,662억원 증액된 43조 2,242억원으로 확정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010년 11월 16일 소관 부처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 등의 예비심사를 진행하였으나 4대강 사업 등 주요 논쟁 사업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법」 제84조제6항[1)]에 따라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비심사기간인 2010년 11월 17일 09시 30분까지 의결하지 못하였다. 국회의장은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진행하여 2010년 12월 8일 의결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총지출을 정부안 43조 580억원에서 1,662억원 증가한 43조 2,242억원으로 의결하였다.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 12월 8일 제294회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국토해양부 소관 국회 조정 내역 (총지출 기준)
· 세출예산 1,954억원
· 기금운용규모 △159억원

국토해양부 총지출은 정부안 41조 2,054억원에서 1,795억원 증가한 41조 3,849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예산의 경우 정부안 23조 3,766억원에서 1,954억원 증가한 23조 5,720억원으로, 기금의 경우 정부안 17조 8,288억원에서 159억원 감소한 17조 8,12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예산의 경우 일반철도시설개량 사업에서 2,252억원, 국가하천정비 사업에서 2,000억원 등이 감액되었고,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사업에서 500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기금의 경우 국민임대출자 사업에서 159억 5,300만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에서 175억원이 각각 감액되었다.

---

1) 「국회법」 제84조(예산안 · 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⑥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표 19. 11 국토해양부 소관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사업 심의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예결위(B) (B-A)
일반	일반회계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의 전출금	12,219	12,059 (-160)
	일반철도시설개량	3,585	1,333 (-2,252)
	국가하천정비	36,300	34,300 (-2,000)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	300	500 (200)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620	670 (50)
	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	590	638 (48)
교특	진주-마산고속도로건설	710	810 (100)
	부산외곽순환도로건설	150	250 (100)
	인천지하철2호선 건설	1,420	1,520 (100)
	부산북항 재개발	200	300 (100)
광특	초정-화명광역도로건설	-	150 (150)
	동면-장안국지도건설	165	295 (130)
	수원-인천복선전철	1,300	1,450 (150)
	오리-수원복선전철(분당선 연장)	1,300	1,400 (100)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2,000	2,500 (500)
국민주택기금	국민임대출자	9,093	8,934 (-160)
	통화금융기관예치금	25,429	25,254 (-175)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국회 조정 내역 (총지출 기준)
· 세출예산 △190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지출의 경우 정부안 8,049억원에서 190억원 감소한 7,85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역교통시설 중 행복도시-오송역 연결도로 사업에서 연결도로 완공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한 교량 공사비 190억원을 감액하였다.

표 19.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1년 예산안 심의 내역

(단위 :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A)	예결위(B) (B-A)
행특	행복도시-오송역 연결도로	736	546 (-190)

자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12

해양경찰청 소관 국회 조정 내역(총지출 기준)
· 세입예산 5억원
· 세출예산 58억원

해양경찰청 총지출은 정부안 1조 477억원에서 58억원 증액된 1조 53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는 해상선박·화물 검색 이행을 위한 대형헬기 구입예산 50억원, 특정업무경비 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다.

세입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노후선박 등의 폐선박 매각대금이 2008년 4,700만원, 2009년 6억 4,700만원, 2010년 7월말 현재 2억 3,900만원 등 매년 발생하여 국고에 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기타고정자산매각대(폐선매각대) 5억원이 증액되었다.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1. 국토해양부

SOC 재정규모

2011년도 SOC 재정규모
전년 대비 2.7% 감소한 24조 4,406억원

SOC 분야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5개 부처의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SOC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2.7% 감소한 24조 4,406억원이다. 부문별 재정규모 및 SOC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도

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등 3개 부문의 경우 전년 대비 재정규모 및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고, 항공·공항 부문의 경우 전년 대비 재정규모만 증가하고 비중은 변화가 없으며, 철도, 물류 등 기타,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등 4개 부문의 경우 전년 대비 재정규모 및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다. 수자원 부문의 경우 전년 대비 재정규모는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SOC 부문별 재정규모 및 비중의 변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톡(Stock)이 어느 정도 충족된 도로부문[2)]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대량수송이 가능한 철도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미래대비 물 확보, 홍수 등 재해대비, 수질 개선 등을 위해 수자원부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SOC 부문별 재정규모 및 비중 변화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철도 및 수자원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표 19. 13 SOC 부문별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p)

회계	2010		2011		비중변화 (B-A)
	예산액	비중(A)	예산액	비중(B)	
도로	80,038	31.9	74,487	30.5	-1.4
철도	42,020	16.7	44,338	18.2	1.4
도시철도	11,492	4.6	9,717	4.0	-0.6
해운·항만	18,617	7.4	16,333	6.7	-0.7
항공·공항	666	0.3	679	0.3	0.0
물류 등 기타	22,386	8.9	22,434	9.2	0.3
수자원	51,076	20.3	50,182	20.5	0.2
지역 및 도시	15,919	6.3	16,424	6.7	0.4
산업단지	8,893	3.5	9,811	4.0	0.5
합 계	251,106	100.0	244,406	100.0	-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2)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20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2010.8)에 따르면,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도로 총 연장은 104,983㎞이고 도로포장율은 79.2%라고 한다. 도로등급별로는 고속국도가 3,776㎞, 일반국도가 13,819㎞, 특별·광역시도가 18,749㎞, 지방도가 18,138㎞, 시·군도가 50,501㎞이다. 도로연장은 2000년 88,775㎞에서 2009년 12월말 현재 약 1.2배 증가하였고, 포장율은 동 기간 동안 76%에서 3.2%p 증가하였으며, 도로는 현재 국내 여객·화물 수송량의 90% 이상을 분담하고 있다.

나라별 도로연장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인구당 도로연장(㎞/천인)	2.2	9.4	20.8	6.8
면적당 도로연장(㎞/㎢)	1.01	3.2	0.7	1.7
차량당 도로연장(m/대)	6.1	15.8	26.5	13.1

주 : 한국은 2009년 기준, 외국은 2007년 기준임
자료 : 국토해양부, 「20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0.8

광역도로 건설사업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특별시 및 광역시 주변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 중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도로로 지정된 도로에 대하여 동법 제10조[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4]에 따라 국고에서 50%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 광역도로 건설사업 예산
전년 대비 39.6% 감소한 1,492억원

동 사업의 2011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39.6%(980억원)이 감소한 1,492억원이다. 대폭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총사업비의 대폭 증가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중인 사업 예산은 삭감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으로 나타나지 않은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 용역 또는 설계중인 사업과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 19. 14 2011년도 광역도로 건설사업 예산 내역

(단위 : 억원, %)

사업명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광역도로 건설사업	2,472	1,492	-980	-39.6

자료 : 국토해양부, 「2011년도 예산서」, 2011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의 최근 4년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83%~91%에 그치고 있어 상당규모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지자체 단계에서 이월되고 있다.

동 사업은 사업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등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산현액 대비 4년간 평균 13% 이상의 이월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비추어 동 사업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도로의 조기 확충을 통하여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집행부진 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집행실적을 제고하고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이를 보조하여야 한다.

4) 동법 시행령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광역도로: 당해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

표 19. 15 최근 4년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예산 집행 현황(지자체 집행 기준)

(단위 : 억원, %)

연 도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C)	이월률 (C/A)
2006	1,184	353	1,537	1,276	83.0	261	17.0
2007	1,480	261	1,741	1,455	83.6	285	16.4
2008	1,442	285	1,727	1,574	91.1	154	8.9
2009	2,305	154	2,459	2,165	88.0	294	12.0

자료 : 국토해양부, 2010.10

일반철도 건설사업

일반철도 건설사업은 철도 신선 건설 및 기존 철도의 개량(복선화 및 전철화)을 통하여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은 1조 5,844억원으로 2010년도 예산 1조 6,885억원에 비해 6.2%가 감소하였다.

2011년도 일반철도 건설사업 예산
전년 대비 6.2% 감소한 1조 5,844억원

표 19. 16 2011년 일반철도 건설사업 예산 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2010 예산(A)	2011 예산(B)	증감	
			B-A	(B-A)/A
일반철도 건설지원	16,352	14,627	-1,725	-10.5
일반철도 조사설계	533	1,217	684	128
합 계	16,885	15,844	-1,041	-6.2

자료 : 국토해양부, 「2011년도 예산서」, 2011

2011년도 일반철도 건설지원사업의 예산은 경춘선 복선전철, 덕소~원주 복선전철 등 24개 사업에 총 1조 4,627억원이고 2010년도 예산 1조 6,352억원에 비해 10.5%가 감소하였다.

2011년도 일반철도 건설사업 예산이 감소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5개 노선 중 전라선복선전철화 사업 예산 증액 463억원을 제외한 경춘선 복선전철, 동순천~광양 복선화, 순천~여수 복선전철, 제천~도담 복선전철 등 나머지 4개 노선의 예산에 대해서는 완공소요분을 반영함으로써 2010년 예산 대비 1,429억원이 감액되었다. 또한, 전년 대비 2011년의 예산이 크게 감액된 노선을 살펴보면, 삼랑진~진주 복선전철(900억원), 소사~원시 복선전철(215억원), 진주~광양 복선화(200억원) 등이다.

일반철도건설 사업의 2010년도의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1조 6,821억원 중 1조 6,810억원을 집행하여 99.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등 일부 세부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미진하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008년 9.0%, 2009년 18.0%, 2010년 34.0%이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집행가능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통해 재정 운용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 19. 17 최근 3년간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연 도	예산액(A)	전용(조정)	예산현액	집행액(B)	집행률(B/A)
2008	10	(-9.1)	0.9	0.9	9.0
2009	10	(-8.2)	1.8	1.8	18.0
2010	300	198	102	102	34.0

자료 : 국토해양부, 2011.2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제방·준설·환경정비·하천부지의 활용 등 하천에 대한 종합적 정비를 통해 홍수·가뭄·오염 등으로부터 안전하면서도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댐 및 홍수조절지의 경우 2012년 완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약 22.2조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11년도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

전년 대비 1.4% 증가한 3조 3,350억원

2011년도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은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3조 800억원, 수자원공사지원 사업 2,550억원 등 총 3조 3,350억원이 편성되었고, 국가재정과는 별도로 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으로 3조 8,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표 19. 18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현황

(단위 : 억원, %)

사업명		2009 예산액	2010 예산액(A)	2011 예산액(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재정	국가하천정비(4대강)	8,320	32,200	30,800	-1,400	-4.4
	수자원공사지원	-	700	2,550	1,850	264.3
	합 계	8,320	32,900	33,350	450	1.4
수자원공사		1,175	32,000	38,000	6,000	18.8

자료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11.1.20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에서 2,000억원이 감액되었고, 수자원공사지원 사업은 지원방식이 출자방식에서 보조방식으로 변경되었다.[5)]

4대강 사업은 2010년말 현재 4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국가시행 부분은 42.7%, 수자원공사시행 부분은 4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4대강 사업은 2011년에 댐 및 홍수조절지 등을 제외한 사업의 대부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 국회 심사 결과

국가하천정비 사업에서 2,000억원 감액되었고 수자원공사지원 사업은 출자방식에서 보조방식으로 예산지원방식이 변경됨

표 19. 19 4대강 사업 공정현황(20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

수계명	국가시행	수자원공사시행	전체
한 강	42.0	56.0	49.6
낙동강	39.2	46.0	43.2
금 강	55.2	53.1	54.2
영산강	48.5	48.7	48.6
합 계	42.7	48.6	46.0

자료 :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2011.1.18

보금자리주택 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국민주택기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1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9조 5,034억원이 편성되었다.

2011년도 보금자리주택 사업 기금운용계획

전년 대비 5.7% 증가한 9조 5,034억원

5) 출자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수자원공사의 손익계산서 상에서 영업외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영업외 비용만이 발생하여 예산지원액만큼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나, 보조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예산지원액은 손익계산서 상에서 영업외 수익이 되고 이를 지출 시 영업외 비용이 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므로, 국회는 예산안 심사 시 동 사업의 예산 지원방식을 출자에서 보조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국회예산정책처, 2010.11)을 참고할 것.

표 19. 20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

	사업명	2009 계획액	2010 계획액(A)	2011 계획액(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비고
국민임대	국민임대출자	10,550	10,724	8,934	-1,790	-16.7	건설
	국민임대(융자)	40,126	26,229	23,681	-2,548	-9.7	
	매입임대자본이전	2,497	2,331	2,537	206	8.8	기존주택매입
	소 계	53,173	39,284	35,152	-4,132	-10.6	
영구임대	영구임대출자	708	3,119	5,297	2,178	69.8	건설
공공임대	공공임대(융자)	13,100	24,097	11,821	-12,276	-50.9	건설
	매입임대지원(융자)	700	700	700	0	-	미분양주택매입
	소 계	13,800	24,797	12,521	-12,276	-49.5	
공공분양	분양주택지원(융자)	14,400	22,739	42,064	19,325	85.0	건설
합 계		82,081	89,939	95,034	5,095	5.7	

자료 : 국토해양부, 「2011회계연도 예산 개요」, 2011.1

보금자리주택 사업

2009~2018년 간 공공주택 150만호를 공급하는 사업임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150만호의 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을 건설하여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에 따라 소득 10분위 중 1~5분위 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 10만호, 국민임대주택 40만호, 10년 공공임대주택(지분형임대주택 포함) 20만호, 전세임대주택 10만호, 공공분양주택 7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표 19. 21 연도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2009~2018년

(단위 : 만호)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8	계
공공분양주택(A)			6	8.5	10	10.5	8	27	70
임대주택	공공임대	공공임대(10년 임대	2.5	3.3	4	4	3.2	13	20
		장기전세(10~20년)							10
	장기임대	국민임대(30년 임대)	4	5	5.5	5.5	4.3	15.7	40
		영구임대(50년 임대)	0.5	1.2	1.5	2	1	3.8	10
	소 계(B)		7	9.5	11	11.5	8.5	32.5	80
합 계(A+B)			13	18	21	22	16.5	59.5	150

자료 : 국토해양부, 2010.10.18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는 등 서민 주거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감안한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의 공급량 조정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융통성 있는 시행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바 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건설 사업

세종시 건설 사업은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 기능을 유치하는 50만명 규모의 자족적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2030년까지 정부 부담분 8.5조원[6] 외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지보상비(5.01조원),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비용(8.99조원) 등 14.0조원 등 총 22.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종시 건설 사업

2005~2030년 간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족적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1조(국가예산지출의 상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매입비용을 포함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 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세종시 건설 사업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4년 1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판결을 받았으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3월 제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9년 11월 이후 「세종시 발전방안」이 마련되어 건설계획에 대한 수정논의가 있었으나 2010년 6월 29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폐기됨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다.

표 19. 22 연도별 세종시 건설 사업 예산 현황 : 2006~2011년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453	801	3,267	5,771	6,951	7,859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한편, 중앙행정기관건립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의 경우 「세종시 발전방안」과의 연계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류된 바 있으나 원안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사업이 재개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보류되었던 사업들로 인해 세종시 건설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제1절 재정 현황

1. 개관

2011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4,265억원으로 2010년 대비 38.1%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4%이다.

2011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총지출
4,265억원

표 20. 1 2011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2010(A)	2011(B)	증감(B-A)	증감률 [(B-A)/A]
여성가족부	3,089	4,265	1,176	38.1
총지출 대비 비중	0.11	0.14	0.03p	

주 :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2010년도 재정규모는 여성가족부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2010. 10), 2011년도 재정규모는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총지출 4,265억원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 99.7%이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을 제외한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비중은 94.7%이다.

표 20. 2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 억원, %)

	총지출 (A)	의무지출 (B)	재량지출(A-B)				
			경직성 재량지출				비경직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여성가족부	4,265 (100.0)	11 (0.3)	135 (3.2)	78 (1.8)	-	213 (5.0)	4,041 (94.7)

주 : 여성가족부의 의무지출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사업 1개임
자료 :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는 일반회계와 1개의 특별회계, 2개의 기금(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구성된다.

2011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억원으로, 2010년 세입예산에 비하여 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이다. 2011년에 세입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2010년 3월 19일 정부조직개편으로 청소년 및 가족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표 20. 3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8	8	27	19	232.9

자료 : 여성가족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세출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1,176억원(38.1%) 증가한 4,265억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이 2,191억원이고, 여성발전기금이 1,300억원, 청소년육성기금이 774억원이다. 예산이 51.4%, 기금이 48.6%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까지 더한다면[1] 2011년도 여성가족부 지출규모는 4,625억원이 된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규모는 2010년 대비 923.7%가 증가하였는데, 2010년까지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던 한부모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들이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이관됨에 기인한다.

1) 2010년 5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의 성폭력 · 가정폭력 관련 5개 사업(신규사업 2개 포함)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전환되었으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에 의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 ·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무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표 20. 4 201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현황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예 산 (a)	2,275	2,022	2,191	169	8.4
일반회계	1,908	1,680	1,697	17	1.0
특별회계	367	342	494	152	44.4
기 금 (b)	839	1,067	2,074	1,007	94.4
여성발전기금	113	127	1,300	1,173	923.7
청소년육성기금	726	940	774	-166	-17.7
총지출 (a+b)	3,114	3,089	4,265	1,176	38.1
복권기금 (c)	276	972	-	-972	순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d)	-	-	360	360	순증
합 계 (a+b+c+d)	3,390	4,061	4,625	564	13.9

주 : 1. 총지출 기준(기금의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제외)
2.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각각 기획재정부, 법무부 소관의 기금이나,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자료 : 여성가족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2011년 여성가족부 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 회계 및 기금 간 사업이관을 들 수 있다. 복권기금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9개 사업이 이관되었으며, 일반회계 또는 여성발전기금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3개 사업이 이관되었다. 2010년도까지 기획재정부 소관의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던 한부모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사업이 여성가족부 소관의 여성발전기금으로 이관되면서 1,224억원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또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추진하던 성폭력·아동폭력 관련 사업들이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274억원 감소하였다. 이관된 사업들 모두 2010년, 2011년 모두 사업시행 주체는 여성가족부이며, 다만 회계상으로 예산 소관이 변경되었을 뿐이다.

표 20. 5 2011년도 여성가족부 주요 이관사업

(단위: 억원, %)

사업명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이관사업: 복권기금→여성발전기금][1]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지원	-	655
다문화가족언어및교육지원	-	33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	128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	48
글로벌다문화센터건립	-	18
다문화가족지원	-	15
결혼이민자현지사전정보제공 및 국제결혼중개업관리	-	10
이주가정자녀대상 한국어방문학습교재개발	-	7
학교다문화교육역량강화	-	6
소 계	-	1,224
[이관사업 : 일반회계/여성발전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2]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47	-
가정폭력·성폭력보호시스템 구축	112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15	-
소 계	274	-

주 : 1) 2011년부터 복권기금(기획재정부)에서 여성발전기금(여성가족부)으로 이관
2) 2011년부터 일반회계/여성발전기금(여성가족부)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무부)으로 이관
자료: 여성가족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여성가족부 재정 구조 및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0.1]과 같다. [그림 20.1]의 재정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가족부의 재정지출은 4,26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697억원, 특별회계 494억원, 여성발전기금 1,300억원, 청소년육성기금이 774억원이다. 여성가족부의 재정지출에 포함되지 않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360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사업규모는 4,625억원이 된다.

그림 20. 1 여성가족부 재정구조-2011년도 예산

주 : 1. 총지출 기준(기금의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을 제외)이며, 괄호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포함한 규모임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중 일부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예산규모에 포함되지 않아 점선으로 표시함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4차에 걸쳐[2] 201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다. 29개 사업을 증액하였고(976억원), 7개 사업을 감액하여(13억원) 전체적으로 정부원안대비 96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12월 3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하였다.

2) 1차: 11월 25일, 2차: 11월 26일, 3차: 12월 2일, 4차: 12월 3일

표 20. 6 여성가족위원회 심의 내역

(단위: 억원)

	증 액	감 액	소 계
일반회계	310	6	304
특별회계	-	-	-
여성발전기금	488	7	481
청소년육성기금	178	0	178
합 계	976	13	963

주 : 1.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기준으로 작성. 다만, 기금전출금 증감액은 포함
2. 지출계획안의 경우 '사업비 증감에 따른 여유자금 증감액' 및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각 기금간 전출입 규모' 제외
자료 : 여성가족위원회, 「2011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11

여성가족부 소관 국회 조정내역
· 세출예산 △4억원
· 기금운용규모 37억원

2010년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본 회의에서 의결된 201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은 증액 46억원, 감액 13억원으로 총 33억원이 증액되었다.

표 20.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내역

(단위: 억원)

	증 액	감 액	소 계
일반회계	2	6	-4
특별회계	-	-	-
여성발전기금	15	7	8
청소년육성기금	29	0	29
합 계	46	13	33

주 : 1.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기준으로 작성. 다만, 기금전출금 증감액은 포함
2. 지출계획안의 경우 '사업비 증감에 따른 여유자금 증감액' 및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각 기금간 전출입 규모' 제외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12

2. 심의 특징 및 내역

201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 심의의 특징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액의견이 최종 심의결과에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최종 심의에서 감액된 7개 사업 중 청소년육성기금의 비통화금융기관예치를 제외한 6개 사업 모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감액·의결한 사업이며, 감액 규모까지도 조정·변동 없이 반영되

었다. 반면에 증액사업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9개 사업을 증액하였으나 최종적으로 8개 사업만 증액되었으며, 증액규모 또한 976억원에서 46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과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지원' 사업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과 정부지원단가 인상, 이용연령확대 등을 위해 각각 150억원, 434억원을 증액시켰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반영되었고, 본회의에서도 정부원안으로 의결되었다.

표 20. 8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심의 주요 특징 및 내역

(단위: 억원)

회계	사업명	정부안 (A)	상임위(B) (B-A)	예결위(C) (C-A)	비고
일반회계	여성단체공동협력	25	24 (-1)	24 (-1)	예비심사, 최종심의 감액규모 동일
	가족문화조성사업	8.5	8.1 (-0.4)	8.1 (-0.4)	
	여성·가족정책 의식확산	19	18 (-1)	18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57	54 (-3)	54 (-3)	
여성발전기금	국제개발협력	16	9 (-7)	9 (-7)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국제교류(한중청소년교류)	50.4	50.1 (-0.3)	50.1 (-0.3)	
일반회계	여성사전시관	3	4 (1)	4 (1)	예비심사, 최종심의 증액규모 동일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11	13 (2)	13 (2)	
	아이돌보미 지원	402	552 (150)	402 (-)	예비심사 증액 최종심의 원안유지
여성발전기금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 지원	655	1,089 (434)	655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14	140 (26)	129 (15)	예비심사 증액 최종심의 원안유지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70	215 (45)	175 (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지원 (직원숙소건립)	145	222 (77)	160 (15)	

주 : 감액사업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증액사업은 주요사업만 작성함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12
여성가족위원회, 「2011년도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0.11

또 하나의 특징은 2011년 시행예정인 법률과 관련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각각 2011년 1월과 2월에 시행 예정이나, 관련 예산이 2011년 예산에 모두 미반영되었다. 이들은 재정수반법률로, 재정소요항목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가족의 생계비와 아동교육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보호시설 입소자의 생계비와 아동보육비 등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보호대상자들이 입소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아동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사회활동 적응기회를 놓치게 될 우려가 있어 여성가족부는 각각에 대해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최종적으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표 20. 9 여성가족부 소관 시행예정 법률의 예산 미반영 현황

법률명	재정수반 항목	법률시행일	2011예산	예산 미반영 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생계비, 아동교육 지원비, 아동 양육비(제14조)	2011.1.1	-	8,200만원 요구하였으나, 정부 편성과정에서 미반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생계비, 아동교육 지원비, 아동 양육비(제7조의5)	2011.2.5	-	5억 3,000만원 요구하였으나, 정부 편성과정에서 미반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예산안 쟁점분석」, 2010. 11

제3절 주요 재정 현안

여성발전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1,173억원 증가한 1,300억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166억원 감소한 774억원이다. 여성발전기금은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던 한부모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사업이 여성발전기금으로 이관되면서 전년에 비해 확대되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 건립지원' 사업의 종료와 재원부족을 감안한 여유자금규모 축소로 지출규모가 감소하였다.

표 20. 10 2011년도 여성가족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

	2010예산 (A)	2011예산 (B)	증감	
			(B-A)	(B-A)/A
여성발전기금	127	1,300	1,173	923.7
청소년육성기금	940	774	-166	-17.7
합 계	1,067	2,074	1,007	94.4

주 : 총지출 기준(기금의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제외)
자료 : 여성가족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 재원확보의 안정성 등의 문제로 「기금존치평가보고서」[3]에서 조건부 존치 평가를 받았다. 여성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정부 및 민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정부출연금이 2006년부터 중단되면서 복권기금에 대부분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1,274억원 중 99.5%에 해당하는 1,267억원이 복권기금 전입금 수입이다.

표 20. 11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2004~2011년

(단위 : 억원)

	수입(A)					지출(B)			순 조성액 (A-B)	조성액 누계
	정부출연금 일반회계	복권기금 전입금	민간 출연금	이자 등	소계	사업비	관리비 및 기타	소계		
2004	80	76	2	28	186	107	1	108	78	545
2005	60	111	2	34	207	201	2	203	4	549
2006	-	125	7	47	179	263	1	264	-85	464
2007	-	121		58	179	341	1	342	-164	300
2008	-	41	2	45	88	181	20	201	-113	187
2009	-	54	2	22	78	130	0.6	131	-53	134
2010	-	63	-	1	64	129	0.6	130	-66	68
2011	-	1,267	0.5	6	1,274	1,303	0.5	1,304	-30	38

자료 : 여성가족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3)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10. 5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에도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경륜·경정 수입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는데, 정부출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출연금의 지원중단, 경륜사업수입 법정출연금의 감소 등으로 2005년 이래 순조성액(조성액-사용액)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20. 1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현황: 2004~2011년

(단위 : 억원)

	조 성 액 (A)							사 용 액 (B)				순 조성액 (A-B)	조성액 누계
	정부 출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출연금	경륜사업 수익법정 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청소년 사업지원	기타 경비	기금 전출	계		
2004	-	-	408	-	133	14	555	407	0.7	-	408	147	3,307
2005	-	-	246	-	197	-	443	487	0.6	-	488	-45	3,262
2006	-	-	143	-	169	-	312	689	0.5	-	690	-378	2,885
2007	-	-	28	7	176	-	211	748	0.6	-	749	-538	2,349
2008	-	-	175	3	68	13	259	751	0.4	-	751	-492	1,856
2009	-	-	157	9	91	19	276	611	2	0.2	613	-337	1,519
2010	-	-	225	30	51	8	314	714	0.5	2	717	-403	1,116
2011	-	-	193	43	28	20	284	720	0.5	3	723	-439	677

주 : 2009~2011년 사업비는 시설비(건설중인 자산에 들어간 비용)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 여성가족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아이돌보미지원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은 시설보육 위주의 보육정책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보완·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줄 수요에 대응한 '일시·긴급돌봄서비스'와 가정내 양육을 선호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영아돌봄서비스'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신청하면 가정으로 돌보미를 파견해준다. 2011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01억원 증가한 402억원으로, 일시·긴급돌봄서비스가 188억원(203.7%) 증액되었고, 영아돌봄서비스는 16억원(34.8%) 증액되었다. 증액된 201억원 중 188억원이 일시·긴급돌봄서비스에서 발생하였다.

표 20. 13 2011년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아이돌보미지원사업관리	4	5	1	8.1
일시·긴급돌봄서비스	93	281	188	203.7
영아돌봄서비스	44	60	16	34.8
사업시행기관관리	60	56	-4	-6.1
합 계	201	402	201	99.5

자료 : 여성가족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세사업인 영아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해 정부가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나, 각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단가에 차이가 있다. 소득하위 50~70% 가정의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영아돌봄서비스는 40~60만원이고, 보육료지원은 0세아 기준 76만 2,000원으로 최대 36만 2,000원의 차이가 있으며, 소득하위 70% 초과(소득상위 30%) 경우에는 영아돌봄서비스는 지원이 없으나 보육료지원은 민간보육시설 이용시 36만 4,000원을 지원한다.

표 20. 14 영아돌봄서비스와 영유아보육료지원의 소득분위별 지원단가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영아돌봄서비스		영유아보육료지원(0세아기준)	
	정부지원	부모부담	정부지원	부모부담
소득하위 50%이하	600	400	762	-
소득하위 50~60%	500	500	762	-
소득하위 60~70%	400	600	762	-
소득하위 70%초과	-	1,000	364	398

주 : 보육료지원은 인건비 미지원시설 이용 시 비용 부담을 기준으로 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0. 10
여성가족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0. 10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도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영아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와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보건복지부)은 소득분위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일시·긴급돌봄서비스(여성가족부)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중심의 지원일 때

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나, 보육사업이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가구 평균소득 보다는 소득분위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보육관련 사업에 통일된 기준을 사용한다면 대상자 관리에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수요자 관점에서도 혼란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 지원 사업은 2010년까지는 복권기금 사업이었으나 2011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2011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95억원(17.0%) 증가한 654억원이며, 최저생계비의 100~130%인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해 월 5만원의 양육비와 고교생 교육비(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 아동 양육비와 고교생 교육비 모두 지원대상자 수의 증가로 2010년에 비해 증액되었다.

표 20. 15 2011년도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지원 사업의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아동 양육비	250	289	3,9	15.7
고교생 교육비(수업료 및 입학금)	309	365	56	18.2
합 계	559	654	95	17.0

자료 : 여성가족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1. 1

아동양육비 지원은 만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단가가 6년째 동결되어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서 지원단가 상향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다. 2011년 예산안 심사 때에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최종 심사에서 제외되어 2011년에도 월 5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동양육비와 고교생교육비는 법적경비로 안정적 재원확보가 중요한데, 동 사업의 재원인 여성발전기금은 안정성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여성발전기금은 2010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2011년에 조성금이 고갈될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재원의 안정성이 취약한 기금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이유로 2009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제1절 재정 현황

1. 개관

2011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7,108억원으로 2010년 대비 723억원(11.3%)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이다.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속하는 각 부처별로 보면, 국회가 2010년 대비 15.6% 증가한 5,175억원, 대통령실이 1,618억원(0.2% 감소), 국가인권위원회가 221억원(0.9% 감소), 특임장관실이 94억원(49.2% 증가)이다.

2011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지출
0.7조원

표 21. 1 2011년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2010(A)	2011(B)	증감(B-A)	증감률 [(B-A)/A]
국회운영위원회	6,385	7,108	723	11.3
총지출 대비 비중	0.2	0.2	-	-
국회 (비중)	4,478 (70.1)	5,175 (72.8)	697	15.6
대통령실 (비중)	1,621 (25.4)	1,618 (22.8)	-3	-0.2
국가인권위원회 (비중)	223 (3.5)	221 (3.1)	-2	-0.9
특임장관실 (비중)	63 (1.0)	94 (1.3)	31	49.2

주 : 1.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괄호안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처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 2010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2010. 10), 2011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지출 7,108억원은 모두 재량지출로 이루어져 있다. 재량지출 중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을 제외한 비경직성 재량지출은 3,14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 2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내역 및 비율

(단위 : 억원, %)

	총지출 (A)	의무지출 (B)	재량지출(A-B)				
			경직성 재량지출				비경직성 재량지출
			인건비	기본경비	계속비	소계	
국회운영분야	7,109 (100)	- (-)	3,394	571	-	3,965 (56)	3,144 (44)
국회	5,175	-	2,614	228	-	2,842	2,333
대통령실	1,618	-	650	254	-	904	714
국가인권위	221	-	103	69	-	172	49
특임장관실	94	-	27	20	-	47	47

주 : 괄호안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지출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재정의 특징 및 구조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으며 국회, 대통령실, 국가인권위원회, 특임장관실 등 4개 부처가 있으며, 4개 기관 모두 일반회계로만 운영된다. 분야별로 보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4개 부처의 예산은 모두 일반공공행정분야에 편성되어 있다.

국회

2011년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경상이전수입, 재산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보다 1억원(12.6%) 증액된 10억원이 확정되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5,175억원으로 전년 대비 697억원(15.6%) 증가하였다.

표 21. 3 국회 소관 세입 ·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세입	11	9	10	1	12.6
일반회계 세출	4,008	4,478	5,175	697	15.6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1년도 국회 세출예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정책자료 발송료를 현실화하였고, 지역의 입법수요 파악을 위한 간담회 신설을 통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G20 서울 국회의장회의 개최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2011년도 대통령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5,000만원(0.1%) 감액된 1,618억 8,100만원이 확정되었다. ‘G-20 경호’사업(2010년 125억원)이 폐지되었고, ‘업무지원비’가 10억원 감액되었으며, ‘경호장비시설개선’사업이 38억원,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사업이 13억원 증액되었다.

표 21. 4 대통령실 소관 세입 ·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세입	2	1	1	-	-
일반회계 세출	1,381	1,621	1,619	-3	0.1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600만원(0.9%) 감액된 220억 7,9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2011년 세출예산의 특징은 장애인 인권증진 및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이 전년도보다 높은 비율로 증액되었다는 것이다.

표 21. 5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

(단위 : 억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세출	210	223	221	-2	-0.9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특임장관실

2011년도 특임장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 전년도보다 30억 6,600만원(48.3%) 증액된 94억 900만원이 되었다. 특임장관실은 2010년에는 출범 초기 최소한의 경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에는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의 소통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는 등 주요사업비가 88.4%(22억원) 증액되었다.

표 21. 6 특임장관실 소관 세출 총괄

(단위: 백만원, %)

	2009 결산	2010 예산 (A)	2011 예산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세출	2,242	6,343	9,409	3,066	48.3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1. 심의 경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2010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에 걸쳐서 국회운영 분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였고 11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대통령실 1건, 국회 2건, 특임장관실 2건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2. 심의 특징 및 내역

국회 소관 예산 조정 내역

· 세출예산 32.3억원

국회의 경우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0억 4,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증액된 183억 200만원은 일부인 42억 7,600만원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에 반영되었다. 확정예산에 반영된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회청사및유지관리'사업이 10억 3,800만원, 'G20 서울 국회의장 회의'사업이 7억 4,400만원, '국회 입법 및 특별활동비'가 4억 6,500만원 각각 증액되었다.

대통령실 소관 예산 조정내역

· 세출예산△41.4억원

대통령실은 예비심사결과와 동일하게 감액만 41억 4,400만원 이루어졌다. '경호장비시설개선'사업은 직전대통령 경호시설 건립부지매입비를 2011년도에 집행할 필요최소한의 비용만을 반영하고자 30억원 감액하였고, '핵안보정상회의경호'사업은 핵안보정상회의가 2012년 4월에 개최되는 것을 감안하여 운영비 1억원을, 2010년도 G20정상회의에 기투입된 건설비와 자산취득비를 감안하여 건설비 2억원, 자산취득비 3억원을 각각 감액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 조정내역

· 세출예산 △3.1억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억 2,800만원이 증액되고 3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감액만 동일한 규모로 반영되었고,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북한인권실태조사 관련 예산이 1억 1,300만원 감액되었고, 인건비가 예산 편성 시점 이후 축소된 초과현원 현황을 반영하여 1억 6,100만원 감액되었다.

특임장관실 소관 예산 조정내역

· 세출예산 △7.5억원

특임장관실은 예비심사결과와 동일하게 감액만 7억 5,000만원 이루어졌다. '특임활동'사업 중 특임TF는 구성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1억원이 감액되었고, 여론조사비는 증액 규모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은 향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증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4억원이 감액되었다.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중 정책연구과제 비용은 예산확대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보아 5,000만원을 감액하였다.

제1절 재정 현황

2011년도 정보위원회 소관 총지출
0.5조원

2011년도 정보위원회 소관 재정규모는 총지출 기준 4,964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1,273억원(2.6%)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이다. 정보위원회 소관 부처로 국가정보원이 있으며 정보위원회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만으로 운영된다.

표 22. 1 2011년도 정보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2010(A)	2011(B)	증감(B-A)	증감률 [(B-A)/A]
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	4,837	4,964	127	2.6
총지출 대비 비중	0.2	0.2	-	-

주 : 총지출 대비 비중은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국가정보원 소관 재정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2010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의 「2011년도 성과계획서」(2010. 10), 2011년도 재정규모는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제2절 국회 심의 결과

국가정보원 예산은 「국가정보원법」 및 「국회법」에 따라 총액만 공개하고 그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에 특수활동비 단일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에 대한 편성 및 국회 심의절차 역시 일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삼의절차와 상이하다.

「국가정보원법」[1]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기획재정부에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요구하며 그 산출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통상적인 예산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의 경우 「국회법」[2]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심사를 종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그 총액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2. 1 국가정보원 예산편성 및 심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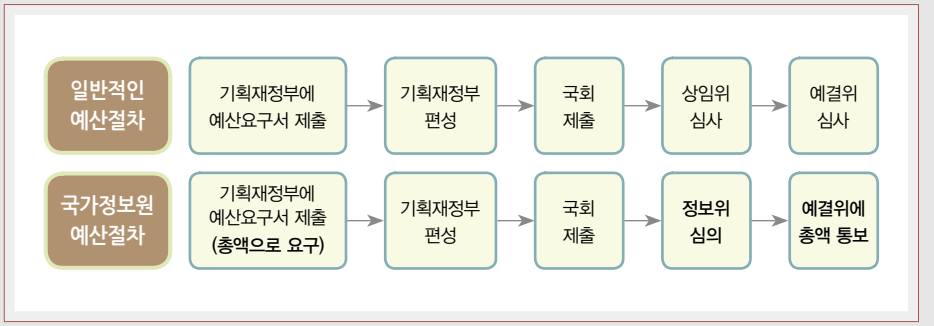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는 2010년 11월 23일과 12월 1일 두 차례의 전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뒤 예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네 차례의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정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2010년 11월 15일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 전까지로 지정하였으나, 정보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010년 12월 8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은 예산안에 대한 조정없이 원안과 동일한 규모인 4,964억원으로 의결되었다.

---

1) 「국가정보원법」 제12조(예산회계)②국정원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그 관 · 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한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회법」 제84조(예산안 · 결산의 회부 및 심사)④정보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소관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 조정 대상 부처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⑥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표 22. 2 정보위원회 예산안 심의 회의경과

일시	예산안 심의 경과
2010. 11. 23	제3차 전체회의(예산안 상정, 대체토론)
2010. 12. 1	제4차 전체회의(예산안 상정, 대체토론, 소위회부)
2010. 12. 2	제2차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예산안 심의)
2010. 12. 3	제3차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예산안 심의)
2010. 12. 6	제4차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예산안 심의)
2010. 12. 7	제5차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예산안 심의)
2010. 12. 8	예결위 및 본회의 의결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국회

부록
재정통계

1 경제 및 재정 총량지표

2 상임위원회 소관별 재정통계

nabo

1 경제 및 재정 총량지표

부 록

1. 주요 경제지표

부록표 1. 1 경제규모와 국민총소득 추이 : 1970~2008년

연도	경상 국민총소득 (GNI)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총 저축률	국내 투자율	GDP 디플레이터
	(조원)	(10억달러)	(만원)	(달러)	(%)	(%)	(2005=100)
1970	2.8	8.2	9	255	17.4	25.4	4.5
1980	38.5	63.3	101	1,660	24.3	33.0	26.8
1985	83.7	96.1	205	2,355	31.2	31.3	38.1
1990	191.3	270.2	446	6,303	37.8	38.0	51.9
1995	408.0	529.2	905	11,735	36.2	37.1	75.9
2000	600.2	530.8	1,277	11,292	33.0	30.7	86.8
2001	649.9	503.5	1,372	10,631	31.1	29.3	90.2
2002	721.0	576.2	1,514	12,100	30.5	29.3	93.1
2003	767.8	644.2	1,604	13,460	31.9	30.0	96.4
2004	829.3	724.5	1,726	15,082	34.0	29.9	99.4
2005	864.4	843.9	1,796	17,531	32.1	29.8	100.0
2006	910.1	952.5	1,884	19,722	30.8	29.7	99.9
2007	976.8	1051.2	2,016	21,695	30.8	29.5	101.9
2008	1034.1	937.9	2,128	19,296	30.5	31.0	104.9
2009	1068.7	837.2	2,192	17,175	30.0	25.8	108.4

주 :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부록표 1. 2 OECD 대비 주요 거시경제 관련지표

지표	단위	우리나라 2007	우리나라 2008	OECD평균 (2008)
GDP 규모 (PPP기준)	십억 US달러	1,287.7	1,344.4	1,337.9
1인당 GDP (PPP기준)	US달러	26,574	27,658	33,732
1인당 GNI (PPP기준)	US달러	26,623	27,839	33,748
실질 GDP 성장률	%	5.1	2.2	0.6
가계 저축률	%, 가처분소득 대비	2.9	2.8	-
투자율(총고정자본형성)	%, GDP대비	28.5	29.3	20.6
가처분소득 증가율	%	2.7	0.8	-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	0.7	1.5	-
노동생산성(시간당 산출되는 GDP) 증가율	%, 연평균	4.8 (1995~2000년)	4.7 (2001~2008년)	1.7 (2001~2008년)

주 : 동 자료의 GDP와 GNI 수치는 OECD가 각국의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구매력기준 환율이 적용된 수치임
자료 : 기획재정부, OECD

2. 재정지표

가. 조세와 부담금

부록표 1. 3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조원,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P
조세총액	179.3	205.0	212.8	209.7	222.9
국세	138.0	161.5	167.3	164.5	175.0
지방세	41.3	43.5	45.5	45.2	47.9
경상GDP	908.7	975.0	1026.5	1063.1	1152.8
조세부담률	19.7	21.0	20.7	19.7	19.3
국민부담률	25.0	26.5	26.5	25.6	25.0

주 : 1. GDP는 개편된 기준년('00년→'05년) 결과를 반영
2. 2010년은 전망치(단, 2011년 2월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총세입부 마감결과에 따르면 2010년 국세수입은 177.7조원임)
3. 조세부담률 = (국세 + 지방세) / 경상GDP
4. 국민부담률 = (국세 + 지방세 + 사회보장기여금) / 경상GDP
자료 : 기획재정부,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2010.9

부록표 1. 4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중기 전망 : 2011~2014년

(단위 : 조원,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세수입 (증가율)	187.8 (7.3)	204.2 (8.7)	221.1 (8.2)	241.7 (9.3)
지방세수입	52.2	56.1	60.4	65.0
실질성장률	5.0	5.0	5.0	5.0
경상성장률	7.6	7.6	7.6	7.6
조세부담률	19.3	19.5	19.6	19.8
국민부담률	25.2	25.5	25.7	26.1

주 :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비세수입(부가가치세액의 5%)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 기획재정부,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 ·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0.9

부록표 1. 5 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단위 : GDP대비,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OECD평균
조세부담률	20.7	19.5	17.3	28.9	27.1	25.8
국민부담률	26.5	26.1	28.1	35.7	43.2	34.8

주 : 2008년 기준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10」, 2010.12

부록표 1. 6 세목별 조세지출(국세) 추이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p	2011p
국세감면액(a)	213,380	229,651	287,827	310,621	301,396	313,600
직접세	152,315	166,470	225,030	232,695	223,582	237,978
소득세	91,114	104,144	154,547	160,593	152,718	158,205
법인세	60,810	61,925	70,181	71,767	70,619	79,469
상속·증여세	391	401	302	335	245	304
간접세	58,053	60,466	59,942	74,925	75,496	72,866
부가가치세	38,033	40,083	39,657	43,741	49,965	52,404
교통세	12,126	12,359	10,187	10,816	9,399	10,477
개별소비세	2,589	2,228	4,929	11,061	11,178	6,094
주세	458	453	538	425	422	490
인지세	516	494	103	98	112	113
증권거래세	2,002	2,308	2,601	4,670	523	186
교육세	2,329	2,541	1,927	4,114	3,897	3,102
관세	3,012	2,715	2,855	3,001	2,318	2,756
국세수입총액(b)	1,380,443	1,614,591	1,673,057	1,645,407	1,750,125	1,878,469
국세감면비율 [a/(a+b)]	13.4	12.5	14.7	15.9	14.7	14.3

주 : 1. 국세감면비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2. 2010년 및 2011년은 전망치임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부록표 1. 7 감면방법별 조세지출(국세) 추이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p	2011p
국세감면액	213,379	229,651	287,827	310,621	301,396	313,600
Ⅰ. 직접세	152,315	166,469	225,031	232,695	223,582	237,978
A. 직접감면	150,190	162,896	223,453	231,603	222,388	236,213
1. 비과세	17,126	16,181	19,083	24,098	26,485	29,455
2. 세액감면	27,738	31,390	35,813	51,344	47,677	49,931
2.1. 소득세·법인세	18,041	18,873	22,657	25,025	23,736	24,662
2.2. 양도소득세	9,697	12,517	13,156	26,319	23,941	25,269
3. 세액공제	34,673	35,989	41,060	42,365	43,068	51,106
4. 소득공제	54,427	67,246	86,741	94,700	87,879	88,035
5. 저율과세	8,496	5,210	6,160	4,961	5,996	6,094
6. 기타	7,730	6,880	8,180	7,805	6,955	6,947
7. 근로장려금	-	-	-	4,537	4,328	4,645
8. 유가환급금	-	-	26,416	1,793	-	-
B. 간접감면(과세이연 등)	2,125	3,573	1,578	1,092	1,194	1,765
Ⅱ. 간접세	58,053	60,467	59,940	74,925	75,496	72,866
1. 부가가치세 영세율	20,506	21,101	19,921	20,566	23,410	23,901
2. 부가가치세 면세	4,289	5,518	3,989	4,177	4,318	4,450
3. 개별소비세·교통세 등 면제	14,715	15,345	17,043	25,991	24,474	19,673
4. 주세·증권거래세 등 면제	5,304	4,684	3,241	5,193	1,057	789
5. 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 등)	13,239	13,819	15,746	18,998	22,237	24,053
Ⅲ. 관세	3,011	2,715	2,855	3,001	2,318	2,756

주 : 2010년 및 2011년은 전망치임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부록표 1. 8 부담금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

	2001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4~2009 연평균증가율
부담금 규모	7.1	10.2	11.6	12.1	14.5	15.3	14.8	7.7

자료 :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0.5) 및 이에 대한 보도자료(2010.5.25)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

부록표 1. 9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2009년)

(단위 : 백만원, %)

소관 부처	금액(구성비)		소관 부처	금액(구성비)	
금융위원회	2,805,669	(18.95)	보건복지부	1,637,981	(11.06)
기획재정부	-	(-)	환 경 부	2,532,315	(17.10)
교육과학기술부	357,685	(2.42)	노 동 부	255,859	(1.73)
외교통상부	50,952	(0.34)	국토해양부	1,043,493	(7.05)
행정안전부	53,781	(0.36)	소방방재청	493	(0.003)
문화체육관광부	356,893	(2.41)	산 림 청	1,054,086	(7.12)
농림수산식품부	819,975	(5.54)	방송통신위원회	139,935	(0.95)
지식경제부	3,625,812	(24.49)	중소기업청	69,815	(0.47)
합 계	14,804,744 (100.00)				

자료 :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5

부록표 1. 10 부담금별 주요 징수실적

(단위 : 억원)

부담금명	2008	2009	증감	주요 증감사유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지식경제부)	-	1,792	1,792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2008 제정, 2009 시행
개발부담금 (국토해양부)	1,266	2,734	1,468	• 개발사업 완료건수 증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국토해양부)	1,171	2,619	1,448	•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입지 증가 *영등포교도소 이전(부담금 700억원), 군포시 물류센터(부담금 600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특별기여금 (금융위원회)	7,472	8,656	1,184	•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등의 평균잔액 증가
농지보전부담금 (농림수산식품부)	14,126	6,973	-7,153	• 2007~2008년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했던 징수규모가 예전수준으로 감소
산림복구비용예치금 (산림청)	10,340	9,114	-1,226	•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면제대상 증가 - 산지전용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과밀부담금 (국토해양부)	1,558	586	-972	• 대형건축물 준공건수의 감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18,830	17,877	-953	•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의 감소
소 계(A)	54,763	50,351	-4,412	
그 외 부담금(B)	97,944	97,696	-248	
총 계(A+B)	152,707	148,047	-4,660	

자료 : 기획재정부,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0.5

나. 재정규모

부록표 1. 11 재정수입 중기 계획

(단위 : 조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가율
총수입 (전년대비)	290.8 (3.6)	314.4 (8.1)	342.9 (9.1)	365.1 (6.5)	390.9 (7.1)	7.7
예산 수입	194.8	212.1	234.4	250.9	270.8	8.6
국세수입	170.5	187.6	204.2	221.1	241.7	9.1
세외수입	24.3	24.5	30.2	29.9	29.1	4.6
기금 수입	96.0	102.2	108.4	114.2	120.2	5.8

주 : 2010 · 2011년은 확정예산, 2012~2014년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 대한민국 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0.1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

부록표 1. 12 재정지출 중기 계획

(단위 : 조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가율
총지출 (전년대비)	292.8 (-1.9)	309.1 (5.6)	324.8 (5.1)	337.7 (4.0)	353.0 (4.5)	4.8
예산 수입	205.3	216.3	224.9	232.5	244.2	4.4
기금 수입	87.5	92.8	100.0	105.2	108.8	5.6

주 : 2010 · 2011년은 확정예산, 2012~2014년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 대한민국 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0.1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

부록표 1. 13 2011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단위 : 조원, %)

구분	2010년 (A)	2011년		증 감		
		정부안(B)	국회확정(C)	(C-B)	(C-A)	(C-A)/A
1. R&D	13.7	14.9	14.9	0.02	1.2	(8.7)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5.2	15.2	-0.01	0.04	(0.3)
3. SOC	25.1	24.3	24.4	0.13	-0.7	(-2.7)
4. 농림·수산·식품	17.3	17.7	17.6	-0.03	0.4	(2.2)
5. 보건·복지·노동	81.2	86.3	86.4	0.12	5.1	(6.3)
6. 교 육	38.3	41.3	41.2	-0.09	3.0	(7.8)
7. 문화·체육·관광	3.9	4.1	4.2	0.11	0.3	(7.8)
8. 환 경	5.4	5.7	5.8	0.07	0.3	(6.2)
9. 국 방(일반회계)	29.6	31.3	31.4	0.12	1.8	(6.2)
10. 외교·통일	3.3	3.7	3.7	0.001	0.3	(9.0)
11. 공공질서·안전	12.9	13.6	13.7	0.04	0.7	(5.6)
12. 일반공공행정	48.7	53.2	52.4	-0.88	3.6	(7.5)
총 지 출	292.8	309.6	309.1	-0.50	16.2	(5.5)

주 : 1. 총지출(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의 총계에서 계정간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제외) 기준
2. R&D는 각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R&D 지출을 합계한 금액
자료 : 기획재정부

부록표 1. 14 부처별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현황

(단위 : 억원)

부처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대통령실	1,621	1,619	-	-	-	-
국회	4,479	5,175	-	-	-	-
대법원	11,231	11,842	2,298	2,401	-	-
헌법재판소	259	315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757	2,533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12	243	-	-	-	-
감사원	906	1,010	-	-	-	-
국가정보원	4,837	4,964	-	-	-	-
국무총리실	4,535	4,771	100	108	-	-
기획재정부	144,458	158,603	-	-	2,324,709	1,520,260
교육과학기술부	408,725	441,715	8,694	9,452	137,936	99,416
외교통상부	15,204	17,444	-	-	860	754
통일부	5,042	5,556	-	-	22,279	13,768
법무부	22,565	24,304	887	1,234	-	624
국방부	204,597	217,096	10,488	12,853	30,036	33,275
행정안전부	311,932	337,805	5,268	6,143	133,548	141,765
문화체육관광부	12,494	13,601	6,269	6,982	22,569	21,394
농림수산식품부	48,151	33,137	115,346	111,166	94,137	70,371
지식경제부	34,505	34,417	115,943	117,541	54,992	63,119
보건복지부	196,083	207,368	3,202	2,039	845,664	789,170
환경부	26,051	28,166	45,685	48,612	7,895	8,123
고용노동부	11,422	12,958	786	655	188,558	184,874
여성가족부	903	1,697	-	494	158	2,341
국토해양부	219,614	215,267	186,055	181,755	277,474	355,636
특임장관실	63	94	-	-	-	-
법제처	220	244	-	-	-	-
국가보훈처	34,325	36,878	354	355	6,074	7,027
국가인권위원회	223	221	-	-	-	-

부처명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41	-	-	-	-	-
방송통신위원회	3,256	3,050	65	158	2,662	5,445
공정거래위원회	738	788	-	-	-	-
금융위원회	31,464	15,556	-	-	549,183	302,011
국민권익위원회	607	613	-	-	-	-
국세청	14,145	14,212	211	419	-	-
관세청	4,028	4,173	17	30	-	-
조달청	-	-	3,505	3,960	-	-
통계청	4,094	2,802	-	-	-	-
병무청	1,747	1,769	21	52	-	-
방위사업청	91,030	96,935	-	-	-	-
경찰청	71,768	76,231	4,039	1,757	-	-
소방방재청	4,787	5,157	2,526	2,248	-	-
문화재청	4,784	4,459	318	211	1,214	1,238
농촌진흥청	5,393	5,988	3,737	4,931	-	-
산림청	11,943	12,112	9,063	9,441	-	-
중소기업청	14,754	15,311	4,544	4,409	68,784	72,551
특허청	-	-	3,498	3,633	-	-
식품의약품안전청	2,391	2,251	49	48	-	-
기상청	2,426	2,782	44	106	-	-
해양경찰청	9,012	9,958	547	577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908	6,112	6,951	7,859	-	-
합 계	2,012,835	2,099,303	540,509	541,627	4,768,730	3,693,161

주 : 2011년 본예산(총계) 기준
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011.2

부록표 1. 15 2011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단위 : 억원)

소 관	세부사업 수	2011 예산안 (a)	2011 확정예산 (b)	증감액 (b-a)
국 회	1	82.6	82.6	-
국가인권위원회	2	0.8	0.8	-
법무부	7	427.2	422.2	-5.0
법제처	1	8.0	8.0	-
공정거래위원회	2	2.5	2.5	-
금융위원회	1	17.0	13.5	-3.5
국민권익위원회	1	0.1	0.1	-
국가보훈처	1	186.1	186.1	-
기획재정부	2	30.0	30.0	-
국세청	1	1.2	1.2	-
조달청	1	1.9	1.9	-
통계청	3	136.2	131.2	-5.0
외교통상부	8	426.5	426.5	-
통일부	2	85.2	85.2	-
국방부	3	45.7	45.7	-
행정안전부	9	206.8	206.8	-
경찰청	1	8.6	8.6	-
교육과학기술부	17	8,344.4	8,406.5	62.1
문화체육관광부	23	1,121.3	1,132.6	11.3
문화재청	3	181.6	181.6	-
농림수산식품부	27	2,337.4	2,417.4	80.0
농촌진흥청	10	213.3	213.3	-
산림청	1	342.5	342.5	-
지식경제부	3	360.6	360.6	-
중소기업청	10	4,010.6	4,010.6	-
특허청	3	49.3	49.3	-
보건복지부	33	61,086.6	61,193.9	107.3
식품의약안전청	1	28.4	28.4	-
환경부	7	277.2	277.2	-
고용노동부	22	19,277.7	19,253.1	-24.6
국토해양부	6	505.5	505.5	-
해양경찰청	3	6.4	6.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7.7	7.7	-
여성가족부	29	2,030.6	2,019.9	-10.7
합 계	245	101,847.3	102,059.1	211.8

주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상 2011년도 성인지 대상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10조 1,748억원이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성인지 예산서 분석과정에서 8개 성인지 대상사업의 예산액이 정부 제출 예산안이 아닌 잠정액으로 작성되는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상기 표에서는 성인지 예산서의 오류를 정정한 수치를 사용하였음

자료 :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록표 1. 16 정부부문 통합재정통계(2009년)

(단위 : 십억원)

구 분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합 계
수입 (A)	246,319	66,836	1,865	315,020
경상수입	243,787	65,126	1,566	310,480
자본수입	2,532	1,710	298	4,540
지출 및 순융자 (B)	174,802	137,888	39,980	352,670
경상지출	138,098	66,131	34,130	238,359
자본지출	19,952	70,439	5,825	96,216
순 융 자	16,751	1,319	25	18,095
통합재정수지 (A-B)	71,518	-71,052	-38,115	-37,650

주 : 1. 2009년 기준이며 반올림으로 인하여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정부부문 통합재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을 모두 포함하며 중앙재정, 각 재정간 이전거래
(예 : 지방교부금 등 중앙→지방 전출재원)는 포함되지 않음
1) 중앙재정 :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18개), 기금(51개) / 금융성기금 및 외평기금 제외
2) 지방재정 : 일반회계(246개), 특별회계(2,144개), 기금(2,236개)
3) 지방교육재정 : 교육특별회계(16개)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0.12)

부록표 1. 17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발생 추이 및 처리내역

(단위 : 억원)

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지방교부	채무상환	추경재원	세입이입
2005	12,367	-	3,818	8,549	-
2006	13,730	13,728	-	-	-
2007	153,428	54,133	50,640	45,685	2,970
2008	45,763	2,947	21,836	20,979	-
2009	36,087	7,864	14,394	-	13,829
2010P	60,000				

주 : 2010년은 기획재정부의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보고」(2011.2.10) 기준
자료 : 대한민국정부의 「2009회계연도 결산보고서」(2010.5)와 기획재정부의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보고」(2011.2.1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부록표 1. 18 추경규모 및 편성사유 : 1998~2010년

(단위 : 조원)

연도		추경규모	세출	세입	편성사유
1998	1차	-1.4	-1.4	-	세수부족으로 인한 세출삭감과 금융 구조조정 비용 지원
	2차	13.9	6.7	7.2	세수부족 보전 및 재해대책 지원
1999	1차	0.8	0.8	-	IMF 이후 실업대책 추진 및 금융구조조정 지원
	2차	2.7	2.7	-	중산층·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재해대책 지원
2000	1차	2.3	2.3	-	의약분업·산불·구제역 지원, 저소득 생계안정 지원
2001	1차	5.1	5.1	-	지역건강보험 지원확대 및 의료보험지원, 재해대책지원
	2차	1.6	1.6	-	쌀값 안정 지원, 9·11테러사태 관련 지원
2002	1차	4.1	4.1	-	태풍 루사 등 재해대책 지원
2003	1차	4.5	4.5	-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활성화
	2차	3.0	3.0	-	태풍매미 등 재해대책 지원
2004	1차	2.5	1.8	0.6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2005	1차	4.9	0.6	4.2	주한미군기지 이전소요, 기초생계급여 부족분, 세수부족 경정
2006	1차	2.2	2.2	-	재해복구비, 지방교부금 정산
2007	추경없음	-	-	-	-
2008	1차	4.6	4.6	-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추경
2009	1차	28.4	17.2	11.2	경제위기 극복과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유지·창출, 민생안정, 세수감소 보전
2010	추경없음	-	-	-	-

자료 : 기획재정부, 각 연도별 예산서

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부록표 1. 19 재정수지 추이

(단위 : 조원, %)

	2006 결산	2007 결산	2008 결산	2009 결산	2010 예산	2011 예산
통합재정수지(A)	3.6	33.8	11.9	-17.6	-2.0	5.3
(GDP 대비)	(0.4)	(3.5)	(1.2)	(-1.7)	(-0.2)	(0.4)
사회보장성기금 흑자(B)	26.4	30.2	27.5	25.6	28.1	30.3
공적자금원금상환(C)	12.0	-	-	-	-	-
관리대상수지(A-B+C)	-10.8	3.6	-15.6	-43.2	-30.1	-25.0
(GDP 대비)	(-1.2)	(0.4)	(-1.5)	(-4.1)	(-2.7)	(-2.0)

주 : 2011년 경상GDP는 정부전망치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의 「200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2010.1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부록표 1. 20 재정수지 중기 전망

(단위 : 조원, %)

	2011	2012	2013	2014
통합재정수지	5.3	18.0	27.4	37.9
(GDP 대비)	(0.4)	(1.3)	(1.9)	(2.5)
관리대상수지	-25.0	-14.3	-6.2	2.7
(GDP 대비)	(-2.0)	(-1.1)	(-0.4)	(0.2)

주 : 2011년은 예산, 2012~2014년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자료 : 대한민국 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0.1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부록표 1. 21 국가채무 추이 : 2007~2011년

(단위 : 조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예산	전망	예산	증가율
국가채무	299.2	309.0	359.6	407.2	400.4	435.5	9.8
(GDP 대비)	(30.7)	(30.2)	(33.8)	(36.1)	(34.7)	(35.1)	
• 적자성 채무	127.4	132.6	168.7	196.2	200.0	220.0	14.6
일반회계 적자국채	55.6	63.0	97.0	126.8	125.7	146.7	27.4
공적자금 국채전환	52.7	49.2	49.5	48.0	47.0	47.0	-2.8
기타	19.1	20.4	22.2	21.4	27.3	26.3	8.3
• 금융성 채무	171.8	176.4	190.9	211.0	200.3	215.5	5.8
외환시장안정용국채	89.7	94.0	104.9	124.8	121.2	138.4	11.5
서민주거안정용국채	43.6	45.2	48.5	50.3	49.0	48.2	2.5
기타	38.5	37.2	37.5	35.9	30.1	28.9	-6.9

주 : 2007년부터 2009년까지와 2010년 전망은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2010.10) 기준이며,
연평균증가율의 경우 2010년 전망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 대한민국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2010.1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부록표 1. 22 국가채무 중기 전망 : 2011~2014년

(단위 : 조원, %)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증가율
국가채무	435.5	468.1	485.7	492.2	4.2
(GDP 대비)	(35.1)	(35.1)	(33.8)	(31.8)	
• 적자성 채무	220.0	236.5	242.4	238.7	2.8
일반회계 적자국채	146.7	163.6	171.4	170.5	5.1
공적자금 국채전환	47.0	47.0	45.8	44.3	-2.0
기타	26.3	25.9	25.2	23.9	-3.1
• 금융성 채무	215.5	231.6	243.3	253.5	5.6
외환시장안정용국채	138.4	154.5	167.5	177.8	8.7
서민주거안정용국채	48.2	49.1	50.3	51.5	2.2
기타	28.9	28.0	25.5	24.2	-5.7

주 : 2011년은 예산, 2012~2014년은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기준
자료 : 대한민국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2010.10)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부록표 1. 23 국가채무 이자비용 추이

(단위 : 조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국가채무이자	9.0	9.9	11.4	13.0	13.4	14.4
국채이자	8.5	9.5	11.1	12.5	13.0	14.2
(국채잔액대비, %)	(4.6)	(4.1)	(4.2)	(4.5)	(4.5)	(4.2)
국고채권	5.2	6.9	8.8	10.3	11.5	12.9
외평채권 (원화표시)	1.4	1.2	0.7	0.4	0.1	-
외평채권 (외화표시)	0.4	0.4	0.4	0.4	0.4	0.3
국민주택채권	1.0	1.0	1.1	1.3	1.1	1.0
양곡증권	0.4	-	-	-	-	-
차입금이자	0.6	0.5	0.4	0.5	0.3	0.2
(차입금 잔액대비, %)	(5.6)	(6.6)	(6.3)	(8.8)	(5.7)	(3.7)
국내차입금	0.2	0.2	0.1	0.3	0.1	0.1
해외차입금	0.4	0.3	0.3	0.2	0.2	0.1

주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2010.10

부록그림 1. 1 국가채무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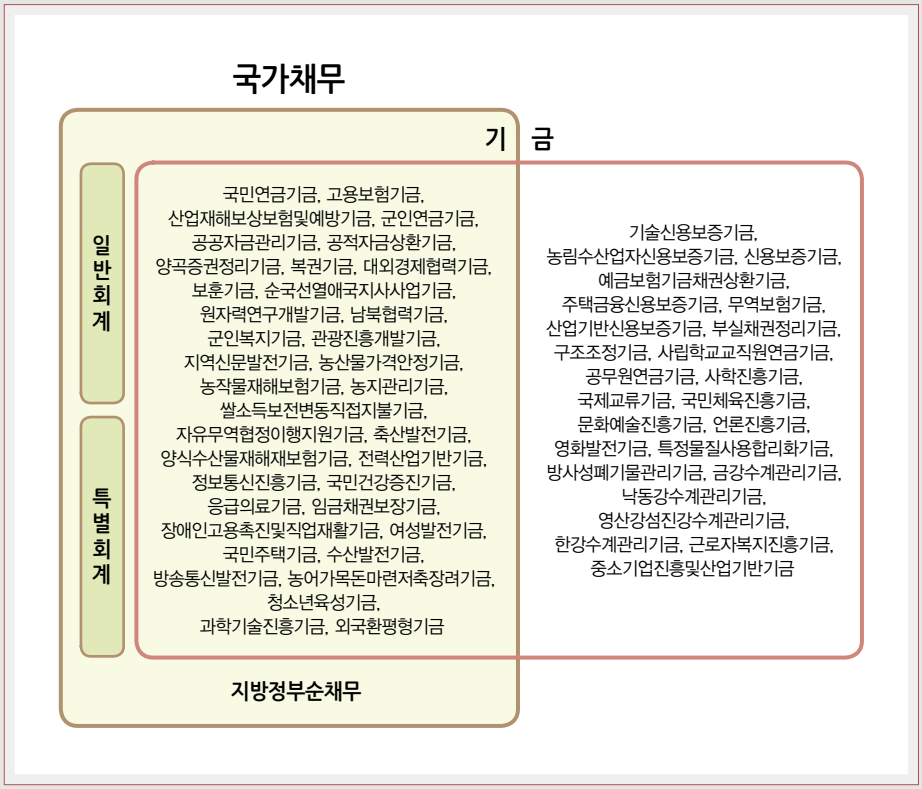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0~201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2010.11

부록표 1. 24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기금의 채권 발행 및 상환 계획

(단위 : 억원)

기금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구조조정기금	발행	50,000	-	-	-
	상환	-	5,045	35,200	52,724
	순발행	50,000	-5,045	-35,200	-52,724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발행	15,000	39,000	27,000	-
	상환	38,468	58,068	76,868	28,900
	순발행	-23,468	-19,068	-49,868	-28,900
중소기업진흥및 산업기반기금	발행	22,494	24,388	32,014	29,538
	상환	29,132	28,192	34,353	34,248
	순발행	-6,638	-3,804	-2,339	-4,710

주 : 무역보험기금의 경우 「무역보험법」 제34조의2에 따라 무역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10~2014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서는 채권 발행 계획이 나타나 있지 않음

자료 : 대한민국정부의 「2010~2014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10. 1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라. 예산안 국회수정 현황

부록표 1. 25 세출예산안 국회수정 추이 : 1965~2011년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회계구분	정부제출 예산(A)	국회의결액(B)	수정액(C=B-A)	수정비율(C/A)
1965	일반	742	733	-9	-1.2
	특별	1,339	1,366	27	2.0
1975	일반	11,428	11,728	300	2.6
	특별	13,331	13,501	170	1.3
1985	일반	122,751	122,751	0	0
	특별	63,162	63,162	0	0
1995	일반	501,411	499,879	-1,532	-0.3
	특별	406,309	404,151	-2,158	-0.5
1996	일반	580,031	579,621	-410	-0.1
	특별	459,127	459,264	137	0.03
1997	일반	677,800	675,786	-2,014	-0.3
	특별	508,713	506,922	-1,791	-0.4
1998	일반	703,603	702,636	-967	-0.1
	특별	565,237	560,037	-5,200	-0.9
1999	일반	805,700	801,378	-4,322	-0.5
	특별	648,338	648,473	135	0.02
2000	일반	867,364	864,740	-2,624	-0.3
	특별	679,328	677,752	-1,576	-0.2
2001	일반	949,300	941,246	-8,054	-0.8
	특별	665,096	662,563	-2,533	-0.4
2002	일반	1,064,800	1,058,767	-6,033	-0.6
	특별	683,941	681,175	-2,766	-0.4
2003	일반	1,116,580	1,118,431	1,851	0.2
	특별	713,853	713,807	-46	-0.01
2004	일반	1,175,429	1,183,560	8,131	0.7
	특별	675,972	676,668	696	0.1
2005	일반	1,315,110	1,343,704	28,594	2.2
	특별	642,341	605,866	-36,475	-5.7
2006	일반	1,457,029	1,448,076	-8,953	-0.6
	특별	573,994	572,520	-1,474	-0.3
2007	일반	1,579,873	1,565,177	-14,696	-0.9
	특별	442,846	444,342	1,496	0.3
2008	일반	1,761,108	1,749,852	-11,256	-0.6
	특별	446,016	449,553	3,537	0.8
2009	일반	1,969,937	1,968,713	-1,224	-0.1
	특별	513,432	510,823	-2,609	-0.5
2010	일반	2,007,815	2,012,835	5,020	0.3
	특별	525,730	540,509	14,779	2.8
2011	일반	2,111,271	2,099,303	-11,969	-0.6
	특별	533,358	541,626	8,268	1.6

자료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예산개요 참고자료」, 각 연도

부록표 1. 26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국회수정 추이: 1982~2011년

(단위 : 억원, %)

회계 연도	정부제출 예산안 (A)	수정액		국회의결액	순 수정액 (D=B-C)	총 수정액 (E=B+C)	수정비율 I(D/A)	수정비율 II(E/A)
		증액 (B)	감액 (C)					
1982	95,956	1,044	1,218	95,781	-174	2,262	-0.2	2.36
1983	105,170	332	1,335	104,167	-1,003	1,667	-1.0	1.59
1984	109,667	391	391	109,667	0	782	-	0.71
1985	122,751	306	306	122,751	0	612	-	0.49
1986	138,153	524	673	138,005	-149	1,197	-0.1	0.87
1987	155,815	568	787	155,596	-219	1,355	-0.1	0.87
1988	175,419	599	1,374	174,644	-775	1,973	-0.4	1.12
1989	193,712	3,074	4,502	192,284	-1,428	7,576	-0.7	3.91
1990	230,254	2,308	5,668	226,894	-3,360	7,976	-1.5	3.46
1991	271,825	1,426	3,453	269,797	-2,027	4,879	-0.7	1.79
1992	335,050	-	3,050	332,000	-3,050	3,050	-0.9	0.91
1993	380,500	2,007	2,007	380,500	0	4,014	-	1.05
1994	432,500	4,001	4,001	432,500	0	8,002	-	1.85
1995	501,411	2,041	3,573	499,879	-1,532	5,614	-0.3	1.12
1996	500,031	1,507	1,917	579,621	-410	3,424	-0.1	0.68
1997	677,800	3,070	5,084	675,786	-2,014	8,154	-0.3	1.20
1998	703,603	2,950	3,918	702,636	-969	6,868	-0.1	0.98
1999	805,700	8,397	12,719	801,378	-4,322	21,116	-0.5	2.62
2000	867,364	5,006	7,630	864,740	-2,624	12,636	-0.3	1.46
2001	949,300	200	8,254	941,246	-8,054	8,454	-0.8	0.89
2002	1,064,800	10,087	16,121	1,058,767	-6,034	26,208	-0.6	2.46
2003	1,116,580	6,178	7,927	1,114,831	-1,749	14,105	-0.2	1.26
2004	1,175,429	16,770	8,639	1,183,560	8,131	25,409	0.7	2.16
2005	1,315,110	39,804	11,210	1,343,704	28,594	51,014	2.2	3.88
2006	1,457,029	6,494	15,447	1,448,076	-8,953	21,941	-0.6	1.51
2007	1,579,874	12,245	26,941	1,565,177	-14,696	39,186	-0.9	2.48
2008	1,761,108	13,575	24,831	1,749,852	-11,256	38,406	-0.6	2.18
2009	1,969,937	34,401	35,625	1,968,713	-1,224	70,026	-0.1	3.55
2010	2,007,815	31,655	26,635	2,012,835	5,020	58,290	0.3	2.90
2011	2,111,271	9,777	27,001	2,099,303	-11,969	36,778	-0.6	1.74

자료 : 각 연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록표 1. 27 2011년도 예산안 국회 수정 내역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감 액	-12,814	감 액	-31,329
• 국세수입	-2,672		
소득세	-18	• 일반공공행정	-16,507
법인세	-1,560	• 국방	-2,670
부가가치세	-58	• 교육	-1,604
증권거래세	-126	• 환경	-369
관세	-7	• 복지	-379
교통·에너지·환경세	-903	• 농림수산	-1,786
• 세외수입	-10,142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86
토지매각대	-140	• SOC	-4,621
기계기구매각대	-2	• 기타	-1,808
공자기금예수금	-10,000		
증 액	1,088	증 액	12,063
• 국세수입	564		
농어촌특별세	99		
개별소비세	423	• 국방	4,089
교육세	42	• 복지	2,026
• 세외수입	524	• 농림수산	1,425
기타재산수입	104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468
기타경상이전	101	• SOC	5,956
법정부담금	100	• 기타	4,639
기금예수금(국특)	178		
기타	41		
합계(순계)	-11,726	합계(순계)	-11,726

주 : 2011년도 기금운용규모는 당초 정부 계획(371.4조원)보다 2.1조 감액된 369.3조원으로 확정(총계 기준)
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12

마. OECD 주요 재정통계

부록표 1. 28 OECD주요국가의 일반정부 총지출(General Government Total Outlays)

(단위 : GDP 대비, %)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 국	20.4	22.4	26.6	27.7	28.7	30.4	31.9	28.1	28.0	27.3
미 국	37.1	33.9	36.2	36.0	36.8	39.0	42.2	42.2	41.1	40.0
영 국	44.1	36.6	44.0	44.3	44.1	47.4	51.4	51.0	49.9	48.8
프랑스	54.4	51.6	53.4	52.7	52.3	52.8	56.0	56.2	55.4	54.6
독 일	54.8	45.1	46.9	45.3	43.5	43.8	47.5	46.8	45.4	44.3
일 본	36.0	39.0	38.4	36.2	35.9	37.1	41.4	40.6	40.6	40.2
OECD 평균	42.7	38.9	40.4	39.9	39.9	41.5	44.9	44.6	43.6	42.6

부록표 1. 29 OECD주요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단위 : GDP 대비, %)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 국	3.5	5.4	3.4	3.9	4.7	3.0	0.0	1.6	2.1	3.0
미 국	-3.3	1.5	-3.3	-2.2	-2.9	-6.3	-11.3	-10.5	-8.8	-6.8
영 국	-5.8	3.7	-3.3	-2.7	-2.8	-4.8	-11.0	-9.6	-8.1	-6.5
프랑스	-5.5	-1.5	-3.0	-2.3	-2.7	-3.3	-7.6	-7.4	-6.1	-4.8
독 일	-9.7	1.3	-3.3	-1.6	0.3	0.1	-3.0	-4.0	-2.9	-2.1
일 본	-4.7	-7.6	-6.7	-1.6	-2.4	-2.1	-7.1	-7.7	-7.5	-7.3
OECD 평균	-4.8	0.1	-2.7	-1.2	-1.3	-3.3	-7.9	-7.6	-6.1	-4.7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No. 88」, 2010.11

부록표 1. 30 OECD주요국가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단위 : GDP 대비, %)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 국	-	-	24.6	27.7	27.9	29.6	32.6	33.2	32.8	32.6
미 국	70.7	54.5	61.4	60.9	62.0	71.1	84.4	92.8	98.5	101.4
영 국	51.6	45.1	46.4	46.1	47.2	57.0	72.4	81.3	88.6	94.5
프랑스	62.7	65.6	75.7	70.9	70.0	75.9	87.1	92.4	97.1	100.2
독 일	55.7	60.4	71.2	69.3	65.3	69.4	76.5	79.9	81.3	82.0
일 본	86.2	135.4	175.3	172.2	167.1	173.9	192.8	198.4	204.2	210.2
OECD 평균	72.3	69.8	76.3	74.5	72.9	79.1	90.6	96.9	100.7	102.8

주 : 부채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와 처리법이 국가마다 달라 국가간 비교가 어려울 수 있음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No. 88」, 2010.11

부록표 1. 31 OECD 주요국가의 조세부담률

(단위 : GDP 대비, %)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한 국	15.8	17.5	17.6	18.8	18.9	19.7	21.0	20.7
미 국	19.1	20.5	20.9	22.6	20.5	21.3	21.4	19.5
영 국	30.4	29.5	28.0	30.2	29.0	29.8	29.5	28.9
프랑스	24.3	23.5	24.5	28.4	27.7	27.7	27.4	27.1
독 일	22.9	21.8	22.7	22.7	20.9	21.8	22.8	23.1
일 본	18.9	21.3	17.8	17.5	17.3	17.7	18.0	17.3
OECD 평균	24.9	25.5	25.5	26.6	26.3	26.5	26.6	25.8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10」, 2010.12

부록표 1. 32 OECD 주요국가의 국민부담률

(단위 : GDP 대비, %)

	1980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한 국	17.1	19.5	20.0	22.6	24.0	25.0	26.5	26.5	25.6
미 국	26.4	27.4	27.8	29.5	27.1	27.9	27.9	26.1	24.0
영 국	34.8	35.5	34.0	36.4	35.7	36.5	36.2	35.7	34.3
프랑스	40.1	42.0	42.9	44.4	43.9	44.0	43.5	43.2	41.9
독 일	36.4	34.8	37.2	37.2	34.8	35.4	36.0	37.0	37.0
일 본	25.1	29.0	26.8	27.0	27.4	28.0	28.3	28.1	
OECD 평균	30.9	33.1	34.4	35.5	35.2	35.4	35.4	34.8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10」, 2010.12

1. 외교통상통일

부록표 2. 1 2009년도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 현황

(단위 : U$백만, %)

구 성 항 목	2008년	2009년	증감률	비중
ODA (A+B)	802.3	816.1	1.7	100.0
양자간 ODA (A)	539.2	581.1	7.8	71.2
무상협력	368.7	367.0	-0.5	양자 중: 63.2
(KOICA)	(272.4)	(272.8)	0.1	(무상 중: 74.3)
양허성차관(EDCF)	170.6	214.1	25.5	양자 중: 36.8
다자간 ODA (B)	263.1	234.9	-10.7	28.8
ODA(총지출)	841.8	850.8	1.1	-
ODA/GNI	0.09	0.10	0.01p	-
적용 환율(원/달러)	1,110.1	1,273.9	-	-

주 : 순지출(총지출에서 과거 유상원조에 따른 상환액을 차감한 것)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9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 주요내용」, 2010.7

부록표 2. 2 구속성 여부에 따른 양자간 ODA 지원규모

(단위 : US$백만)

구 분			2008		2009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양자간 ODA	비구속성		428.8	35.8	612.2	48.3
	구속성		768.9	64.2	655.5	51.7
	총 계		1,197.7	100.0	1,267.7	100.0
	무상 구분		금액	무상내 비율	금액	무상내 비율
	무 상	비구속성	99.7	43.3	147.7	73.6
		구속성	130.3	56.7	52.9	26.4
		총 계	229.9	100.0	200.6	100.0
	유상 구분		금액	유상내 비율	금액	유상내 비율
	유 상	비구속성	329.2	34.0	464.5	43.5
		구속성	638.6	66.0	602.6	56.5
		유상 소계	967.8	100	1,067.1	100.0

주 : 1. 약정기준
2. 기술협력 및 행정비용은 제외된 수치이며, 부분 비구속성 금액은 구속성에 포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09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 주요내용」, 2010.7

부록표 2. 3 2006~2010년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금종류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경상사업	남북교류협력지원	인적왕래지원	5,289	1,698	2,721	-	-	9,708
		사회문화협력지원	7,375	6,908	3,847	3,029	2,119	23,278
		소 계	12,664	8,606	6,568	3,029	2,119	32,986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9,908	26,918	18,241	2,152	1,987	59,206
		인도적지원사업	212,536	227,193	59,694	29,367	19,196	547,986
		경협기반조성(무상)	152,091	172,540	110,074	41,461	17,676	493,842
		소 계	374,535	426,651	188,009	72,980	38,859	1,101,034
	합 계		387,199	435,257	194,577	76,009	40,978	1,134,020
융자사업	인도적사업(융자)		3,939	140,491	-	-	-	144,430
	남북교류협력지원	교역경협자금대출	47,910	56,631	10,807	15,416	41,569	172,333
		-교역대출	7,327	8,288	7,834	8,416	31,243	63,108
		-경협대출	40,583	48,343	2,973	7,000	10,326	109,225
		경협기반조성(유상)	23,065	83,369	25,820	8,596	3,703	144,553
	경수로사업	경수로사업대출	8,883	-	-	-	-	8,883
	합 계		83,797	280,478	36,639	24,012	45,272	470,198
총 계			470,995	715,736	231,204	100,021	86,250	1,604,206

자료 : 통일부, 「2010.12월 남북협력기금 통계」, 2011.1

2. 국방

부록표 2. 4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정부재정	1,181,323	1,201,394	1,352,156	1,469,625	1,565,177	1,795,537	2,035,497	2,012,834	2,099,303
국방비	175,148	189,412	211,026	225,129	244,972	266,490	289,803	295,627	314,031
재정대비 국방비	14.8	15.8	15.6	15.3	15.7	14.8	14.2	14.7	15.0

주 : 정부재정 및 국방비는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 국방부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록표 2. 5 주요국 국방비 비교

국가	GDP (억달러)	국방비 (억달러)	GDP 대 국방비 (%)	병력 (천명)	국민 1인당 국방비 (달러)
대한민국	8,820	245	2.8	650	505
미 국	138,000	6,903	5	1,459	2,270
일 본	53,000	456	0.9	229	359
중 국	48,600	780	1.6	2,285	58
러시아	13,700	411	3	1,027	293
대 만	3,490	97	2.8	290	425
영 국	26,700	608	2.3	175	998
프랑스	28,600	672	1.3	353	1,049
독 일	36,500	469	1.3	251	570
이스라엘	1,980	129	6.5	177	1,791
호 주	11,190	276	2.5	55	1,298

주 : 2009년 기준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2010

부록표 2. 6 2000년 이후 부문별 국방비

(단위 : 억원, %)

연도	합계(A)	방위력개선		경상운영비					
						병력운영		전력유지	
		금액(B)	비중 (B/A)	소계 (C)	비중 (C/A)	금액(D)	비중 (D/A)	금액(E)	비중 (E/A)
2000	144,774	53,437	36.9	91,337	63.1	67,353	46.5	23,984	16.6
2001	153,884	52,141	33.9	101,743	66.1	77,058	50.1	24,685	16.0
2002	163,640	54,756	33.5	108,884	66.5	82,614	50.5	26,270	16.1
2003	175,148	57,379	32.8	117,769	67.2	88,503	50.5	29,266	16.7
2004	189,412	62,930	33.2	126,482	66.8	92,979	49.1	33,503	17.7
2005	211,026	72,987	34.6	138,039	65.4	99,714	47.3	38,325	18.2
2006	225,129	58,077	25.8	167,052	74.2	104,750	46.5	62,302	27.7
2007	244,972	66,807	27.3	178,165	72.7	110,830	45.2	67,335	27.5
2008	266,490	76,813	28.8	189,677	71.2	116,816	43.8	72,861	27.3
2009	289,803	87,140	30.1	202,663	69.9	119,133	41.1	83,530	28.8
2010	295,627	91,030	30.8	204,597	69.2	121,204	41.0	83,393	28.2
2011	314,031	96,935	30.9	217,096	69.1	128,186	40.8	88,910	28.3

주 : 1. 일반회계 "병력운영 부문", "전력유지 부문", "방위력개선 부문"에 편성된 국방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2.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과목구조가 개편되면서, 기존 방위력개선비 중 장비유지비 일부, 주한미군기지이전, 방위비분담금 등을 국방부 전력유지비 등으로 재분류하였음.

자료 :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행정안전

부록표 2. 7 공무원 현원 현황(2009년 12월 31일 현재): 97만 8,087명

(단위 : 명)

		남성	여성	합계
행정부	국가공무원	331,468	284,022	615,490
	지방공무원(지방자치+교육자치)	230,978	108,835	339,813
	소계	562,446	392,857	955,303
입법부		2,382	1,262	3,644
사법부		10,701	5,551	16,252
헌법재판소		159	90	2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28	811	2,639
합계		577,516	400,571	978,087

주 : 공무원 현원에 별도정원, 주재관, 정원 외 계약직 포함
자료 : 행정안전부, 「2010 행정안전 통계연보」, 2010.10

부록표 2. 8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현황(2009년 결산기준): 45.2조원

(단위 : 조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지방세 징수액		26.7	31.5	33.1	34.2	35.9	41.3	43.5	45.5	45.2
(조세총액대비,%)		21.8	23.3	22.4	22.5	22	23	21.2	21.4	21.5
(GDP대비,%)		4.1	4.6	4.6	4.4	4.5	4.9	4.8	4.4	4.2
광역	특별시	7.1	8.6	8.8	8.5	8.8	10	10.8	11.3	10.8
	광역시	5.3	6.3	6.8	6.5	7.2	8.1	8.3	8.3	8.4
	도	7	9.2	9.1	9.3	9.8	11.5	11.4	11.6	11.4
기초	시	4.7	4.8	5.5	6.5	6.9	8.1	8.8	10.1	10.4
	군	1.1	1.1	1.2	1.3	1.4	1.5	1.6	2.0	2.1
	구	1.5	1.5	1.7	2.1	1.8	2.1	2.6	2.2	2.1

주 : 매년 2월말(직전연도 결산일) 기준임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부록표 2. 9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2010년 당초예산기준): 52.2%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평균 (순계)	57.6	54.8	56.3	57.2	56.2	54.4	53.6	53.9	53.6	52.2
특·광역시 (총계)	82.9	79.8	82.2	81.4	80.3	78.5	73.9	73.8	72.7	68.3
도 (총계)	35.6	34.6	39.4	41.3	36.6	36.1	34.9	39.5	33.3	31.7
시 (총계)	43.4	40.2	38	38.8	40.6	39.4	39.5	40.7	40.7	40
군 (총계)	18.1	17.4	16.3	16.6	16.5	16.1	16.6	17.2	17.8	18
자치구 (총계)	45	45.1	42.3	42.6	44.3	40.5	37.5	37.1	37.3	35.4

주 :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을 일반회계 규모로 나누어서 계산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4. 교육과학기술

부록표 2. 10 교육분야 재정규모 추이: 2007~2011년

(단위 :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증가율
교육분야	311,521	360,748	382,448	382,557	409,490 (100.0)	7.1
부문별						
유아 및 초·중등교육	266,907	310,328	329,681	325,467	354,847(86.7)	7.4
고등교육	40,190	44,311	46,371	50,440	46,899 (11.4)	3.9
평생·직업교육	3,318	4,464	5,101	5,378	6,490(1.6)	18.3
교육일반	1,106	1,645	1,295	1,272	1,254(0.3)	3.2

주 : 부문별 재정에서 괄호 안은 교육분야 재정에서 차지하는 분야별 · 부문별 재정의 비중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1

부록표 2. 11 연도별 고등교육 졸업 후 취업현황: 2009~2010

(단위 : 개교, 명)

	학교수		졸업자		졸업상황									
					외국인 유학생		취업자		진학자		기타		취업불가능자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국립	70	70	90,479	90,148	1,466	1,899	55,132	45,124	8,836	8,733	23,753	33,329	32	35
공립	12	12	8,965	8,908	52	69	6,460	4,740	595	522	1,627	3,376	3	8
사립	436	442	447,972	440,940	6,062	7,892	317,932	217,139	29,753	26,850	86,198	181,546	228	224
총계	518	524	547,416	539,996	7,580	9,860	379,524	267,003	39,184	36,105	111,578	218,251	263	267

주 : 졸업상황 중 졸업한 후 입대한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숫자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2010년 조사방법의 변화(건강보험 DB와 연계한 조사 실시)로 2009~2010년 졸업상황의 직접적인 비교는 부적절할 수 있음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 연도

부록표 2. 12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 현황: 2008~2011

(단위 : 억원)

	2008	2009		2010	2011
		당초	추경		
교육과학기술부	35,240	38,975	40,160	43,922	47,497
지식경제부	36,035	40,003	42,140	44,169	45,269
방위사업청	14,522	16,090	16,081	17,945	20,164
중소기업청	4,300	4,895	4,870	5,607	6,288
국토해양부	4,733	5,468	5,699	5,750	6,161
농촌진흥청	3,935	4,333	4,410	4,605	5,028
국무총리실	2,938	3,401	3,401	3,940	4,190
보건복지부	2,291	2,774	2,767	3,083	3,371
농림수산식품부	1,944	2,169	2,165	2,377	2,799
환경부	1,855	1,974	1,980	2,142	2,355
방송통신위원회	-	-	-	100	2,098
산림청	675	691	691	788	798
문화체육관광부	199	494	519	589	644
기상청	472	555	555	490	607
식품의약품안전청	621	623	626	543	583
문화재청	398	305	307	310	332
국방부	242	239	239	260	309
소방방재청	162	190	190	222	258
행정안전부	33	44	44	54	62
기 타	188	216	213	117	88
합 계	110,784	123,437	127,059	137,014	148,902

주 : 1. 기타는 기획재정부, 노동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통일부, 여성가족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등 11개 부처임
2. 2008년과 2009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타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 각 연도

부록표 2. 13 기능별 정부 R&D 투자 추이: 2006~2010년

(단위 :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책 연구 개발	특정연구개발	5,282	5,124	6,846	4,394	4,593
	산업기술	22,935	24,348	26,959	28,649	30,665
	원자력에너지	4,472	5,109	7,033	8,012	9,095
	농림해양	1,975	2,230	3,263	3,266	3,976
	환경	971	1,164	1,239	1,303	1,413
	건설교통	2,597	3,257	3,431	3,650	4,063
	보건의료	2,049	1,869	2,032	2,225	2,492
	국방	9,283	11,210	12,565	14,087	15,904
	기타	654	752	1,129	1,501	1,615
	소계	50,218	55,064	64,496	67,087	73,816
연구 기관 운영 지원	국립연구 및 시험기관	4,710	4,835	5,036	5,199	5,376
	부처 소속 출연(연)	4,474	4,858	5,887	7,000	7,703
	인문경제계 출연(연)	2,452	2,681	2,938	3,401	3,940
	과학기술계 출연(연)	7,851	8,814	9,793	12,183	14,460
	보조기관	636	726	746	833	857
	소계	20,123	21,915	24,400	28,616	32,337
대학연구지원사업		12,328	13,601	13,383	19,198	20,594
연구기반조성 및 기술서비스		5,271	5,750	7,065	7,917	9,609
기타		1,156	1,300	1,439	620	657
합 계		89,096	97,629	110,784	123,437	137,014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부연구개발예산 · 기금 현황분석」, 각 연도

부록표 2. 14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한국 순위(IMD): 2005~2010년

(단위 : 평가국 중 순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과학인프라	13	10	7	5	3	4
기술인프라	2	6	6	14	14	18

주 : 국제경영개발원(IMD)은 58개국의 경쟁력을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과학 · 기술 인프라 순위는 발전인프라 부문 내에 포함됨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MD 2010 세계 경쟁력 연감 분석」, 2010. 8

5. 농림수산식품

부록표 2. 15 농업일반: 2000~2009년

구분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농가수(천호)	1,383	1,264	1,273	1,245	1,231	1,212	1,195
총가구 중 비중(%)	9.7	8.3	8.0	7.8	7.5	7.3	7.1
농가당 가구원수(명)	2.91	2.79	2.70	2.65	2.66	2.63	2.61
농가인구(천명)	4,031	3,530	3,434	3,304	3,274	3,187	3,117
총인구 중 비중(%)	8.6	7.4	7.1	6.8	6.8	6.6	6.4
65세 이상 비중(%)	21.7	27.8	29.1	30.8	32.1	33.3	34.2
국내총생산(10억원, 명목)	603,236.0	767,113.7	865,240.9	908,743.8	975,013.0	1,026,451.8	1,063,059.1
농림어업 국내총생산	24,939.1	25,306.6	25,853.0	25,751.2	25,208.8	24,686.0	24,928.8
비중(%)	4.6	3.7	3.3	3.2	2.9	2.7	2.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통계팀, 2011. 2

부록표 2. 16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추이: 2003~2010년

(단위 : 백만$,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수출총액	193,817.4	253,844.7	284,418.7	325,464.8	371,489.1	422,007.3	363,533.6	466,383.8
	농림축수산물	2,990.6	3,365.2	3,415.8	3,394.8	3,759.3	4,402.8	4,809.3	5,880.0
	• 농산물	1,563.2	1,758.5	1,898.8	2008.2	2,222.5	2,621.0	2,990.8	3,721.7
	• 수산물	1,130.8	1,280.2	1,194.3	1,090.4	1,227.5	1,448.3	1,511.2	1,798.2
	• 축산물	119.5	162.7	172.7	172.2	181.0	215.1	139.6	146.1
	• 임산물	177.1	163.9	150.0	124.0	128.3	118.4	167.7	214.1
수입	수입총액	178,826.7	224,462.7	261,238.3	309,382.6	356,845.7	435,274.7	323,084.5	425.212.2
	농림축수산물	12,185.2	13,484.1	14,275.7	16,100.9	19,242.3	23,198.6	21,240.9	25,787.2
	• 농산물	6,212.7	7444.6	7,397.4	8,117.2	10,189.0	13,904.6	11,753.6	13,987.7
	• 수산물	1,964.1	2,264.2	2,387.1	2,773.6	3,059.8	3,078.3	2,894.4	3,457.3
	• 축산물	2,115.6	1,755.3	2,360.5	2,748.5	3,235.3	3,352.2	2,485.1	3,123.0
	• 임산물	1,892.9	2,019.9	2,130.7	2,461.6	2,858.2	2,863.6	4,107.8	5,219.1
무역수지	수지총액	14,990.7	29,382.0	23,180.4	16,082.2	14,643.4	-13,267.4	40,449.1	41,171.6
	농림축수산물	-9,194.6	-10,118.9	-10,859.9	-12,706.1	-15,483.0	-18,795.8	-16,431.6	-19,907.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정책통계팀, 2011. 2

부록표 2. 17 국가별 주요 식품 자급률

(단위 : %)

	연도	곡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어패류
대한민국	2008	28.4	91.0	84.8	78.6	72.3	80.8
일본	2005	30.7	63.4	43.9	54.9	76.4	60.8
미국	2005	129.4	91.8	68.6	113.0	103.0	68.5
영국	2005	100.0	31.2	4.1	74.7	87.9	73.2
캐나다	2005	143.5	62.3	16.7	170.1	96.7	139.8
덴마크	2005	99.9	29.0	7.7	324.3	202.4	127.0
프랑스	2005	190.6	80.3	85.6	123.4	123.7	43.8
독일	2005	116.4	27.6	22.0	103.2	130.1	28.3
이탈리아	2005	82.2	115.7	131.1	81.1	71.8	33.5
스페인	2005	51.4	158.9	183/3	101.5	83.1	59.4
스웨덴	2005	114.7	28.3	2.5	103.3	99.2	79.5
스위스	2005	205.6	35.2	40.5	40.5	104.4	2.6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식품수급표」, 2009.12

부록표 2. 18 식품산업 기본 통계: 2001~2009년

(단위 : 십억원, 천명, %)

구분	2001	2003	2005	2007	2008	2009
식품산업 매출액	70,326	83,879	89,921	107,514	119,924	130,584.1
식품산업 종사자수	1,500	1,757	1,603	1,731	1,739	1,767
국내총부가가치(A)	579,303.1	682,202.7	775,889.6	874,782.0	919,688.0	958,231.4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부가가치(B) (비중: B/A)	9,714.7 (1.7)	10,574.4 (1.6)	11,251.2 (1.5)	11,762.3 (1.3)	12,359.6 (1.3)	13,656.4 (1.4)
음식점업 부가가치(C) (비중: C/A)	16,062.8 (2.8)	17,941.2 (2.6)	18,275.8 (2.4)	20,861.8 (2.4)	22,507.0 (2.4)	23,019.2 (2.4)

주 : 식품산업 매출액과 종사자수는 통계청 「광업 · 제조업통계조사(종사자 10인이상 사업체 대상)」에서 음식료품 제조업과 「도소매업통계조사」의 '음식점 및 주점업' 수치를 합한 것을 사용함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 통계」, 2010. 8

6. 지식경제

부록표 2. 19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프로젝트별 예산 배분 현황

(단위 : 억원)

		선도산업	프로젝트	2009	2010
권역별 지원	충청	의약바이오	기업 맞춤형 의약바이오 허브 연계	84.5	114.2
			첨단 신약 및 의료 소재 실용화 지원	102.5	143.5
		New IT	차세대 무선통신 단말기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115.5	176.5
			IT 기반의 그린 반도체산업 성장 거점화	113.5	163.0
		권역 계		416.0	597.2
	호남	신재생에너지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127.5	179.6
			서남해안 풍력산업 허브 구축	79.5	119.2
		친환경부품소재	고효율·저공해·친환경·하이브리드 자동차부품 소재 육성	127.5	190.9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산업 육성	122.5	185.3
		권역 계		457.0	675.0
	대경	IT융복합	IT융·복합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90.5	121.2
			IT융·복합 실용로봇 상용화 기반 강화	80.5	129.2
		그린에너지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	95.5	153.7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 구축	105.5	119.1
		권역 계		372.0	523.2
	동남	수송기계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	116.5	142.7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	106.5	157.3
		융합부품소재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진흥	85.5	125.2
			수송기계 안전편의 부품소재 허브 구축	88.5	128.2
		권역 계		397.0	553.4
	강원	의료융합	Bio-Medical 융복합산업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허브	113.5	126.6
		의료관광	동북아 의료관광 거점구축	53.5	60.5
		권역 계		167.0	187.1
	제주	물산업	제주워터 글로벌 브랜드 기반구축	97.5	125.1
		관광레져	리조트 기반형 MICE산업 선진화	43.5	52.0
		권역 계		141.0	177.1
		소 계		1,950.0	2,713.0
기획·평가 등				66.7	257.0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	290.0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지원				-	35.0
합 계				2,016.7	3,295.0

자료 : 지식경제부, 2011. 2

부록표 2. 20 부처별 기술료 수입 추이

(단위 : 백만원)

	2007	2008	2009
지식경제부	83,143	96,954	97,359
중소기업청	33,316	28,400	30,771
환경부	10,759	12,761	12,136
교육과학기술부	9,453	2,939	2,100
보건복지부	1,899	2,600	2,730
농림수산식품부	281	257	150
합 계	138,859	143,918	144,499

주 : 1. 기술료 관련 이자수입, 집행잔액 반납 등을 제외한 징수액 기준임
2.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2007년까지 차세대반도체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이 완료되어 2008년 이후 기술료 수입은 감소하였음
자료 : 각 부처 제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부록표 2. 21 무역보험이용률 및 무역보험기금의 기금배수 추이: 2006~2010년

(단위 : 억달러, %)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액(억달러, A)	3,255	3,715	4,220	3,635	4,664
인수실적(억달러, B)	697	797	1,040	1,168	1,465
수출보험이용률(%, B/A)	21.4	21.5	24.6	32.1	31.4
유효계약액 (억원, a)	463,889	543,757	716,906	875,821	903,837
기금조성액 누계 (억원, b)	18,310	19,823	15,290	17,287	11,541
기금배수 (a/b)	25.3	27.4	46.9	50.7	78.3

주 : 수출보험기금은 2010년에 '무역보험기금' 으로 기금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2011. 2

부록표 2. 22 최근 5년간 전력수급 실적: 2006~2010년

(단위 : MW, %)

구분	설비용량	공급능력	최대전력	발생일자	평균전력	공급 예비력	공급 예비율	설비 예비율	부하율	이용률
2006	64,778	65,183	58,994	8.16.(수)	43,514	6,189	10.5	9.8	73.8	66.9
2007	67,196	66,778	62,285	8.21.(화)	46,019	4,493	7.2	7.9	73.9	68.2
2008	70,353	68,519	62,794	7.15.(화)	48,082	5,725	9.1	12.0	76.6	67.7
2009	73,310	72,071	66,797	12.18(금)	49,498	5,274	7.9	9.8	74.1	67.8
2010	76,078	75,747	71,308	12.15(수)	54,095	4,439	6.2	6.7	75.9	70.3

주 : 1. 2010년도 평균전력, 부하율, 이용률은 잠정실적
2. 평균전력, 부하율, 이용률을 제외한 실적은 최대전력 발생시점 기준
자료 :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 속보」, 제386호, 2010. 12

7. 보건복지

부록표 2. 23 복지재정규모: 2005~2011년

(단위 : 억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평균 증가율	비 고
[분야별]									
• 사회복지	457,750	505,153	560,997	629,134	734,196	739,162	788,926	9.6	기초생활보장 등 9개 부문
• 보 건	50,261	55,108	52,892	59,042	69,955	73,304	75,000	7.1	보건의료 등 3개 부문
[부문별]									
• 기초생활보장	46,525	53,438	65,831	72,716	79,803	72,937	75,240	8.8	기초생활급여 등
• 취약계층지원	5,549	7,175	9,108	9,217	24,055	15,212	13,427	28.3	아동청소년발달 지원서비스 등
• 공적연금	160,584	172,025	189,955	214,285	238,197	259,856	281,833	9.8	4대 공적연금
• 보육가족여성	6,786	9,426	12,135	16,690	19,567	23,694	28,759	27.5	영유아보육, 여성정책등
• 노인청소년	4,797	5,729	7,532	22,058	32,836	36,630	38,759	51.7	기초노령연금 등
• 노 동	78,341	93,186	104,294	104,936	146,846	122,935	126,180	9.6	고용안정, 직업훈련,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 보 훈	25,006	26,985	29,752	31,291	33,597	36,094	38,737	7.6	보훈연금 등
• 주 택	128,822	135,459	139,664	154,145	152,883	167,162	180,536	5.9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 사회복지일반	1,340	1,730	2,726	3,797	6,412	4,642	5,455	30.8	사회통합관리망 구축및운영 등
• 보건의료	8,686	10,605	9,888	11,718	15,835	17,037	15,599	11.4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보건산업 육성 등
• 건강보험지원	40,375	42,962	41,350	45,539	52,040	53,827	57,102	6.1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공·교 국가부담금보험료 등
• 식의약품 관리	1,200	1,541	1,654	1,785	2,080	2,440	2,299	12.0	
복지재정 합계(A)	508,011	560,261	613,889	688,176	804,151	812,466	863,929	9.4	
정부 총지출(조원, B)	208.7	224.1	238.4	262.8	301.8	292.8	309.1	6.9	
정부 총지출 대비 복지재정 비중(A/B)	24.3	25.0	25.8	26.2	26.6	27.7	28.0	-	

주 : 2008년과 2009년은 추경기준임
자료 : 기획재정부, 각 연도

부록표 2. 24 2011년도 공적연금기금 운용계획

(단위 : 억원, %)

	국민연금 기금	공무원 연금기금	사학연금 기금	군인연금 기금	합 계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조 달]	767,577	141,765	92,007	25,579	1,026,928	-36,529	-3.4
자체수입	410,908	57,249	38,645	172	506,974	35,820	7.6
• 기여금(보험료)수입	263,149	32,025	15,646	-	310,820	27,250	9.6
• 이자 및 재산수입 등[1]	147,759	25,224	22,999	172	196,154	8,570	4.6
경상이전수입	-	2,985	-	3,484	6,469	620	10.6
정부내부수입	107	59,733	7,191	20,069	87,100	2,442	2.9
• 국가부담금[2]	-	47,853	-	7,773	55,626	7,279	15.1
• 보전금[3]	-	11,857	-	12,266	24,123	-5,048	-17.3
• 전입금[4]	107	9	6,530	-	6,646	387	6.2
• 공공자금예탁원리금 및 이자	-	14	661	30	705	-176	-20.0
여유자금회수	356,562	21,798	46,171	1,854	426,385	-75,411	-15.0
[운 용]	767,577	141,765	92,007	25,579	1,026,928	-36,529	-3.4
사업비	105,123	114,125	33,976	23,717	276,941	17,847	6.9
• 급여지출	103,598	92,036	17,908	23,517	237,059	21,214	9.8
• 경상지출[5]	1,191	601	-	200	1,992	-3,012	-60.2
• 융자지출[6]	-	12,372	15,844	-	28,216	-760	-2.6
• 자본지출[7]	334	9,116	224	-	9,674	405	4.4
기금운영비	3,979	857	748	6	5,590	64	1.2
여유자금 운용	658,475	26,783	57,283	1,856	744,397	-54,440	-6.8
[연도말 누적적립금]	3,541,714	58,307	119,885	5,026	3,724,932	323,431	9.5

주 : 1)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융자원금 회수 및 민간차입금을 포함
2)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연금부담금(36,275억원)+퇴직수당부담금(10,548억원)+재해보상부담금(1,030억원)임
3)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2011년 발생액 12,474억원 + 2009년 과납액 617억원을 반영한 금액임
4)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국가부담금, 국고학자금대여사업비 포함
5)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복지타운운영비, 기금운용본부운영비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차입금이자상환, 공자기금예탁금을 포함하고, 군인연금기금의 경우 공자기금 예탁이 포함
6)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대부사업운영이 포함되고,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생활자금대여, 학자금대여가 포함
7)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공단 회관신축 및 매입, 본부지방이전, 정보화사업, 기타사업비가 포함되고,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주택사업운영, 시설사업운영, 통합전략시스템이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및 각 소관부처,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2011. 2

부록표 2. 25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및 보전금: 2005~2014년[1)]

(단위 : 억원)

	국고 지원			국고 보전금			합 계
	건강 보험[2)]	노인장기 요양보험[3)]	소 계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소 계	
2005	36,948	-	36,948	6,096	8,564	14,660	51,608
2006	38,362	-	38,362	6,477	8,755	15,232	53,594
2007	36,718	-	36,718	9,892	9,536	19,428	56,146
2008	40,262	1,294	41,556	14,294	9,492	23,786	65,342
2009	46,786	2,459	49,245	19,028	9,409	28,437	77,682
2010	48,560	3,532	52,092	13,071	10,566	23,637	75,729
2011	51,345	4,179	55,524	12,474	12,266	24,740	80,264
2012	60,923	4,744	65,667	14,724	11,149	25,873	91,540
2013	67,545	5,114	72,659	19,836	12,275	32,111	104,770
2014	74,286	5,535	79,821	26,626	13,480	40,106	119,927
합 계	501,735	26,857	528,592	142,518	105,492	248,010	776,603

주 : 1) 2005~2010년은 결산 기준이고, 2011년은 예산 기준이고, 2012~2014년은 전망치임
2) 예산(과징금 예상 세입액 제외) 및 건강증진기금의 지원 포함
3) 요양보험료 수입액 20% 지원(운영지원)과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2011. 2

부록표 2. 26 연도별 최저생계비: 2001~2011년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2001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2002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20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2006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011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고시」, 각 년도

부록그림 2. 1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추이: 1970~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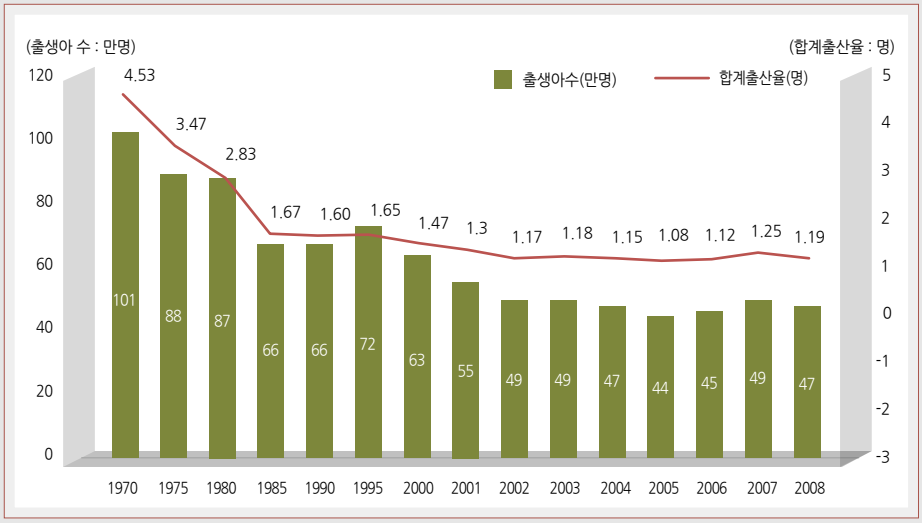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년도

부록그림 2. 2 인구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 2009~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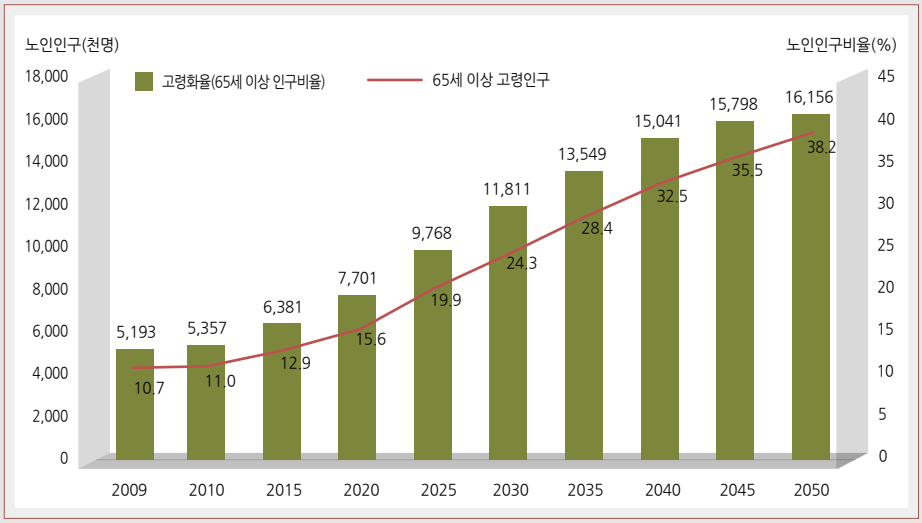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부록표 2. 27 국민의료비 국제비교

(단위 : %)

	OECD 회원국			한 국	OECD 평균대비 한국 수준
	최고	최저	평균(A)	(B)	(B/A)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total health expenditure)	16.0 (미국)	5.9 (멕시코)	9.0	6.5	72.2
국민의료비대비 공공부문 지출 비중 (publicly financed coverage)	84.2 (노르웨이)	46.5 (미국)	72.3	55.3	76.5

주 : 2008년 기준임
자료 : OECD, 「OECD Health data 2010」, 2010. 6

8. 환경노동

부록표 2. 28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만명, %)

	2009 연간	2010					2011
		연간	1월	2월	3월	12월	1월
15세이상인구(A)	4,009	4,059	4,039	4,042	4,046	4,080	4,084
경제활동인구(B)	2,439	2,475	2,408	2,404	2,438	2,454	2,411
취업자수(C)	2,351	2,384	2,287	2,287	2,338	2,368	2,320
고용률(C/A)	58.6	58.7	56.6	56.6	57.8	58.0	56.8
남성고용률	70.1	70.1	68.3	68.2	69.2	69.8	68.4
여성고용률	47.7	47.8	45.4	45.4	46.9	46.8	45.6
실업자수(D)	89	92	112	117	101	85	92
실업률(D/B)	3.6	3.7	5.0	4.9	4.1	3.5	3.8
청년(15~29세)실업률	8.1	8.0	9.3	10.0	9.0	8.0	8.5
비경제활동인구	1,570	1,584	1,631	1,638	1,607	1,627	1,673
취업준비	59	63	59	64	68	57	57
쉬었음	148	142	154	156	139	162	187
구직단념자	16	22	20	25	24	22	24

주 : 1. 15세 이상 인구
2.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자료 : 통계청

부록그림 2. 3 실업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 2009.11월~2010.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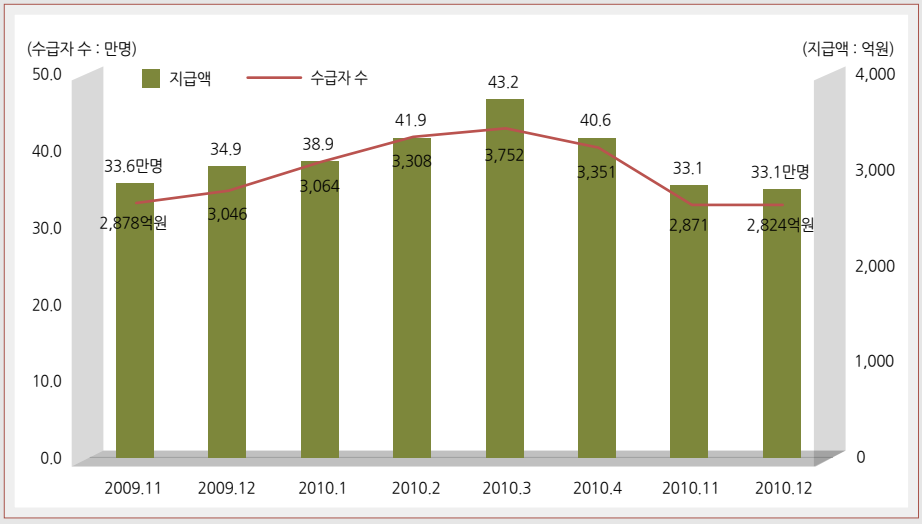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현황」, 각 월호

부록표 2. 29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 변화 추이: 2007~2011년

(단위 :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자체세입(A)	11,981	13,107	13,286	13,273	14,114
일반회계전입금(B)	16,986	18,053	22,319	26,051	28,600
계(C=A+B)	28,967	31,160	35,603	39,324	42,715
비중(B/C)	58.6	57.9	62.7	66.2	67.0

자료 : 환경부, 2011. 1

부록표 2. 30 2010년도 중앙정부 귀속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C)	미수납액 (D)	비율		
							B/A	C/A	D/A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182,679	221,122	167,650	3,030	50,442	75.8	1.4	22.8
	자동차	500,858	1,199,329	480,608	16,255	702,466	40.1	1.4	58.6
	소 계	683,537	1,420,451	648,258	19,285	752,908	45.6	1.4	53.0
배출 부과금	대기	6,685	10,019	7,795	548	1,676	77.8	5.5	16.7
	수질	6,052	29,514	4,054	1,715	23,746	13.7	5.8	80.5
	소 계	12,737	39,533	11,848	2,263	25,422	30.0	5.7	64.3
수질개선 부담금		22,156	24,919	14,310	287	10,322	57.4	1.2	41.4
생태계 보전 협력금		110,862	142,715	101,928	0	40,787	71.4	0.0	28.6
폐기물 부담금		67,817	62,452	60,515	10	1,927	96.9	0.0	3.1
재활용 부과금		4,420	13,574	5,557	23	7,994	40.9	0.2	58.9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1,347	5,320	2,094	0	3,226	39.4	0.0	60.6
총량초과 부과금		65	3	3	0	0	100.0	0.0	0.0
총량초과 부과금(대기)		0	0	0	0	0	-	-	-
폐기물 예치금		143	1,936	19	851	1,066	1.0	44.0	55.1
영향평가협의기준초과 부담금		0	85	0	0	85	0.0	0.0	100.0
기타		46	1,224	656	0	568	53.6	0.0	46.4
합 계		903,130	1,712,212	845,188	22,719	844,305	49.4	1.3	49.3

자료 : 환경부, 2011. 2

부록표 2. 31 주요 국가별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현황

(단위 : 백만 CO2톤)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증가율 (1990대비,%)	비중 (%)
전세계	20,987.6	21,829.0	23,508.5	25,107.8	26,331.8	27,146.3	28,002.7	33.4	100.0%
OECD	11,083.2	11,595.5	12,513.5	12,778.6	12,904.3	12,941.7	12,873.7	16.2	46.0%
미국	4,863.3	5,133.3	5,693.0	5,688.6	5,772.4	5,784.5	5,696.8	17.1	20.3%
중국	2,244.0	3,021.8	3,077.6	3,871.1	4,587.3	5,100.5	5,648.5	151.7	20.2%
러시아	2,179.9	1,582.9	1,513.8	1,540.0	1,524.1	1,531.2	1,587.2	-27.2	5.7%
인도	589.3	782.6	976.5	1,042.9	1,114.1	1,160.7	1,249.7	112.1	4.5%
일본	1,071.4	1,156.7	1,192.4	1,222.8	1,222.4	1,227.7	1,212.7	13.2	4.3%
독일	950.4	869.3	827.1	842.1	843.4	811.3	823.5	-13.4	2.9%
캐나다	432.2	465.1	532.6	554.3	550.4	556.3	538.8	24.7	1.9%
영국	553.0	519.1	525.6	535.9	535.6	535.4	536.5	-3.0	1.9%
한국	229.3	364.8	431.3	458.6	478.9	468.9	476.1	107.6	1.7%
이탈리아	397.8	409.7	424.7	452.4	450.0	453.8	448.0	12.6	1.6%
이란	175.3	249.4	304.8	351.9	380.6	396.7	432.8	146.9	1.5%
멕시코	292.9	309.6	356.8	371.0	374.3	402.2	416.3	42.1	1.5%
호주	259.8	285.2	338.7	360.9	369.6	387.2	394.4	51.8	1.4%
프랑스	352.1	353.7	375.8	384.3	383.8	386.6	377.5	7.2	1.3%
남아공	254.6	276.8	298.6	320.8	337.5	330.4	342.0	34.3	1.2%
사우디아라비아	161.4	204.5	251.1	287.5	303.6	321.9	340.0	110.7	1.2%
인도네시아	140.2	192.2	264.6	298.8	316.3	331.0	334.6	138.6	1.2%
브라질	192.7	238.4	303.4	304.1	321.0	327.1	332.4	72.5	1.2%
스페인	205.8	233.7	283.9	309.6	327.4	339.5	327.6	59.2	1.2%
우크라이나	687.9	392.8	292.0	329.6	312.6	306.0	310.3	-54.9	1.1%

주 : 전세계에는 해상 및 항공 벙커링 포함
자료 : IEA, 「CO_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2008 Edition

9. 국토해양

부록표 2. 32 GDP 대비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이: 1999~2008년

(단위 : 조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교통 혼잡 비용	계(A)	17.1	19.4	21.1	22.1	22.8	23.1	23.5	24.6	25.9	26.6
	지역간	7.6	8.3	8.8	9.2	9.1	9.1	9.1	9.2	9.4	9.6
	도시	9.5	11.1	12.3	13.0	13.7	14.0	14.4	15.4	16.5	17.0
GDP(B)		549.0	603.2	651.4	720.5	767.5	826.9	865.5	908.7	975.0	1,026.5
GDP대비 비중 (A/B)		3.12	3.22	3.24	3.07	2.97	2.80	2.74	2.71	2.65	2.95

자료: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 2010

부록표 2. 33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2002~2010년

(단위 : 천TEU,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국 물량	전 체 (증가율)	11,890 (19.0)	13,186 (10.9)	14,523 (10.1)	15,216 (4.8)	15,965 (4.9)	17,544 (9.9)	17,927 (2.2)	16,341 (-8.8)	19,307 (18.1)
	수출입 (증가율)	7,356 (11.6)	8,182 (11.2)	9,025 (10.3)	9,412 (4.3)	10,123 (7.6)	11,254 (11.2)	11,605 (3.1)	10,369 (-10.7)	12,299 (18.6)
	환 적 (증가율)	4,205 (35.2)	4,598 (9.4)	5,158 (12.2)	5,532 (7.2)	5,673 (2.6)	6,155 (8.5)	6,186 (0.5)	5,719 (-7.5)	6,630 (15.9)
	연안화물	330 (14.2)	404 (22.4)	340 (-15.7)	273 (-19.7)	168 (-38.5)	135 (-19.6)	135 (0)	253 (87.4)	378 (49.1)

자료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2011.2

부록표 2. 34 민자고속도로 및 철도 사업 추진현황(건설 중인 5개 사업)

(단위 : 억원)

		연장(km)	총사업비	공사기간	사업시행자
BTO 사업(3개 사업)					
평택~시흥	경기평택 청북~시흥 월곶	42.6	11,026	2008 ~ 2013	제2서해안고속도로(주)
신분당선 복선전철	강남 역삼~분당 정자	18.5	11,809	2005 ~ 2011	신분당선(주)
부산~김해경량전철	부산사상역~김해삼계동	23.5	7,742	2006 ~ 2011	부산~김해경전철(주)
BTL 사업(2개 사업)					
전라선 복선전철	전북 익산~전북 완주	34.4	4,707	2007 ~ 2011	남광토건 등 15개사
경전선 복선전철	경남 함안~진주 일반성	20.4	3,383	2008 ~ 2012	현대건설 등 17개사

주 : 2011년 2월 기준
자료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부록표 2. 35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현황(2010년 12월말 기준)

(단위 : 조원)

	2005년 사업	2006년 사업	2007년 사업	2008년 사업	2009년 사업	2010년 사업	2011년 사업
BTL 한도액	6.2(128개)	8.3(142개)	9.9(88개)	5.0(65개)	6.5(56개)	3.5(39개)	1.2(26개)
고 시	3.7(84개)	7.3(127개)	5.5(76개)	2.9(60개)	5.2(45개)	2.5(31개)	-
협약체결	3.6(81개)	7.1(125개)	5.8(76개)	3.0(56개)	2.3(37개)	0.4(2개)	-

주 : 2005년 BTL사업 도입후 2010년 12월말 기준 국방부의 군숙소,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환경부의 하수관거, 국토해양부의 철도시설, 지자체의 초중등학교 시설사업 등이 포함된 규모임
자료: 기획재정부

부록표 2. 36 우리나라 주요수계별 하천정비 현황

(단위 : ㎞, %)

수계명	하천개수						
	要 개수	완전 개수	완전 개수율	불완전 개수	불완전 개수율	未 개수	未 개수율
한강	6,812	4,602	67.6	995	14.6	1,215	17.8
낙동강	6,559	3,858	58.8	1,175	17.9	1,527	23.3
금강	4,401	2,682	60.9	938	21.3	781	17.7
섬진강	1,843	926	50.3	411	22.3	505	27.4
영산강	1,790	1,232	68.8	240	13.4	318	17.8
안성천	1,012	739	73.0	160	15.8	113	11.2
삽교천	736	523	71.0	120	16.3	94	12.7
만경강	817	349	42.7	270	33.1	197	24.2
형산강	334	247	73.8	45.2	13.5	42	12.7
동진강	570	399	70.1	89	15.6	82	14.4
태화강	376	208	55.2	66	17.5	102	27.3
탐진강	215	157	73.4	20	9.5	37	17.1
양양 남대천	69	61	88.5	-	-	8	11.5
삼척 오십천	33	23	69.4	-	-	10	30.6
영덕 오십천	68	48	71.6	1	1.4	18	27.0
서낙동강	193	102	53.1	15	7.9	75	39.0
강릉 남대천	74	61	83.0	13	17.1	-	-
기타	4,653	2,695	57.9	943	20.3	1,014	21.8
합계	30,553	18,913	61.9	5,501	18.0	6,139	20.1

주 : 개수(改修)란 제방을 신규축조(완전개수)하거나 보강(불완전개수)하는 것을 말함
자료 : 국토해양부 한강홍수통제소, 「한국하천일람(200912.31 기준)」, 2010.12

부록표 2. 37 시 · 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단위 : 천명, 천㎥/일, %)

시·도	총인구	급수인구	시설용량	보급률
서울특별시	10,464	10,464	4,700	100.0
부산광역시	3,574	3,569	2,443(2,643)	99.9
대구광역시	2,509	2,504	1,750(1,950)	99.8
인천광역시	2,758	2,700	1,999	97.9
광주광역시	1,446	1,424	780	98.5
대전광역시	1,499	1,491	1,260(1,350)	99.5
울산광역시	1,130	1,090	550	96.5
경기도	11,727	11,171	3,121(3,147)	95.3
강원도	1,526	1,313	780(788)	86.1
충청북도	1,550	1,319	342	85.1
충청남도	2,075	1,483	158	71.4
전라북도	1,874	1,677	187(317)	89.5
전라남도	1,934	1,426	661	73.7
경상북도	2,705	2,260	965(1,116)	83.5
경상남도	3,303	2,879	1,307	87.2
제주도	568	568	513	100.0
한국수자원공사	-	-	7,369(9,096)	-
전국	50,644	47,336	28,885(31,416)	93.5

주 :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를 포함한 수치이며, 시설용량에서 ( )안의 수치는 공업용 정수시설용량을 포함한 시설용량임
자료 : 환경부, 「2009 상수도통계」, 2010

부록표 2. 38 주택 부문 재정규모: 2001~2011년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반회계 및 균특회계]	5,761	8,095	8,506	10,811	11,724	11,440	2,014	1,905	3,866	1,800	2,407
[국민주택기금]	139,645	110,335	104,332	99,974	123,811	156,937	147,278	149,856	164,249	168,824	178,129
- 임대주택건설	38,022	44,405	36,578	36,348	37,658	44,499	62,303	57,402	67,203	66,728	52,549
- 분양주택건설	8,963	9,812	9,370	14,497	16,500	17,000	11,000	10,500	14,400	22,739	42,064
- 준주택지원(융자)	-	-	-	-	-	-	-	-	-	-	300
- 수요자융자	36,926	28,844	38,085	31,817	52,600	75,800	55,050	64,252	66,136	57,677	57,700
- 주택개량사업	1,670	1,652	2,715	1,430	1,580	1,430	1,360	1,180	1,334	100	50
- 기타사업	29,702	7,050	6,829	2,171	1,480	1,550	1,190	1,529	15,176	4,659	3,074
- 이자상환	23,317	17,150	8,651	11,672	11,888	14,419	14,649	13,000	12,528	16,915	22,390
- 기금운영비	1,045	1,422	2,104	2,039	2,105	2,239	1,725	1,993	1,568	5	3
합계	145,406	118,430	112,838	110,785	135,535	168,377	149,292	151,761	168,115	170,624	180,536

주 : 2009년의 경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액수임
자료 : 국토해양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

부록표 2. 39 전세가격 동향: 2008~2011년 1월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1.7	3.4	0.3	0.6	0.7	0.6	0.4	0.4	0.3	0.4	0.6	0.8	1.0	0.7	0.9
수도권	1.7	4.2	0.2	0.5	0.7	0.6	0.3	0.2	0.1	0.3	0.7	1.0	1.0	0.6	0.8
-서울	1.1	6.0	0.4	0.7	0.8	0.5	0.2	0.2	0.1	0.3	0.7	0.9	0.8	0.6	1.0
-인천	7.0	1.6	0.2	0.3	0.5	0.4	0.5	0.4	0.4	0.4	0.7	0.7	0.8	0.2	0.0
-경기	0.8	3.2	0.1	0.4	0.7	0.7	0.3	0.2	0.1	0.3	0.8	1.1	1.2	0.6	0.9

주 : 2008~2009년의 경우 전년말대비 전세가격 증가율을 의미하고, 2010~2011년의 경우 전월말대비 전세가격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 KB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11년 2월 14일), 〈http://www.kbstar.com/〉

부록표 2. 40 연도별 미분양 주택현황: 2000~2010년

(단위 : 호)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 국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72	112,254	165,599	123,297	88,706
-준공후	16,272	8,834	5,425	5,874	10,314	10,983	13,654	17,395	46,476	50,087	42,655
수도권	19,785	9,360	1,387	7,370	15,458	12,242	4,724	14,624	26,928	25,667	29,412
-서 울	3,037	1,771	52	735	612	574	529	454	2,486	1,803	2,729
지 방	38,765	22,152	23,536	30,891	53,675	44,973	69,048	97,630	138,671	97,630	59,294
공 공	19,609	10,771	10,755	6,367	8,352	5,800	1,954	1,539	1,306	335	0
민 간	38,941	20,741	14,168	31,894	60,781	51,415	71,818	110,715	164,293	122,962	88,706
60㎡이하	14,878	7,481	6,807	8,162	9,417	7,049	6,003	5,764	7,294	5,851	4,703
60~85㎡	25,329	13,394	12,919	21,680	44,738	35,738	40,350	53,528	69,924	47,834	29,913
85㎡초과	18,343	10,637	5,197	8,419	14,978	14,428	27,419	52,962	88,381	69,612	54,090

주 : 연도말 기준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 (2011년 2월 17일), 〈https://stat.mltm.go.kr/〉

부록표 2. 41 가계신용 현황: 2009~2010년

(단위: 조원, %)

	2009			2010			
	연중	3/4	4/4	연중	3/4	4/4	잔 액
가계신용	45.4	15.0	20.9	61.7	15.2	25.3	795.4
	(6.6)	(5.4)	(6.6)	(8.4)	(8.0)	(8.4)	
가계대출(A)	43.6	14.1	16.4	54.0	13.4	20.9	746.0
	(6.7)	(5.9)	(6.7)	(7.8)	(7.3)	(7.8)	
주택담보대출(B)	33.1	8.1	8.7	28.8	5.4	10.6	357.6
B/A	75.9	57.4	53.0	53.3	40.3	50.7	47.9
판매신용	1.8	1.0	4.5	7.7	1.7	4.4	49.4
	(4.4)	(-2.9)	(4.4)	(18.5)	(20.9)	(18.5)	

주 : ( )안은 잔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2010년 4/4분기중 가계신용」, 2011.2

10. 여성가족

부록표 2. 42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부처별 예산 현황: 2008~2011년

(단위 : 억원)

	2008	2009	2010	2011
여성가족부	241	296	419	570
법무부	15	37	47	52
교육과학기술부	39	65	62	98
고용노동부	-	0.5	4.7	4
행정안전부	5	24	8	14
문화체육관광부	26	40	56	61
농림수산식품부	-	4	12	12
방송통신위원회	-	6	20	24
보건복지부	-	-	-	111
합 계	326	473	629	946

자료 : 각 부처, 2011. 2

부록표 2. 43 성폭력 발생현황: 2007~2010년

(단위 : 건, %)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범죄자수)	조치건수	
				구속	불구속
2007	15,325	13,940	16,500	2,927	13,573
2008	17,178	15,627	17,824	3,157	14,667
2009	18,351	17,027	18,810	2,811	15,999
2010 (증가율)	20,364 (11.0)	18,066 (6.1)	19,735 (4.9)	2,973 (5.8)	16,762 (4.8)

자료 : 경찰청, 2011. 2

11. 공공기관

2011년에는 총 286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준시장형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3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신용보증기금 등 17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6개, 그 밖에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산업은행 등 176개 기관이 지정되었음.

부록그림 2. 4 국내총산출 대비 공공기관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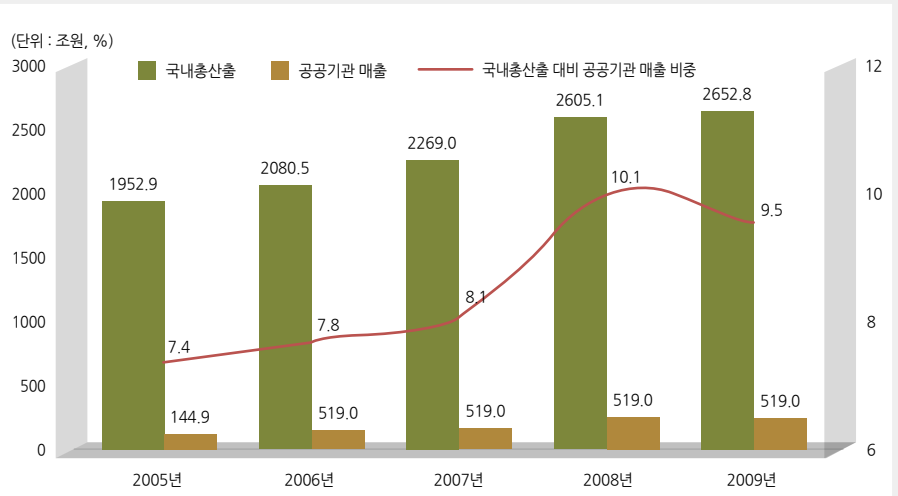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0 공공기관 현황분석 I」, 2010.11

부록그림 2. 5 국가자산 대비 공공기관 자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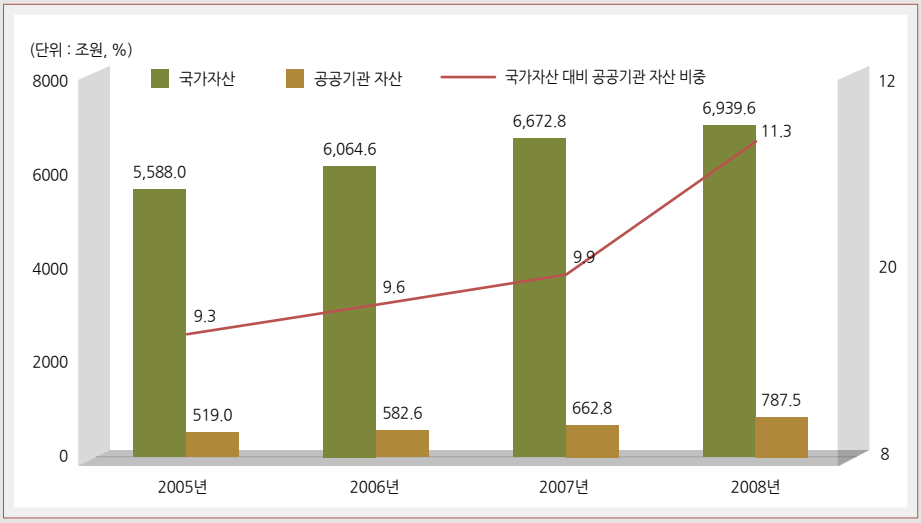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0 공공기관 현황분석 I」, 2010.11

부록표 2. 44 공공기관 금융부채 추이

(단위 : 조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시장형 공기업	23.2	24.2	26.4	26.9	39.6	48.1
준시장형 공기업	34.0	42.8	54.2	64.8	83.4	107.5
기금관리형 정부기관	0.1	0.1	0.1	0.1	0.1	0.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9	7.7	8.4	9.6	11.2	12.8
기타공공기관	7.2	6.6	6.7	7.3	10.5	12.9
합 계	71.4	81.4	95.8	108.7	144.8	181.4
증 감 액	-	10.0	14.4	12.9	36.1	36.6
증 감 률	-	14.0	17.7	13.5	33.1	25.3

주 : 금융부채는 부채 중 매입채무, 미지급금, 분양선수금, 임대보증금 등 비금융부채를 제외한 장 · 단기 차입금, 금융리스부채, 사채 등을 의미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금융부채 과다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0.10

부록표 2. 45 2009년 말 금융부채 상위 20개 공공기관

(단위 : 조원, %)

No.	기관명	분 야	2009년 말 금융부채	비 중
1	한국토지주택공사	SOC	75.0	41.3
2	한국전력공사	산업, 중소, 에너지	22.0	12.1
3	한국도로공사	SOC	20.6	11.4
4	한국가스공사	산업, 중소, 에너지	15.5	8.6
5	한국철도시설공단	SOC	11.0	6.1
6	한국철도공사	SOC	7.3	4.0
7	한국석유공사	산업, 중소, 에너지	4.9	2.7
8	한국수력원자력(주)	산업, 중소, 에너지	2.9	1.6
9	인천국제공항공사	SOC	2.7	1.5
10	한국중부발전(주)	산업, 중소, 에너지	2.4	1.3
11	한국수자원공사	SOC	2.4	1.3
12	한국남동발전(주)	산업, 중소, 에너지	2.1	1.2
13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 중소, 에너지	1.8	1.0
14	한국남부발전(주)	산업, 중소, 에너지	1.5	0.9
15	한국서부발전(주)	산업, 중소, 에너지	1.5	0.8
16	대한석탄공사	산업, 중소, 에너지	1.2	0.7
17	한국동서발전(주)	산업, 중소, 에너지	1.2	0.7
18	부산항만공사	SOC	1.2	0.7
19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SOC	1.1	0.6
20	한국광물자원공사	산업, 중소, 에너지	0.5	0.3
소 계			179.0	98.7
기타의 공공기관			2.4	1.3
합 계			181.4	100.0

주 :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금융부채는 융자사업 제외한 금액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0 공공기관 현황분석 I」, 2010.11

찾아보기

ㄱ

가계부채 22
개성공단지원 204
건강보험 336
결식아동급식지원 327
경로당 난방비 지원 327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18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52, 161
계속비 65
고용보험 361
고용보험 사각지대 362
공공분양주택 380
공공임대주택 380
공공자금관리기금 284
공동시설세 247
공직복무관리관실 158, 160
공탁출연금 149
관리대상수지 28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236
광역도로 건설사업 376, 37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44
구직급여 363
국가보증채무 77
국가연구개발예산 261
국가장학기금 259
국가채무 31
국가채무 국제기준 33
국가채무 중기전망 41
국가하천정비 사업 372, 378~379
국고보조금 242
국고채무부담행위 62
국내개발 무기체계 결함 216
국내경제성장률 전망 19
국민부담률 329
국민연금기금 321
국민임대주택 380
국민주택기금 365~369, 379
국방 IPTV 시청료 215
국방연구개발예산 210
국세감면율 91
국세수입 55
국세수입 조정내역 9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261
국제금융센터 181
국채 32
국채발행 한도액 51
국회 시정요구사항 125
군인연금기금 206, 209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200
금융성 채무 39
기금수입 70
기금운용규모 69
기금조성규모 69
기금지출 73
기금채권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65
기금현황 66
기업특별회계 전입금 54
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3

ㄴ

나로호 260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203
녹색기술 연구개발 311
녹색성장 354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 296
농식품 전문투자펀드 출자사업 293

찾아보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4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294

ㄷ

대개도국 차관 18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 166
디지털 네트워크 외교사업 198

ㄹ

런던협약의정서 344

ㅁ

명시이월비 63
모기지론 이차보전 163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309
목재펠릿지원사업 298
목적예비비 52, 61
무상보육료 338
무역보험기금 303
문화바우처 278

ㅂ

바바이오매스 354
방송통신발전기금 269, 273, 279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147
보금자리주택 사업 379~381
보라매 사업 210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28
보통교부세의 조정률 242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33
복지지출 329
부대의견 102
부양의무자 333
북한정세지수 203
분야별 재원배분 134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136
비축사업 189

ㅅ

사고이월 64
사행산업 27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77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335
사회통계작성사업 191
상수관망 선진화 356
상수도사업 적자 357
상임위원별 재원배분 130
상임위원회별 의무지출 46
서해5도 전력증강 소요 213
석면피해구제기금 342
석유비축사업 308
성인지 예산 제도 78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17
세종시 건설 사업 381~382
세종시 발전방안 382
소방예산 246
소하천정비사업 239
송유관이설사업 융자 309
수입금 마련 지출 범위 52
수자원공사 378~379
숲가꾸기 사업 297
스마트그리드 313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309, 317
신기술창업인프라구축 309
신성장동력기술 사업화 투자지원 309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314

찾아보기

실업급여계정 362
쌀소득보전 변동직불사업 292

ㅇ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 301
여성발전기금 391
연평도 포격 211, 213
영구임대주택 380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328
예비비 6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88
예산총칙 49
외환보유액 186
울릉도 ·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353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 54
월류수처리시설(CSOs) 354
육아휴직보험 359
의무지출 43
의무지출 예산안 조정내역 47
이용 52
이용 가능 경비 및 비목 52
일반예비비 61
일반철도 건설사업 377~378
일자리 대책 예산 사업 360
임대형 민자사업 대상시설별 한도액 75
임대형 민자사업 예비한도액 75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76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 75

ㅈ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 201
재량지출 43
재외국민선거기반구축 200
재일민단지원 198
재정건전화 계획 18
재정력지수 242
재정사업 심층평가 183
재정수반 법률 105
재정수지 28
재정증권 최고한도액 50
재정지출 규모의 국제비교 25
재정통계 개편 36
재해기상 연구센터 353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50
저탄소녹색마을 355
적자성 채무 39
전세임대주택 380
전자세금계산서 187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309, 317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235
조달청 회전자금 189
조세지출예산서 91
주파수할당대가 279~280, 280
중기 재정 전망 41
중소기업 정책금융 316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304~305, 308
중이온 가속기 261
지방교부세 24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1, 256, 240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223
지방재정 지원 예산 240
지방정부 순채무 33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223, 232
지역투자촉진 309, 313
지자체 소방재정 246
지자체보조금 240

찾아보기

집회시위 관리장비 구입비 237

ㅊ

차입금 한도액 51
참전명예수당 165
청소년육성기금 392
체육진흥투표료 276
총수입 규모 13
총액계상예산사업 60
총지출 규모 13
총지출과 통합재정 비교 27
최저생계비 33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259

ㅌ

통합재정 규모 24
통합재정수지 28
특수활동비 148
특정업무경비 149

ㅍ

폐광대책비 301
폐수종인처리시설 350
포괄보조금 제도 245

ㅎ

하수도 사업 343
하수슬러지 344
하수종인처리시설 350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0
한국장학재단 257
한국토지주택공사 381
햇살론 184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219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44
현실화율 356
회계별 세출예산 추이 59
희망근로프로젝트 233

기타

110 콜센터 167
2010 한국 경제 보고서 337
4대강 사업 372, 378~379
G20 서울 국회의장 회의사업 399
ICL 257~259
IHD(스마트미터 디스플레이) 314
K-2 전차 파워팩 217
OECD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 329

집 필 진

목 차	소관부서	담당자
제1부 2011년도 재정 개요		
제1장 2011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특징	경제예산분석팀	박선춘 팀장
제2장 2011년도 재정운용 여건	경제예산분석팀	이강혁 분석관
제3장 2011년도 재정규모 및 재정 건전성	경제예산분석팀	최철민 분석관
제4장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경제예산분석팀	정금희 분석관
제5장 2011년도 예산의 국회심의 내역 및 특징	경제예산분석팀	김태완 분석관
제2부 위원회별 재정 및 주요 현안		
제6장 분야별 재원배분 개관	경제예산분석팀	정원철, 김수옥 분석관
제7장 법제사법	행정예산분석팀	전광희 분석관
제8장 정무	행정예산분석팀	예승우, 오세일 분석관
제9장 기획재정	경제예산분석팀	이강혁 분석관
제10장 외교통상통일	행정예산분석팀	전광희 분석관
제11장 국방	행정예산분석팀	예승우 분석관
제12장 행정안전	행정예산분석팀	김경수 분석관
제13장 교육과학기술	사회·산업예산분석팀	이유미(교육), 전용수(과학기술) 분석관
제14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사회·산업예산분석팀	이유미(문화체육관광), 전용수(방송통신) 분석관
제15장 농림수산식품	산업예산분석팀	변재연 분석관
제16장 지식경제	산업예산분석팀	김승현, 전용수 분석관
제17장 보건복지	사회예산분석팀	김대철(복지), 김태은(보건) 분석관
제18장 환경노동	사회·산업예산분석팀	강상규(환경), 김성은(고용), 전용수(기상) 분석관
제19장 국토해양	산업예산분석팀	서명관, 한정수 분석관
제20장 여성가족	사회예산분석팀	김태은 분석관
제21장 국회운영	사회예산분석팀	전광희, 예승우 분석관
제22장 정보	행정예산분석팀	예승우 분석관
부록 : 재정통계		분야별 담당 분석관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

발 행 일	2011년 2월 23일
발 행 인	김춘순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대한민국국회
	TEL 02 · 788 · 3769
편 집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디자인 · 인쇄	(주)메이커뮤니케이션 TEL 02 · 761 · 8340

*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ISBN 978-89-6073-431-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1